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I)

제1권 : 건축·주택, 공업, 관광, 국토개발

2010. 1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8573



한국농어촌공사

농 어 촌 개 발 처

농산업·도농교류지원지원본부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I)

제1권 : 건축·주택, 공업, 관광, 국토개발

제2권 : 농업, 복지, 산업일반, 상업

2010. 1



한국농어촌공사

농 어 촌 개 발 처

농산업·도농교류지원지원본부

I. 건축, 주택	1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3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49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등을 정하는 성령	83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85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95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 규칙	109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118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122
우량 전원주택의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협의에 관한 성령	124
 II. 공업	 127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129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시행령	148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제 10조의 지역 등을 정하는 성령	152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158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성 3년 10월 18일 정령 제 327호)	179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2 제4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복사기에 관한 성령	199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3 제15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석유 스토브에 관한 성령	200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 제4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조미료에 관한 성령	201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의 6항 상란에서 규정하는 특정 용기 포장에 관한 성령	202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 제6항 중란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용기 포장을 정하는 성령	205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출입 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성령	207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규정된 계획에 관한 성령	208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209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시행령	214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금액 계산에 관한 성령	219

III. 관 광 221

에코투어리즘 추진 방법	223
에코투어리즘 추진법 시행 규칙	231

IV. 국토개발 237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239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5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57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264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83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295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296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304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의 특례에 관한 성령	309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쇼와 48년 10월 17일 법률 제118호)	310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쇼와 49년 2월 21일 정령 제27호)	331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	351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제2조제2항 댐, 동조 제3항의 호수 수위 조절 시설 및 동법 제9조제1항의 지정 댐을 지정하는 정령	352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제13조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 (평성 7년 3월 29일 자치성 시행령 제13호) ...	361
제3조	361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찰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365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	374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 시행령	387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 제 9조의 지방공공단체 등을 지정하는 정령	390
경 관 법 (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10호)	398
경관법 시행령	449
경관법 시행 규칙	466
경관 행정 단체 및 경관 계획에 관한 성령	479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에 관한 성령	481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483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7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515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서 바꾸어 준용하는 토지 개량법 제94조6 제2항에 규정된 토지 개량 시설을 정하는 성령 ..	518

V. 농 업 519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521
농업 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	526
농주조합법	528
농주조합법 시행령	574
농주조합법 시행 규칙	586
농주조합에 관한 토지 개혁 시행 규칙의 적용에 관한 성령	596
농주조합이 실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생산녹지 지역에 관계하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 요청에 관한 성령	597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599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시행령	610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시행 규칙	614
취락 지역 정비법	618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636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 규칙	654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660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시행령	672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시행 규칙	677
생산 녹지법	681
생산 녹지법 시행령	692
생산 녹지법 시행 규칙	696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699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8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735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746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8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809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회의 조직 공표에 관한 명령	810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규정된 업무에 관련된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에 관한 성령	811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8조지방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	812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816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7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평성 19년 9월 26일 국토교통성령 제80호)	849

VI. 복지 **879**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881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905

VII. 산업 일반 **947**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 계획 승인 등에 관한 명령	949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성령 (평성 20년 7월 18일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령 제4호)	952
농림수산성 관계 연구 개발 시스템 개혁의 추진 등에 의한 연구 개발 능력의 강화 및 연구 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956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에 관한 명령	960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962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9
전통 공예 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982
제조 기반 기술 진흥 기본법	995
제조 기반 기술 진흥 기본법 시행령	1001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성령 ..	1003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06
지역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정하는 성령	1016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비율을 결정하는 정령	1018

VIII. 상업 **1019**

중소소매상업진흥법	1021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시행령	1037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시행 규칙	1046



건축, 주택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2001년 4월6일 법률 제26호)

최종 개정 : 2009년 5월20일 법률 제38호 (최종 개정까지의 미시행 법령)
2009년 5월 20일 법률 제38호 (일부 미시행)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1장의2 기본방침 및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제3조·제3조2)

제2장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 임대 주택의 등록 등

제 1 절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임대 주택 등록 등(제4조~제16조)

제 2 절 지정등록기관 (제19조~제29조)

제3장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제 1 절 공급 계획 인정 등(제30조~제40조)

제 2 절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 조치(제41조~제47 조)

제4장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공급 촉진 등

(제48조~제50조)

제5장 종신 건물 임대차(제56조~제75조)

제6장 주택 가령대응¹⁾ 개량에 대한 지원 조치(제76조·제77조)

제7장 고령자 거주 지원 센터(제78조~제88조)

제8장 기타 조항(제89조·제90조)

제9장 벌칙(제91일조~제95조)

부칙

1) 加齢対応(가령대응)

가령 : 연령이 증가하는 것.

예) 가령 대응 주택이란, 연령이 많아져 신체 기능의 저하나 장애가 생겨도 곤란하지 않기 위한 설계(예 : 복도를 넓게 하거나 마루의 단차를 없애는 등) 를 하는 주택.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임대 주택 등록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쾌적한 거주 환경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에게 적합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에 관한 종신 건물 임대차 제도를 제정하여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를 도모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2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장의2

기본방침 및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

(기본방침)

제3조

국토교통장관 및 후생노동장관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해야 한다.

2.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사항으로 정한다.

- (1) 고령자에 대한 임대 주택 및 양로원 지급에 대한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2) 고령자에 대한 임대 주택 및 양로원 지급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3) 고령자가 입주하는 임대 주택 관리 적정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4) 고령자에게 적합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가진 주택 정비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5) 고령자가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다음 조 제2항 제2호에 있어 「고령자 주택 생활지원 체제」라고 한다)를 확보한 기본적인 사항.
- (6)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 책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7) 전 각 호에서 명시하는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본방침은 고령자를 위한 주택, 양로원,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현황과 장래 전망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주생활 기본법(2006년 법률 제61호)은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국토교통장관 및 후생노동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할 때 총무대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5. 국토교통장관 및 후생노동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했을 때는 공표해야 한다.
6. 전 3항의 규정은 기본방침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

제3조의2

도도부현²⁾은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내에서만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이라고 한다)을 정할 수 있다.

2.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다.

(1)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내에서 고령자에 대한 임대 주택 및 양로원 공급의 목표.

(2)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 고령자에 대한 임대 주택 및 양로원 공급 촉진에 관한 사항.

나. 고령자가 입주하는 임대 주택 관리 적정화에 관한 사항.

다. 고령자에게 적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주택 정비 촉진에 관한 사항

라. 노인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 5 조2 제3항에 규정하는 노인의 날 서비스 사업 외 고령자가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 정비 촉진에 관한사항.

마. 제3조의2에서 명시한 것 외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체제 확보에 관한 사항.

(3) 계획 기간

(4) 전 3호에 명시하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내에서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3. 도도부현은 지방주택공급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 할 경우, 전항 제2호에 명시하는 해당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제34조에 규정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및 인정 지원 시설 정비 , 임대

2) 都道府県(도도부현): 일본 행정구조는 한 개의 도(동경도), 한 개의 도(북해도), 두개의 부(오사카부, 교토부) 그리고 43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都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의미이며 동경을 말한다. 부와 현은 우리나라의 시와 군 단위와 흡사하며, 府는 県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행정 명칭을 다르게 했을 뿐 거의 같은 의미이다.

및 그 외 관리에 관한 사업.

(2) 주택 개량(가령대응 구조(가령에 의해 발생하는 고령자 신체 기능 저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및 설비를 말한다.)는 국토교통성령^{*5}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주택의 가령대응 개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

4. 도도부현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 공사는 전항 각 호에 명시하는 사업 실시에서 사항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공사 및 설립 단체장(지방주택공급공사법 <1965년 법률 제124호>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설립 단체를 의미하고 해당 도도부현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도도부현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을 정할 때, 사전에 인터넷 이용 외 국토교통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구역내의 시읍면(특별구를 포함한다. 다음항과 같다.)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 있어서 다양한 수요를 인정한 공적 임대 주택 등 정비에 관한 특별 조치법(2005년 법률 제7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 주택 협의회를 조직 하고 있는 도도부현은 해당 지역 주택 협의회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6. 도도부현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을 정했을 때, 공표함과 동시에 국토교통장관, 후생노동장관 및 해당 도도부현 구역내의 시읍면에 그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7. 제3항에서 전항까지의 규정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제2장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 임대 주택 등록 등

제1절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 임대 주택 등록 등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 임대 주택 등록)

제4조

고령자가 입주를 하는 임대 주택(이하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 임대 주택」 이라고 한다.)의 임대인(임대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임대 주택의 건축물은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신청)

제5조 전조에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 (1) 임대인 이름, 명칭 및 주소.
- (2) 임대 주택 위치.
- (3) 임대 주택 호수.
- (4) 임대 주택 규모.
- (5) 임대 주택 구조 또는 설비(가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령자 신체 기능 저하 상황에 대응한 구조 또는 설비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따르고 임대 주택은 해당 구조 또는 설비 내용을 포함한다).
- (6) 임대 용도로 제공하기 전 임대 주택 입주 개시 시기.
- (7) 그 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록 실시)

제6조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사항을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 임대 주택 등록부(이하 「등록부」 라고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 (1) 전조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
-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등록 거부)

제7조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 (1)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수권을 가지지 않는 것.

- (2)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이 삭제되어 그 취소의 날부터 기산해 1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 (3) 영업에 관련되어 성인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그 법정 대리인이 전 2호에 해당하는 것 .
 - (2)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이 삭제되어 그 취소의 날부터 기산해 일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 (3) 영업에 관련되어 성인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그 법정 대리인이 전 2호에 해당하는 것 .
 - (4) 법인 그 임원 가운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서 등록 거부를 했을 때, 그 취지를 등록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경 등록)

제8조

제4조의 규정에서 등록을 받은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 임대 주택(이하 「등록 주택」이라고 한다.)의 임대인은 제5조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변경이 있을 때는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2. 전 2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준용한다.

(등록부 열람)

제9조

도도부현 지사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등록부를 일반 열람에 제공하여 정해야 한다.

(준수 사항)

제10조

등록 주택 임대인은 해당 등록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 고령자인 것만으로 입주를 거절하거나 또는 임대 조건을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집세 채무보증)

제11조

제78조에 규정하는 고령자 거주 지원 센터는 등록 주택(공영 주택<공영 주택법(1951년 법률 제193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공영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것을 제외한다)의 임대인 요청을 근거하여 해당 등록 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정한다. 제16조

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다>의 집세와 관련되는 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조언 또는 지도)

제12조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 기본방침을 감안하고, 주택 관리에 관련되는 필요한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등록 사항 정정 등)

제13조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된 제 5 조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이 허위 사실일 경우 등록 주택 임대인에게 정정 신청을 지시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주택 임대인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변경 등록 신청을 지시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제14조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주택 임대인이 제7조 제1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 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2.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주택 임대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했을 때.
- (3) 도도부현 지사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취소했을 때, 취지를 등록 주택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 소거)

제15조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등록을 소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등록 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등록 소거 신청이 있을 때.
- (2) 전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이 삭제되었을 때.

(등록 취소 등 그 이후의 집세 채무보증)

제16조

등록 주택 등록이 제14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삭제되거나 전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 되었을 경우, 취소 또는 소멸 전에 해당 등록 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그 이후에도 계속 입주하고 있을 때는 고령자 입주와 관련되는 주택을 등록 주택으로 간주하고 제11조의 규정으로 적용한다.

제2절 지정 등록기관

(지정 등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하 「지정 등록기관」이라고 한다.)이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 임대 주택 등록 및 등록부 열람 실시에 관한 사무(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한 사무를 제외한다. 이하 「등록 사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할 수 있다.

2. 지정 등록기관에서 지정(이하 이 절에 있어서 「지정」이라고 한다.)은 등록 사무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청에 한해서 실시한다.
3.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을 했을 경우, 지정 등록기관이 등록 사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사무를 이어받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다.
4. 지정 등록 기관이 등록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러한 규정은 「도도부현 지사」 또는 「지정 등록기관」이라고 한다.

(결격 조항)

제18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1)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 (2) 파산자로 복수권을 얻지 않는 것.
- (3)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져 있거나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아 없어진 날부터 기산해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 (4)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으로부터 지정이 삭제되어 취소 날부터 기산해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 (5) 법인이며 그 임원 가운데 전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지정 기준)

제19조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도도부현 구역 내에 있고, 그 밖의 지정 등록기관 지정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지정 신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

- (1) 직원, 등록 사무의 실시 방법 외, 등록 사무 실시에 관한 계획이 실시를 하기 위해 적절한 것.
- (2) 전호의 등록 사무 실시에 관한 계획을 확실하게 실시 할 수 있는 경리적 및 기술적인 기초를 가지는 것.
- (3) 등록 사무 이외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 (4) 전 3호에서 정해진 것 외 등록 사무를 공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것.

(지정 공시 등)

제20조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을 했을 때, 지정 등록기관 명칭 및 주소, 지정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등록 사무의 범위, 등록 사무를 실시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등록 사무의 개시 날을 공시해야 한다.

2. 지정 등록기관은 명칭 혹은 주소, 등록 사무를 실시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변경하려고 하는 날 2주전까지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3.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서 신고가 있을 때,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비밀 보관 유지 의무 등)

제21조

지정 등록기관(그 사람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된다. 다음 항과 같다) 및 직원, 등록 사무 비밀을 누설 하거나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지정 등록기관 및 직원으로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외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법령에 의거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동일하게 간주한다.

(등록 사무규정)

제22조

지정 등록기관은 등록 사무에 관한 규정 (이하 「등록 사무규정」 이라고 한다)을 정해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경 할 때도 같다.

2. 등록 사무규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다.

3.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에서 인가를 등록 한 사무규정이 공정하고 확실해야 하고,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등록 사무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장부 비치 등)

제23조

지정 등록 기관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것으로 등록 사무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것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해 보존해야 한다.

2. 전항에서 정한 것 외, 지정 등록 기관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것으로 등록 사무에 관한 서류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것을 보존해야 한다.

(감독 명령)

제24조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무의 공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 등록 기관에 등록 사무에 관련 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고, 검사 등)

제25조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 등록 기관으로부터 등록 사무에 관련 된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에게 지정 등록 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등록 사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 물건을 검사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입회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등록 사무 휴폐지)

제26조

지정 등록 기관은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록 사무 전부 혹은 일부를 휴정하거나 또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허가를 했을 때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지정 취소 등)

제27조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 등록 기관이 제18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 등록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 사무 전부 혹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조문을 바꾸어 적용하는 제6조(제8조의

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제8조의 제2항에 대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제20조 제2항의 제23조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3) 제22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등록 사무규정에 의하지 않고 등록 사무를 실시했을 때.

(4) 제22조 제3항 또는 제24조 규정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

(5) 제19조 각 호에 명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6) 등록 사무에 관련되어 부적당한 행위를 했거나 또는 법인에 있어서 그 임원이 등록 사무에 관련되어 부적당한 행위를 했을 때.

(7) 부정한 수단으로서 지정을 받았을 때.

3. 도도부현 지사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 사무 전부 혹은 일부 정지를 명했을 때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등록 사무 실시)

제28조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 등록 기관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서 등록 사무 전부 혹은 일부를 휴지하거나 전조 제2항의 규정에서 지정 등록 기관에 대해서 등록 사무 전부 혹은 일부 정지를 명령했을 때 또는 지정 등록 기관이 천재지변 그 외 사유에 의해서 등록 사무 전부 혹은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해 진 경우, 제19조 제3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등록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 항의 규정에서 등록 사무를 실시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서 등록 사무를 실시하지 않을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3. 도도부현 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서 등록 사무를 실시하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서 등록 사무 폐지를 허가 하거나 혹은 전 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서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제1항의 규정에서 등록 사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등록 사무를 이어받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다.

(등록 수수료)

제29조

도도부현은 지방 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7조의 규정에서 등록과 관련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등록 기관에서 실시하는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해당 수수료를 해당 지정 등록 기관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서 지정 등록 기관에 납입할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지정 등록 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장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제 1 절 공급 계획 인정 등

(공급 계획 인정)

제30조

쾌적한 거주 환경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 주택 정비(기존의 주택 외 건물 개량(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와 같다.) 및 관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 및 지방공공단체를 제외한다)은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해당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공급 계획」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급 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임대 주택 위치.
- (2) 임대 주택 호수.
- (3) 임대 주택 규모, 구조 및 설비(가령 대응 구조 등인 것을 포함한다).
- (4) 임대 주택 정비에 관한 자금 계획.
- (5) 임대 주택 관리 기간.
- (6) 임대 주택 입주자 자격, 모집,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 (7) 임대 주택 입주자 집세 그 외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
- (8) 임대 주택 관리를 위탁하거나 또는 임대 주택을 전대 사업으로 실시하는 자(이하 「전대사업자」라고 한다)에 임대하는 경우, 위탁을 받고 관리를 실시하는 자 또는 전대 사업자의 이름, 명칭 및 주소.
- (9) 전 3호에 기재 된 것 외, 임대 주택 관리 방법.
- (10) 그 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이하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이라고 한다)의 정비<기존의 주택 그 외 건물의 개량(용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관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해당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을 임차해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 항과 같다.)을 공동으로 하고, 해당 임대 주택 정비와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를 실시하려고 할 때는 공급 계획이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1)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위치.
- (2)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규모, 구조, 설비 (가령 대응 구조 등인 것을

포함한다).

(3)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에 관한 자금 계획.

(4)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관리 기간.

(5)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관리를 위탁하거나 또는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을 전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위탁을 받고 관리를 실시하는 사람 또는 전대 사업자의 이름, 명칭 및 주소.

(6) 전 2호에 명시하는 것 외,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관리 방법.

(7)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임대 주택의 임대인과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외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4. 전항의 규정에서 동항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공급 계획은 제1항 규정에서 인정 신청에 대해서 동항의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과 공동으로 하고, 해당 임대 주택 정비와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를 일체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인정 기준)

제31조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인정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급 계획이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있다.

(1) 임대 주택 호수가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한 호수 이상인 것.

(2) 임대 주택 규모, 구조, 설비(가령 대응 구조 등인 것을 제외한다)가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3) 임대 주택 가령 대응 구조 등이 제59조의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4) 임대 주택 정비에 관한 자금 계획이 해당 정비를 확실히 수행하기에 적절한 것.

(5) 임대 주택 관리 기간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기간 이상인 것

(6) 임대 주택 입주자 자격을 자발적으로 거주하고,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연령 그 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5조의2에 명시한 것과 같다), 또는 그 고령자와 동거하는 배우자(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것.

- (7) 임대 주택 입주자 집세가 근처 유사한 주택의 집세와 비슷하게 정해지는 것.
- (8) 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선정 방법, 임대 조건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 (9) 임대 주택 임대인(임대 주택 관리를 위탁하거나 또는 임대 주택을 전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위탁을 받고 관리를 실시하는 사람 또는 전대 사업자)이 임대 주택 관리에 필요한 자력, 신용을 갖추고 그 외의 능력을 가지고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일 것
- (10) 제6호부터 전호까지 명시하는 것 외 임대 주택 관리 방법이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 (11) 전조 제3항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이 기재 된 공급 계획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가.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규모, 구조, 설비(가령 대응 구조 등인 것을 포함한다)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 나.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에 관한 자금 계획이 정비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것.
 - 다.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관리 기간이 제 5 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기간인 것.
 - 라.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을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인(해당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관리를 위탁하거나 또는 전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위탁을 받고 관리 실시하는 사람, 전대 사업자)이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력, 신용 그 외 능력을 가지고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 마. 다 및 라에 명시하는 것 외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관리 방법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 바.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임대 주택 임대인과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 해당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것.
- (12) 그 외 기본 방침(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이 정해져 있는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임대 주택에 관한 기본 방침,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 제 34조에 명시하는 것과 같다) 에 적절한 것.

(계획 인정 통지)

제32조

도도부현 지사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인정 받은 자 또는 관계 시읍면장(특별구의

장을 포함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공급 계획 변경)

제33조

제31조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공급 계획 변경(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전 2조 규정은 전항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조언 및 지도)

제34조

지방공공단체는 제31조의 인정(전조 제1항 변경 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계획 인정」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인정 사업자」라고 한다)에 대해서 기본 방침을 감안하고, 공급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인정 계획」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정비를 하거나 또는 정비가 된 임대 주택(인정 계획에 의해 정해진 관리 기간이 경과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이라고 한다).

(해당 인정 계획이 제30조 제3항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경우,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및 해당 인정 계획에 근거하여 정비를 하거나 또는 정비가 된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인정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관리 기간이 경과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인정 지원 시설」이라고 한다), 제37조에서 제39조까지 같다>)의 정비 및 관리에 관련된 필요한 조언 및 지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 주택 등록 신청)

제35조

인정 사업자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전 제5조의 규정에서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 임대 주택에 대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을 전대사업자에게 임대할 때는 문제가 없다.

2. 인정 사업자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을 전대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 대해서 전대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전, 제5조 규정으로부터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 임대 주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인정 지원 시설에 있어서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을 실시하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 시설 일체형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의 임대)

제35조의2

인정 사업자는 제30조 제3항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인정 계획에 근거하여 정비를 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이하 이 조에 대해 「지원 시설 일체형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이라고 한다)의 일부에 대해서는 해당 인정 계획에 근거한다. 그리고, 정비를 실시한 지원 시,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해당 지원 시설 일체형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실시하는 사회 복지 법인 등(사회 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제22조에 규정하는 사회 복지 법인 그 외 국토교통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며 노인복지법 제5조2 제6항에 규정하는 인지증대응형 노인공동생활 원조사업 그 외 국토교통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에서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임차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고 해당 지원 시설을 일체형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일부를 사회 복지 법인 등에 임대할 수 있다.

단, 인정 계획에 제30조 제3항 제7호에 명시하는 사항에서 정비한 임대 주택 일부를 사회 복지 법인 등에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취지가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위탁에 의해서 공사가 실시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및 인정 지원 시설 정비 등의 업무)

제35조의3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으로부터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 공사는, 동항 제1호에 명시된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도도부현 구역내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지방주택공급공사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업무 외 위탁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인정 지원 시설 정비 및 임대 외의 관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서 공사가 동항에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주택공급공사법 제49조 제3호 중 「제21조에 규정하는 업무」는 「제21조에 규정하는 업무 및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26호) 제35조3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라고 한다.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목적 외 사용)

제36조

인정 사업자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일 때, 제31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입주자가 입주하지 못 할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고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임대 또는 전대 사업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서 임대 또는 전대 사업자에게 빌려 주는 경우, 임대차 또는 전대차를 차지차기법³⁾(1991년 법률 제91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임대차(이하 「정기 건물 임대차」라고 한다).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것을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로 하거나 또는 정기 건물 임대차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보고 요구)

제37조

도도부현 지사는 인정 사업자에 대해서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지위 승계)

제38조

인정 사업자의 일반 승계인 또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의 부지 소유권 외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고 해당 인정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인정에 근거하여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개선 명령)

제39조

도도부현 지사는 인정 사업자가 인정 계획에 따라서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 또는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정 사업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계획 인정 취소)

제40조

도도부현 지사는 인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계획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5조 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전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계획 인정을 받았을 때.

2. 제32조의 규정은 도도부현 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소를 했을 경우에 준용한다.

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토지 임대차(차지 계약)와 건물의 임대차(셋집 계약)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차지 임차주택 편」이라고도 불린다.

제2절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 조치

(정비에 필요로 하는 비용 보조)

제41조

지방공공단체는 인정 사업자가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에 필요로 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전항의 규정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비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조 받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집세)

제42조

인정 사업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조와 관련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집세(전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전대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다음 조와 같다.)는 임대 주택 정비에 필요한 비용, 이자, 수리비, 관리 사무비, 손해 보험료, 토지금액, 공과 그 외 필요한 비용을 참작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계약하거나 또는 수령해서는 안 된다.

2. 전항의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건축물 비용 그 외 경제 사정에 의해서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변동 후에는 해당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에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한다.

(집세 감액에 필요로 하는 비용 보조)

제43조

지방공공단체는 인정 사업자가 입주자 거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집세를 감액하는 경우, 해당 인정 사업자는 그 감액에 필요로 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다.

2.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전항의 규정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령에서 정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

삭제

(독립 행정 법인 주택 금융 지원 기구 등의 자금 대부에 대한 배려)

제45조

독립 행정법인 주택 금융 지원 기구 및 오키나와 진흥 개발 금융 금고는 법령 및 그 사업 계획 범위 내에서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가 원활히 행해질 수 있

도록 필요한 자금 대부에 대해서 배려한다.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특례)

제46조

인정 사업자가 농지 소유자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1971년 법률 제32호)제2조의 제2항 정령에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과 관련되는 시가화구역(도시 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구역을 말한다)내에 있는 농지(제초 방목지를 포함한다)을 전용할 경우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을 건설할 때는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등 임시 조치법 제2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 임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 규모나 구조 및 설비가 동향의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면 동향 제1호에 명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될 때 이것을 동향에 규정하는 특정 임대 주택으로 간주하고 동법의 규정에 적용한다.

(자금 확보 등)

제47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및 인정 지원 시설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확보 또는 융통 알선을 해야 한다.

제4장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한 임대 주택 공급 촉진 등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한 임대 주택 공급)

제48조

지방공공단체는 구역에 있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의 쾌적한 거주 환경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 주택(제50조에 있어 「고령자용 우량한 임대 주택」이라고 한다)이 부족한 경우, 기본방침에 따라 정비 및 관리에 노력해야 된다.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비용 보조)

제49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다음으로 명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정령에서 정하는 해당 임대 주택 정비에 필요로 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임대 주택 규모 및 설비 (가령대응 구조 등인 것을 제외한다)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 임대 주택 가령 대응 구조 등이 제58조의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3) 임대 주택 입주자 자격을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이 필요로 하는 고령자(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그 외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또는 해당 고령자와 동거하는 배우자로 하는 것.
- (4) 임대 주택 입주자 집세가 근처 동일한 주택의 집세와 균형을 유지하여 정하는 것.
- (5) 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선정 방법 및 임대 조건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
- (6) 전 3호에 명시된 것 외, 임대 주택 관리 방법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7) 그 외 기본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2.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입주자 거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항의 임대 주택 집세를 감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정령에서 정하는 감액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기구 또는 공사에 대한 공급 요청)

제50조

지방공공단체는 고령자용 우량한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족할 경우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기구 또는 공사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고령자용 우량한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기구에 대한 비용 부담 및 보조)

제51조

기구는 전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49조의 제1항 각 호에 명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할 경우, 지방공공단체는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 그리고, 정령에서 정하는 해당 임대 주택 정비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입주자 거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임대 주택 집세 감액은 비용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금액 및 부담 방법은 기구와 지방공공단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전항의 규정에서 협이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대신이 재정한다. 이 경우에 국토교통대신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과 동시에 총무대신과 협의해야 한다.

4. 국가는 기구가 전조의 규정에서 요청한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명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정령에서 정하는 해당 임대 주택 정비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입주자 거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임대 주택 집세를 감액하는 경우 그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요청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공사에 대한 비용 보조)

제52조

지방공공단체는 공사가 제50조의 규정에서 요청한 제49조의 제1항 각 호에 명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임대 주택 정비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입주자 거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임대 주택 집세를 감액하는 경우 그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정령에서 정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기구에 대한 비용 보조)

제53조

국가는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서 기구가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정령에서 정하는 해당 임대 주택 정비에 필요로 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임대 주택 호수,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호수 이상인 것.
- (2) 임대 주택 규모, 구조, 설비(가령대응 구조 등을 제외한다)가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3) 임대 주택 가령대응 구조 등이 제58조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4) 임대 주택 입주자 자격을 갖추고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고령자(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외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또는 해당 고령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 (5) 전호에서 명시하는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법(2003년 법률 제100호), 제 25조에서 정하는 것 외 임대 주택 관리 방법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6) 그 외 기본방침에 적절한 것.

2. 국가는 제51조의 제4항의 규정 외 기구가 입주자 거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항의 임대 주택 집세를 감액하는 경우,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정령에서 정한 감액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 등과 관련된 고령자용 우량한 임대 주택에 대한 주지 조치)

제54조

지방공공단체 기구 또는 공사는 제49조, 제51조의 제4항, 제52조의 제1항 혹은 전조 제51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용 보조 또는 부담을 받아서 정비한다. 집세를 감액하는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입주자 모집 전 제5조의 규정에 따르고 고령자 원할 입주 임대 주택 등록 신청 그 외 방법에서 해당 임대 주택이 가령대응 구조 등을 나타내는 내용 외,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공영 주택 사용)

제55조

공영 주택 사업 주체(공영 주택법 제2조의 제16호에 규정하는 사업 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외, 고령자용 임대 주택 부족과 특별한 사유에 의한 공영 주택을 동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조건을 구비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거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을 때는 공영 주택 적정성과 합리적인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공영 주택을 해당 고령자에게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주체는 해당 공영 주택을 다음에 명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입주자 자격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고령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외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정한다.)로 할 것.

(2) 집세는 근처 비슷한 주택의 집세와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

(3) 전 2호에 명시하는 공영 주택법 제16조의 제4항 및 제5항,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 제25조의 제2항, 제27조, 제32조에서 정하는 것 외 입주자 선정 방법, 해당 공영 주택 관리 방법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공영 주택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서 승인, 공영 주택 사용에 대해 준용한다.

3. 전 2항의 규정으로부터 공영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공영 주택법 제16조의 제4항, 제5항, 제34조 및 제50조 규정에 명시하는 동법 제16조 제4항 중 「제1항」은 「제1항 및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 거주법」이라고 한다), 제50조의 제1항 동조 제5항 중 「전 각 항」이라고 있는 것은 「전 각 항(전항에 있어서 고령자 거주법 제55조의 제3항 규정으로부터 바꾸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34조 중 「제16조 제4항 (제28조 제3항 또는 제29조 제8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 제4항 (제28조의 제3항 또는 제29조의 제8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 또는 고령자 거주법 제55조의 제3항의 규정으로부터 바꾸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50조 중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고령자 거주법」이라고 한다.

4. 제2항에 준용하는 공영 주택법 제45조의 제3항의 규정에서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는 지방 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제 5 장 종신 건물 임대차

(사업 인가 및 차지차가법 특례)

제56조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고령자(60세 이상의 자이며 임차인이 되는 자 이외에 동거하는 사람이 없는 것 또는 동거하는 사람이 배우자 혹은 60세 이상의 친족(배우자를 제외하다. 이하 이 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또는 해당 고령자와 동거하는 배우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차인의 종신까지 주택을 임대하여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 (이하 「종신 임대 사업자」라고 한다.)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 도도부현 지사(기구 또는 도도부현이 종신 임대 사업자인 경우 국토교통대신이 한다. 이하 이 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의 인가를 받아서 공정 증서 서면에 계약을 할 경우, 차지차가법 제30조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건물 임대차 (한 호에 임대 주택 임차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임차인과 관련되는 건물 임대차)의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종료하는 것으로 취지를 정할 수 있다.

(사업 인가 신청서)

제57조

종신 임대 사업자는 전 조에서 인가를 받을 때,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 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것을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 (1) 종신 임대 사업자 이름 또는 명칭, 주소.
- (2) 임대 주택 위치.
- (3) 임대 주택 호수.
- (4) 임대 주택 규모, 구조 및 설비(가령 대응 구조 등인 것을 포함한다)
- (5) 임대 주택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정비에 관한 자금 계획.
- (6) 임대 주택 임차인 자격에 관한 사항.
- (7) 임대 주택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
- (8) 전 2호에 명시하는 것 외 임대 주택 관리 방법.
- (9) 그 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종신 임대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서 인가 신청이 해당 임대 주택과 관련되는 제30조의 제1항의 규정에서 인정 신청과 아울러 실시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하는 사항 기재를 생략 할 수 있다.

(인가 기준)

제58조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사업이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56조의 인가를 할 수 있다.

(1) 종신 임대 사업자가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력, 신용 등 이것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충분히 가진 자.

(2) 임대 주택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것.

가. 임대 주택의 규모 및 설비 (가령 대응 구조 등인 것을 제외한다.) 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임대 주택 가령 대응 구조 등에서 단차가 없는 마루, 욕실 등의 난간, 개조용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폭을 가진 복도 그 외 가령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고령자의 신체 기능 저하를 보충하여 고령자가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기준으로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3. 임대 주택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전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인가 신청 해당 임대 주택과 관련되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 및 인가 신청과 아울러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다)에는 해당 정비에 관한 자금 계획이 확실히 수행하기에 적절한 것.

4. 임대 주택에 있어서 공정 증서에 의한 서면 계약을 하는 건물 임대차(한 호수 임대주택 임차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임차인과 관련되는 건물 임대차)는 임차인 사망할 때까지 존속하고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종료하는 것 (이하 「종신 건물 임대차」 라고 한다.)이다. 단, 임차인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종신 건물 임대차에 앞서 정기 건물 임대차(일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한다. 다음호과 같다)에 한정한다.

5. 임대 주택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한 호수 임대 주택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해당 임차인이 되려는 모두가 인정된다.)이 입주를 신청할 경우, 종신 건물 임대차 전에 그 사람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정기 건물 임대차를 하는 것.

6. 임대 주택 임대 조건이 권리금 외 차가권⁴⁾ 설정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지는 것.

4) 借家權(차가권): 가차인(임시로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그 건물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주로 차지차가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7. 종신에 걸쳐서 수령해야 할 집세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금으로 일괄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선불금 산정 기초가 서면에서 명시되는 것이다. 또, 해당 선불금에 대한 종신 임대 사업자가 반환 채무를 업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보전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것.
8. 제4호부터 전호까지 명시하는 것 외 임대 주택 관리 방법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9. 그 외 기본방침(해당 사업이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이 정해져 있는 도도부현 구역 내에 있는 경우, 기본방침 및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 제69조와 같다)에 적절한 것.

(사업 인가 통지)

제59조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에서 인가를 했을 때 신속하게 그 취지를 해당 인가를 받은 종신 임대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 변경)

제60조

제56조의 인가를 받은 종신 임대 사업자는 해당 인가를 받은 사업을 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변경을 제외한다.)할 경우 사전에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전 2조의 규정은 전항의 변경 인가에 대해 준용한다.

(기간 내 사망 시 종료 건물 임대차)

제61조

제56조의 인가(전조 제1항의 변경 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의 인가」라고 한다.)를 받은 종신 임대 사업자(이하 「인가 사업자」라고 한다)는 해당 사업 인가와 관련되는 임대 주택(이하 「인가 주택」이라고 한다)을 받은 제58조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한 호수의 인가 주택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는 해당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모두가 해당된다.)에게 특별한 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 증서로부터 서면 계약을 하는 건물 임대차(한 호수의 인가 주택 임차인이 두 명 이상일 때는 각각의 임차인과 관련되는 건물 임대차)가 차지차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계약 갱신이 없이 정해진 기간에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종료하는 것(이하 「기간 내 사망 시 종료 건물 임대차」라고 한다)이다.

(인가 사업자에 의한 종신 건물 임대차 해약 신청)

제62조

종신 건물 임대차에 대한 인가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고 해당 임대차 해약 신청을 할 수 있다.

- (1) 인가 주택 손상, 일부 소멸 그 외 사유에 대해서 집세 가액 및 사정에 따라서 해당 인가 주택 제58조 제2호에 명시하는 기준 등을 감안해 적절한 규모, 구조, 설비를 갖춘 임대 주택을 유지하고 회복 하는데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때.
- (2) 임차인(한 호수의 인가 주택에 임차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 해당 임차인은 모두가 됨)이 인가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단기간 거주하는 것이거나 해당 인가 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곤란해졌을 때.

2. 차지차가법 제28조의 규정은 전항의 해약 신청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에 의한 종신 건물 임대차 해약 신청 등)

제63조

종신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다음에 해당할 때, 임대차 해약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대차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하는 해약 신청 날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것, 제4호에 명시하는 해약 기일이 도래하는 것에서 종료한다.

- (1) 요양, 양로원에 입소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인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곤란해졌을 때.
- (2) 부모와 동거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인가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 (3) 인가 사업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 (4) 해당 해약 기일이 해당 신청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는 날로 설정되어 있을 때.

(강행 규정)

제64조

전 2조 규정에 위반되는 특약으로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임차인 사망 후 동거자 일시 거주)

제65조

종신 건물 임대차 임차인 사망(한 호수의 인가 주택에 임차인이 두 명 이상 경우 해당 임차인 사망. 이하 이 조와 다음 조에 있어서 같다.)했을 경우, 건물 임대차가 정해진 기간이 만료하기 전 해당 기간에 사망 시 동거자(해당 임차인과 동거하고 있던 자, 해당 건물의 임대차 임차인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 대해서 같다.)가 1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동거 배우자 등이며 동항 또는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서 동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규정으로부터 신청을 할 때 해당 임차인 사망 후부터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한정하고 해당 동거자는 인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 기간 내에 동거자 사망 혹은 종전 기간 내에 사망 시 정해진 기간에 만료했을 경우에는 이것으로 한정한다.

2. 전항 규정에서 인가 주택에 거주하는 동거자는 인가 사업자에 대해서 종전의 건물 임대차와 동일한 집세를 지불해야 한다.

(동거 배우자 등의 지속적인 거주 보호)

제66조

중신 건물 임대차 임차인 사망 시, 해당 인가 주택에 해당 임차인(한 호수의 인가 주택에 임차인이 두 명 이상 있을 때는 해당 임차인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해당 된다)과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60세 이상의 친족(해당 건물의 임대차 임차인자를 제외하다. 이하 이 조에 대해서 「동거 배우자」라고 한다)이 임차인의 사망 일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장기간 거주 취지를 신청 했을 때, 인가 사업자는 동거 배우자 등과 중신 건물 임대차의 계약을 해야 한다. 단, 신청과 더불어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는 동거 배우자 등과 기간 내에 사망 시 종료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2. 기간 내 사망 시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만료하기 전, 기간 내 사망 시 동거 배우자 등이 해당 임차인의 사망일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인가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취지 신청을 했을 때, 인가 사업자는 동거 배우자는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종료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3. 전 2항에서 정하는 것 외 전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하는 건물 임대차 조건에 대해서 종전 건물 임대차와 동일한 것(선불금에 대해서는 산정 기초가 종전의 선불금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임차료 개정 특약이 있는 경우 차지차가법 특례)

제67조

차지차가법 제32조의 규정에서 중신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료 개정과 관련되어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또는 전대 금지)

제68조

인가 주택의 임차인은 그 차가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조언 및 지도)

제69조

도도부현 지사는 인가 사업자에 대해서 기본방침을 감안하고 인가 주택의 관리에 관련된 필요한 조언 및 지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보고 요구)

제70조

도도부현 지사는 인가 사업자에 대해서 인가 주택 관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지위 승계)

제71조

인가 사업자 일반 승계자는 해당 인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 인가에 근거하여 지위를 승계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 인가에 근거하여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도도부현 지사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3. 인가 사업자로부터 인가 주택 부지 소유권 그 외 인가 주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얻고 해당 인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 인가에 근거하여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개선 명령)

제72조

도도부현 지사는 인가 사업자가 제58조 각 호에 명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인가 주택 관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을 정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 있다.

(사업 인가 취소)

제73조

도도부현 지사는 인가 사업자가 다음에 명시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71조 제2항 규정에 위반했을 때.
-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 (3) 부정한 수단으로 사업 인가를 받았을 때.

2. 제59조의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해서 사업 인가 취소에 대해 준용한다.

(사업 폐지)

제74조

인가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인가를 받은 사업을 폐지하려고 할 때 도도부현 지사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2. 사업 인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사업 인가 취소 등 그 후 건물 임대차 계약의 효력)

제75조

전2조의 규정에 명시한 사업 인가 취소를 하거나 혹은 사업 폐지 또는 제71조의 제3항의 규정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인가 주택 관리에 필요한 권리 이전을 취소하거나 또는 폐지, 권리 이전에는 건물 임대차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차지차가법 제3장의 규정에 명시된 임차인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무효로 되는 것에 한정한다.

제6장 주택의 가령대응 개량에 대한 지원 조치(위탁에 의해서 공사가 실시되는 경우 주택 가령대응 개량 업무)

제76조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에서 공사는 동항 제2호에 명시된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도도부현이 한다. 그리고, 공사는 지방주택공급 공사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업무 외, 위탁에 의한 주택 가령대응 개량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동항에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할 경우, 지방주택공급 공사법 제49조 제3호 중 「제21조에 규정하는 업무」는 「제21조에 규정하는 업무 및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26호) 제7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라고 한다.

제77조

다음 조에 규정하는 고령자 거주 지원 센터는 고령자(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이상의 사람에게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가령대응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고, 해당 고령자(두 명 이상의 고령자가 공동으로 대부를 받았을 경우, 모두 해당한다)가 사망 시 일괄상환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대부와 관련되는 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제7장 고령자 거주 지원 센터

(고령자 거주 지원 센터)

제78조 국토교통대신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이 제80조에 규정하는 업무(이하 「지원 업무」라고 한다.)에 관계되는 기준에 적합할 때 고령자 거주 지원 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에서 지정할 수 있다.

- (1) 직원, 지원 업무 실시 방법 외 사항에서는 지원 업무 실시에 관한 계획에 적절한 것.
- (2) 전 호의 지원 업무 실시에 관한 계획을 확실하게 실시 할 수 있는 경리적, 기술 적인 기초를 가지는 것.
- (3) 공무원 또는 직원 구성이 지원 업무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이 없을 것.
- (4) 지원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을 경우, 지원 업무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이 없을 것.
- (5) 전 각 호에서 정하는 것 외, 지원 업무를 공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

(지정 공시 등)

제79조

국토교통대신은 전 조의 규정에 명시된 지정(이하 이 장에 있어서 「지정」이라고 한다.)이 센터 명칭, 주소, 지원 업무를 실시하는 사무 소 소재지를 공시해야 한다.

2. 센터는 명칭, 주소, 지원 업무를 실시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하는 날부터 2주전까지 국토교통대신에 신고해야 한다.

3. 국토교통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서 신고가 있을 때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업무)

제80조

센터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세와 관련되는 채무 보증을 하는 것.
- (2) 제7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 가령대응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사망 시 일괄상환으로 대부와 관련되는 채무 보증을 하는 것.
- (3)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정보, 자료 수집, 정리, 제공하는 것.
- (4)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조사 및 연구하는 것.
- (5) 전 각 호에 명시된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하는 것.

(업무 위탁)

제81조

센터는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고 전 조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업무(이하 「채무보증 업무」라고 한다)중, 채무 보증 결정 이외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이외의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은 다른 법률 규정에 관계없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을 받아 해당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채무보증 업무 규정)

제82조

센터는 채무보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이하 「채무보증 업무 규정」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동일하다.

2. 채무보증 업무 규정에서 정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다.

3.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인가를 한 채무 보증 업무 규정이 채무 보증 업무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는 채무 보증 업무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사업 계획 등)

제83조

센터는 매 사업 년도를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지원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을 작성하고, 해당 사업 년도 개시 전(지정 받은 날에 해당하는 사업 년도에 있어서는 지정을 받은 후 계속 수행),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동일하다.

2. 센터는 매 사업 년도를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지원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 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대신에 제출해야 한다.

(구분 정리)

제84조

센터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다음과 같은 업무 정리를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 (1) 제80조 제1호에서 명시하는 업무 및 이것에 부대하는 업무.
- (2) 제80조 제2호에서 명시하는 업무 및 이것에 부대하는 업무.
- (3) 제80조 제 3 호 및 제4호에서 명시하는 업무 및 이것에 부대하는 업무.

(장부 비치 등)

제85조

센터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것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해 보존해야 한다.

2. 전항에서 정한 것 외, 센터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지원 업무에 관한 서류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것으로 보존해야 한다.

(감독 명령)

제86조

국토교통대신은 지원 업무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센터에 지원 업무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고, 검사 등)

제86조

국토교통대신은 지원 업무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센터에 지원 업무 혹은 자산의 상황에 관계되는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에게 지원 업무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서 입회 검사를 하는 직원은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서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정 취소 등)

제88조

국토교통대신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9조 제2항 및 제83조~제85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제82조의 제1항에서 인가를 받은 채무 보증 업무 규정에 상관하지 않고 채무 보증 업무를 실시했을 때.

(3) 제82조 제3항 또는 제86조의 규정에 명시된 명령을 위반했을 때.

(4) 제78조 각 호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5) 센터 또는 임원이 지원 업무에 관계되어 부적당한 행위를 했을 때.

(6) 부정한 수단을 지정을 받았을 때.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규정에서 지정을 취소했을 때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제8장 기타 규칙

(국토교통대신 권한 위임)

제89조

이 법률에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 권한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일부를 지방 정비 국장 또는 홋카이도 개발 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대도시 등의 특례)

제90조

이 법률 중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제3조의2, 제2장 및 제55조의 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공영 주택법, 제4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무 및 지방 자치법 제252조19 제1항의 지정도시 (이하 「지정도시」 라고 한다) 또는 동법 제252조의 22 제1항의 중핵시*¹⁶ (이하 「중핵시」 라고 한다)가 종신 임대 사업자인 경우 제5장에 규정하는 사무를 제외하다.)는 지정도시 및 중핵시에 있어 해당 지정 도시 또는 중핵시 (이하 「지정도시 등」 이라고 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 법률 중 도도부현 지사에 관한 규정은 지정도시 등의 장이 정한 규정으로 적용한다.

제9장 벌칙

제9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그 직무에 관계되는 비밀 누설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
- (2)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등록 사무 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

제9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보조를 받은 인정 사업자, 해당 보조와 관련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 대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 지사 명령에 위반한 것.
- (2)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3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의 제1항 또는 제8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하고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고, 허위 기재를 하거나 또는 보존하지 않는 자.
- (2) 제23조의 제2항 또는 제8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3) 제25조의 제1항, 제37조, 제70조 또는 제8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한 사람.
- (4) 제25조의 제1항 또는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거절하고 방해하거나 또는 기피 한 사람.
- (5) 제25조의 제1항 또는 제8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답변을 한 사람.
- (6)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사무 전부를 폐지한 사람.

제94조

법인 대표자. 법인 혹은 대리인, 사용자 외 종업원이 법인 또는 업무에 관해서 전 3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처한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 날부터 기산하여 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정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 제35조의 제1항, 제40조 제1항 제1호 (제35조의 제1항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6장, 제7장의 제91조 및 제93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제25조의 제1항 및 제87조의 제1항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4호~제6호의 규정(다음의 조에 있어 「제2장 등의 규정」이라고 한다)은 공포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정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조

제2장 등의 규정 시행 전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 대한 제35조 제1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입주자 모집 전」은 「제2장의 규정 시행 후 실시한다.」라고 한다.

2. 이 법률 시행 날부터 제2장 등의 규정 시행 날까지 제35조의 제2항의 규정 적

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입주자 모집 전」은 「제2장의 규정 시행 후 실시한다.」라고 한다.

(국가 무이자 대부 등)

제3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가 그 비용에 대해 보조할 수 있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를 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의 주식 매불 수입 활용은 사회자본 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1987년 법률 제86호. 이하 「사회자본 정비 특별 조치법」이라고 한다)이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인정 사업자에 대한 지방공공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에 충당하는 자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고 제4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2.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등록 주택 개량으로 사회자본 정비 특별 조치법 제2조의 제1항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 개량을 실시하는 등록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에 충당하는 자금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국가 대출금 상환 기간은 5년(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이내로 정령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전항에 정하는 것 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상환 방법, 상환 기한 조기 외, 상환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5.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대부를 실시했을 경우, 해당 대부 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제41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 보조를 실시하고, 해당 보조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시에 상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실시한다.

6.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에서 대부를 실시할 경우, 해당 대부 대상인 사업에 대해서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 보조를 실시하고, 보조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상환 시, 상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실시한다.

7. 지방공공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를 받은 무이자 대출금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진 상환기한을 단축시켜 상환을 실시했을 경우(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다)에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은 상환기한의 도래 시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02년 2월8일 법률 제1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년 6월11일 법률 제75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년 6월20일 법률 제100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년 3월31일 법률 제10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및 부칙 제2조에서 제4조까지 또는 제6조의 규정 공포 날부터 기산하고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정령에서 정하는 날.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47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 날부터 기산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정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년 6월 27일 법률 제78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주택 금융 공고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다.), 다음 조 및 부칙 제4조, 제6조~제8조, 제11조(근로자 재산 형성 촉진법<1971년 법률 제92호>, 제11조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다), 제12조 및 제15조(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2001년 법률 제26호>제55조의 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다) 의 규정은 공포 날부터 기산해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정령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조

이 법률(부칙 제1조 단, 책에 규정하는 해당 규정. 이하 이 조와 같다)은 시행을 앞 둔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시에 근거를 두는 경우, 시행 후부터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예시에 준한다.

(정령 위임)

제17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 시행에 수반되는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에서 정한다. 부칙(2005년 7월6일 법률 제82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9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제6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19조

이 법률의 시행 전, 행위 및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구공고법*17,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재정 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이다. 전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이러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또는 준용하는 다른 법률도 포함한다) 규정에 명시된 예시의 경우, 법률 시행 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예시에 준용한다.

(명칭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제20조

이 법률의 규정을 시행할 때 실제로 주택 금융 지원 기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서 이 법률 시행 후 6개월간 적용하지 않는다.

(정령 위임)

제21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 기구 설립에 수반하는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에서 정한다.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일반 사단, 재단법인법의 시행 날부터 시행한다.

(조정 규정)

2. 범죄의 국제화 및 조직화,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6년 법률 제○호)로서 시행 날이 시행 후가 되는 경우, 시행일부 터 동법 시행 하는 전까지 조직적인 범죄 처벌 및 범죄 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36호. 다음과 같은 「조직적 범죄 처벌법」이라고 한다.). 별표 제62호의 규정 적용에 따라 동호 중 「중간 법인법(2001년 법률 제49호), 제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죄」라고 있는 것은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 제334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죄」라고 한다.

3. 전 항에 규정하는 것 외 동항의 경우, 범죄 국제화 및 조직화,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을 일부 개정하고, 법률 시행일부 터 그 전까지 조직적 범죄처벌법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제457조의 규정은 종전 예시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구중간법인법 제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죄는 조직적 범죄 처벌법. 별표 제62호에 명시되어 있는 죄로 간주한다.

부칙(2006년 6월 8일 법률 제61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제12조

전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이후부터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국 계획이 정해질 때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령의 위임)

제17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 이 법률 시행에 수반되는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에서 정한다.

부칙(2009년 5월 20일 법률 제38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정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8조, 제10조, 제12조(표제를 포함한다.), 제13조(표제를 포함한다.)의 개정 및 규정은 원칙에 일조하는 부칙 제4조의 규정 공포 날부터 기산하고 일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정령에서 정하는 날.
2. 다음조의 규정은 공포 날부터 기산하고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정령에서 정하는 날(준비 행위), 제2조 이 법률의 개정 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고 한다)이고, 제6조 제1항(신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전 조 제1호에 명시하는 규정을 시행 전, 신법 제4조 및 제5조 (이러한 규정을 신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명시된 예시에 의해서 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경과 조치)

제3조

신법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법률을 시행 할 경우 실제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본방침(신법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본방침)로 간주한다.

제4조 부칙 제1조 제1호에 명시하는 규정을 시행 할 때 실제로 행해지는 구법 제4조(구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바꾸어서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은 동호에 명시하는 규정은 시행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효력을 잃어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등록을 제거해야 한다.

3. 전 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이 소제 된 임대 주택에서 소제 전부터 입주한 고령자는 그 이후에도 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지만 집세와 관련되는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신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등록 주택으로 간주한다.

제5조 이 법률 시행 전에 지정 된 구법 제3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5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 또는 인가 신청을 할 경우, 법률을 시행 때 인정 또는 인가가 처분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시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6조

이 법률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시에 의한다.

(정령의 위임)

제7조

부칙 제2조에서 전조까지 정한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되는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에서 정한다.

(검토)

제8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했을 경우, 신법 시행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인정될 때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1년 7월 23일 정령 제250호)

최종 개정 : 2009년 8월7일 정령 제199호

내각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26호) 제41조의 제2항, 제43조의 제2항, 제44조의 제2항, 제49조의 제1항, 제2항, 제51조의 제1항 및 제4항, 제52조의 제2항, 제53조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제1조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2항 제2호의2에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한 사업은(고령자 이외의 자 또는 개호보험법<1998년 법률 제123호>이고, 제8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거실에 대한 개호 혹은 지원을 받는 고령자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 (1) 노인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노인 주택 생활 지원 사업.
- (2) 개호보험법 제8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 주택 서비스 사업, 동조 제14항에 규정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동조 제20항에 규정하는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를 실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조 제21항에 규정하는 주택 개호 지원 사업 또는 동법 제8조2 제1항에 규정하는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 또는 동조 제18항에서 규정하는 개호 예방 지원 사업.
- (3) 건강 보험법(1922년 법률 제70호)은 제88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 방문 간호사업.
- (4) 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은 제1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병원 또는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진료소에서 의료를 제공하는 사업.
- (5) 전 각 호에 명시하는 사업은 국토교통성령 ·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것.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관련되는 국가 보조)

제2조

법 제41조 제2항 규정은 국가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 (1) 지방주택공급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토지 취득 및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호 제4조, 제6조의 제1호, 제7조의 제1호, 제8조 제1호, 제9조 제1호에 규정하는 것과 같다)은 지방공공단체가 보조하는 금액(그 금액이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 (2) 전호의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는 기존 주택 외 건물 개량(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 필요한 비용(기존 주택 외 건물 취득, 토지 취득 및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호 및 다음 호 제6조의 제2호, 제7조의 제2호, 제8조의 제2호, 제9조의 제2호에 있어 동일)가운데 가령대응 구조의 구조, 설비, 공동주택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동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공동주택 공용부분 등」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비용은 지방공공단체가 보조하는 금액(그 금액이 정비에 필요한 비용 중 가령 대응 구조 등인 구조, 설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과 관련된 비용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 (3) 제1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에 필요한 비용 중 가령대응구조의 구조, 설비, 공동주택 공용부분 등과 관련되는 비용(건설에 의한 경우 가령대응구조의 구조, 설비와 관련되는 비용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의 호와 동일)은 지방공공단체가 보조하는 금액(그 금액이 정비에 필요한 비용 중 가령대응구조의 구조, 설비, 공동주택 공용부분 등과 관련되는 비용 3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집세 감액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되는 국가 보조)

제3조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국가 지방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조 금액은 그 소득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입주자와 관련되는 집세 감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가 보조하는 금액(감액 전 집세에서 입주자 소득, 주택규모 그 외 사항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대신이 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한도로 한다)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임대 주택 정비에 필요로 하는 비용과 관련되는 국가 보조)

제4조

법 제49조의 제1항의 규정은 국가 지방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조 금액은 동항 각 호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하고, 임대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에 3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임대 주택 집세 감액에 필요로 하는 비용과 관련되는 국가 보조)

제5조

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은 국가 지방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조 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입주자와 관련되는 집세 감액에 필요한 비용 금액(감액 전 집세에서 동조에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이 정한 산정 금액을 공제한 것을 한도로 한다)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 기구가 요청하는 것을 근거로 해 실시하는 임대 주택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되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

제6조

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은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 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가 지방공공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부담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 (1) 기구가 실시하는 법제49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하고, 임대 주택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에 6분의 1을 곱한 금액.
- (2) 기구가 실시하는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하고, 임대 주택 정비는 기존 주택 외 건물 개량 정비에 필요한 비용 중 가령 대응구조의 구조, 설비, 공동주택 공용부분 등과 관련되는 비용의 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기구의 요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임대 주택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되는 국가 보조)

제7조

법 제51조 제4항의 규정은 국가 기구가 정한 보조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기구가 실시하는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하고, 임대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에 6분의 1을 곱한 금액.

- (2) 기구가 실시하는 법 제49조의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하고, 임대 주택 정비는 기존 주택 외 건물 개량 정비에 필요한 비용 중 가령 대응구조의 구조, 설비, 공동주택 공용부분 등과 관련되는 비용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 (3) 제3조에 규정하는 입주자와 관련되는 집세 감액에 대해서 그 감액에 필요한 비용(감액 전 집세에서 동조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이 정한 산정 금액을 공제한 것을 한다)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공사 요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임대 주택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되는 국가 보조)

제8조

법 제52조의 제2항의 규정에서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정한 보조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공사가 실시하는 법 제49조의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하고, 임대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공공단체가 보조하는 금액(그 금액이 건설에 필요한 비용 3분의 1 금액을 넘는 경우, 그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 (2) 공사를 실시할 때 법 제49조 제1항의 각 호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하고, 임대 주택 정비는 기존 주택 외 건물 개량 정비에 필요한 비용 중 가령 대응구조의 구조, 설비, 공동주택 공용부분 등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가 보조하는 금액(그 금액이 정비에 필요한 비용 중 가령 대응구조의 구조, 설비, 공동주택 공용부분 등과 관련되는 비용 3분의 2 금액을 넘는 경우, 그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 (3) 제3조에 규정하는 입주자와 관련되는 집세 감액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공공단체가 보조하는 금액(감액 전 집세에서 동조에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이 정한 산정금액을 공제한 것을 한도로 한다)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공사 요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임대 주택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되는 국가 보조)

제9조

법 제53조의 제1항의 규정은 국가 기구에 대한 보조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기구가 실시하는 법 제53조의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하고, 임대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6분의 1을 곱한 금액.

(2) 기구가 실시하는 법 제53조의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 하는 임대 주택 정비는 기존 주택 외 건물 개량 정비에 필요한 비용 중 가령 대응구조의 구조, 설비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등과 관련되는 비용은 2분의 1을 곱한 금액.

(기구가 실시하는 임대 주택 집세 감액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되는 국가 보조)
제10조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으로부터 국가 기구에 대한 보조 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입주자와 관련되는 집세 감액에 필요한 비용(감액 전 집세에서 동조에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이 정한 산정 금액을 공제한 것을 한도로 한다)은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법 시행 날(200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 대출금 상환 기간 등)

2.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기간은 5년(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전항에 규정하는 기간은 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 주식 매불 수입 활용으로 사회자본 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1987년 법률 제86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조문을 만들지 않고 동격의 것을 적용한다. 그리고, 보조금 등과 관련되는 예산 집행에 관한 법률(1952년 법률 제179호)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을 결정(이하 「대출 결정」이라고 한다)하고, 대출 결정과 관련되는 부칙 제3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대출금(이하 「국가의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교부를 완료한 날(그 날이 해당 대출이 있는 날의 연도 그 연도의 말일 전날 이후의 날인 경우에는 당 해년도 말일 이틀 전)다음날부터 기산한다.

4. 국가 대출금 상환은 균등 연부상환⁵⁾의 방법을 따른다.

5. 국가는 국가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전3항의 규정에 정해진 상환 기한을 앞당겨 상환시킬 수 있다.

6. 법 부칙 제3조 제7항에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 상환 기한을 앞당기고 상환을 실시했을 경우로 한다.

5) 年賦償還 (연부상환): 일정한 이율로 빌린 일정액의 부채를 일정기간에 걸쳐 매기(每期)에 원리금합계로 일정액을 분 리상환 하는 방법을 말한다. 매년 지불하는 것을 연부금,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월부금이라고 한다.

부칙(2002년 2월 8일 정령 제27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년 4월 9일 정령 제160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2월 23일 정령 제31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재무성 조직령 제15조의 제16호 및 제19조의 제9호의 개정 규정에 한정한다), 제35조(국토교통성 조직령 제10조의 제11호의 개정 규정 및 제121조의 1호를 첨가하는 개정 규정에 한정한다),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년 8월7일 정령 제199호)

이 정령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 날(200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01년 8월3일 국토교통성령 제110호)

최종 개정 : 2009년 8월18일 국토교통성령 제 50호 (최종 개정까지 미시행 법령)

2009년 8월 18일 국토교통성령 제 50호 (일부미시행)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26호) 및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년 정령 제210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에 따른 동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제1장의2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제1조의2)

제2장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 주택의 등록 등 (제1조3~제10조)

제3장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공급의 촉진(제11조~제34조)

제4장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공급의 촉진 등 (제35조~제58조)

제5장 종신 건물 임대차(제59조~제66조)

제6장 주택 가령대응 개량에 대한 지원 조치(제67조~제69조)

제7장 고령자 거주 지원 센터(제70조~제76조)

제8장 잡칙(제77조·제78조)

부칙

제1장 총칙

(정의)

제1조

이 성령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용어 정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내화구조

주택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9호(가)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 준내화 구조 주택

내화구조 주택 이외의 주택에서 건축 기준법 제2조 제9호3 혹은(가)에 해당하는 것 또는 이것에 준하는 내화 성능을 가진 구조의 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벽 및 건물 뒤쪽이 건축 기준법 제2조 제8호에 규정하는 방화 구조인 것.

나. 지붕이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6조2의2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 하는 것.

다. 천정 및 벽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 화재 시 가열에 15분 이상 견디는 것.

라. 가.에서 다.까지 명시하는 것 외 주택 각 부분이 방화 시 지장이 없는 구조인 것.

20) 내화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내화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3. 소득

입주자 및 동거하는 자의 과거 1년간에 있어서 소득세법(1965년 법률 제33호)인 제2편 제2장의 제1절부터 제3절까지의 예시로 산출한 소득금액(급여 소득자가 취직 후 일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 금액을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고 부적당한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금액(지방공공단체가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고령자용 우량한 임대 주택과 관련되는 입주자 및 동거자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인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요청에 근거하여 독립 행정법인 도시 재생 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 또는 지방주택공급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과 관련되는 입주자 및 동거자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요청을 한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인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기구가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법 제53조의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는 임대 주택과 관련되는 입주자 및 동거자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구가 인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 대해서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의 합계로부터 다

음과 같이 나타내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가. 동거자 또는 소득세법 제2조의 제1항 제33호에 규정하는 공제 대상 배우자(이하 이 호에 있어서 「공제 대상 배우자」라고 한다) 혹은 동항 제34호에 규정하는 부양친족(이하 이 호에 있어서 「부양친족」이라고 한다)은 입주자 및 동거자 이 외의 한 명에 한해서 38만엔으로 한다.
- 나. 공제 대상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2조의 제1항 제33호의2에 규정하는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인 경우 또는 부양친족에서 동항 제34호의3에 규정하는 노인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 그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부양 친족 한 명에 한해서 10만엔으로 한다.
- 다. 부양친족에 소득세법 제2조의 제1항 제34호의2에 규정하는 특정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부양친족 한 명에 한해서 20만엔으로 한다.
- 라. 입주자 또는 가.에 규정하는 자에게 소득세법 제2조의 제1항 제28호에 규정하는 장애자가 있는 경우, 그 장애자 한 명에 한해서 27만엔(동항 제29호에 규정하는 특별 장애자인 경우에는 40만엔)으로 한다.
- 마. 입주자 또는 동거자에게 소득세법 제2조의 제1항 제30호에 규정하는 과부 또는 동항 제31호에 규정하는 과부가 있을 경우, 과부 한 명에 한해서 27만엔(그 사람의 소득금액이 27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 1 장의2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

(법 제3조의2 제3항 제2호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

제1조2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2 제3항 제2호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맨션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 주택내의 마루는 원칙으로 단차가 없는 구조의 것.
 - (2) 맨션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 주택내의 주된 복도의 폭은 78센티미터(기둥을 포함한 부분은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 주택내의 주된 거실 출입구 폭은 75센티미터 이상인 것.
 - (3)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 주택내의 욕실 및 계단의 난간을 설치하는 것.
2. 건축재료 또는 구조 방법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가령 대응 구조등인 구조 및 설비와 동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조 및 설비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것에 있어서 국토교통대신은 동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 주택 등록 등(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 주택 등록의 신청서)

제1조의3

법 제5조 신청서 양식은 별도 양식 제1호로 한다.

2. 전 항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게재하는 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 (1) 임대 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부근 배치 약도.
- (2) 배치, 각 방의 용도 및 설비 개요를 표시한 각층 평면도.
- (3) 임대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에 대해서 법 제3조2, 제2항 제2호 2에 규정하는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 (이하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한다)가 제공되는 것(이하 「서비스 포함의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 주택」이라고 총칭한다.)이며, 임대인과 해당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합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조의 제5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이다. 제2조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제5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은 다음에 명시하는 것으로 한다.

가. 단의 차이가 없는 바닥.

나. 화장실, 욕실 및 계단의 난간.

다. 간호용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폭을 가진 복도 및 거실 출입구.

라. 간호를 우선적으로 한 넓이의 화장실 양변기가 설치된 것.

마. 간호를 우선적으로 한 넓이의 욕실.

바. 엘리베이터.

사. 비상通報 장치.

(법 제5조 제7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사항)

제3조

법 제5조 제7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에서 명시한 사항으로 한다.

- (1) 임대 주택 집세 및 공익비 개산 금액.
- (2) 임대 주택 빈방 유무.
- (3) 법 제30조 제1항 인정 유무.
- (4) 법 제56조 인가 유무.
- (5) 임대인 연락처 또는 임대인이 건물(건물 일부를 포함한다) 대차 대리 혹은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대리 혹은 중개를 실시하는 사람의 이름 혹은

명칭, 주소, 연락처

(6) 임대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또는 해당 고령자와 동거하는 그 배우자(혼인 신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부부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그 임차자로 정하는(이하 이호에 대해 「고령자 전용 임대 주택」이라고 한다) 경우,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가. 고령자 전용 임대 주택 호수.

나. 고령자 전용 임대 주택 보증금 외 입주 시에 수령하는 비용 (마.의 선불금을 제외하다)의 개산금액.

다. 공용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식당, 부엌, 수납 설비 및 욕실 유무.

라. 입욕, 배설, 식사 등 간호 외 일상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의 유무.

마. 임대차 기간과 관련되는 집세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로 일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선불 집세 개산금액 및 해당 선불 집세에 대해서 고령자 전용 임대 주택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강구하는 보전 조치의 유무.

(등록부의 열람)

제4조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부를 일반 열람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등록부 열람소(이하 「열람소」라고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열람소를 설치했을 때는 해당 열람소의 열람규칙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열람소의 장소 및 열람 규칙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열람소의 장소 및 열람 규칙을 변경했을 때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3. 법 제5조각 호에 나타내는 사항이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 또는 자기 디스크에 기록되어 필요에 따라서 열람소에 전자계산기 그 외의 기기를 이용해 명확하게 지면에 표시될 때는 해당 기록을 가지고 법 제6조에 규정하는 등록부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은 해당 파일 또는 자기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지면 또는 입출력 장치의 영상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 제11조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그 외의 요건)

제5조

법 제11조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그 외의 요건은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60세 이상일 것.
- (2) 다음에 명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 (3) 동거하는 사람이 없는 자(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어서 항상 간호를 필요로 하고, 주택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하다. 이하 같다)인 것.
- (4) 동거자의 배우자, 60세 이상의 친족(배우자를 제외. 이하 같다), 또는 입주자가 병에 걸려 있는 것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해당 입주자와 동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

(등록 사무 전수)

제6조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17조의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등록 사무를 지정 등록기관에 계승하는 것.
- (2) 등록부 및 등록 사무에 관한 서류를 지정 등록기관에 계승하는 것.
- (3) 그 외 도도부현 지사가 필요하에 인정하는 사항.

(등록 사무 규정 기재 사항)

제7조

법 제22조 제2항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명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등록 사무를 실시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 (2) 등록 사무를 실시하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 (3) 수수료 수납 방법에 관한 사항.
- (4) 등록 사무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 (5) 등록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 (6) 등록부, 등록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 관리에 관한 사항.
- (7) 그 외 등록 사무 실시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

(장부)

제8조

법 제23조 제1항 등록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등록 신청을 한 사람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 (2) 등록 신청과 관련되는 임대 주택 위치.
- (3) 등록 신청을 받은 연월일.

- (4) 등록 또는 거부 별개.
- (5) 거부 경우에는 그 이유.
- (6) 등록을 실시한 연월일.
- (7) 등록 번호.
- (8) 등록 내용.
- (9) 그 외 등록 사무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

2. 전항 각호에 명시하는 사항이 전자계산기가 구비된 파일 또는 자기 디스크에 기록되어 필요에 따라 지정 등록기관에 대해서 전자계산기 외의 기기를 이용하여 명확하게 지면에 표시될 때 해당 기록을 가지고 법 제23조 제1항 장부(다음에 대해서는 단지 「장부」라고 한다)에 기재를 대신할 수 있다.

3. 지정 등록기관은 장부(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록 한 동항의 파일 또는 자기 디스크를 포함함)를 등록 사무 전부를 폐지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서류의 보존)

제9조

법 제23조의 제2항 등록 사무에 관한 서류는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것으로 함.

- (1) 등록 신청과 관련되는 서류.
- (2) 법 제15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소제 신청과 관련되는 서류.
- (3) 그 외 도도부현 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인정한 서류.

2. 전항 각 호에 명시된 서류가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 또는 자기 디스크에 기록되어 필요에 응하여 지정 등록기관에 명확하게 지면에 표시될 때는 해당 기록을 가지고 동항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3. 지정 등록기관은 제1항 서류(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록을 한 같은 항의 파일 또는 자기디스크를 포함한다)를 등록 사무 전부를 폐지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등록 사무 전수)

제10조

지정 등록기관은 법 제28조의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등록 사무를 도도부현 지사에 계승하는 것.
- (2) 등록부, 등록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도도부현 지사에 계승하는 것.
- (3) 그 외 도도부현 지사가 필요로 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공급 촉진

(공급 계획 인정 신청)

제11조

법 제3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신청은 별기 양식 제2호 신청서를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 (1) 임대 주택 위치를 표시한 부근 배치 약도.
- (2) 축척, 방위, 임대 주택 부지 경계선 및 부지 내에 있는 임대 주택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
- (3) 축척, 방위, 임대 주택의 배치, 각 방의 용도 및 설비 개요를 표시한 각종 평면도.
- (4) 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임대 주택 정비(기존 주택 외의 건물 개량(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제 60조의 제2항 제4호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를 할 경우, 해당 임대 주택 부지의 토지 및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혹은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5) 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임대 주택을 가지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명시된 서류.
 - 가. 해당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당 임대 주택을 가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나. 해당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임대 주택 부지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혹은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6) 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임대 주택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명시된 서류.
 - 가. 해당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당 권리를 가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나. 해당 임대 주택을 가지는 사람이 임대 주택 부지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해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혹은 사용대차에 의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 제30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 고령자용 임대 주택 정비(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임대 주택 개량<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것에 준한다) 및 권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 주택을 가지는 사람이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7) 근방 동종의 주택 집세 금액을 기재한 서류.
 - (8) 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 정관^{*21}, 각 사업 년도 대차대조표^{*22} 및 손익 계산서.
 - (9) 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개인인 경우 자산에 관한 조서.
3. 법 제30조의 제3항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공급 계획 인정을 신청하려고 할 때는 제1항 신청서에 전 항 각 호에 명시하는 도서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을 첨부해 해야 한다.
- (1)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위치를 표시한 부근 배치 약도.
 - (2) 축적, 방위,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부지의 경계선 및 부지 내에 있는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
 - (3) 축적, 방위,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배치, 각 방의 용도 및 설비 개요를 표시한 각층 평면도.
 - (4) 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기존 주택 외의 건물 개량<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부지 되는 토
 - (5) 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을 가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 가. 해당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당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을 가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나. 해당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당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부지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해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혹은 사용 대차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6) 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가 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 가. 해당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당 권리를 가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나. 해당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을 가지는 사람이 해당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부지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해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혹은 사용대차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다. 해당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개량(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및 관리를 실시하는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을 가지는 사람이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7) 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 대해서는 「신청자」라고 한다)이 임대 주택 정비 또는 관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4.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3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과 관련되는 본인 확인 정보(주민기본 대장법<1967년 법률 제81호>. 제30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본인 확인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 동법 제30조의7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해서 그 제공을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동법 제30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이용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민표의 초본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공급 계획 기재사항)

제12조

법 제30조 제2항 제10호의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 (2) 임대 주택 정비 실시 시기.
- (3) 기본방침(공급 계획이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이 정해져 있는 도도부현 구역 내의 임대 주택에 관한 기본방침 및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에 비추어 적절한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취지.

(법 제30조의 제3항 제8호의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의2

법 제30조의 제3항 제8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과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해당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 (2)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의 내용.
- (3)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의 종류.
- (4)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의 정비의 실시 시기.
- (5) 기본방침(공급 계획이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이 정해져 있는 도도부현 구역 내의 임대 주택에 관한 것인 경우,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에 비추어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취지.

(법 제31조의 제1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가구 수)

제13조

법 제31조 제1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가구 수는 다섯 호로 한다.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

제14조

법 제31조의 제2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규모, 구조,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각 호 바닥 면적 25평 방 미터(공동 이용 경우 18평 방 미터) 이상인 것.
- (2) 내화 구조 주택 또는 준내화 구조 주택(방화시, 피난시 지장이 없으면 도도 부현 지사가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것.
- (3) 원칙적으로 각 주택은 부엌 등을 갖춘 것. 단, 동등 이상 거주 환경이 확보 되는 경우 각 주택은 부엌, 수납 설비 또는 욕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령대응 구조 등인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준하는 것)

제14조의2

법 제31조의 제3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기존 주택 외 건물의 개량(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비하는 임대 주택과 관련 되는 건축재료 또는 구조방법에 따라서 제62조 제1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가령대응 구조 등에서 구조 및 설비가 적용 되고 다음에 명시되는 것으로 한다.

- (1) 바닥은 원칙적으로 단의 차이가 없는 구조.
- (2)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내의 계단 각 부의 치수는 다음 식에 적합한 것.

$$T \geq 19.5$$

$$R \div T \leq (22 \div 21)$$

$$55 \leq T + 2 \quad R \leq 65$$

(T와 R은 각각 다음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이하 같다.)

T 답면의 치수 (단위 센티미터)

R 계단높이의 치수(단위 센티미터)

- (3) 주된 공용 계단의 각 부 치수는 다음 식에 적합한 것.

$$T \geq 24$$

$$55 \leq T + 2 \quad R \leq 65$$

- (4) 화장실, 욕실 및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내 계단에는 난간을 설치 할 것.

- (5) 그 외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법 제31조 제 5 호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제15조

법 제31조 제 5 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단, 주택 사정 실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도부현 지사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31조의 제6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그 외 요건)

제16조

법 제31조 제6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그 외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일 것.

(2) 다음에 명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동거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일 것.

나. 동거하는 사람이 배우자, 60세 이상의 친족 또는 입주자가 병에 걸리거나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해당 입주자와 동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일 것.

(입주자 모집, 선정 방법 및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제17조

법 제31조 제8호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조부터 제24조까지 정하는 대로 한다.

(입주자 모집 방법)

제18조

임대 주택을 법 제31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자에게 임대하는 사람 (이하 「일반 임대인」이라고 한다)은 원칙적으로 임대 주택 입주자를 공모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는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곳에 따라 입주 신청 기간 첫날부터 기산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신문 게재,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광고를 실시해야 한다.

3. 전 2항 규정에 의한 공모는 동 마다 또는 단지 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임대하는 주택이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인 것.

(2) 임대 주택 소재지, 호수, 규모 및 구조.

(3) 일반 임대인의 이름, 주소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 (4) 입주자 자격.
- (5) 집세 그 외의 임대 조건.
- (6) 법 제30조의 제3항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공급 계획을 근거로 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사항.
 - 가.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 내용.
 - 나.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 다.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
 - 라.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규모, 구조 및 설비(가령대응 구조등인 것을 포함한다).
- (7) 입주 신청 기간 및 장소.
- (8) 신청에 필요한 서면*²⁴ 종류.
- (9) 입주자 선정 방법.

4. 전 항 제7호의 신청 기간은 적어도 일주일로 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

제19조

입주 신청을 수리한 가구가 임대 주택 호수를 넘는 경우 일반 임대인은 추첨 그 외 공정한 방법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의 특례)

제20조

일반 임대인은 특히 거주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1회 모집 때마다 임대하려는 주택 중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호수의 주택에 대해서 전 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제21조

일반 임대인은 입주자가 부정 행위로 임대 주택에 입주했을 때, 임대 주택과 관련 되는 임대차 계약(임대 조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및 임대 조건형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한다.

(선불금 산정 기초가 되는 집세 월가격 등의 명시)

제22조

일반 임대인은 법 제56조의 인가를 받아 임차인 종신에 걸쳐서 수령해야 할 집세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로 하여 일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선불금 산정 기초가 되는 월세, 임차인 종신에 걸치는 거주 여생 등을 감안해 상정되는 기간 (이하 「상정 거주 기간」이라고 한다.)이다. 상정 거주 기간과 관련되는 선불금 금액 및 임차인이 상정 거주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 선불 금액 및 집세 금액 개정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에 명시해야 한다.

2. 일반 임대인은 전 항의 경우, 임차자인 상정 거주 기간 경과 전에 퇴거할 때 상정 거주 기간과 관련되는 선불 금액 중 해당 퇴거의 날부터 상정 거주 기간과 관련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해야 한다.

(임대 조건 제한)

제23조

임대인은 매월 집세를 수령하는 것. 종신에 걸쳐서 수령해야 할 집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하여 일괄 수령하는 것(법 제56조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정한다)이다. 집세 3개월분을 넘지 않는 금액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과 임대 조건형 서비스 제공해야 할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서비스 대가로서 금전을 수령시키는 것을 제외하는 것 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사례금 등의 금품을 수령하여 그 외 임차인의 부당한 부담이 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대 조건)

제24조

임대 주택을 전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인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집세 그 외 전대 조건에 관해서 법 제31조의 제6호, 제7호, 제8호, 법 제42조의 규정에 준해 전대 사업자가 해당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해야 한다.

(법 제31조의 제9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

제25조

법 제31조 제9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임대 주택 관리를 실시하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한 능력을 가진 자로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31조의 제10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관리 방법 기준)

제26조

법 제31조의 제10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관리 방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임대 주택 수리를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인 것.
- (2) 임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집세, 보증금 수납 상황을 분명한 서류 외의 임대 주택에 관한 사업 수지 상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갖춘 것.

(법 제31조의 제11호 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

제26조의2

법 제31조m이 제11호 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과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경로 및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출입구에 단차이가 없는 것.
- (2)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규모, 구조, 설비가,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것.

(법 제31조의 제11호의2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

제26조의3

법 제31조의 제11호 라.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력, 신용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31조의 제11호 마.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26조의4

법 제31조의 제11호 마.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수리가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
- (2)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려는 사람과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사람이 해당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을 임대 하지 않을 것.

(법 제33조의 제1항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제27조

법 제33조의 제1항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 (1) 임대 주택 가구 수 변경 중 5분의1 미만 가구 수를 변경.(변경 후 가구 수가 다섯 가구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2) 임대 주택 또는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정비의 실시 시기 변경 중 정비 착수 또는 완료 예정 연월일을 6개월 이내 변경.

(법 제36조의 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제28조

법 제36조의 제1항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법 제36조 제2항의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제29조

법 제36조의 제2항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령 제2조의 제1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람)

제30조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령」 이라고 한다) 제2조의 제1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 공사.
- (2) 농주조합.
- (3) 일본 근로자 주택 협회.
- (4) 사회 복지 법인.
- (5) 지방공공단체(출자되거나 각출^{*25}된 금액 전부가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출자되거나 각출된 법인을 포함한다)의 출자 또는 각출과 관련되는 법인에서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령 제2조 제2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

제31조

령 제2조의 제2호 공동 주택 공용 부분 및 입주자 공동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복도 및 계단.
- (2)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 홀.
- (3) 특수 기초.
- (4) 입체적 유보 및 인공지반시설.
- (5) 통로.
- (6) 주차장.
- (7) 어린이 놀이터, 광장 및 녹지.
- (8) 기계실 및 관리 사무소.
- (9)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시설.
- (10) 피난 설비.
- (11) 소화 설비, 경보 설비 및 감시 장치.

(12) 피난설비 및 전파 장애 방제 설비.

(집세)

제32조

법 제42조 제1항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가격은 1개월마다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가격을 합제한 가격으로 한다.

- (1)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해당 비용 중 지방공공단체 보조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하다), 또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는 기존 주택 외 건물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비용(해당 비용 중 지방공공단체 보조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하다)에 해당 기존 주택 외 건물 추정 재건축비를 더한 금액으로 기간을 35년으로 하고, 이율은 연9%로 매월 원리 균등하게 갚는 것으로서 산출한 금액.
- (2)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기존 주택 외 건물 개량에 대한 정비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승강기 설치 공사비, 난방 설비 설치 공사비, 냉방 설비 설치 공사비, 온수공급 설비 설치 공사비, 욕조, 목욕탕 보일러 설치 공사비, 특수 기초 공사비를 제외함)이다. 또는, 기존 주택 외 건물 개량에 의해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추정 재건축비(승강기 설치 공사, 난방 설비 설치 공사, 냉방 설비 설치 공사, 온수 공급 설비 설치 공사, 욕조, 목욕탕 보일러 설치 공사, 특수 기초 공사와 관련되는 추정 재건축비를 제외함)에 천 분의1.4를 곱해 얻은 금액.
- (3) 고령자를 위한 우량 임대 주택에 있어서 승강기, 난방 설비, 냉방 설비, 온수공급 설비 또는 욕조, 목욕탕 보일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 공사비(기존 주택 외 건물 개량에 대한 정비와 관련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 정비를 실시했을 때, 설비 공사와 관련되는 추정 재건축비의 금액)는 다음과 같은 설비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명시되는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이다.(가.에서 다.까지 명시된 설비 공사비 또는 추정 재건축비의 금액은 해당 금액과 해당 설비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월 해당 금액에 더한 금액)
 - 가. 승강기 천 분의 1.5
 - 나. 난방 설비 천의 1.5
 - 다. 냉방 설비 천 분의 1.5
 - 라. 온수공급 설비 천분의 15.4
 - 마. 욕조 및 목욕탕 보일러 천분의10.8
- (4)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재해에 따른 손해 보험 또는 화재 공제에 필요한 비용의 월공제금.
- (5)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를 위해서 통상 필요한 토지 또는 차지권을

취득하는 경우, 인정하는 가격에 1200분의 5를 곱해 얻은 금액(해당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 대해서 토지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금액에 토지가의 월해당금과 임대지 계약과 관련되는 토지 가격에 1200분의 6을 곱해 얻은 금액에서 낮은 금액을 더한 것)

(6)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또는 그 부지의 조세 외에 공과가 부과 되는 경우, 부과되는 금액의 월해당금.

(7) 이전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서 100분의 2를 곱해 얻은 금액.

2. 인정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직접 정비를 관리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서 같은 시기에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경우, 주택 상호간에 집세는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각 주택 바닥 면적, 위치, 형상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조정 금액을 같은 항의 규정에서 산출한 금액에 더하거나 또는 그 금액에서 줄인 금액을 집세로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집세를 합계한 금액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인정 사업자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유지 및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해당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과 관련되는 추정 재건축비(승강기 설치 공사, 난방 설비 설치 공사, 냉방 설비 설치 공사, 온수 공급 설비 설치 공사, 욕조 및 목욕탕 보일러 설치 공사, 특수 기초공사와 관련되는 추정 재건축비의 금액을 제외함)에 천분의 1.4를 곱해 얻은 금액을 제1항 제2호로 명시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그리고, 승강기 설치 공사, 난방 설비 설치 공사, 냉방 설비 설치 공사, 온수 공급 설비 설치 공사 또는 욕조 및 목욕탕 보일러 설치 공사와 관련되는 추정 재건축비의 금액에 해당 설비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제1항 제3호 가.~마.에 명시된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승강기 설치 공사, 난방 설비 설치 공사, 냉방 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되는 추정 재건축비의 상당 금액을 곱해 얻은 금액에 설비 보수에 필요한 비용 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동호에 명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 제42조의 제2항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기준은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추정 재건축비가 해당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기존의 주택 외 건물 개량에 의한 정비와 관련되는 것은 제외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존의 주택 외 건물 개량에 의해서 정비를 했을 경우,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추정 재건축비에 1.5를 곱해 얻은 금액을 초과 하는 것으로 한다.

2.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이 전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명시된 「건설에 필요한 비용(해당 비용 중 지방 공공 단체 보조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함)」 것은 「건설에 필요한 비용(해당 비용 중 지방공공단체 보조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함) 국토 교통 대신은 건축비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 「추정 재건축비를 더한 금액」은 「추정 재건축비를 더한 금액으로 국토교통대신은 건축비 물가 변동을 고려 하고 지역별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이라고 한다.

(령 제3조의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제34조

령 제3조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은 15만 8천엔(도도부현 지사가 필요할 경우, 15만 8천엔 이상 21만 4천엔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장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공급 촉진 등

(규모 및 설비 기준)

제35조

법 제 49조제1항 제1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규모 및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각 주택 바닥 면적이 25평 방 미터(공동 이용 경우18평 방 미터) 이상인 것.
- (2) 원칙적으로 부엌 등을 갖춘 것. 단, 동등 이상의 거주 환경이 확보되는 경우 부엌, 수납 설비 또는 욕실을 갖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령대응 구조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준하는 것)

제36조

법 제49조의 제1항 제2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기존의 주택 외 건물 개량(지역에 있어서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공적 임대 주택 등 정비 에 관한 특별 조치법(2005년 법률 제79호) 및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적 임대 주택 등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 지역 주택 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한정한다. 제48조와 같다.)에 의한 임대 주택 정비를 하는 경우, 건축 재료 또는 구조 방법은 제62조 제1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고 가령대응 구조의 구조 및 설비에 적용되는 것이며 제14조의2 각 호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법 제49조제 3 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그 외 요건)

제37조

법 제49조 제1항 제 3 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그 외 요건은 다음 각 호 전부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60세 이상일 것.
- (2)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동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

나. 동거하는 사람이 배우자 또는 60세 이상의 친족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정비 및 관리를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 있어서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기구 또는 공사가 실시하는 정비 및 관리를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의 입주자가 병에 걸렸거나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해당 입주자와 동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

(입주자 모집, 선정 방법,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제38조

법 제49조의 제1항 제5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조에서 제43조까지 정하는 대로 한다.

(입주자 모집방법)

제39조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요청에 근거해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기구 혹은 공사 (이하 「지방공공단체 등」 이라고 한다)는 원칙적으로 임대 주택 입주자를 공모해야 한다.

2.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는 입주 신청기간 첫날부터 계산하여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신문 게재, 게시 등의 방법으로 광고 해야 한다.

3.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는 동 마다 또는 단지 마다 적어도 다음에 명시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1) 임대하는 주택이 법 제49조 제1항 각호에 명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임대 주택인 것.
- (2) 임대 주택 소재지, 가구 수, 규모, 구조.
- (3) 입주자 자격.
- (4) 집세 외 임대 조건.
- (5) 입주 신청 기간 및 장소.
- (6) 신청에 필요한 서면 종류.
- (7) 입주자 선정 방법.

4. 전항 제5호의 신청 기간은 적어도 일주일로 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

제40조

입주 신청을 수리한 가구 수가 임대 주택 가구 수를 넘는 경우, 지방공공단체는 추첨 외 공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 특례)

제41조

지방공공단체 등은 특히 거주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회 모집 때마다 임대하려는 주택 중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정비 및 관리를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 있어서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은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구 수는 전 2조에 명시된 것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의 해제)

제42조

지방공공단체 등은 입주자가 부정행위로 임대 주택에 입주했을 때 임대 주택과 관련되는 임대차 계약 해제를 임대 조건으로 해야 한다.

(임대 조건 제한)

제43조

지방공공단체 등은 매월 집세를 수령한다. 그리고, 종신에 걸쳐서 수령해야 할 집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로 해서 일괄 수령한다(법 제56조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정한다). 집세 3개월분을 넘지 않는 금액의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을 제외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사례금 등의 금품을 수령하여 그 외 임차인이 부담한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법 제49조의 제1항 제6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관리 방법 기준)

제44조

법 제 49조의 제1항 제6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관리 방법 기준은 임대 주택 수리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기구 또는 공사에 대한 요청)

제45조

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다음에 명시된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제출해 실시한다.

- (1)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가구 수.
- (2) 그 외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정비 및 관리에 관계된 필요한 사항.

(법 제53조의 제1항 제1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호수)

제46조

법 제53조의 제1항 제1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가구 수는 다섯 가구로 한다.

(규모, 구조, 설비 기준)

제47조

법 제53조의 제2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규모, 구조,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각 주택의 바닥 면적 25평 방 미터(공동 이용 경우 18평 방 미터) 이상인 것.
- (2) 내화 구조 주택 또는 준내화 구조 주택(방화시, 피난시 지장이 없다고 기구가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것.
- (3) 원칙적으로 부엌 등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단, 동등 이상의 거주 환경이 확보 되는 경우에는 부엌, 수납 설비 또는 욕실을 갖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령대응 구조 등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준하는 것)

제48조

법 제53조의 제1항 제3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기존의 주택 외 건물 개량에 있어서 임대 주택 정비를 하는 경우, 건축재료 또는 구조 방법은 제62조의 제1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가령대응 구조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제14조2 각호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법 제53조 제1항 제4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그 외 요건)

제49조

법 제53조의 제1항 제4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그 외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60세 이상일 것.
- (2) 다음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동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
 - 나. 동거하는 사람의 배우자, 60세 이상의 친족 또는 입주자가 병에 걸려 있는 것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해당 입주자에게 동거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구가 인정하는 사람인 것.

(법 제53조의 제1항 제5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관리 방법 기준)

제50조

법 제53조의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기준은 다음 조에서 제53조까지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입주자 선정 특례)

제51조 기구는 특히, 거주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1회 모집 때마다 임대하려는 주택 중 기구가 정하는 호수의 주택은 다음 조 제51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방법)

제51조의2

기구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를 공모해야 한다.

2. 독립 행정법인 도시 재생 기구에 관한 성령(2004년 국토교통성령 제70호) 제19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 공모에 준하여 적용한다.

(입주자 결정)

제51조의3

기구는 전조 규정에 의해 입주자를 공모했을 경우, 임차 신청을 한 신청자 수가 임대 할 주택 가구 수를 넘을 때는 추첨 외 공정한 방법으로 해당 입주자를 결정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해제)

제52조

기구는 입주자가 부정행위로 임대 주택에 입주했을 때, 임대 주택과 관련되는 임대차 계약 해제를 임대 조건으로 해야 한다.

(임대 주택 수리)

제53조

기구는 임대 주택 수리를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조 등과 관련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 대한 주지 조치)

제54조

법 제54조 임대 주택이 가령대응 구조의 구조 및 설비 내용 외 필요한 사항(이하 이 조에 대해 「필요 사항」 이라고 한다) 을 주지시키는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조치로 한다.

-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 주택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 (2) 전호의 등록 신청에 준하는 방법에서 입주자 결정까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주지할 것.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그 외 요건)

제55조

법 제55조의 제1항 제1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그 외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60세 이상일 것.
- (2)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동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

나. 동거하는 사람이 배우자, 60세 이상의 친족 또는 입주자가 병에 걸려 있는 것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해당 입주자에게 동거시킬 필요가 있다면 공영 주택 사업주체(공영 주택 법<1951년 법률 제193호>은 제2조의 제16호에 규정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주체」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일 것.

(입주자 선정 방법 그 외 공영 주택 관리 방법)

제56조

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제58조에 정하는 대로 한다.

(입주자의 선정)

제57조

입주 신청을 한 신청자 수가 공영 주택 가구 수를 넘을 경우 사업주체는 추첨 외 공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 특례)

제58조

사업주체는 특히, 거주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1회 모집 때마다 공영 주택은 사업주체가 정하는 주택 수에 따라 법 제22조 및 전조에서 정하는 것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종신 건물 임대차

(사업 인가 신청서 기재사항)

제59조

법 제57조의 제1항 제9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대 주택 정비를 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비 실시 시기.
- (2) 사업 기본방침(해당 사업이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이 정해져 있는 도도부현 구역 내의 기본방침 및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계획)에 맞는 적절한 취지.

(사업 인가 신청서)

제60조

법 제57조의 제1항 사업 인가 신청서 양식은 별기 양식 제3호로 한다.

2. 사업 인가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 (1) 임대 주택 위치를 표시한 부근 배치 약도.
- (2) 축척, 방위, 임대 주택 부지 경계선 및 부지 내에 있는 임대 주택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
- (3) 축척, 방위, 배치, 각 방의 용도 및 설비 개요를 표시한 각층 평면도.
- (4)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가와 관련되는 임대 주택 정비를 할 경우, 임대 주택 부지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혹은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5)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임대 주택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한다.
 - 가. 당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임대 주택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대 주택 부지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혹은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6)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임대 주택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권리를 가질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한다.
 - 가. 해당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해당 권리를 가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나. 해당 임대 주택을 갖는 사람이 임대 주택 부지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혹은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다. 해당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임대 주택에 있어서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임대 주택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7)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사항 증명서, 정관, 각 사업 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8)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개인인 경우 자산에 관한 조서.

3. 도도부현 지사는 인가 신청자와 관련된 본인을 확인하는 정보에 대해서 주민기본대장 법 제30조의7 제4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에 의해서 제공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동법 제30조의8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이용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초본 또는 이것을 대신할 서면을 제출시킬 수 있다.

(규모 및 설비 기준)

제61조

법 제58조의 제2호 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규모 및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각 가구의 바닥 면적 25평 방 미터(공동 이용 경우 18평 미터) 이상일 것.
- (2) 원칙적으로 부엌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 동등 이상의 거주 환경이 확보되는 경우 부엌, 수납 설비 또는 욕실을 갖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령대응 구조 등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62조

법 제58조의 제2호 나.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바닥은 원칙적으로 단 차이가 없는 구조일 것.
- (2) 복도 폭은 78 센티미터(기둥을 포함하는 부분 75 센티미터) 이상인 것.
- (3) 거실 출입구 폭은 75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욕실 출입구 폭은 60 센티미터 이상인 것.
- (4) 욕실의 짧은 면은 130 센티미터(단독주택 이외 주택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내 욕실은 110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면적은 2평 방 미터(단독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내 욕실에 있어서는 1.8평 방 미터) 이상인 것.
- (5) 맨션 등 형태를 취한 집합 주택 내의 계단 치수는 다음 각 식에 적합한 것.
 $T \geq 19.5$
 $R \div T \leq 22 \div 21$
 $55 \leq T + 2 \quad R \leq 65$
- (6) 주된 공용 계단 치수는 다음 각 식에 적합한 것.
 $T \geq 24$
 $55 \leq T + 2 \quad R \leq 65$
- (7) 화장실, 욕실 및 맨션 등 형태를 취한 집합 주택 내 계단에는 난간을 설치할 것.

(8) 층수가 3층 이상인 공동 주택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 출입구가 있는 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9) 그 외 국토 교통 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2. 도도부현 지사(기구 또는 도도부현이 종신 임대 사업자인 경우, 국토교통장관이 함)가 기존 주택과 관련되는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사업 인가를 하는 경우, 법 제58조의 제2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4조의 2 각 호에 명시되는 것으로 한다.

(법 제58조의 제6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

제63조

법 제58조의 제6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입주자가 부정 행위로 임대 주택에 입주했을 때, 임대 주택과 관련되는 임대차 계약 해제를 임대 조건으로 한다.

(필요한 보전 조치)

제64조

법 제58조의 제7호 필요한 보전 조치는 선불로 하는 집세와 관련된 채무 보증은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 조치로 한다.

(법 제58조 제8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관리 방법 기준)

제65조

법 제58조의 제8호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관리 방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인가 사업자는 해당 임대 주택 관리를 직접 실시한다. 단, 법 제5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임대 주택 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예외이다.
- (2) 임대 주택 수리를 계획적으로 행하는 것.
- (3) 임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집세 및 보증금 수납 상황을 확실히 기재 된 서류 의 임대 주택에 관한 사업 수지 상황을 분명히 한 서류가 구비된 것.

(법 제60조의 제1항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제66조

법 제60조의 제1항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임대 주택 정비 실시 시기 변경 가운데 정비 착수 또는 완료 예정일을 6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제6장 주택 가령 대응 개량에 대한 지원 조치

(고령자 연령)

제67조

법 제77조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연령은 60세로 한다.

제68조

삭제

(법 제77조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제69조

법 제77조에 규정하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독립 행정법인 주택 금융 지원 기구, 오키나와 진흥 개발 금융 공고, 은행, 보험 회사, 신용금고, 신용금고 연합회, 노동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연합회, 농업 협동조합(1947년 법률제132호)이다.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합쳐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연합회, 수산업 협동조합(1948년 법률 제242호)이다.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을 합쳐 실시하는 어업 협동조합과 동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로 한다.

제7장 고령자 거주 지원 센터

(채무보증 업무 규정으로 정해야 할 사항)

제70조

법 제82조의 제2항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피보증인 자격.
- (2) 보증 범위.
- (3) 보증금액 합계금액의 최고 한도.
- (4)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금액 최고 한도.
- (5) 보증계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6) 보증료에 관한 사항 외 피보증인이 지켜야 할 조건에 관한 사항.
- (7) 보증 채무 변제에 관한 사항.
- (8) 구상권 행사 방법 및 상환에 관한 사항.
- (9)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 등 인가 신청)

제71조

고령자 거주 지원 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법 제8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지원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국토 교통 대신에 제출해야 한다.

- (1) 전 사업 년도 예정 대차대조표.
- (2) 해당 사업 년도 예정 대차대조표.
- (3) 전 2호에 명시된 것 외 지원 업무와 관련된 수지 예산의 참고가 되는 서류.

(사업 계획 등 변경인가 신청)

제72조

센터는 법 제83조의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지원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계획 또는 수지 예산의 변경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지 예산서의 변경이 전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명시된 서류 변경을 수반할 때는 해당 변경 후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 보고서 등 제출)

제73조

센터는 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 업무와 관련된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첨부해야 한다.

(구분 경리 방법)

제74조

센터는 법 제84조 각 호에 명시된 업무마다 경리를 구분해 각각 계산을 하여 정리해야 한다.

2. 센터는 법 제84조 각 호에 명시된 업무 가운데 두 개 이상의 업무에 관련된 수입 및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으로 각각의 업무에 배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장부)

제75조

법 제85조의 제1항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법 제80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채무 보증(이하 이 조에 대해 「채무 보증」이라고 한다)에 있어 상대방 이름 및 주소.

- (2) 채무 보증을 실시한 연월일.
 - (3) 채무 보증 내용.
 - (4) 그 외 채무 보증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
2. 전항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이 컴퓨터에 구비된 파일 또는 자기디스크에 기록되고, 센터에 있어서 컴퓨터 외의 기기를 이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할 때 해당 기록으로 법 제85조의 제1항의 장부(다음 항목에는 단순히 「장부」라고 한다)로 기재를 대신할 수 있다.
3. 센터는 장부(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록 한 파일 또는 자기 디스크를 포함한다)를 채무 보증 업무 전부를 폐지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서류 보존)

제76조

법 제85조의 제2항 지원 업무에 관한 서류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 또는 사본으로 한다.

- (1) 법 제 제80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채무 보증 신청과 관련되는 서류.
 - (2) 보증 계약과 관련되는 서류.
 - (3) 변제와 관련되는 서류.
 - (4) 구상과 관련되는 서류.
2. 전항에 기재한 서류가 컴퓨터에 구비된 파일 또는 자기 디스크에 기록되고, 센터에 있는 컴퓨터 외의 기기를 이용해 명확하게 표시될 때는 해당파일 또는 자기 디스크로 전 항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3. 센터는 제1항의 서류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한 동항 파일 또는 자기디스크를 포함한다)를 채무 보증 업무 전부를 폐지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8장 잡칙

(권한 위임)

제77조

법 이 성령에 규정하는 국토교통장관의 권한 중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것은 지방 정비국장 및 홋카이도 개발 국장에 위임한다.

- (1) 법 제55조의 제1항에 규정하여 승인을 하는 것.
 - (2) 도도부현이 종신 임대 사업자인 경우, 법 제56조, 법 제57조의 제1항, 법 제58조부터 법 제60조까지, 법 제62조의 제1항, 법 제69조, 법 제70조, 법 제71조의 제2항 및 제3항, 법 제72조, 법 제73조 및 법 제7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3. 도도부현이 종신 임대 사업자인 경우, 제6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대도시 등 특례)

제78조

이 성령 중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제2장에 규정하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이다.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고 한다), 또는 동법 제252조의22 제1항의 중핵시(이하 「중핵시」라고 한다)가 종신 임대 사업자인 경우, 제5장에 규정하는 사무를 제외함.)는 지정도시 및 중핵시에 있어서 해당 지정도시 또는 중핵시(이하 이 조에 대해 「지정도시 등」이라고 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법 시행 날(2001년 8월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년 9월14일 국토교통성령 제127호)

이 성령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시행 날(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년 12월 18일 국토교통성령 제147호)

이 성령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년 4월 1일 국토교통성령 제52호)

이 성령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년 12월 27일 국토교통성령 제119호)

이 성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년 3월 20일 국토교통성령 제26호)

이 성령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년 6월 18일 국토교통성령 제70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년 12월 27일 국토교통성령 제110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제4조

이 성령을 시행할 때, 실제로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26호)인 제48조에 규정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 또는 실제로 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동조에서 규정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소득 계산에 대해서 2007년 3월 31일까지 제4조 규정에서 개정 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조 제3호 가.부터 마.까지 기재된 금액을 공제해 실시한다. 그 외에 전조 제1항의 표 상란에 기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고령자 한명 당 하란에 정하는 금액을 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5년 3월 7일 국토교통성령 제12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년 10월 6일 국토교통성령 제1호)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1호에 첨부하는 개정 규정 및 제5조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2004년도 분 이전 예산과 관련되는 보조금(2004년도 분 예산과 관련되는 보조 경비 금액으로 다음 년도 이월분의 것을 포함한다)의 교부를 받아 정비하는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규정하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또는 동법 제49조의 제1항, 제51조의 제1항, 제52조의 제1항 혹은 제53조의 제1항의 임대 주택에 대해서 이 성령 시행 후에도 종전의 것에 따른다.

부칙(2007년 3월 2월과 8월일 국토교통성령 제20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3월 30일 국토교통성령 제31호)

이 성령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11월7일 국토교통성령 제93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년 4월 30일 국토교통성령 제34호)

제1조

이 성령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년 8월 18일 국토교통성령 제50호)

제1조

이 성령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날(200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의 제2조, 1조를 합하여 개정 규정, 제2조(표제를 포함함) 및 제3조(표제를 포함한다)의 개정 규정 및 동조 다음 3조를 합하는 개정 규정은 동법 부칙 제1조 제1호에 명시된 규정 시행 날(201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기 양식 제1호(제1조3 관계)
별기 양식 제2호(제11조 관계)
별기 양식 제3호 (제60조 관계)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등을 정하는 성령
(평성 21년 8월 18일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령 제2호)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26호) 제3조 2 제5항과 제
35조 2 및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성 13년 정령 제 250
호) 제1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등을 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영 제1조 제5호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지정하는 사업)

제1조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 국토교통성령, 후생노
동성령으로 지정하는 사업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으로 한다.

- 1) 식사 제공에 관한 사업
- 2) 요리, 세탁, 청소 등 가사에 관한 사업
- 3) 생활 등에 관한 상담과 조언에 관한 사업
- 4) 심신의 건강 유지와 증진에 관한 사업
- 5) 심신의 상황과 일상생활의 상황 인식에 관한 사업
- 6) 사회와 교류 촉진에 관한 사업
- 7)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준비에 관한 사업

(법 제3조 2 제5항의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지정하는 방법)

제2조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2 제5항 국토
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 계획 방안
및 그 안에 대한 주민 의견의 제출 방법, 제출 기한, 제출 장소, 기타 주민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의 이용, 인쇄물의 배포,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주민
에게 주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35조 2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지정하는 자)

제3조

법 제35조 2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지정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 1) 사회 복지 법인
- 2) 지방 자치 단체

- 3) 의료 법인
- 4)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
- 5)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평성 10년 법률 제7호)에 따라 설립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 6) 개호 보험법(평성 9년 법률 제123호) 제42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 동법 제8조 제18항에서 규정하는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를 하는 것 또는 동법 제54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로 동법 제8조 2 제17항에서 규정하는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를 실시하는 것

(법 제35조 2의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지정하는 사업)

제4조

법 제35조 2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지정하는 사업은 노인 복지법(쇼와 38년 법률 제133호) 제5조 2제6항에서 규정하는 치매 대응형 노인 공동생활 원조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성령은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21년 법률 제38호)의 시행일(평성 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쇼와 46년 4월 1일 법률 제32호)

최종개정 : 평성 13년 6월 29일 법률 제94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주택 부족 지역에서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를 전용해서 행하는 임대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 융통에 대해 정부가 이자 보급 금액을 지급하여 주거 환경이 양호하고 임대료가 적정한 임대 주택의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택지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 보급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

제2조

정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람이 특정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때에 대출 기관(농업 협동조합법(쇼와 22년 법률 제132호) 제20조제1항 제2호 사업을 하는 농업 협동조합, 기타 정령이 정하는 금융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통되는 자금 중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자 보급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자 보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그 회계 기관과 연결할 수 있다.

- 1) 특정 임대 주택 부지가 되는 토지 지역의 농지, 그 외에 택지 이외의 토지를 소유하는 개인
 - 2) 특정 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택지 조성(택지 이외의 토지를 택지로 하기 위해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가 행해진 토지 지역의 택지를 소유하는 개인(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 착수 후 상속에 의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 3) 전 두 호에 규정된 이 외에 특정 임대 주택 부지가 되는 토지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한, 임차권이나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2. 전항의 특정 임대 주택은 도시 및 그 주변 도시에 관한 도시 계획 지역(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계획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도시 계획 구역에 관한 시가화 구역(동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화 구역을 말한다)에서 건설되는 임대 주택(규모, 구조 및 설비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룬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1)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 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① 토지의 면적 또는 주택 가구 수
 - ② 토지의 면적에 대한 임대 주택 부지 면적의 비율 또는 주택 가구 수에 대한 임대 주택의 가구 수의 비율
- 2) 해당 단지의 주택 건설이 정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화라고 인정되는 것
3. 이자 보급 계약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용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해당 용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자에 대한 것
 - ①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
 - ②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
 - ③ 사업자(생산, 판매, 운송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항상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그 고용하는 직원을 위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것
 - ④ 사업자로 그 고용하는 직원을 위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
 - 2) 이자 보급 계약에 따라 이자 보급 금액이 지급되는 동안(대출 기관의 책임에 의한 사유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는 이자 보급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사이의 기간을 포함한다)의 이율이 연 5.5퍼센트(전호 ③에서 ④에 규정된 자에게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자에 대한 대출은 연 0.65퍼센트) 이내에 국토교통대신이 재무대신과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이하 "지정 금리"라고 한다)인 것
 - 3) 상환 기간이 25년(거치 기간 1년 이상을 포함한다) 이상인 것

(이자 보급 금액의 지급 기한)

제3조

이자 보급 계약을 통해 정부가 이자 보급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이자 보급 계약을 한 회계연도 이후 12년 이내로 한다.

(이자 보급 금액의 한도액)

제4조

정부는 매년 이자 보급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각 이자 보급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 보급 총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정부는 이자 보급 계약을 맺는 경우에 그 이자 보급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 보급 총액이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회계(이하 "대상 회계"라고 한다)가 처음으로 시행한 일 (이하 "기산일"이라고 한다)부터 1년간에 대해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대상 대출의 대출 잔액과 기산일부터 1년을 경과한 날부터 9년 간에 대해서 이율을 지정이율로 하고, 상환 기간을 기산일부터 25년(거치 기간 1년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원리금 균등 반년 상환 방법에 의해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 대상 용자의 용자 잔액에 대해 각각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보급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이자 보급 비율은 대출 기관이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대출을 할 경우의 금리를 감안해 연 3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자 보급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용자 잔액)

제6조

정부는 이자 보급 계약을 맺는 경우 기산일부터 10년간 대상 대출의 대출 잔액을 이자 보급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대출의 대출 잔액으로 해야한다.

(이자 보급 금액의 지급 금액)

제7조

정부는 이자 보급 계약에 따라 이자 보급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서 정한 이자 보급 총액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간 동안의 대상 회계 실제 대출 잔액(기산일부터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기간은 그 대출 잔액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출 잔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계산한 대출 잔액)에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보급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임대 조건 등)

제8조

대상 대출을 받은 자는 그 대출 금리가 지정 금리를 인하하는 동안에 그 회계에 관한 임대 주택을 제2조제3항 제1호 ①에서 ⑤까지에서 규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해서는 안 된다.

2. 대상 대출을 받은 자는 그 대출 금리가 지정 금리를 인하하는 동안에는 그 회계에 관한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액수, 기타 임대 조건에 관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한다.

(임대 주택 양도 등의 금지)

제9조

대상 대출을 받은 자는 그 대출 금리가 지정 금리를 인하하는 동안에는 해당 회계에 관한 임대 주택을 양도 또는 주택 이외의 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대신이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고 및 출입 검사)

제10조

국토교통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회계에 대한 임대 주택에 관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해당 대출을 받은 사람의 사무실에 출입해 업무 상황이나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해야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

(대출 기관의 이자 보급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

정부는 대출 기관이 이자 보급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대출 기관에 지급해야 할 이자 보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 이자 보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부는 해당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대출 기관에 해당 회계로 지급해야 할 이자 보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업무)

제12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12조 2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역 정비 국장 또는 북해도 개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령에의 위임)

제13조

이 법률에 명시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벌칙)

제14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5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신고를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하는 사람은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 두 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

부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정부가 이자 보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평성 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그 날 제2조제1항의 특별 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에 건설되는 임대 주택에 관한 회계에 관해서는 정부가 평성 20년 3월 31일까지 이자 보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부칙(쇼와 51년 3월 31일 법률 제9호)

이 법률은 쇼와 5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4년 3월 31일 법률 제7호)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쇼와 5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57년 3월 31일 법률 제19호)

이 법률은 쇼와 57년 4월 1일 시행한다.

부칙(쇼와 60년 3월 30일 법률 제16호)

이 법률은 쇼와 6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3년 3월 31일 법률 제10호)

이 법률은 쇼와 6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3월 30일 법률 제10호)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평성 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8년 3월 31일 법률 제21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평성 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3.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4.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공사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5.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쇼와 26년 법률 제9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대출 수수료"아래에 "및 지불 방법 변경 수수료"를 추가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 250조의 다음 5조, 절 이름 및 두괄과 관명을 추가 개정하는 규정(동법 제250조 9 제1항에 관한 부분(두 의원의 동의를 얻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 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44조의 규정(농업 개혁 조장법 제14조 3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59조 단, 제60조 제4항 및 제5항, 제73조, 제77조, 제157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제160조, 제163조, 제164조 및 제202조의 규정 공포한 날

(국가 등의 업무)

제159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 시행 전에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사무(부칙 제 161조에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호에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63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한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 (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허가 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에서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이 활동에 관한 행정 사무를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은,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이 되는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에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것을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 절차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1조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고 한다) 시행일 전에 행정 불복 심사법에서 규정하는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이 있는 것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이의 신청은 시행일 이후에 그 처분청에 이어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불복 심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행정 불복 심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로 하는 업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2조

시행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3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164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2. 부칙 제18조, 제51조 및 제 18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250조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는 가능한 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법 별표 제1호에 내거는 것과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검토를 실시해야한다.

제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 재원의 충실 확보의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제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 개혁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29일 법률 제6호)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6월 29일 법률 제94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36조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5년을 경과하면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규정의 실시 상황 등을 감안해 조합원이 농업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조합의 임원에 관한 제도의 본연의 자세, 조합의 사업 운영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쇼와 46년 7월 22일 정령 제 250호)

최종개정 : 평성 18년 4월 26일 정령 제 181호

내각은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쇼와 46년 법률 제 32 호) 제2조제1항과 제2항, 제12조 및 제13조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대출 기관)

제1조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 정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농업 협동조합법(쇼와 22년 법률 제132호) 제10조제1항 제2호와 제3호 사업을 함께하는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
- 2) 농업 협동조합법 제10조제1항 제10호 사업을 하는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
- 3) 은행
- 4) 신용 금고
- 5) 신용 협동조합

(신청자)

제2조

법 제2조제1항 제3호 정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 1) 법 제2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개인의 친족, 그 개인 거주지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2) 법 제2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혹은 전호에 규정된 자가 그 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이 약관에 규정된 자가 그 직원(업무 집행권한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 합자 회사 혹은 합작 회사로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

(대상 지역)

제3조

법 제2조제2항 정령으로 정하는 도시 계획 구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 계획 구역

- ① 수도권 정비법(쇼와 31년 법률 제83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성 시가지,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변 정비 지역 또는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개발 구역
 - ② 간키 지역 정비법(쇼와 38년 법률 제129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건물 도시 지역,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변 정비 구역 또는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개발 구역
 - ③ 중부권 개발 정비법(쇼와 41년 법률 제102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정비 구역 또는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개발 구역
 - ④ 지역 거점 도시의 정비 및 산업 업무 시설의 재배치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4년 법률 제76호)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거점 도시
 - ⑤ 도시 지역 또는 도도부현 소재 시 혹은 인구 2만 이상의 시 지역
- 2) 전호에 규정된 도시 계획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계획 지역으로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하는 것

(한 단지의 토지 면적 등의 기준)

제4조

법 제2조제2항 제1호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한 단지의 토지 면적이 0.25헥타르 이상인 것 또는 한 단지의 주택 가구 수가 25채 이상인 것
- 2) 한 단지의 면적에 대한 임대 주택 부지 면적의 비율이 지역의 면적에 대한 주택 부지 면적의 비율 2분의 1 이상인 것 또는 주택 가구 수에 대한 임대 주택의 가구 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것

(면적)

제5조

법 제2조제2항 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해당 한 단지의 면적(도로, 수로, 공원, 그 외에 공공에 제공되는 시설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제공되는 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면적 또는 0.1헥타르로 한다.

(임대 계약서 등의 비치)

제6조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용자를 받은 자는 해당 대출 이자법 제2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 금리를 인하하는 동안에는 그 회계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계약서, 기타 해당 대출에 관련된 임대 주택에 관한 업무 상태를 게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그 사무실에 비치해 두어야한다.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업무)

제7조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은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게 한다.

- 1) 법 제9조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무
- 2)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 요구 및 출입 검사에 관한 사무
2. 전항의 경우에 법률에서 국토교통대신에 관한 규정은 도도부현 지사에 관한 규정으로 도도부현 지사에 신청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도도부현 지사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실시하며, 해당 승인을 했을 때는, 국토교통대신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요구 또는 출입 검사의 결과를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해야한다.

(권한의 위임)

제8조

이 정령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역 정비 국장 또는 북해도 개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제9조

이 정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 이자 보급 계약 체결 절차, 기타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상 지역의 특례)

2. 다음 표 상단에 규정된 기간의 제3조제1호 규정의 적용은 동호 중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의 구역"인 것은 각각 동표 하란에 규정된 어휘로 대체한다.

평성 17년 3월 31일 사이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의 지역, 신 산업 도시 건설 촉진법 등을 폐지하는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14호 이하 "폐지법"이라고 한다)의 폐지 이전 신 산업 도시 건설 촉진법(쇼와 37년 법률 제117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된 신 산업 도시 지역, 폐지 법률의 폐지 전 공업 정비 특별 지역 정비 촉진법(쇼와 39년 법률 제146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업 정비 특별 지역이나 신 산업 창출 촉진법(평성 10년 법률 제 152호) 부칙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전의 고도 기술 공업 집적 지역 개발 촉진법 (쇼와 58년 법률 제35호)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개발 계획에 관한 지역 평성 17년 4월 1일부터 평성 18년 3월 31일 사이의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의 지역, 폐지 법률의 폐지 이전 신 산업 도시 건설 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 산업 도시 지역 또는 폐지법에 의한 폐지 전 공업 정비 특별 지역 정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업 정비 특별 지역

부칙(쇼와 47년 7월6일 정령 제 278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3년 5월 23일 정령 제 177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이 정령의 시행 시 현재 있는 임대 조합에 대해서는 이 정령의 규정에 의한 개정 다음에 열거한 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1)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부칙(쇼와 54년 3월 31일 정령 제62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쇼와 5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계약서 등의 제출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54년 6월 5일 정령 제72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56년 4월 3일 정령 제111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1년 4월 22일 정령 제127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2년 5월 26일 정령 제175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2년 8월 3일 정령 제268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3년 1월 26일 정령 제6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쇼와 6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3년 4월 8일 정령 제118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3년 5월 31일 정령 제175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3년 11월 11일 정령 제320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쇼와 6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원년 2월 1일 정령 제13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평성 원년 9월 27일 정령 제278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원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2년 6월 8일 정령 제153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제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2년 10월 17일 정령 제307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3년 3월 30일 정령 제84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제 6조의 개정 규정 중 "제 2조제3항 제1호"를 "제2조제3항 제2호"로 수정하는 부분과 제 7조의 개정 규정은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3년 4월 12일 정령 제132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12월 3일 정령 제359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4년 2월 26일 정령 제30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4년 10월 28일 정령 제349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5년 2월 3일 정령 제11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5년 4월 1일 정령 제138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5월 19일 정령 제173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5년 9월 27일 정령 제305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5년 11월 8일 정령 제351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평성 5년 12월 27일 정령 제404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6년 1월 28일 정령 제14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6년 3월 9일 정령 제33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6년 4월 18일 정령 제125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6년 7월 15일 정령 제237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6년 9월 9일 정령 제290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6년 12월 2일 정령 제386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7년 3월 17일 정령 제62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7년 5월 8일 정령 제196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7년 6월 2일 정령 제228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7년 7월 5일 정령 제282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7년 8월 9일 정령 310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7년 11월 10일 정령 제379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7년 12월 8일 정령 제404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8년 3월 31일 정령 제87호) 발취

이 정령은 평성 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2월 15일 정령 제2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신 사업 창출 촉진법의 시행일(평성 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1월 10일 정령 제35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제312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3월 30일 정령 제 14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9월 5일 정령 제 28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9월 27일 정령 제 313호)

이 정령은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일(평성 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12월 28일 정령 제429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4월 26일 정령 제181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회사법의 시행일(평성 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 규칙
(쇼와 46년 10월 23일 건설부 시행령 제18호)

최종개정 : 평성 13년 8월 3일 국토교통성령 제115 호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쇼와 46년 법률 제 32호) 제2조제1항, 동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 7조와 제8조제2항 및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쇼와 46년 정령 제250호) 제5조, 제6조, 제8조규정에 의거해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특정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

제1조

특정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이자 보급 계약의 대상이 되는 용자를 받으려고 하는 대출 기관의 명칭
- 2) 이자 보급 계약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금액
- 3) 이자 보급 계약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연월일
- 4) 특정 임대 주택 건설 계획

① 소재지

② 가구 수

③ 설계 개요

④ 사업 시행 기간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첨부해야한다.

- 1) 신청자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는 서류
- 2)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 주택이 법 제2조제2항의 특정 임대 주택임을 게시한 것
- 3) 건설하고자 하는 특정 임대 주택 건설 자금 투자 계획서
- 4) 이자 보급 계약의 대상이 되는 용자를 하려고 하는 대출 기관의 의견서

3. 제1항의 신청을 한 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이자 보급 계약 체결 신청 등)

제2조

대출 기관은 법 제2조제1항 이자 보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전조 제1항의 신청을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이자 보급 계약 대상이 되는 대출의 금액과 그 조건
- 3) 대출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특정 임대 주택의 소재지, 가구 수와 건축 약관
- 4) 지급을 받고자 하는 이자 보급 총액 및 그 산출 내역

2. 국토교통대신은 대출 기관과 이자 보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조 제1항의 신청을 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대상 용자의 범위)

제3조

법 제2조제1항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범위의 기금은 특정 임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중 건축 공사비(주체 공사비 및 내부 시설 공사비를 말한다), 야외 부대 공사비 및 특수 기초 공사비 합계 금액(그 금액이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표준 건축 비용을 넘는 경우에는 그 표준 건축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

제4조

법 제2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바닥 면적(공동 주택은 공용 부분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50평방미터(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26호) 제 34조에서 규정하는 고령자용 임대 주택은 25평방미터) 이상 125평방미터 이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거주 객실을 보유한 것
- 2) 내화 구조의 주택, 연합 내화 구조의 주택 또는 불연 조립 구조의 주택
- 3) 부엌, 수세식 화장실, 화물 시설, 세면대와 목욕탕을 갖춘 것

2. 전항 제2호의 내화 구조의 주택, 연합 내화 구조의 주택과 불연 조립 구조의 주택은 각각 다음에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내화 구조의 주택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제2조제9호 2 ①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 2) 연합 내화 구조의 주택 내화 구조의 주택 이외의 주택으로 건축 기준법 제2조 제9호 3 ① 혹은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방화 성능이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불연 조립 구조의 주택 내화 구조의 주택과 연합한 내화 구조의 주택 이외의 주택으로 구조 내력에 주요한 부분(건축 기준법 시행령(쇼와 25년 정령 제

318호) 제1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며, 조립 공법 다른 간편한 시공 방법으로 건설하는 주택 중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시설)

제5조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5조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공중에 제공되는 시설, 철도, 궤도, 연못, 광장, 녹지, 수도 및 하수도로 한다.

(기산일부터 1년간에 대한 대출 잔액의 계산 방법)

제6조

법 제5조제1항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대출 잔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짜에 해당 각호에 규정된 용자가 처리되는 것으로 계산해야한다.

1) 기산일

대상 대출 금액 10분의 3

2) 기산일부터 150일을 경과한 일

대상 대출 금액 10분의 4

3) 기산일부터 240일을 경과한 일

대상 대출 금액 10분의 3

(준공보고)

제7조

대상 대출을 받은 자는 그 용자에 관한 임대 주택이 준공되면, 지체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1) 특정 임대 주택의 소재지 및 가구 수

2) 특정 임대 주택 건설에 소요된 비용 총액

3) 건축 착공일과 준공일

2.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을 첨부해야한다.

1) 특정 임대 주택의 설계도

2) 특정 임대 주택 건설에 소요된 비용 명세서

3) 대상 용자의 수입 현황서

4) 특정 임대 주택 예정 월세 명세서

(이자 보급 금액의 지급 기간)

제8조

법 제 7조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및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자 보급 금액의 청구)

제9조

대출 기관은 법 제7조규정에 의하여 이자 보급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각 기간 종료 후 지체없이 해당 대출의 상환 상황 보고서 및 그 기간에 관련된 이자 보급 청구 양식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제10조

법 제8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다음 조에서 제16조까지에 결정된 것으로 한다.

(임차인의 자격)

제10조2

해당 용자에 관한 임대 주택을 법 제2조제3항 제2호 ② 또는 ④에 규정된 자에게 임대하는 자(이하 "특별 임대인"이라고 한다)가 임대하는 그 임대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신용 및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한다.

(임차인의 모집 방법)

제11조

해당 회계에 관한 임대 주택을 법 제2조제3항 제1호 ① 또는 ③에 규정된 자에게 임대하는 자(이하 "일반 임대인"이라고 한다)는 그 임대 주택의 임차인을 공모해야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는 임차 신청 기간 첫날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주일 전에 신문에 게재, 배치 등의 방법으로 광고해야한다.

3. 전 두 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는 각 건물마다 또는 단지마다 적어도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해야한다.

- 1) 임대 주택이 대상 용자에 관한 주택인 것
- 2) 임대 주택의 소재지, 가구 수, 구조 및 규모
- 3) 일반 임대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 4) 월세, 기타 임대 조건
 - 5) 임차 신청 기간 및 장소
 - 6) 신청에 필요한 서면 형식
 - 7) 임차인의 선정 방법
4. 전항 제5호의 신청 기간은 적어도 3일간으로 해야한다.

(임차인의 선정)

제12조

임차 신청을 접수한 가구 수가 임대하는 주택의 가구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인은 추첨,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한다.

(임차인 선정의 특례 등)

제13조

일반 임대인은 1회의 모집 단위로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 가구 수의 5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구 수에 대해 이전 두 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그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전 두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해 임차인을 선정한 다음에 임차인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임대인은 제 11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 빈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해당 용자에 관한 임대 주택을 법 제2조제3항 제1호 ③에 규정된 자에게 임대하는 자는 그 임대 주택의 가구 수가 20호 이하인 경우 또는 사전에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 세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선정 방법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의 제한)

제15조

해당 용자에 관한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자(이하 "임대인"이라고 한다)는 매월 그 달의 또는 다음 달의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 및 임대료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사례금 등의 금품 접수 및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부담을 임대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대 조건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한 임대 조건)

제15조2

일반 임대인은 법 제2조제3항 제1호 ③에 규정된 자에게 적용되는 대출에 관련된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임대 조건으로 해야한다.

- 1)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직원에게서 징수하는 임대료 및 보증금은 일반 임대인에 대해 지불해야하는 임대료 및 보증금의 범위 내인 것
- 2) 전호 임대료와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원에게서 권리금, 사례금 등의 금품 접수 및 기타 직원의 부당한 부담을 그 주택 대출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

(임대 조건)

제15조3

특별 임대인은 해당 용자에 관한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사람의 선정 방법, 임대료, 기타 전대 조건에 관해 제 11조에서 제15조2까지, 다음조의 규정에 준하여 임차인이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해야한다.

(월세)

제16조

1개월 당 임대료의 금액은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 대상 대출 금액, 금리를 법 제2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 금리로 상환 기간을 15년(거치 기간 1년을 포함한다)으로 원리금 균등 반년 상환 방법에 의해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된 금액의 월 할인 금액
- 2)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가 적용되는 대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 금리를 연 9퍼센트로 하고 상환 기간을 25년(거치 기간 1년을 포함한다)으로 원리금 균등 반년 상환 방법에 의해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된 금액의 월 할인 금액
- 3) 해당 용자에 관한 임대 주택 건설비용(특수 기초 공사 비용을 제외한다) 또는 그 주택에 관한 추정 재건축 비용(특수 기초 공사에 관한 견적 재건축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중 다음에 열거하는 주택의 종류별로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① 내화 구조의 주택 1000분의 1.5
 - ② 연합 내화 구조의 주택 또는 불연 조립 구조의 주택 1000분의 1.8
- 4) 해당 회계에 관한 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관한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1200분의 5를 곱한 금액

- 5) 해당 회계에 관한 임대 주택 또는 그 부지에 조세, 기타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의 월 할인 금액
 - 6) 해당 회계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해 보험 또는 손해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화재 공제에 필요한 비용의 월 할인 금액
 - 7) 전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2. 임대인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인 대출에 관련된 임대 주택으로, 같은 시기에 임차인 모집을 행하는 경우에 주택 상호 간의 집세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 위치, 모양의 편의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조정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하거나 또는 그 금액으로부터 삭감한 금액을 임대료 액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료 금액의 합계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무실 대출 서류)

제17조

영 제6조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임대료 및 보증금의 수납 상황을 분명히 하는 서류
- 2) 매년도의 수지 결산 보고서

(임대 주택의 양도 등의 승인 기준)

제18조

영 제7조제3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에 명시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기로 한다.

- 1) 해당 용자에 관한 임대 주택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것
 - 2) 해당 임대 주택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것
2. 해당 용자에 관한 임대 주택을 주택 이외의 용에 제공해주는 경우 임대 주택의 일부를 집회실, 기타 주택 이외의 용에 제공하는 것이 입주자의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것

(권한의 위임)

제19조

영과 이 성령으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이외의 것은 지역 정비국장과 북해도 개발 국장에게 위임한다.

- 1) 영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 건축 비용을 결정하는 것
- 3) 제4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 성능이 있는 구조의 주택을 결정하는 것

부칙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4년 3월 31일 건설성령 제8호)

이 성령은 쇼와 5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8년 4월 5일 건설성령 제3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원년 2월 14일 건설성령 제1호)

이 성령은 평성 원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년 6월 8일 건설성령 제5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3월 30일 건설성령 제3호)

이 성령은 평성 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4월 12일 건설성령 제5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6월 25일 건설성령 제13호)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성령의 시행 전에 맺은 이자 보급 계약 및 해당 이자 보급 계약에 관한 임대 주택의 임대, 양도 및 사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8년 3월 31일 대장성, 건설성령 제1호)

이 성령은 평성 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9년 5월 7일 건설성령 제7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1월 31일 건설성령 제10호)

이 성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5월 31일 건설성령 제2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평성 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11월 20일 건설성령 제41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8월 3일 국토교통성령 제115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우량6)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평성 10년 4월 17일 법률 제41호)

최종개정 : 평성 17년 7월 6일 법률 제82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지원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농산마을 지역, 도시 근교 등에서의 우량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건강하고 여유 있는 국민 생활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량 전원주택)

제2조

이 법률에서 "우량 전원주택"은 농업마을 지역, 도시 근교, 기타 양호한 자연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단독 주택이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부지 면적이 정령으로 지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 2) 건축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과 연면적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 정령에서 정한 수치 이하인 것
- 3) 층수가 정령으로 지정하는 층수 이하인 것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

제3조

시정촌은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2.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1)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 2) 우량 전원주택의 건설이 기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지역에 관한 사항
- 3) 우량 전원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개성 넘치는 지역 사회의 창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자연 환경의 보전과 조화, 농림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 기타 우량 전원주택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6)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가 좋음.

- 5) 기타 필요한 사항
- 3. 시정촌은 기본 방침을 결정하려고 할 때, 먼저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해야한다.
- 4. 시정촌은 기본 방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표해야한다.
- 5. 전 두 항의 규정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준용한다.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 승인)

제4조

우량 전원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설에 관한 계획(이하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이라고 한다)을 만들고, 이것을 시정촌에 제출하여 해당 우량 전원주택 계획이 적당하다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2.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1) 건설하고자하는 주택에 제공해주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
 - 2) 건설하고자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과 연면적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
 - 3) 건설하고자하는 주택의 층수
 - 4) 기타 농림수산성령과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사항
- 3. 시정촌은 제1항의 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이 기본 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에 관한 주택이 우량 전원주택인 것
 - 3)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에 관한 주택에 제공해주는 토지의 소재와 면적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 등으로 보아, 그 토지를 주택에 제공해주는 것이 적당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의 형성이 전망되는 것
- 4. 시정촌은 제1항의 인가를 하려고 할 때, 먼저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해야한다.
- 5.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협의에 응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에 관한 토지에 2헥타르 이상의 농지(경작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농림수산대신과 협의해야한다.
- 6.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에 관한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정촌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 7.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 변경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 8. 제5항(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농림 수산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 농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대한 배려)

제5조

국가 행정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에 따라서 토지 인중에 관한 우량 전원주택에 제공되는 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그 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을 요구 받았을 때는 해당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세제상의 조치)

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오키나와 진흥 개발 금융 공고의 용자에 있어서 고려 사항)

제7조

오키나와 진흥 개발 금융 공고는 우량 전원주택의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7월 6일 법률 제8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성 10년 7월 10일 정령 제 254호)

내각은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10년 법률 제41호) 제2조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법 제2조제1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규모)

제1조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규모는 300평방미터로 한다.

(법 제2조제2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수치)

제2조

법 제2조제2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수치는 건축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10분의 3, 총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10분의 5로 한다.

(법 제2조제3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층수)

제3조

법 제2조제3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층수는 3으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평성 10년 7월 15일 농림수산성령, 건설부령 제1호)

최종개정 : 평성 12년 10월 25일 농림수산성, 건설부령 제3호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10년 법률 제41호) 제4조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2항 제4호의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에 관한 토지의 구역(이하 "계획 구역"이라고 한다)에 건설하고자하는 주택에 제공해주는 토지 이외의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 1) 우량 전원주택을 건설하고자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 2) 우량 전원주택 건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 3) 계획 구역의 위치와 지역
- 4) 계획 지역(건설하고자하는 주택에 제공해주는 토지 제외)의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
- 5)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에 관한 주택에 제공해주는 토지의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및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
- 6) 계획 구역 내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공공시설 정비 계획
- 7) 계획 구역의 취수와 배수 계획의 개요
- 8) 건설하고자하는 주택의 가구 수 및 설계 개요
- 9) 기타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이 정책에 비추어 적절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참고가 되는 사항

2. 전항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제8호에 규정된 사항에 있어서는 건설하고자하는 주택의 설계 개요에 한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함께 도면에 표시해야한다.

3. 제1항 제3호 계획 지역에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은 축척 2500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계획 구역의 지역을 표시하는 도면은 축척 500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10월 25일 농림수산, 건설부령 제3호)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우량 전원주택의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농림수산대
신에 대한 협의에 관한 성령
(평성 10년 7월 15일 농림수산성령 제59호)

최종개정 : 평성 12년 9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82호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10년 법률 제41호)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해,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의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협의를 요하는 사유를 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협의를 요하는 사유)

제1조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우량 전원주택 건설 계획의 토지 구역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농용지 지역(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제8조
제2항 제1호의 농용지 지역을 말한다)의 토지인 것
2. 국가의 시행 또는 국가의 보조에 관한 사업(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 또는 해당
사업의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8년이 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으로 다음에 규정된 것(주로 농용지의 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수혜 구역 내의 토지인 것
 - 1) 농용지(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농용지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토지 구획 형질 변경, 객토, 배수 또는 지면의
체결
 - 2) 농용지 조성(농용지 이외의 토지의 농용지로의 지목 변환 또는 농용지 간의
지목 변환 사업(매립과 간척을 제외한다) 및 그 사업과 이에 부대하여 시행하
는 것을 상당으로 하는 토지 구획 형질 변경, 객토, 배수 또는 지면 체결 공
사의 실행을 일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매립 또는 간척
 - 4) 농업용 배수 시설 또는 농업용 도로의 신설 또는 개량

(권한의 위임)

제2조

법 제3조제5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
대신의 권한은 지방 농정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9월 1일 농림수산성 시행령 제82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 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구 목표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쇼와 46년 6월 21일 법률 제112호)

최종개정 : 평성 17년 7월 29일 법률 제89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을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농업 종사자가 그 희망과 능력에 따라서 소개되는 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들의 조치와 상응해 농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농업 및 공업 등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용 구조의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농촌 지역"이라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도시 지역(도시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 및 그 인구가 정령으로 지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 지역 중 정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1)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 진흥 지역 또는 동법 제4조제1항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기본 방침에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지역 내에 있는 시정촌
 - 2) 전호에 규정된 도시 이외의 시정촌으로 산촌진흥법(쇼와 40년 법률 제64호)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 산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지역에 있는 것
 - 3) 전 두 호에 규정된 도시 이외의 시정촌으로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법(평성 12년 법률 제15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소 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하는 것
2. 이 법률에서 "산업 등"은 산업 도로화물 운송업, 창고업, 포장업과 도매업을 말한다.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기본 방침)

제3조

주무대신은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한다.

2.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다음 조 제1항 기본 계획의 지침이 될 것을 결정해야한다.

- 1)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 목표
- 2) 농촌 지역에 소개되는 산업 등에 농업 종사자(가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업 목표
- 3)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과 상응해 촉진해야 할 농업 구조 개선에 관한 목표
- 4) 전 세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그 외의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에 관한 중요 사항

3. 주무대신은 경제 사정의 변화, 기타 정세의 추이에 의한 필요가 발생 할 때에는, 기본 방침을 변경해야한다.

4. 주무대신은 기본 방침을 결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5. 주무대신은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기본 계획)

제4조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의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2. 기본 계획에서는 도도부현의 구역 또는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도도부현의 구역을 나누어 결정할 수 있는 지역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의 대강을 결정해야한다.

- 1) 도입해야 되는 공업 등의 업종, 기타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 목표
- 2) 농촌 지역에 소개되는 공업 등에 농업 종사자의 취업 목표
- 3)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과 상응해 촉진해야 되는 농업 구조 개선에 관한 목표
- 4)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에 따른 공장 용지 등(공장 용지, 기타 공업용 등에 제공해주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농용지 등(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규정된 농용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용의 조정에 관한 방침
- 5) 공장 용지 등 공동 유통 업무 시설(트럭 터미널, 창고 또는 짐 저장 장소로, 상당수의 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6) 노동력 수급 조정과 농업 종사자의 산업 등에서의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 7)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과 상응하여 농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 필요한 농업 생산 기반 정비와 개발,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 8)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에 따른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 9)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본 계획은 기본 방침에 입각하여 국토형성계획, 수도권 정 계획, 긴키지역 정비계획, 중부권 개발 정비계획, 홋카이도 종합개발 계획, 산촌 진흥 계획,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과소 지역 자립 촉진 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진흥에 관한 계획과 도로, 철도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 계획 및 도시 계획과의 조화가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4. 도도부현은 기본 계획을 결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대신과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동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5. 도도부현은 기본 계획을 결정 또는 이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한다.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실시 계획)

제5조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다음에 열거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 지역의 특정 지역을 결정하고 해당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이미 다른 실행 계획이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그 지역에 산업 등을 도입하는 것에 의해 주변 농촌 지역의 농업 종사자가 해당 공업 등에 상당수 취업 되리라 전망되는 것
- 2) 그 지역에 산업 등의 도입과 상응해 그 주변의 농촌 지역의 농업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 3) 도도부현이 정하는 실시 계획으로, 그 실시 계획에 관한 지역이 지형, 지질, 기타 자연 조건 및 용수 사정, 운송 조건의 다른 위치에서 본 그 지역에 산업 등의 도입을 촉진하여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그 주변의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이 촉진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 4) 시정촌이 결정한 실시 계획은 그 실시 계획에 관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한 공업 등을 도입하여 주변 농촌 지역의 농용지 등의 보유 및 이용 상황, 농업 취업 인구, 기타 농업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의 현황 상으로 해당 농촌 지역의 농지 보유의 합리화를 도모하리라 예상되는 것

2. 도도부현은 전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 한 시정촌의 구역을 넘는 광역의 건지에서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을 촉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농

촌 지역의 특정 지역을 결정하고 실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이미 다른 실행 계획이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그 지역에 산업 등을 도입하여 하나의 도시 지역을 넘는 광역의 농촌 지역에서 농업 종사자가 해당 산업 등에 상당수 취업할 것이라 전망되는 것
- 2) 그 지역에 산업 등의 도입과 상응하여 하나의 도시 지역을 넘는 광역의 농촌 지역에서 농업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 3) 그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하며, 공업 등을 도입하여 한 시정촌의 구역을 넘는 광역의 농촌 지역에서 농용지 등의 보유 및 이용 상황, 농업 취업 인구, 기타 농업의 기본 조건 현황 등의 상으로 해당 농촌 지역의 농지 보유의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3. 실시 계획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 1) 공업 등을 도입해야하는 지역(이하 "산업 등 도입 지역"이라고 한다)의 지역
- 2) 도입해야 되는 공업 등의 업종 및 규모
- 3) 도입되는 공업 등에 농업 종사자의 취업 목표
- 4) 공업 등의 도입과 상응하고 촉진해야 되는 농업 구조 개선에 관한 목표
- 5) 공업 등의 도입에 따른 공장 용지 등과 농용지 등과의 이용 조정에 관한 사항
- 6) 공장 용지 등 공동 유통 업무 시설, 기타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7) 노동력 수급 조정과 농업 종사자의 산업 등에서의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 8) 공업 등의 도입과 상응하여 농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 생산 기반 정비와 개발,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 9) 공업 등의 도입에 따른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 10) 기타 필요한 사항

4. 실시 계획은 기본 계획의 내용에 입각하여 전조 제3항에 규정된 계획과의 조화가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시정촌이 결정하는 실시 계획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그 도시의 건설에 관한 기본 구상에 입각하는 것이어야 한다.

6. 도도부현이 실시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의 공업 등 도입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공장 입지법(쇼와 34년 법률 제24호) 제2조규정에 의한 공장 적지 조사 결과를 참작해야한다.

7. 도도부현이 실시 계획을 결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시정촌은 실시 계획을 결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한다.

9.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실시 계획을 결정하거나 또는 이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개요를 공표하고, 도도부현은 주무대신과 관계 시정촌에, 시정촌은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주무대신에게 실시 계획서(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후에 실시 계획서. 이하 같다)의 사본을 송부해야한다.

10.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 계획서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주무대신에게 그 실시 계획에 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11.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소 지역의 지역 내의 특정 지역을 결정하고, 이것에 대해 실시 계획을 결정 또는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실시 계획(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후 실시 계획. 아래 이 항에서 같다)이 동법 제5조제1항의 자립촉진방침에 적합할 때에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해당 시행 계획을 각각 동법 제7조제1항의 도도부현 계획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시정촌 계획 내용의 일부로 할 수 있다. 단, 시정촌 계획의 내용의 일부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12.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법 제7조제1항의 도도부현 계획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시정촌 계획을 변경한 경우의 동법 제7조 또는 동법 제6조규정의 적용은 동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한 동조제1항 중 "이를 총무대신, 농림수산대신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한다."인 것은 "이를 총무대신, 농림 수산대신과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한다."로, 동조 제4항과 동법 제6조제6항에서 준용한 동조 제5항 중 "제출이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인 것은 "을 변경하는 내용의 보고가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요지"로, 동조 제6항에서 준용한 동조 제4항 중 "이것을 제출"인 것은 "그 요지를 보고"로 한다.

(기본 계획 및 실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원조)

제6조

국가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대해, 도도부현은 시정촌에 대해, 각각 기본 계획 또는 실시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언, 지도, 기타 원조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용지 등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의 경감)

제7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업 등 소재 지역 안에 있는 농용지 등(농용지 등에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공장 용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별 조치법(쇼와 32년 법률 제26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쇼와 40년 법률 제33호)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완화한다.

(사업용 자산 교체의 경우 과세의 특례)

제 8조

농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해서 공업 등 도입 지역에서 공업 등에 제공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 특별 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사업용 자산 교체의 경우의 과세 특례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삭제

(지방세의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

제10조

지방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26호) 제6조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업 등을 도입 지역 중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공업 등을 위해 제공해주는 시설 중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세금, 그 사업에 관한 건물 또는 그 부지의 토지 취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또는 그 사업에 관련된 기계 및 장치 또는 그 사업에 관한 건물 또는 그 부지에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지방세에 관련된 불균일 과세를 할 경우에 이러한 조치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쇼와 25년 법률 211호) 제14조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각 년도의 기준 재정 수입액은 동조 규정에 관계없이, 총무성령으로 지정한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각 년도분의 수입 감소 금액(영업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이러한 조치에 따른 수입 감소 금액으로 이러한 조치가 되는 첫번째 년도 이후 3개년도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동조 규정에 의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각 년도의 기준 재정 수입액에 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조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각 연도(이 조치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입 감소 액수를 각 연도의 다음 연도)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 되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자금의 확보 등)

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업 등 도입 지역 내에서 공업 등을 위해 제공해주는 시설 실시 계획에 적합한 것의 정비마다 필요한 자금 확보, 기타 원조에 노력해야 한다.

(지방채에 대한 배려)

제12조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장 용지 등의 조성,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으킬 지방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금 사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삭제

(시설 정비)

제 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시 계획이 정하는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 용지 등 공동 유통 업무 시설, 도로, 공업용 수도 및 통신 운수 시설 정비의 촉진에 노력해야한다.

(직업 소개의 충실 등)

제15조

국가가 실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입되는 산업 등 농업 종사자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단체의 협력을 얻어, 고용 정보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 소개의 충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입되는 공업 등에 농업 종사자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 훈련(작업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포함한다)의 실시, 직업 전환 수당(고용 대책법(쇼와 41년 법률 제132호) 제 18조직업 전환 수당을 말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농업 구조 개선의 촉진)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시 계획이 정하는 농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및 개발, 농업 현대화를 위한 시설 정비 등의 사업 추진에 노력해야한다 .

(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 대한 배려)

제17조

국가 행정 기관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토지를 실시 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제공

하기위해 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그 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해당 실시 계획이 정하는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이 촉진되도록 배려해야한다.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 의회)

제18조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 수립, 기타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도도부현은 조례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시 계획 수립, 기타 농촌 지역에 공업 등의 도입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시정촌은 조례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전 두 항에 규정된 것 외에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두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조례로 정한다.

(주무대신)

제19조

이 법률에서 주무대신은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후생노동대신과 국토교통대신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8년 7월 3일 법률 제44호) 발췌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8년 10월 1일 법률 제108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3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5년 3월 31일 법률 제19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쇼와 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1년 6월 10일 법률 제81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1년 12월 26일 법률 제109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3년 6월 18일 법률 제84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의 농촌 지역 공업 도입 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또는 변경된 동법 제3조제1항의 기본 방침, 동법 제4조제1항의 기본 계획과 동법 제5조제1항의 실시 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거나 또는 변경된 동법 제3조제1항의 기본 방침, 동법 제4조제1항의 기본 계획 및 동법 제5조제1항의 실시 계획으로 본다.

부칙(평성 2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평성 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9년 6월 20일 법률 제10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금융감독청 설치법(평성 9년 법률 제101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경제산업대신 등이 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담보 사채 신탁법, 기금업법, 농림 중앙 금고법, 은행 등의 업무 간소화에 관한 법률, 금융 기관의 신탁 업무 경영 등에 관한 법률,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농업 협동조합 법률, 증권 거래법, 손해 보험 산출 단체에 관한 법률, 수산업 협동조합법,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협동조합의 금융 사업에 관한 법률, 전주 상호 보험 조합법, 증권 투자 신탁법, 신용 금고법, 장기 신용 은행법, 대부 신탁법, 중소기업 회계 보호법, 신용 보증 협회법, 노동 안전법, 외환 은행 거래법,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농업 신용 보증 보험 상품 금융 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외국 증권업자에 관한 법률, 예금 보험법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농수산업 협동조합 예금 보험법, 은행법, 대금업자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유가 증권의 자문 서비스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저당 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금융 선물 거래법, 선물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상품 투자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제적인 협력 하에 규제하는 약물에 관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약 및 향정 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채권 등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 제도 및 증권 거래 제도의 개혁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협동 조직 금융 기관의 출자에 관한 법률,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법, 보험업법, 금융 기관의 갱생 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농림 중앙 금고와 신용 농업 협동조합 위원회와의 합병 등에 관한 법률, 일본 은행법 또는 은행 지주 회사 설립을 위한 은행 등에 관한 합병 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구 담보 사채 신탁법 등"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경제대신, 기타 국가 기관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기타 처분 또는 통지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담보 사채 신탁법, 기금 업법, 농림 중앙 금고법, 은행 등의 업무 간소화에 관한 법률, 금융 기관의 신탁 업무 등에 관한 법률, 사적 독점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농업 협동조합 법률, 증권 거래법, 손해 보험 산출 단체에 관한 법률, 수산업 협동조합법,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협동조합의 금융 사업에 관한 법률, 선주 상호 보험 조합법, 증권 투자 신탁법, 신용 금고법, 장기 신용 은행법, 대부 신탁법, 중소기업 대출 보증법, 신용 보증 협회법, 노동 안전법, 외환 은행 거래법,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농업 신용 보증 보험법, 금융 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외국 증권업자에 관한 법률, 예금 보험법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농수산업 협동조합 예금 보험법, 은행법, 대금업자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유가 증권에 관한 자문 서비스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저당 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금융 선물 거래법,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상품 투자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제적인 협력 하에 규제하는 약물에 관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약 및 향정 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채권 등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 제도 및 증권 거래 제도의 개혁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협동 조직 금융 기관의 우선 출자에 관한 법률,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법, 보험업법 금융 기관의 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농림 중앙 금고와 신용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와 합병 등에 관한 법률, 일본 은행법 또는 은행 지주 회사 설립을 위한 은행 등에 관한 합병 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새로운 담보 사채 신탁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해당 규정에 따라 총리, 기타 해당 국가 기관이 하는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기타 처리 또는 통지, 기타 행위로 본다.

2.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 담보 회사채 기금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대신, 기타 국가 기관에 의한 신청, 신고, 기타 행위는 새로운 담보 사채 신탁법 등의 해당 규정에 따라 내각 총리대신, 기타 해당 국가 기관에 대해 한 신청, 신고, 기타 행위로 본다.

3. 구 담보 회사채 기금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대신, 기타 국가 기관에 신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법률의 시행 일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이것을 새로운 담보 사채 신탁법 등의 해당 규정에 따라 내용이 국가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절차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담보 사채 신탁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6조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 결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9년 12월 12일 법률 제12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지주 회사 설립 등의 금지 해제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평성 9년 법률 제120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0년 10월 16일 법률 제131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금융 재생위원회 설치법(평성 10년 법률 제130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담보 사채 신탁법, 기금업법, 농림 중앙 금고법, 은행 등의 업무 간소화에 관한 법률, 금융 기관의 신탁 업무 겸영 등에 관한 법률,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농업 협동조합 법률, 증권 거래법, 손해 보험 요율 산출 단체에 관한 법률, 수산업 협동조합 법,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협동조합의 금융 사업에 관한 법률, 선주 상호 보험 조합법, 지방세법, 증권 투자 신탁 및 증권 투자 법인에 관한 법률, 신용 금고법, 장기 신용 은행법, 대부 신탁법, 중소기업 회계 보호법, 신용 보증 협회법, 노동 안전법,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농업 신용 보증 보험법, 등록 면허세법, 금융 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외국 증권업자에 관한 법률,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농수산업 협동조합 예금 보험법, 은행법, 대금업자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유가 증권에 관한 자문 서비스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저당 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금융 선물 거래법, 선물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상품 투자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제 협력 하에 규제하는 약물에 관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약 및 향정 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채권 등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 제도 및 증권 거래 제도의 개혁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협동 조직 금융 기관의 우선 출자에 관한 법률,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법, 보험업법, 금융 기관 등의 절차 특례 등에 관한 법률, 농림 중앙 금고와 신용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와 합병 등에 관한 법률, 일본 은행법, 은행 지주 회사 설립을 위한 은행 등에 관한 합병 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목적 회사에 의한 특정 자산의 유동화 관한 법률 또는 금융 시스템 개혁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담보 사채 신탁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내각 총리대신, 다른 나라의 기관이 되는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기타 처분 또는 통지,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담보 사채 신탁법, 기금업법, 농림 중앙 금고 상품, 은행 등의 업무 간소화에 관한 법률, 금융 기관의 신탁 업무 등에 관한 법률, 사적 독점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농업 협동조합 법률, 증권 거래법, 손해 보험 산출 단체에 관한 법률, 수산업 협동조합법,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협력 조합의 금융 사업에 관한 법률, 선주 상호 보험 조합법, 지방세법, 증권 투자 신탁 및 증권 투자 법인에 관한 법률, 신용 금고법, 장기 신용 은행법, 대부 신탁법, 중소기업 회계 보호법, 신용 보증 협회법, 노동 안전법,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농업 신용 보증 보험법, 보험에 관한 법률, 등록 면허세법, 금융 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외국 증권업자에 관한 법률,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농수산업 협동조합 예금보험법, 은행법, 대금업자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유가 증권에 관한 자문 서비스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저당 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금융 선물 거래법, 선물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상품 투자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제적인 협력 하에 규제하는 약물에 관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약 및 향정 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채권 등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 제도 및 증권 거래 제도의 개혁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협동 조직 금융 기관의 우선 출자에 관한 법률,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법, 보험업법, 금융 기관 등 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농림 중앙 금고와 신용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와 합병 등에 관한 법률, 일본 은행법, 은행 지주 회사 설립을 위한 은행 등에 관한 합병 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목적 회사에 의한 특정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 시스템 개혁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새로운 담보 사채 신탁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해당 규정에 따라 금융 재생위원회, 기타 해당 국가 기관이 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기타 처분 또는 통지, 기타 행위로 본다.

2.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 담보 회사채 기금법 등 규정에 의하여 내각총리대신, 다른 나라의 기관에 있는 신청, 신고, 기타 행위는 새로운 담보 사채 신탁법 등의 가치 규정에 따라 금융 재생위원회, 기타 해당 국가 기관에 대해 한 신청, 신고, 기타 행위로 본다.

3. 구 담보 회사채 기금법 등 규정에 의하여 내각총리대신, 다른 나라의 기관에 신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법률의 시행 일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담보 사채 신탁 상품 등의 해당 규정에 의해 금융 재생위원회, 기타 해당 국가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절차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담보 사채 신탁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효력이 있는 구 담보 사채 신탁법 등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새로운 담보 사채 신탁법 등의 해당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5조

전 세 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 250조의 다음 5조, 절 이름 및 두 관과 관명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동법 제 250조 9 제1항에 관한 부분(두 의원의 동의를 얻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244조의 규정(농업 개혁 조장법 제14조3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8조및 제 17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 7조, 제 10조, 제 12조, 제59조단, 제60조 제4항 및 제5항, 제 73조, 제 77조, 제 157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제 160조, 제 163조, 제 164조 및 제 202조의 규정 공포한 날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95조

시행일 전에 제 290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이하 이 조에서 "구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된 기본 계획은 제 290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이하 이 조에서 "새로운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기본 계획으로 본다.

2. 시행일 전에 구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된 실시 계획은 새로운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실시 계획으로 본다.

(국가 등의 업무)

제 159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 시행 전에 지방 공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사무(부칙 제 161조에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호에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63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한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허가 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에서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이 활동에 관한 행정 사무를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자로 되는 것은,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률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에 신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것을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절차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각각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1조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고 한다)에 시행일 전에 행정 불복 심사법에 규정하는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이 있는 것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이의 신청은 시행일 이후에 그 처분청에 이어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불복 심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행정 불복 심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로 하는 업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2조

시행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 164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2. 부칙 제 18조, 제51조 및 제 18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 250조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는 가능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법 별표 제 1에 내거는 것과 새로운 지역 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 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 재원의 충실 확보의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 개혁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및 제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장(제3조를 제외한다)과 다음 조의 규정은 평성 12년 7월 1일

부칙(평성 12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3월 30일 법률 제1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4월 25일 법률 제35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6월 29일 법률 제9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허용은 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허용으로 본다.

부칙(평성 16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82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7년 10월 29일 법률 제89호) 발취

(시행 기일 등)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다음 항 및 부칙 제 2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27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시행령
(쇼와 46년 9월 2일 정령 제 280호)

최종개정 : 평성 13년 3월 30일 정령 제 149호

내각은 농촌 지역 공업 도입 촉진법(쇼와 46년 법률 제112호) 제2조, 제5조제1항 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대도시 및 그 주변 지역)

제1조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 대도시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은 수도권 정비법(쇼와 31년 법률 제83호) 제2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고 한다), 긴키 지역 정비법(쇼와 38년 법률 제129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긴키 지역(이하 "긴키 지역"이라고 한다)과 중부권 개발 정비법(쇼와 41년 법률 제102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부권(이하 "중부 지역"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시의 인구 규모)

제2조

법 제2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규모는 10만으로 한다.

(농촌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요건)

제3조

법 제2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이한다.

1.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성 시가지,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변 정비 지역 또는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개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지역에 있는 시정촌 지역인 것
2. 긴키 지역은 긴키 지역 정비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성 도시 지역 또는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변 정비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지역에 있는 시정촌 지역인 것
3. 중부권은 중부권 개발 정비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정비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지역에 있는 시정촌 지역인 것
4. 인구가 10만 이상인 시 지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인 것
 - 1) 인구가 20만 이상인 것
 - 2) 공표된 최근의 인구 조사의 결과로 그 도시 지역에 관련된 인구를 그 국세 조

사가 이루어진 연도 전에서 가장 가까이 행해진 인구 조사의 결과로 그 도시 지역에 관련된 인구로 나누어 얻어 수치가, 공표된 최근의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른 전국의 인구를 그 국세 조사가 이루어진 연도 전에서 가장 가까이 행해진 인구 조사의 결과로 전국 인구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넘는 것

- 3) 공표된 최근의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 시의 산업 분류별 취업자 수(이하 "그 도시의 취업자 수"라고 한다) 중 광업, 건설업과 제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것들의 총 개수를 그 도시의 취업자 수의 총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가 그 국세 조사의 결과에 의한 국가 산업 분류별 취업자 수(이하 "전국 취업자 수"라고 한다) 중 제조업 등에 관한 것들의 총 개수를 전국의 취업자 수의 총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넘는 것

(도도부현이 정하는 실시 계획에 관한 지역 기준)

제4조

법 제5조제1항 제3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의 면적이 20헥타르 이상으로,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시 계획법 제7조제1항의 도시화 조정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내에 없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이 넓은 견지에서 공업 등의 도입을 촉진하는 경우의 요건)

제 5조

법 제5조제2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산업 등의 도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하나의 도시 지역을 넘는 광역 농촌 지역에서 그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으로 보아 공업 등의 도입을 촉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것
- 2) 공표된 최근의 인구 조사 결과로 그 지역의 산업 분류별 취업자 수(이하 "해당 지역의 취업자 수"라고 한다) 중 농업에 관한 것을 그 지역의 취업자 수의 총수로 나누어 얻은 숫자가 그 국세 조사의 결과에 의한 그 지역을 포함한 도도부현 구역 내의 농촌지역 전체 산업 분류별 취업자 수(이하 "전체 취업자 수"라고 한다) 중 농업에 관한 것을 전체 취업자 수의 총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초과하는 것

부칙 첨부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도도부현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령의 시행 시 현재 공장용지(공장의 부대 시설에 제공해주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그 도도부현이 보

유하고 있는 토지 지역을 포함하여 특정 지역을 결정하고, 해당 지역의 공업 도입에 관한 실시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제4조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당분간 동조 중 "20헥타르"인 것은 "10헥타르"로 한다.

부칙(쇼와 55년 3월 31일 정령 제4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목차의 개정 규정("제26조5"를 "제26조6"으로 "제26조6 - 제26조15"를 "제26조7 - 제26조16"으로 수정한 부분에 한한다), 제19조3 개정 규정(동조를 제19조2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19조5 개정 규정(동조 제19조4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 26조에서 제26조40까지의 개정 규정 및 제26조15 개정 규정("제2조제2항 제1호"를 "제2조제1항 제1호"로 개정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10조및 제11조규정은 쇼와 5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6년 3월 31일 정령 제7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5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촌 지역 공업 도입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2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농촌 지역 공업 도입 촉진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설된 또는 증설되는 설비를 제조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경우에 관해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신설되거나 또는 증설된 설비를 제조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57년 3월 31일 정령 제7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5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9년 7월 24일 정령 제 244호)

1 이 정령은 쇼와 5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후 제 6조의 규정은 이 정령의 시행일 이후에 신설된 또는 증설되는 설비의 제조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정령의 시행일 전에 신설된 또는 증설된 설비를 제조하는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쇼와 61년 9월 30일 정령 제 314호)

1. 이 정령은 쇼와 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후 제 6조의 규정은 이 정령의 시행일 이후에 신설된 또는 증설되는 설비의 제조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정령의 시행일 전에 신설된 또는 증설된 설비를 제조하는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2년 3월 31일 정령 제10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3년 3월 31일 정령 제7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6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3년 6월 18일 정령 제 204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3월 30일 정령 제 14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제 10조의 지역 등을 정하는 성령
(쇼와 63년 6월 18일 자치성령 제26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41호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쇼와 46년 법률 제112호)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제 10조의 지역 등을 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법 제 10조에 규정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조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 등 도입 지역으로, 공업 등(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입에 따라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한 도로, 배수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시설이 종합적으로 정비되는 것이 확실한 지역으로, 도도부현이 실시 계획(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시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한 공업 등 도입 지역에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관계 시정촌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고, 시정촌이 실시 계획을 결정하는 공업 등 도입 지역에는 해당 시정촌 장이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 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그 지역 면적이 2헥타르 이상인 것

2) 그 지역이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 전 3년도의 각 연도에 관한 지방 교부 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1호) 제14조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 재정 수입액을 동법 제11조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 재정 수요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합산한 것의 3분의 1의 수치가 0.4(해당 지역의 면적은 20 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0.6)에 못 미치는 시정촌 지역 내에 있는 것.

2. 전항 제2호의 기준일은 해당 지역에 관한 실시 계획이 결정된 일(이하 이 조에서 "결정일"이라고 한다)부터 기산하여 5년 내에는 결정일로 하고,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내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일로 하고 결정일로부터 5배수의 연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내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5배수 연도가 경과한 날로 한다.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시설)

제2조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지정하는 공업 등을 위해 제공해주는 시설

은 해당 시설 중 하나의 생산 설비(가스의 제조 또는 발전에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다)를 구성하는 감가상각자산(소득세법 시행령(쇼와 40년 정령 제96호) 제6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쇼와 40년 정령 제97호) 제13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엔을 넘고, 도로화물운송업, 창고업, 포장업에 제공되는 시설에는 이것들을 각각 그 사업에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증가하는 고용자(일일 고용되는 자는 제외한다)의 수가 15명을 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3조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목마다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영업세 전조에서 규정하는 산업 등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대상 시설"이라고 한다)로, 이것을 구성하는 감가상각자산 내에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6년 법률 제14호. 이하 이 조에서 "평성 16년 개정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5조제5항 또는 제40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 효력이 있게 되는 평성 16년 개정법에 의한 개정 전의 조세 특별 조치법(쇼와 32년 법률 제26호. 이하 이 조에서 "구 조세 특별 조치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의 표 제1호 또는 제45조제1항의 표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전시장의 건물과 그 건물에 관한 상각자산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것을 평성 21년 12월 31일 까지의 사이에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자(이하 "대상 시설 설치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시설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이 그 시설을 사업용에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업 연도 이후 매년 또는 각 사업 연도에 관한 소득 금액(해당 도도부현에서 부과하는 영업세의 과세 표준액이 되는 것을 말한다) 중 해당 시설에 관한 것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영업세에 대해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하기로 하는 경우
- 2) 부동산 취득세 대상 장비 설치에 대해서 그 대상 시설을 구성하는 농가로 평성 16년 개정법 부칙 제25조제5항 또는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 효력이 있게 되는 구 조세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 표 제1호 또는 제45조제1항 표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전시장 건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의 토지 취득(실시 계획이 결정된 날 이후 취득에 한하며, 토지 취득 내용은 그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부지로 해당 주택 건설 착수가 있는 경우의 토지 취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하기로 하는 경우
- 3) 고정재산세 대상 장비 설치에 관해서 그 대상 시설(창고 업무에 제공해주는

것을 제외한다)을 구성하는 가옥 및 상각자산으로 평성 16년 개정법 부칙 제 25조제5항 또는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 효력이 있게 되는 구조세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 표 제1호 또는 제45조제1항 표의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전시장 건물과 그 건물에 관한 상각자산을 제외한다) 및 그 주택 부지의 토지(실시 계획이 결정된 날 이후 취득한 것에 한정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부지로 해당 주택 건설 착수가 있는 경우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고정자산세에 대한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하기로 하는 경우

(대상 설비에 관한 소득 금액 등의 계산 방법)

제4조

전조 제1호의 해당 설비에 관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구분마다 각각 해당 각호에 명시된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해당하는 주된 사업이 전기 공급 업체, 가스 공급 업체 또는 창고업의 법인의 경우

해당 도도부현에서 그 법인에게 부과하는 사업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사업 연도에 관한 소득 ×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시설에 관련된 고정 자산의 가액 ÷ 그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의 해당 도도부현에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고정 자산의 가액(주된 사업이 전기 공급 업무 또는 가스 공급 업체 법인으로 고정 자산의 가액 중 공업 등에 제공되는 설비에 관한 고정 자산의 가액))

- 2) 전 호 이외의 경우

해당 도도부현에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사업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그 사업 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관계된 소득 ×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시설에 관련된 직원의 수 ÷ 해당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자의 해당 도도부현에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의 수)

2. 철도 사업 또는 궤도 사업(이하 "철궤도 사업"이라고 한다)과 이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함께하는 기업은 해당 철궤도 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항의 고정 자산의 가액과 직원의 수 및 전항의 철궤도 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부분을 소득의 산정은 지방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26호) 제72조48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 및 제72조5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세의 분할 기준 및 소득 산정의 예에 의한다.

부칙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제10조지역 등을 정하는 성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평성 20년 총무성령 제41호)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기준 재정 수입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10조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제 1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분간 법 제 10조의 총무성령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한다.
3. 농촌 지역 공업 도입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호의 금액 계산에 관한 성령(쇼와 46년 자치성령 제21호)는 폐지한다.

부칙(평성 2년 3월 31일 자치성령 제10호)

1. 이 성령은 평성 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후 제 2조의 규정은 이 성령의 실행일 이후에 신설된 또는 증설되는 생산 설비에 대해 적용하고, 이날 이전에 신설된 또는 확장된 생산 설비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8년 3월 29일 자치성령 제10호) 발취

1. 이 성령은 평성 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제10조지역 등을 지정하는 성령 제 2조의 규정은 이 성령의 실행일 이후에 신설되거나 또는 증설되는 생산 설비에 대해 적용하고, 이날 전에 신설되거나 또는 확장된 생산 설비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0년 3월 30일 자치성령 제10호)

이 성령은 평성 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29일 자치성령 제16호)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제10조지역 등을 지정하는 성령 제 2조의 규정은 이 성령의 실행일 이후에 신설된 또는 증설되는 생산 설비에 대해 적용하고, 이날 전에 신설된 또는 확장된 생산 설비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수입 촉진 및 대내 투자 사업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 15조의 지방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될 것 등을 정하는 성령 제2조2 제1항 제1호와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이 성령의 실행일 이후에 신설된 또는 증설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날 이전에 신설된 또는 확장된 감가상각자산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2년 9월 14일 자치성령 제44호)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 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43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제10조지역 등을 지정하는 성령 제 2조의 규정은 이 성령의 실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 이후 신설된 또는 증설되는 생산 설비에 대해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또는 확장된 생산 설비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6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74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2조의 규정("평성 16년 3월 31일"을 "평성 18년 3월 31일"로 개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 4조의 규정, 제 6조의 규정("제12조제1항 표의 제3호 또는 제45조제1항의 표 제3호"를 "제12조제1항 표의 제2호 또는 제45조제1항 표의 제2호"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 7조의 규정 및 제 8조의 규정은 평성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51호)
이 성령은 평성 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41호)

이 성령은 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평성 3년 4월 26일 법률 제48호)

최종개정 : 평성 14년 2월 8일 법률 제1호

- 제1장 총칙 (제 1조, 제 2조)
 - 제2장 기본방침 등 (제3조- 제 9조)
 - 제3장 특정 자원 절약 산업 (제10조- 제 14조)
 - 제4장 특정 재활용 산업 (제15조- 제 17조)
 - 제5장 지정 자원화 제품 (제18조- 제 20조)
 - 제6장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제21조- 제 23조)
 - 제7장 지정 표시 제품 (제 24조, 제 25조)
 - 제8장 지정 재활용 제품 (제26조- 제 33조)
 - 제9장 지정 부산물 (제34조- 제 36조)
 - 제10장 기타 조항 (제37조- 제 41조)
 - 제11장 벌칙 (제42조- 제 44조)
-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주요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최근 국민 경제의 발전에 따라 자원을 대량으로 사용되는 것에 의해 다 쓴 물품 등과 부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그 상당 부분이 폐기되어, 재생 자원 및 재생 부품의 상당 부분이 이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상황에 따라,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폐기물 발생 억제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 부품 등과 부산물의 발생 억제 및 재생 자원 및 재생 부품의 이용 촉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다 쓴 물품 등"은 한 번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고 수집, 혹은 폐기된 물품(방사성 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부산물"이라함은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혹은 판매, 에너지 공급 또는 토목건축에 관한 공사(이하 "건설 공사"라고 한다)에 따라 부차적으로 취득한 물품(방사성 물질과 이렇게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부산물의 발생 억제 등"이라함은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부품, 기타 물품(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쇼와 54년 법률 제49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료를 제외한다. 이하 "원자재 등"이라고 한다) 사용의 합리화에 의해 그 원재료 등의 사용에 관한 부산물 발생의 억제를 행하는 것 및 그 원재료 등의 사용에 관한 부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 자원으로써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재생 자원"은 다 쓴 물품 등 또는 부산물 중 유용한 것으로,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재생 부품"은 다 쓴 물품 등 중에 유용한 것으로 부품, 기타 제품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재자원화"는 다 쓴 물품 등 중 유용한 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7. 이 법률에서 "특정 자원 업종"은 부산물의 발생 억제 등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하며, 또한, 부산물의 발생 억제를 하는 것이 그 원재료 등에 관한 자원과 해당 부산물에 관한 재생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원료 등의 종류 및 그 사용에 관한 부산물의 종류별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8. 이 법률에서 "특정 재이용 업종"은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하며, 또한,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해당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효과적인 이용 도모에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종류별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이 법률에서 "지정 자원화 제품"은 그것에 관한 원재료 등 사용의 합리화, 그 장기간의 사용 촉진, 기타 해당 제품에 관한 다 쓴 물품 등의 발생 억제를 촉진하는 것이 해당 제품에 관련된 원료 등에 관한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 법률에서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은 그것이 한 번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고 수집, 혹은 폐기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으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해당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1. 이 법률에서 "지정 표시 제품"이라함은 그것이 한 번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고 수집, 혹은 폐기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리수거 (종류별로 분리하여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해당 재생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2. 이 법률에서 "지정 재자원화 제품"은 제품(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그것이 한 번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고 수집, 혹은 폐기된 후에 그것을 해당 제품(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있어서는 해당 제품 또는 그러한 다른 제품을 포함한다) 제조, 가공, 수리 혹은 판매 사업을 하는 자가 리콜(자신이 회수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그 리콜이 되었던 전부 또는 일부의 재활용을 하는 것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하며, 동시에 그 재활용을 하는 것이 해당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이 법률에서 "지정 부산물"은 에너지 공급 또는 건설 공사에 관한 부산물이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 자원으로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해당 재생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기본 방침 등

(기본 방침)

제3조

주무대신은 다 쓴 물품 등과 부산물의 발생 억제 및 재생 자원과 재생 부품의 이용에 따른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이하 이 장에서 "자원의 유효한 이용"이라고 한다)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2. 기본 방침은 제품의 종류 및 부산물의 종류별 원재료 등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목표, 재생 자원의 종류 및 재생 부품의 종류마다 이들의 이용에 관한 목표, 제품의 종류마다의 장기간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의 의의에 대한 지식의 보급에 관한 사항, 기타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자원의 유효 이용에 관한 기술 수준, 기타 상황 감안하여 결정해야한다.

3. 주무대신은 전항의 상황 변화를 위한 필요가 있을 때 기본 방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방침의 개정에 준용한다.

(사업자 등의 책무)

제4조

공장이나 사업장(건설 공사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업을 하는 자와 물품의 판매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사업 또는 그 건설 공사 발주를 할 때 원재료 등의 사용 합리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재생 자원 및 재생 부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2. 사업자 또는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제품의 장기간 사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그 사업에 관련된 제품을 한 번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고 수집, 혹은 폐기된 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 자원이나 재생 부품으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거나 또는 사업 또는 그 건설 공사에 관한 부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의 책무)

제5조

소비자는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거나 재생 자원 및 재생 부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 조치에 협력해야한다.

(자금의 확보 등)

제6조

국가는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2. 국가는 물품 조달에 있어서는, 재생 자원 및 재생 부품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려를 해야한다.

(과학 기술의 진흥)

제7조

국가는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과학 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 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국민의 이해를 증진 등을 위한 조치)

제8조

국가는 교육 활동,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그 실시에 대한 국민의 협력을 요청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3장 특정 자원 업종

(특정 자원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제10조

주무대신은 특정 자원 업종에 관련된 원재료 등 사용의 합리화에 의한 부산물의 발생 억제 및 그 부산물에 관한 재생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무성령으로 부산물의 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기타 조치와 관련해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특정 자원 절약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특정 자원 사업자"라고 한다)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특정 자원 업종에 관련된 원재료 등의 사용 합리화에 의한 부산물의 발생 억제 상태, 원재료 등의 사용 합리화에 의한 부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기술 수준, 기타 사정과 해당 부산물에 관한 재생 자원의 이용 상황, 재생 자원 이용 촉진에 관한 기술 수준, 기타 사정을 감안해 결정하며,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무대신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하거나 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개정을 하려고 할 때,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환경대신과 협의해야한다.

(지도와 조언)

제11조

주무대신은 특정 자원 업자의 부산물 발생 억제 등의 적합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특정 자원 절약 사업에 대해,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감안해 부산물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조언을 할 수 있다.

(계획 작성)

제12조

특정 자원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 연도 해당 특정 자원 사업자의 제조에 관해

정령으로 지정하는 제품의 생산량이 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서 정한 부산물의 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적인 조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권고 및 명령)

제13조

주무대신은 특정 자원 사업자인 경우 해당 제조에 관련된 제품의 생산량이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의 그 특정 자원 업종에 관련된 부산물의 발생 억제 등이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자원 사업자에게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해당 특정 자원 업종에 관련된 부산물의 발생 억제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특정 자원 사업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 주무대신은 제1항에 규정된 권고를 받은 특정 자원 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특정 자원 업종에 관련된 부산물의 발생 억제 등에 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등(국가 행정 조직법(쇼와 23년 법률 제120호) 제 8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의 의견을 듣고, 해당 특정 자원 사업자에게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환경대신과의 관계)

제14조

주무대신은 특정 자원 업종의 부산물의 발생 억제 등의 적합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시책의 실시가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시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환경대신과 긴밀한 연락 하에 이루어져야한다.

제4장 특정 재이용 업종

(특정 재이용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제15조

주무대신은 특정 재이용 업종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사용을 촉진

하기 위해 주무성령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특정 재활용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특정 재이용 사업자"라고 한다)의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특정 재이용 업종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 상황,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에 관한 기술 수준, 기타 사정을 감안해 결정하며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개정을 해야한다.

3.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하고,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도와 조언)

제16조

주무대신은 특정 재이용 사업자의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 이용의 적합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재이용 사업자에게 전조 제1항에 규정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감안하여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조언을 할 수 있다.

(권고 및 명령)

제17조

주무대신은 특정 재이용 사업자로, 그 제조에 관련된 제품의 생산량 또는 그 시공에 관한 건설 공사의 시공 금액이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의 그 특정 재활용 산업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사용이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재이용 사업자에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밝히고, 혹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특정 재이용 사업자에 대해서 그 판단의 근거를 게시하고, 해당 특정 재이용 업종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특정 재이용 사업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 주무대신은 제1항에 규정된 권고를 받은 특정 재이용 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 해당 특정 재활용 산업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등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의 의견을 듣고 해당 특정 재이용 사업자에 대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장 지정 자원화 제품

(지정 자원화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제 18조

주무대신은 특정 자원화 제품에 관한 다 쓴 물품 등의 발생 억제를 촉진하기 위해 주무성령으로 지정된 자원화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이하 "지정 자원화 사업자"라고 한다)의 다 쓴 물품 등의 발생 억제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지정 자원화 제품에 관한 다 쓴 물품 등의 발생 억제 상태, 다 쓴 물품 등의 발생 억제에 관한 기술 수준,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개정을 해야 한다.

3.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도와 조언)

제19조

주무대신은 특정 자원화 제품에 관한 다 쓴 물품 등의 발생 억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자원화 사업에 대해,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감안해 다 쓴 물품 등의 발생 억제에 필요한 지침과 조언을 할 수 있다.

(권고 및 명령)

제20조

주무대신은 특정 자원화 사업자로 그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지정 자원화 제품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그 지정 자원화 제품에 관한 다 쓴 물품 등의 발생 억제가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자원화 사업에 대해, 그 판단의 근거를 표시하고, 그 지정 자원화 제품에 관한 다 쓴 물품 등의 발생 억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지정 자원화 사업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 주무대신은 제1항에 규정된 권고를 받은 지정 자원화 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그 지정 자원화 제품에 관한 다 쓴 물품 등의 발

생 억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등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정 자원화 사업에 대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장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제21조

주무대신은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무성령으로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이하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자"라고 한다)의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 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 상황,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 촉진에 관한 기술 수준, 기타 사정을 감안해 결정하고,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개정을 해야한다.

3.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하거나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도와 조언)

제22조

주무대신은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에 대해,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 될 사항을 감안하여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 촉진에 필요한 지침과 조언을 할 수 있다.

(권고 및 명령)

제23조

주무대신은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자로 그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의 그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 촉진이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에 대해,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

촉진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 주무대신은 제1항에 규정된 권고를 받은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그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 촉진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등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정 재사용 촉진 사업에 대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장 지정 표시 제품

(지정 표시 사업자의 표시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제24조

주무대신은 지정 표시 제품에 관련된 재생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무성령으로 지정 표시 제품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표시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 1) 재질 또는 재료 추가 분리수거에 관해 표시하여야 할 사항
- 2) 표시 방법, 기타 전항에 규정된 사항 표시 시 지정 표시 제품의 제조, 가공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해당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표시 제품의 제조를 주문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 표시 사업자"라고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표시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준용한다.

(권고 및 명령)

제25조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동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하 "표시 사항"이라고 한다)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동항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이하 "준수 사항"이라고 한다)을 준수하지 않은 지정 표시 사업자(중소기업 기본법(쇼와 38년 법률 제 154호)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해당 정령에서 정한 소득 금액이 정령에서 지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 표시 사업자에 대해 표시 사항을 표시하거나 또는 준수 사항을 준수해야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지정 표시 사업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 주무대신은 제1항에 규정된 권고를 받은 지정 표시 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그 지정 표시 제품에 관련된 재생 자원의 이용 촉진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등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정 표시 사업자에 대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8장 지정 재자원화 제품

(지정 재자원화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제26조

주무대신은 특정 재활용 제품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무성령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해 지정된 재활용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또는 판매 사업을 행하는 자(지정 재활용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정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 재활용 사업자"라고 한다)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할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 1) 다 쓴 지정 재자원화 제품(지정 재자원화 제품이 한 번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고 수집, 혹은 폐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수의 실효성 확보, 기타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 2) 다 쓴 지정 재자원화 제품의 재자원화 목표에 관한 사항과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 3) 다 쓴 지정 재자원화 제품에 대해서 시정촌으로부터 인수 요구를 받았을 경우의 인수 실시, 인수 방법, 기타 도시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 4) 기타 회수와 재자원화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

2. 전항에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은 그 다 쓴 지정 재자원화 제품에 관련된 회수 및 재자원화 현황, 재자원화에 대한 기술 수준, 시정촌이 실시하는 수집과 처리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개정을 해야한다.

(다 쓴 재자원화 제품의 회수 및 재자원화의 인정)

제27조

지정 재자원화 사업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 쓴 지정 재자원화 제품의 회수 및 재자원화를 실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1) 회수와 재활용이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 부합하는 것
- 2) 회수와 재활용에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 3) 전 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4)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지정된 재자원화 사업자의 신청에 관련된 회수 및 재활용에 있어서는 다음 ①과 ②에 부합하는 것
 - ① 둘 이상의 지정된 재자원화 사업자와 해당 업종에 속하는 다른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이 보장되는 것
 - ② 일반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없는 것

2. 전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회수와 재자원화의 대상으로 다 쓴 지정 재자원화 제품의 종류
 - 3) 회수와 재활용 목표
 - 4) 회수와 재자원화에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는 자 및 회수와 재자원화에 필요한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 5) 회수와 재자원화 방법, 기타 내용에 관한 사항
3.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 신청에 관련된 회수 및 재자원화가 동항 각호의 사항에 모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항의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변경 승인)

제28조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지정 재자원화 사업자(이하 "공인 지정 재자원화 사업자"라고 한다), 동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 열거한 사항의 변경(주무성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2.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변경 인정을 준용한다.

(인증의 취소)

제29조

주무대신은 제27조제1항의 인정에 관한 회수와 재자원화가 동항 각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 거래위원회와의 관계)

제30조

주무대신은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지정된 재자원화 사업자의 신청에 관련된 회수 및 재자원화에 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다음 항과 다음 조에서 같다)을 하려고 하는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련된 회수 및 재자원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정당 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정 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대신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하면 회수와 재자원화를 위한 조치로서 주무대신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것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배려)

제31조

환경대신은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쇼와 45년 법률 제137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회수와 재자원화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지도와 조언)

제32조

주무대신은 다 쓴 지정 재자원화 제품의 회수와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재자원화 사업자에게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감안하여 다 쓴 지정 재자원화 제품의 회수 및 재자원화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조언을 할 수 있다.

(권고 및 명령)

제33조

주무대신은 특정 재자원화 사업자로, 그 제조 혹은 판매에 관한 지정 재자원화 제품 또는 지정 재자원화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제26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다 쓴 지정 재자원화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이 동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재자

원화 사업자에게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한 지정 재자원화 제품의 회수와 재자원화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지정 재자원화 사업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 주무대신은 제1항에 규정된 권고를 받은 지정 재자원화 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해당 지정 재자원화 제품의 회수 및 재자원화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등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정 재자원화 사업자에 대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장 지정 부산물

(지정 부산물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제34조

주무대신은 지정 부산물에 관한 재생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무성령으로 사업장에서 지정 부산물에 관련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지정 부산물 사업자"라고 한다)의 재생 자원 이용 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지정 부산물에 관한 재생 자원의 이용 상황, 재생 자원 이용 촉진에 관한 기술 수준,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개정을 해야한다.

3.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하거나 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도와 조언)

제35조

주무대신은 지정 부산물에 관한 재생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부산물 사업자에게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감안하여 재생 자원 이용 촉진에 필요한 지침과 조언을 할 수 있다.

(권고 및 명령)

제36조

주무대신은 지정 부산물 사업자로, 그 공급에 관한 에너지 공급량 또는 그 시공에 관한 건설 공사의 시공 금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정 부산물에 관한 재생 자원의 이용 촉진이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부산물 사업자에게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지정 부산물에 관련된 재생 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지정 부산물 사업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 주무대신은 제1항에 규정된 권고를 받은 지정 부산물 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정 부산물에 관한 재생 자원의 이용 촉진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등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정 부산물 사업자에게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 조항

(보고 및 출입검사)

제37조

주무대신은 제13조 및 제17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자원 사업자 또는 특정 재이용 사업자에게 그 업무 상황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특정 자원 사업자 또는 특정 재이용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 시설,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주무대신은 제 20조,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자원화 사업자,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자 또는 지정 표시 사업자에 대해, 지정 자원화 제품,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또는 지정 표시 제품에 관련된 업무 상황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특정 자원화 사업자,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자 또는 지정 표시 사업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거나 지정 자원화 제품,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또는 지정 표시 제품,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주무대신은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인정 지정 재활용

사업자에게 해당 인증에 관한 다 쓴 지정 재활용 제품의 회수 또는 재자원화의 실시 상황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공인 지정 재자원화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주무대신은 제33조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재자원화 사업자에게 다 쓴 지정 재자원화 제품의 회수 또는 재자원화 실시 상황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지정된 재자원화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5. 주무대신은 전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 사업자의 지정 부산물에 관련된 업무 상황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지정 부산물 사업자의 사무실, 발전소,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거나 지정 부산물,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6. 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한다.

7.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의 신청 절차의 의견 청취)

제38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제외한다)은 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한 후 공개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해야한다.

2. 전항의 통지에서는 날짜, 장소와 사건의 내용을 보여주어야 한다.

3. 제1항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주무대신 등)

제39조

이 법률의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이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방침의 책정 및 공포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농림수산대신, 재무대신, 후생노동대신 그리고 환경대신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의 책정, 동조 제2항

에 규정된 해당 조항의 개정, 제 11조에서 규정하는 지침과 조언, 제 12조에 규정된 계획,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권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정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징수 및 출입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정 자원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의 책정, 동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조항의 개정, 제 16조에 규정된 지침과 조언,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권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정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징수 및 출입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정 재자원화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의 책정, 동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조항의 개정, 제 19조에 규정된 지침과 조언,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권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의 책정, 동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사항의 개정, 제 22조에 규정된 지침과 조언,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권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의 책정, 제 25조제1항에 규정된 권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징수 및 출입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 자원화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혹은 판매 사업, 그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혹은 판매 사업 또는 그 지정 표시 제품의 제조, 가공이나 판매 사업(해당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표시 제품의 제조를 주문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 5)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의 책정, 동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조항의 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제30조규정에 의한 의견, 제 32조에 규정된 지침과 조언,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권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정령 제37조제3항과 제4항 규정에 의한 보고, 징수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정 재활용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혹은 판매 사업 또는 그 지정 재활용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제26조 제1항의 정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혹은 판매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과 환경부대신
- 6)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의 책정, 동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조항의 개정, 제 35조에 규정된 지침과 조언,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권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정령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징수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정 부산물에 관련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

2. 이 법률의 주무성령은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결정한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동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동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 결정하는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3. 이 법률에 의한 권한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지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

주무대신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대신에 대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 촉진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경과 조치)

제41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에 해당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제42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 2)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이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한 자

제44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 두 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 각 조항의 형을 과한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 무이자 대출 등)

제2조

국가는 당분간 지방 공공단체에 대해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의 주식 매도수입의 활용에 의한 사회자본의 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62년 법률 제86호)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민간 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민간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에 충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2. 그러한 국가의 대출 상환 기간은 5년(2년 이내의 거치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전항에 명시된 것 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상환 방법, 상환 기한을 앞당기거나 기타 상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4.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의 대상인 사업에 대해 해당 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그 수당에 관해서는 해당 대출의 상환 시에 해당 대출의 상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을 받은 무이자 대출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상환 기한을 앞당겨 상환을 하는 경우(정령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전항 규정의 적용은 해당 상환의 상환 기한 도래 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칙(평성 51년 1월 12일 법률 제89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행정 절차법(평성 5년 법률 제88호) 실행일부터 시행한다.

(자문 등이 되는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률 시행 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기타 합의제의 기관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 13조에 규정된 청문이나 변명 기회 부여 절차, 기타 의견 진술을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문, 기타 구매에 관한 불이익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관계없이,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13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청문회에 관한 규정 강화에 따른 경과 조치)

제14조

이 법률 시행 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열린 청문이나 청문회(불이익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위한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관련 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정령에의 위임)

제15조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 결정한 것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법률 제113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처분 등의 효력)

제2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 재생 자원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검토)

제4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7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평성 14년 2월 8일 법률 제1호) 첨부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성 3년 10월 18일 정령 제 327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2월 6일 정령 제22호

내각은 재생 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3년 법률 제48호) 제2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이 정령을 제정한다.

(특정 자원 업종)

제1조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7항 정령으로 정하는 원료 등의 종류 및 그 사용에 관한 부산물의 종류별로 정령이 정하는 업종은 별표 제 1의 입력란에 규정된 원재료 제품과 동일한 표 제 2에 규정된 부산물 별로 각각 동표 제 3 입력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특정 재활용 산업)

제2조

법 제2조제8항 정령으로 정하는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종류별로 정령이 정하는 업종은 별표 제 2의 상란에 규정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마다 각각 동표의 중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자원화 제품)

제3조

법 제2조제9항 정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별표 제 3 상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제4조

법 제2조제10항 정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별표 제 4 상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표시 제품)

제5조

법 제2조제11항 정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별표 제 5 상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재활용 제품)

제6조

법 제2조제12항 정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별표 제 6 상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부산물)

제7조

법 제2조제13항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 정령이 정하는 부산물은 별표 제 7 상란에 규정된 업종마다 각각 동표의 중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특정 자원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제품과 생산량의 요건)

제8조

법 제12조정령이 정하는 제품은 별표 제 1-3 입력란에 규정된 특정 자원 절약 산업별로 각각 동표 4 입력란에 규정된 대로 하고, 동조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이 항에 규정된 제품별로 그 사업 연도의 생산량이 각각 동표 제 5에 규정된 생산량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 자원 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관한 생산량의 요건)

제9조

법 제13조제1항 정령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제 1의 제 3란에 규정된 특정 자원 절약 산업에 관한 동표 제 4란에 규정된 제품별로 그 사업 연도의 생산량이 각각 동표의 제 6란에 규정된 생산 양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 자원 사업자에 대한 명령에 관한 의견을 듣는 위원회 등)

제10조

법 제13조제3항의 위원회 등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별표 제 1 제 3란에 규정된 특정 자원 산업에 관련된 특정 자원 사업자 별로 각각 동표 제 7 상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특정 재활용 사업자에 관한 생산량 또는 시공 금액의 요건)

제 11조

법 제17조제1항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표 제 2 제 2란에 규정된 특정 재활용 업종마다 각각 동표의 제 3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특정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명령에 관해 의견을 듣는 위원회 등)

제12조

법 제17조제3항의 위원회 등에서 정령이 정하는 것은 별표 제 2 제 2란에 규정된 특정 재활용 산업에 관련된 특정 사용 사업자별로 각각 동표 제 4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자원화 사업자에 관한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요건)

제13조

법 제20조제1항 정령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제 3 상란에 규정된 지정 자원화 제품별로 각각 동표에서 입력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자원화 사업자에 대한 명령에 대한 의견을 듣는 위원회 등)

제14조

법 제20조제3항의 위원회 등에서 정령이 정하는 것은 별표 제 3 상란에 규정된 지정 자원화 제품에 관련된 지정 자원 절약화를 사업자별로 각각 동 표 하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자에 관한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요건)

제15조

법 제23조제1항 정령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제 4 상란에 규정된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별로 각각 동표에서 입력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자에 대한 명령에 관한 의견을 듣는 위원회 등)

제16조

법 제23조제3항의 위원회 등에서 정령이 정하는 것은 별표 제 4 상란에 규정된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에 관한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자별로 각각 동표 하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정 표시 사업자)

제17조

법 제25조제1항 정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 1) 상시 고용하는 직원 수가 20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 상업과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 2) 상시 고용하는 직원의 수가 5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 3) 상시 고용하는 직원 수가 20명 이하 단체 등(농업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 농사 조합법인, 산림조합, 생산 산림조합, 산림 조합 연합회, 수산업 협동조합, 소비 생활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 협동조합, 사업 협동 소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기업 조합, 상공 조합, 상공 조합 연합회, 상점가 진흥 조합 및 상점가 진흥 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으로, 상업과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 4) 상시 고용하는 직원의 수가 5명 미만 조합 등으로,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 5) 상시 고용하는 직원 수가 20명 이하의 일반 사단 법인 등(일반 사단 법인 일반 재단 법인, 주조 조합, 주판 조합, 주조 조합 연합회, 주판 조합 연합회, 주조 조합 중앙회, 학교 법인, 사립 학교법(쇼와 24년 법률 제 270호)제6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종교 법인, 의료 법인, 사회 복지 법인, 중소기업 단체 중앙회, 상공 회의소, 상공회와 도도부현 상공회 연합회를 말한다)
2. 법 제25조제1항 정령으로 정하는 소득 금액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사업 연도(그 기간이 일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그 개시일 이후 일년 단위로 구분하여 각 기간으로 한다)에 하는 모든 사업 수입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3. 법 제25조제1항 정령이 정하는 요건은 소득 금액이 2억 4천만엔(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7천만엔) 이하로 한다.

(지정 표시 사업자에 대한 명령에 관한 의견을 듣는 위원회 등)

제18조

법 제25조제3항의 의위원회 등에서 정령이 정하는 것은 별표 제 5 상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에 관한 동표 입력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사업자별로 각각 동표 아래 입력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재활용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제품)

제19조

법 제26조제1항 정령이 정하는 제품은 별표 제 8 상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재활용 사업자에 관한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요건)

제20조

법 제33조제1항 정령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제 6 상란에 규정된 지정 재활용 제품에 있어서는 그 지정 재활용 제품별로 각각 동표 입력란에 규정된 대로 하고, 별표 제 8 상란에 내건 제품에 있어서는 해당 제품마다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 또는 판매 대수가 각각 동표에 규정된 생산 대수 또는 판매 대수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명령에 관한 의견을 듣는 위원회 등)

제21조

법 제33조제3항의 의위원회 등에서 정령이 정하는 것은 별표 제 6 상란에 규정된 지정 재활용 제품에 관한 지정 재활용 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지정 재활용 사업자별로 각각 동표 하란에 규정된 대로 하고, 별표 제 8 상란에 규정된 제품에 관한 지정 재활용 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지정 재활용 사업자별로 각각 동표 하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부산물 사업자에 관한 공급량 또는 시공 금액의 요건)

제22조

법 제36조제1항 정령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제 7 제 1란에 규정된 지정 부산물마다 각각 동표의 제 3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지정 부산물 사업자에 대한 명령에 관한 의견을 듣는 위원회 등)

제23조

법 제36조제3항의 의원회 등에서 정령이 정하는 것은 별표 제 7 제 2란에 규정된 지정 부산물에 관한 지정 부산물 사업자별로 각각 동표 제 4란에 규정된 대로 한다.

(보고 및 출입 조사)

제24조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 자원 사업자에게 그 특정 자원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를 시킬 수 있다.

- 1) 제품의 제조 업무에 관한 사항
- 2) 원재료 등의 사용량, 부산물 발생량, 부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시설의 현황, 기타 부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 3) 부산물에 관한 재생 자원 판매량, 재생 자원 이용 촉진에 관한 시설의 현황, 기타 재생 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특정 자원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 부산물의 발생 억제 장비, 부산물에 관한 재생 자원의 이용 촉진을 위한 설비 및 제품 제조를 위한 설비 및 이들의 관련 시설, 그 사용에 관한 원재료 등 및 해당 원료 등의 사용에 관한 부산물 및 관계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25조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 재활용 사업자에게 그 특정 재활용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를 시킬 수 있다.

- 1) 제품의 제조 또는 건설 공사의 시공 업무에 관한 사항
- 2)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 사용량,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에 관한 시설의 현황, 기타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특정 재활용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에 관한 설비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또는 건설 공사의 시공을 위해 설비 및 이들의 관련 시설, 그 이용에 관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 및 관계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26조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원화 사업에 대해, 그 제조 또는 판매에 관련된 지정 자원화 된 제품에 관련된 업무 상황에 대해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를 시킬 수 있다.

- 1) 해당 지정 자원화 제품의 종류 및 수량, 기타 그 지정 자원화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업무에 관한 사항
- 2) 해당 지정 자원화 제품에 관해 다 쓴 물품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구조 개선, 기타 다 쓴 물품 등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2.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특정 자원화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 해당 제조에 관련된 지정 자원화 된 제품, 그 지정 자원화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과 관련 시설, 그 판매에 관련된 지정 자원화 된 제품 및 관계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27조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활용 촉진 사업에 대해, 그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에 관련된 업무 상황에 대해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를 시킬 수 있다.

- 1) 해당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의 종류 및 수량, 기타 그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업무에 관한 사항
- 2) 해당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에 관련된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타 재생 자원 또는 재생 부품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지정 재이용 촉진 사업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 그 제조에 관한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그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과 관련 시설, 그 판매에 관한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및 관계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28조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정 표시 사업자에게 그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지정 표시 제품에 관련된 업무 상황에 대해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를 시킬 수 있다.

- 1) 해당 지정 표시 제품의 종류 및 수량, 기타 해당 지정 표시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업무에 관한 사항

- 2) 해당 지정 표시 제품에 관한 표시 사항, 조건 및 준수 사항, 준수 여부
2.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지정 표시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 그 제조에 관한 지정 표시 제품, 그 지정 표시 제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 및 해당 지정 표시 제품에 관한 표시 사항에 관한 시설 및 이들의 관련 시설, 그 판매에 관한 지정 표시제품, 그 지정 표시 제품에 관한 표시 사항을 위한 시설 및 관련 시설 및 관계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29조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활용 사업자에게 그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해 다 쓴 지정 재활용 제품 회수 또는 재활용의 실시 상황에 대해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를 시킬 수 있다.

- 1) 그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지정 재활용 제품 또는 지정 재활용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별표 제 8 상란에 규정된 제품의 종류 및 수량
 - 2) 다 쓴 지정 재활용 제품 회수 또는 재활용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 3) 다 쓴 지정 재활용 제품의 회수 수량 또는 그러한 다 쓴 지정 재활용 제품의 재활용으로 얻은 재생 자원이나 재생 부품 수량
 - 4) 다 쓴 지정 재활용 제품의 시정촌에서 인수를 요구 받았을 경우의 인수 실시, 인수 방법, 기타 도시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기타 그 다 쓴 지정 재활용 제품 회수 또는 재활용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지정된 재활용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 그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다 쓴 지정 재활용 제품, 그러한 다 쓴 지정 재활용 제품을 위한 시설과 재활용을 위한 시설 및 이들의 관련 시설 및 관계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30조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 사업자에게 그지정 부산물에 관련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를 시킬 수 있다.

- 1) 에너지의 공급 또는 건설 공사의 시공 업무에 관한 사항
- 2) 해당 지정 부산물 발생량
- 3) 해당 지정 부산물에 관한 재생 자원 판매량, 재생 자원 이용 촉진에 관한 시설의 현황, 기타 재생 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주무대신은 법 제37조제5항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지정된 재활용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 그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다 쓴 지정 재활용 제품, 그러한 다 쓴 지정 재활용 제품을 위한 시설과 재활용을 위한 시설 및 이들의 관련 시설 및 관계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주무대신)

제31조

법 제39조제1항 제4호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별표 제 3 상란에 규정된 지정 자원화 제품 제조 사업 및 동표 제 2, 제 3 그리고 제 6에서 제 10까지 상란에 규정된 지정 자원화 제품으로 판매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
- 2) 별표 제 3 상란에 규정된 지정 자원화 제품의 수리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대신
- 3) 별표 제 4의 제 1부터 제 34까지, 제 38, 제 46, 제 50란에 규정된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제조 사업 및 동표 제 10, 제 20, 제 23, 제 24와 제 27에서 제 30란에 규정된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으로, 판매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
- 4) 별표 제 4 제 35에서 제 38까지, 제 48과 제 49란에 규정된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제조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대신과 경제산업대신
- 5) 별표 제 4 제 7란에 규정된 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정비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대신
- 6) 별표 제 5 제 1과 제 5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의 제조 사업 및 그 지정 표시 제품으로, 판매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
- 7) 별표 제 5 제 2와 제 4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의 제조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과 경제산업대신
- 8) 별표 제 5 제 2와 제 4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으로, 판매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
- 9) 별표 제 5 제 3과 제 5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의 제조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재무대신과 경제산업대신
- 10) 별표 제 5 제 3과 제 5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으로, 판매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재무대신
- 11) 별표 제 5 제 6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 중 동항 중 제 1란에 규정하는

특정 용기 포장의 제조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

- 12) 별표 제 5 제 6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의 제조를 해당 사업에 대해 제공하기 위하여 주문하는 사업자(이하 "제조 발주 기관"이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동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지정 표시 제품에 넣거나 또는 그 지정 표시 제품을 포장한 상품으로, 판매 사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재무대신
 - 13) 별표 제 5 제 6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 생산 발주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동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지정 표시 제품에 넣거나 또는 그 지정 표시 제품을 포장한 상품으로, 판매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
 - 14) 별표 제 5 제 6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 생산 발주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동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지정 표시 제품에 넣거나 또는 그 지정 표시 제품을 포장한 상품으로 판매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
 - 15) 별표 제 5 제 6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 생산 발주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동항 중 입력란 여섯째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지정 표시 제품에 넣거나 또는 그 지정 표시 제품을 포장한 상품으로, 판매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
2. 법 제39조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별표 제 6 상란에 규정된 지정 재활용 제품 제조 사업 및 그 지정 재활용 제품으로 판매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과 환경대신
 - 2) 별표 제 8의 1부터 29까지에 규정된 제품 생산 기업 및 해당 제품으로, 판매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과 환경대신
 - 3) 별표 제 8의 20에서 28까지에 규정된 제품 생산 기업 및 해당 제품으로 판매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그리고 환경대신
3. 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별표 제 7 제1항에 규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
 - 2) 별표 제 7 제2항에 규정된 업종은 대해서는 국토교통대신
4. 법 제39조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결정 사항을 관할하는 성령은 각각 전세 항에 규정하는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32조

법 제 16조, 제 17조, 제 35조, 제36조및 제3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은 특정 재활용 사업자 또는 지정 부산물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정비국장과 북해도 개발 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무대신의 권한 중 국세청 소장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지정 표시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세국장(해당 지역이 오키나와 지역에 경우에 있어서는, 오키나와 국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재무 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실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한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은 지정 표시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후생국장(해당 지역이 시코쿠 후생 지국의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코쿠 후생 지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보건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실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4. 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지정 표시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농정 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농림수산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실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5. 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은 지정 표시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경제산업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실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平成 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의 대부금 상환 기간 등)

제2조

법 부칙 제2조제2항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2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전항의 기간은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의 주식 매도 수익을 통한 사회 자본의

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62년 법률 제86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준용되는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쇼와 30년 법률 제 179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결정(이하 "대부 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해 해당 대출 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대부(이하 "국가의 대출"이라고 한다)의 교부를 완료한 일(하루가 해당 대출 결정이 있던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 전날 이후의 일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말일의 전전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국가의 대부금 상환, 동등 연간 지출 상환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4. 국가는 국가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 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상환 기간을 앞당겨 상환시킬 수 있다.

5. 법 부칙 제2조제5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 기한을 앞당겨 상환을 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평성 5년 6월 23일 정령 제 216호)

이 정령은 평성 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제 31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 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3월 22일 정령 제56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4년 2월 8일 정령 제2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3월 17일 정령 제45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9년 3월 2일 정령 제39호)

이 정령은 일반 사단 법인 및 일반 재단 법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2월 6일 정령 제22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령의 시행일 전에 이 법령의 개정 이전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령"이라고 한다) 별표 제 5 제 6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 중, 이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이 법령의 개정 후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 제4항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이 된 것과 관련되는 자원 효과적인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지정 표시 사업자는 그 지정 표시 사업자가 구 시행령 별표 제 5의 제 6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에 관한 동조 제1항의 표시 사항을 표시하고, 동항의 준수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동조의 규정은 평성 21년 3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제 1 (제 1조, 제8조- 제10조관계)

제 1란	제 2란
1. 나무 조각, 펄프 또는 폐지	폐유
2.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석탄, 석유 혹은 가스 또는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원료 등	폐유
3. 철광석, 석회석, 고철이나 코크스, 기타 제철의 환원제	광재 ⁷⁾
4. 구리 광석 또는 바위	광재
5. 주조 모래, 철강이나 비철금속	금속 부스러기 또는 모래

별표 제 2(제 2조, 제 11조, 제12조관계)

제1란
1. 폐지
2. 다 쓴 경질 염화 비닐제의 관(경질 염화 비닐제의 관 또는 한 번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집, 혹은 폐기된 것을 말한다)
3. 유리조각
4. 다 쓴 복사기(복사기(건식 간접 정전식인 것에 한해, 컬러복사기, 기타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한 번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집, 혹은 폐기된 것을 말한다) 구동 장치, 기타 장치로서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
5. 토사, 콘크리트 덩어리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7) 금속 제련과정에서 분리되는 비금속성 찌꺼기

별표 제 3 (제 3조, 제 13조, 제 14조, 제31조관계)

1. 자동차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가 1만대 이상인 것
2. 개인용 컴퓨터(브라운관식 또는 LCD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 또는 판매 대수 (수입한 판매 대수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1만대 이상인 것
3. 유닛형 에어컨디셔너(패키지 용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 또는 판매 대수가 5만대 이상인 것
4. 슬롯머신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가 1만대 이상인 것
5. 회동식 놀이 기기	해당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가 5천대 이상인 것
6. 텔레비전 수상기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 또는 판매 대수가 5만대 이상인 것
7. 전자레인지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 또는 판매 대수가 1만대 이상인 것
8. 의류 건조기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 또는 판매 대수가 1천대 이상인 것
9. 전기냉장고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 또는 판매 대수가 5만대 이상인 것
10. 전기세탁기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 또는 판매 대수가 5만대 이상인 것
11. 수납 가구(금속제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가 1만대 이상인 것
12. 선반(금속제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가 1만대 이상인 것
13. 사무용 책상(금속제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가 1만대 이상인 것
14. 회전의자(금속 부재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해당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가 2만대 이상인 것
15. 석유 난로(밀폐 점화식인 것, 다른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가 1만대 이상인 것
16. 가스 스토브(그릴이 붙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가 1만대 이상인 것
17. 가스 순간 온수기(선지식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해당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가 5천대 이상인 것
18. 가스 버너가 있는 욕조(급탕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가 1만대 이상인 것
19. 온수기(석유를 연료로 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가 1만대 이상인 것

별표 제 4 (제 4조, 제 5조, 제 16조, 제31조관계)

1. 목욕 장치 (욕조, 소화전, 조명기구, 기타 목욕을 위해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가 일체로 제조되는 제품을 말한다)
2. 전원 공급 장치
3. 전동 공구
4. 유도 등
5. 화재 경보 설비
6. 도난 경보 장치
7. 자동차
8. 자전거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가진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9. 휠체어 (전동식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10. 개인용 컴퓨터
11. 프린터
12. 휴대용 데이터 수집 장치
13. 무선 이어폰
14. 팩스어 장치
15. 스위치
16. 휴대폰 장비
17. MCA 시스템 통신 장치
18. 단순 무선 용 통신 장비
19. 아마추어 용 무전기
20. 에어컨디셔너
21. 슬롯머신
22. 회전식 놀이 기구
23. 복사기
24. 텔레비전 수상기

25. 캠코더
26. 홈 스테레오
27. 전자 레인지
28. 의류 건조기
29. 전기 냉장고
30. 전기 세탁기
31. 진공 청소기
32. 면도기 (건전지를 넣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33. 전기 칫솔
34. 비상용 조명기구
35. 혈압계
36. 의약품
37. 전기 마사지
38. 수납 가구
39. 선반
40. 사무용 책상
41. 회전 의자
42. 시스템 키친 (부엌 싱크대, 요리에 대한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가 일체로 제조되는 제품을 말한다.)
43. 석유 스토브
44. 가스 스토브
45. 가스 순간 온수기
46. 가스 버너가 있는 욕조
47. 온수기
48. 가정용 전기 치료기
49. 전기 기포 발생기 (욕조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50. 전동 완구 (자동차 형식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별표 제 5(제 5조, 제 18조, 제31조관계)

1. 염화 비닐 제품 건축 자재 (경질 염화 비닐제의 관, 창틀 및 염화 비닐 재질의 바닥재와 벽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스틸 또는 알루미늄 깡통 (7리터 이하링 것에 한한다. 이하 단순히 "깡통"이라고 한다)으로, 음료 (주류를 제외하고 아래 단순히 "음료"라고 한다)인 것
3. 깡통으로 주류인 것
4. 폴리에틸렌 용기 (150ml 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폴리에틸렌 용기"이라고 한다)로, 음료 또는 특정 양념(간장, 식초, 기타 관할 성령으로 정하는 조미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인 것
5. 폴리에틸렌 용기로 주류인 것
6. 특정 용기 포장 (용기 포장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그 상품이 소비되거나 또는 해당 제품에서 분리된 경우 불필요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중 주로 종이 한 개 또는 주로 플라스틱 것을 말하며, 음료, 특정 조미료 또는 주류를 채우기 위한 폴리에틸렌 용기, 기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7. 밀폐형 배터리 (밀폐형 납축전지 (전기량이 234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밀폐형 알카라인 배터리 또는 리튬 배터리 (수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플라스틱, 기타 물질을 이용하여 피복한 것으로 한 기기의 부분품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별표 제 6 (제 6조, 제 20조, 제 21조, 제31조관계)

1. 개인용 컴퓨터 (무게가 1킬로그램 이하인 것 제외)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 또는 판매 대수가 1만대 이상인 것
2. 밀폐형 배터리 (밀폐형 납축전지, 밀폐형 알카라인 배터리 또는 리튬 배터리)	그 사업 년도의 생산 대수 또는 판매 대수가 1만대 이상인 것

별표 제 7 (제 7조, 제 22조, 제 23조, 제31조관계)

1. 전자업	석탄재	해당 사업 연도의 전력 공급이 1억 2천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2. 건설업	토사, 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또는 목재	해당 사업 연도의 건설 공사의 시공 금액이 5억엔 이상인 것

별표 제 8 (제19조- 제 21조, 제 29조, 제31조관계)

1. 전원 공급 장치	1천대	산업 구조위원회와 중앙 환경 심의회
2. 전동 공구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3. 유도등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4. 화재 경보 설비	1천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5. 도난 경보 장치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6. 자전거	1천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7. 휠체어	1천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8. 개인용 컴퓨터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9. 프린터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10. 휴대용 데이터 수집 장치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11. 무선 이어폰	2천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12. 팩스 장치	5천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13. 스위치	1천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14. 휴대폰 장비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15. MCA 시스템 통신 장치	1천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16. 단순 무선용 통신 장비	1천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17. 아마추어용 무전기	1천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18. 캠코더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19. 홈스테레오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20. 진공청소기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21. 면도기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22. 전기 칫솔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23. 비상용 조명기구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24. 혈압계	1만대	약사, 식품 위생 심의회,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25. 의약품	1천대	약사, 식품 위생 심의회,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26. 전기 마사지	1만대	약사, 식품 위생 심의회,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27. 가정용 전기 치료기	1만대	약사, 식품 위생 심의회,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28. 전기 기포 발생기	1만대	약사, 식품 위생 심의회,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29. 전동 완구	1만대	산업 구조 심의회 및 중앙 환경 심의회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2 제4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복사기에 관한 성령
(평성 13년 3월 28일 경제산업성령 제10호)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성 3년 정령 제 327호) 별표 제 2 제4항 상란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2 제4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복사기에 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복사기의 적용 제외)

제1조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한다) 별표 제 2 제4항 상란에서 규정하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복사기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A2 이상의 용지에 복사가 가능한 구조의 것
- 2) 분당 86매 이상의 복사가 가능한 구조의 것
- 3) 분당 16매 이상의 복사가 불가능한 구조의 것

(사용한 복사기의 장치)

제2조

시행령 별표 제 2 제4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용한 복사기 장치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구동 장치
- 2) 노광 장치
- 3) 용지, 이송 장치
- 4) 정착 장치

부칙

이 성령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3 제15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석유 스토브에 관한 성령
(평성 13년 3월 28일 경제산업성령 제51호)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성 13년 정령 제 327호) 별표 제 3 제15항 상란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3 제15항 상란의 규정하는 석유 스토브에 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3 제15항 상란의 규정하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석유 스토브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개방식으로 새로운 자연대류식인 것
- 2) 개방식으로 새로운 강제대류식인 것
- 3) 기화식으로 자연대류식인 것
- 4) 반밀폐식인 것

부칙

이 성령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 제4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조미료에 관한 성령

(평성 20년 2월 6일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령 제1호)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성 3년 정령 제 327호) 별표 제5 제4항의 상란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 제4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조미료에 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 제4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조미료는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으로, 식용 유지를 포함하지 않고, 또한, 간편한 세척에 의해 해당 물품을 담은 폴리에틸렌 용기에서 해당 물품 및 그 물품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1) 간장
- 2) 간장 가공품(주된 성분으로 간장을 이용해 풍미원료, 과즙, 식초, 설탕 류, 미림, 기타 조미료를 더한 것을 말한다)
- 3) 미림 풍 조미료(주된 원료로 설탕류, 쌀과 누룩을 사용, 곡물류 또는 발효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으로, 알코올 분(주세법(쇼와 28년 법률 제6호)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알코올 함유량을 말한다)이 1도 미만, 추출물 분(주세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추출물 분을 말한다)이 60도 이상으로, 각 산미료 및 조미료 이외의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4) 식초
- 5) 조미료 식초(주된 원료로 식초와 당류를 사용하고, 과즙, 간장, 소금, 기타 조미료를 더한 것으로, 주로 초밥, 초회⁸⁾와 절임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6) 드레싱 타입의 조미료

부칙

이 성령은 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식초 무침, 식초 절임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의 6항 상란에서 규정하는 특정 용기 포장에 관한 성령
(평성 13년 3월 28일 재무부,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령 제1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이 2월 6일 재무부,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령 제2호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성 3년 정령 제 327호) 별표 제 5의 6항의 상란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의 6항 상란에서 규정하는 특정 용기 포장에 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정의)

제1조

이 성령에서 "종이 용기 포장 등"은 주로 종이 용기 포장(주로 판지의 용기 포장 또는 주로 종이 용기로, 식용이나 주류를 채우기 위한 것(재료로 알루미늄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또는 주로 플라스틱 용기 포장(음료 특정 조미료(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의 4 상란에서 규정하는 조미료 관한 성령(평성 20년 농림 수산성, 경제산업성령 제1호)이 지정하는 조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류를 채우기 위한 폴리에틸렌 용기를 말한다)을 말한다.

2. 이 성령에서 "무늬가 없는 용기 포장"이라함은 그 사업(재무대신, 보건대신, 농림수산대신 또는 경제산업대신의 소관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제공되는 용기 포장의 제조를 주문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대해 제공될 때, 또는 용기 포장에 넣거나 혹은 용기 포장으로 포장한 상품으로, 스스로 수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를 할 때, 그 표면에 인쇄가 되지 않거나 또는 상표가 붙지 않는 용기 포장(그 제조 공정에 각인을 할 수 있는 성형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이 성령에서 "표시 불가능 용기 포장"이라함은 특정 용기 포장의 표시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평성 13년 재무부,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령 제2호) 별표 제 2 상란의 지정표시제품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하란에 명시된 양식에 근거하여, 그 표면에 인쇄할 라벨을 붙이거나 또는 각인하여 표시하는 것이 소재상, 구조상, 그 외에 부득이한 이유로 불가능한 용기 포장을 말한다.

4. 이 성령에서 "관련 용기 포장"이라함은 용기 포장에 넣거나 혹은 용기 포장으

로 포장한 상품을 입력하거나 또는 포장한 해당 용기 포장 이외의 용기(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한다) 별표 제 5의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상란에 규정된 지정 표시 제품을 구성하는 용기에 한한다) 또는 종이 용기 포장 등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제 5 제6항의 상란의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용기 포장)

제2조

시행령 별표 제 5 제6항의 상란의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용기 포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그 사업 활동에 따라 소비하는 상품을 넣거나 또는 포장하기 위한 용기 포장
- 2) 주로 골판지의 용기 포장
- 3) 주로 종이 용기로, 음료 또는 주류를 채우기 위한 것(재료로 알루미늄이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4) 음료, 특정 조미료 또는 주류를 채우기 위한 폴리에틸렌 용기(내용물이 150ml 미만의 것에 한한다)
- 5) 무지⁹⁾ 용기 포장 또는 표시 불가능인 용기 포장 등(해당 종이 용기 포장 등 관련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용기 포장의 전부가 무지의 용기 포장(종이 용기 포장 등에 한한다) 또는 표시 불가능 용기 포장인 것에 한한다)
- 6) 종이 용기 포장 등(인쇄 또는 각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한하며,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 제6항 중 중란 제1호로 규정하는 특정 용기 포장을 정하는 성령(평성 13년 경제산업성령 제52호)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용기를 제외한다)으로, 소매 판매(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말한다)를 업무로 하는 자가 판매할 때 상품을 넣거나 또는 포장하는 것(특정 제품을 넣거나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 그 표면이 1300평방 이하인 것
- 7) 종이 용기 포장 등에 넣거나 또는 종이 용기 포장 등으로 포장한 상품으로, 스스로 수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외국에서 스스로 그 종이 용기 포장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조를 주문하는 자 또는 이 사람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해당 종이 용기 포장 등의 소재, 구조, 자기의 상표 사용 등에 관한 지시를 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판매에 관한 그 종이 용기 포장 등 또는 그 종이 용기 포장 등에 넣거나 혹은 그 종이 용기 포장 등으로 포장한 상품을 넣거나 혹은 포장한 그 종이 용기 포장 등 이외의 용기 포장의 표면에 인쇄 라벨을 붙이거나 또는 각인함으로써 일본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9) 무늬가 없는 것

부칙

이 성령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2월 6일 재무부,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령 제2호)

이 성령은 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 제6항 중란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용기 포장을 정하는 성령
(평성 13년 3월 28일 경제산업성령 제52호)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성 3년 정령 제 327호) 별표 제 5 제6항 중란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 제6항 중란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용기 포장을 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 제6항 중란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용기 포장 중 상품의 용기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제품 용기로 한다.

1. 특정 용기 포장 (상품 배이다 것에 한한다) 중 주로 종이로 된 것이고, 다음에 열거하는 것

- 1) 상자와 케이스
- 2) 컵 모양의 용기와 컵
- 3) 접시
- 4) 가방
- 5) 1)에서 4)까지 규정된 것에 준하는 구조, 형상이 있는 용기
- 6) 용기 마개, 뚜껑, 캡 및 이와 유사한 것
- 7) 용기에 넣은 제품의 보호 또는 조정을 위해 가공, 해당 용기로의 접착 등이 되어 그 용기의 일부로 사용되는 용기

2. 특정 용기 포장(상품 용기인 것에 한한다) 중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1) 상자와 케이스
- 2) 단지
- 3) 원통형의 나무통과 통
- 4) 컵 모양의 용기와 컵
- 5) 접시
- 6) 구멍이 있는 시트재의 용기
- 7) 튜브 모양의 용기
- 8) 가방
- 9) 1)에서 8)까지 규정된 것에 준하는 구조, 형상이 있는 용기
- 10) 용기 마개, 뚜껑, 캡 및 이와 유사한 것

11) 용기에 넣은 제품의 보호 또는 조정을 위해 가공, 해당 용기로의 접착 등이 되어 그 용기의 일부로 사용되는 용기

부칙

이 성령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출입 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성령
(평성 13년 3월 28일 재무부,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령 제1호)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3년 법률 제48호) 제37조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3년 법률 제48호) 제37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는 별기 양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

2. 재생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결정하는 성령(평성 4년 대장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건설성령 제1호)는 폐지한다.

별기 양식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규정된 계획에 관한 성령
(평성 13년 3월 28일 경제산업성령 제58호)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3년 법률 제48호) 제12조규정에 의거,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규정된 계획에 관한 성령을 다
음과 같이 결정한다.

(계획 제출시기 및 양식)

제1조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12조에서 규정
하는 계획 제출은 매 사업 연도 6월 말일까지로 별기 양식에 의해야한다.

(계획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기간)

제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한 사업자는 그 제출을 한 날 이후의 4년간에 포함
된 사업 연도 사이에 한해, 법 제 12조에서 규정하는 계획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성령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평성 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
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별기 양식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쇼와 36년 6월 13일 법률 제 216호)

최종개정 : 평성 14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저개발 지역의 산업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간의 경제 격차의 축소를 도모하고, 그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지구)

제2조

국토교통대신은 관계 도도부현 지사의 신청에 따라 국토 심의회의 강의를 통해 산업 발전 정도가 낮고, 또한, 경제 발전의 정체 지역(이하 "저개발 지역"이라고 한다) 중 해당 지역의 산업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저개발 지역의 산업 개발을 촉진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지구(이하 "개발 지구"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대신은 이 항의 신청에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공장 입지법(쇼와 34년 법률 제24호) 제2조규정에 의한 공장 적지 조사 등 산업 개발에 대한 국가의 조사가 있는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참작해야한다.

3. 국토교통대신은 개발 지역을 지정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정촌 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신청서에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5. 국토교통대신은 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 지구의 명칭 및 지역을 공시해야한다.

6. 국토교통대신은 관계 도도부현 지사의 신청에 따라 개발 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전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전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국토교통대신은 개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토 심의회의 회의를 통해 해당 개발 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8. 제2항, 제3항 및 제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이 개발

지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 준용한다.

(국토 심의회 조사 심의 등)

제3조

국토 심의회는 국토교통대신의 자문에 따라 저개발 지역의 공업 개발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2. 국토 심의회는 저개발 지역의 공업 개발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대신 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해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지방세의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

제5조

지방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26호) 제6조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지구 내에서 제조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영업세, 그 사업에 관한 공장 건물 또는 그 부지인 토지의 취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또는 그 사업에 관련된 기계 및 장치 또는 그 사업에 관한 공장 건물 또는 그 부지에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지방세에 관한 불균일 과세를 경우에 이러한 조치가 정령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 교부 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1호) 제14조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각 년도 기준 재정 수입액은 동조 규정에 관계없이,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각 년도분의 수입 감소 금액(영업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이러한 조치에 따른 수입 감소 금액으로 이러한 조치가 있는 최초년도 이후 3개년도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동조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각 년도의 기준 재정 수입액에 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조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각 연도(이들 조치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일 이후에 행해진 경우에는 그 수입 감소 액수에 대해서 그 각 연도의 다음 연도)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 되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자금의 확보 등)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지역의 산업 발달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제조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기관의 정비에 대해 필요한 자금 확보, 기타 원조에 노력해야한다.

(시설 정비 등)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지역의 산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장 용지, 도로, 항만 시설, 산업 용수, 통신 운수 시설 및 개발 지구 내 공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행하기 위한 시설 정비의 촉진에 노력해야한다.

제 8조

국가 행정 기관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개발 지역 내 토지를 전조에 규정하는 시설에 제공하기 위한 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그 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을 요구 받았을 때는 해당 개발 지역의 산업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재정상의 조치 등)

제9조

국가는 개발 지역의 산업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지방채에 대한 배려)

제10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지역의 산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금 사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37년 5월 10일 법률 제11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8년 10월 1일 법률 제10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9년 6월 26일 법률 제9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3년 5월 23일 법률 제55호) 발취

(시행 기일 등)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49조중 정신 위생법 제16조3 제3항과 제4항 개정 규정 및 제59조중 삼림법 제 70조의 개정 규정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경과한 날
- 2) 제 1조(태풍 지역 대책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6조에서 제 9조까지의 규정 제10조중 엄미군도 진흥개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개정 규정 및 제 11조, 제12조및 제 14조에서 제 32조까지의 규정 쇼와 54년 3월 31일 사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5항, 제14조제3항, 제 23조, 제28조 및 제 30조의 규정
공포한 날

(직원의 신분 인계)

제3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종전의 총리부, 법무성,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또는 자치성(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부성"이라고 한다)의 직원(국가 행정 조직법(쇼와 23년 법률 제120호) 제8조심의회 등의 회장 또는 위원장 및 위원, 중앙 방재 회의 위원, 일본 산업 표준 조사위원회의 회장과 위원 및 이들과 유사한 자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인 자는 별도로 발령을 발하지 않는 한, 동일한 근로 조건을 가지고 이 법 시행 후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혹은 환경청(이하 이 조에서 "새로운 부성"이라고 한다) 또는 이것에 둔 정부 기관이나 기관 중 이 법의 시행 시 현재 해당 직원이 속한 종전의 부성 또는 이에 두는 부서 혹은 기관의 상당 신 부성 또는 이에 두는 부서 혹은 기관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상당의 직원이 되는 것으로 한다.

(별도로 정하는 경과 조치)

제30조

제 2조부터 전조까지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시행령
(쇼와 37년 2월 26일 정령 제36호)

최종개정 : 평성 14년 3월 31일 정령 제105호

내각은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쇼와 36년 법률 제 216호) 제2조제1항과 제 4항 및 제8조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개발 지구의 요건)

제1조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 1) 공장 용지와 공업용수 및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고, 또한, 교통 시설의 정비가 쉬운 것
- 2) 해당 지역에 도시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시가 다음 ①과 ②에 해당하는 것
 - ① 발표된 최근의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 시의 산업 분류별 취업자의 수(이하 "해당 도시의 취업자의 수"라고 한다) 중 농업, 임업, 어업 및 어업 수산 양식업(이하 "농업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것들의 총 개수를 해당 도시의 취업자 수의 총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가 그 국세 조사의 결과에 의한 도시의 산업 분류별 취업자 수(이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52조 19 제1항에 규정된 지정 도시 산업 분류별 취업자 수를 제외하고 아래 "도시 취업자 수"라고 한다) 중 농업 등에 관한 것들의 총 수입을 시의 취업자 수의 총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넘는 것 또는 해당 시의 취업자 수 중 광업, 건설업과 제조업(이하 "제조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것들의 총 수를 해당 도시의 취업자 수의 총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가 시의 취업자 수 중 제조 등에 관한 것들의 총 수입을 시의 취업자 수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못 미치는 것.
 - ② 해당 도시에 관한 지방 교부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1호)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재정 수입액을 동법 제11조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재정 수요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가 0.72에 못 미치는 것.

(첨부 서류의 기재 사항)

제2조

법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 1) 지구의 명칭 및 지역
- 2) 인구 및 노동력 수급에 관한 사항
- 3) 자연적인 조건과 산업의 현황
- 4) 공장 용지와 공업용수에 관한 사항
- 5) 도로, 항만 시설, 통신 및 운송 시설 및 직업 훈련 기관에 관한 사항
- 6) 공장 유치 현황 및 계획 및 공장 유치에 관한 조례의 내용
- 7) 관계 시정촌의 재정 상황

(지방세의 과세 면제 등에 따른 조치 적용이 있는 경우)

제3조

법 제 5조에서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목마다 각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 1) 영업세 조세 특별 조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4년 법률 제15호. 이하 이 조에서 "평성 14년 개정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제7항 또는 제23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 효력이 있게 되는 평성 14년 개정법에 의한 개정 전의 조세 특별 조치법 (이하 이 조에서 "구 조세 특별 조치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표의 제1호 또는 제45조제1항 표의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자에 관하여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이 그 시설을 사업에 제공하는 일이 속하는 년도 또는 사업 연도 이후 매년 또는 각 사업 연도에 관한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그 도도부현에서 부과하는 영업세의 과세 표준액이 되는 것을 말한다.) 중 해당 시설에 관한 것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영업세에 대해서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하기로 하는 경우
- 2) 부동산 취득세 평성 14년 개정법 부칙 제7조제7항 또는 제2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 효력이 있게 되는 구 조세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 표의 제1호 또는 제45조제1항 표의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 및 그 부지의 토지 취득(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개발 지구 지정일 이후 취득에 한하며, 토지의 취득은 그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부지로 주택 건설 착수가 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하여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하기로 하는 경우
- 3) 재산세 평성 14년 개정법 부칙 제7조제7항 또는 제2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 효력이 있게 되는 구 조세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 표의 제1호 또는 제 45조 제1항 표의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 및 상각 자산과

해당 주택의 부지인 토지(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개발 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부지로 주택 건설 착수가 된 경우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하기로 하는 경우

부칙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37년 7월 26일 정령 제 304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쇼와 3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0년 3월 31일 정령 제65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4년 1월 23일 정령 제7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5년 4월 30일 정령 제10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4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5년 3월 31일 정령 제4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목차의 개정 규정("제26조5" 를 "제26조6"으로 "제26조6 - 제26조15"를 "제26조7 - 제26조16"으로 수정한 부분

에 한한다), 제19조3의 개정 규정(동조를 제19조2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19조5의 개정 규정(동조 제 19조의 4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 26조부터 제26조 14의 개정 규정 및 제26조15 개정 규정("제2조제2항 제1호"를 "제2조제1항 제1호"로 수정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10조및 제11조규정은 쇼와 5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6년 3월 31일 정령 제7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5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7년 3월 31일 정령 제7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5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2년 3월 31일 정령 제10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3 3월 31일 정령 제7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6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제 312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3월 31일 정령 제105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금액 계산에 관한 성령
(쇼와 37년 7월 7일 자치성령 제12호)

최종개정 : 평성 12년 9월 14일 자치성 시행령 제44호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시행령(쇼와 37년 정령 제36호) 제3조제1호 규정에 의거,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금액 계산에 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시행령(쇼와 37년 정령 제36호) 제3조제1호의 해당 시설에 관한 것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구분마다 각각 해당 각호에 명시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그 행하는 주된 사업이 전기 공급 업체, 가스 공급 업체 또는 창고업의 법인의 경우

해당 도도부현에서 그 법인에게 부과하는 영업세의 과세 표준이 될 그 사업 연도에 관한 소득 ×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시설에 관련된 고정 자산의 가액 ÷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자가 해당 도도부현에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고정 자산의 가액(주된 사업이 전기 공급 업무 또는 가스 공급 업체 법인으로 그 고정 자산의 가액 중 제조 사업을 위한 시설에 관련된 고정 자산의 가액))

- 2) 전호 이외의 경우

해당 도도부현에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영업세의 과세 표준이 될 것인 그 사업 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관한 소득 ×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시설에 관련된 직원의 수 ÷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자가 그 도도부현에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의 수)

2. 철도 사업 또는 궤도 사업(이하 "철도 궤도 사업"이라고 한다)과 이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은 해당 철도 궤도 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전조 제1항의 종사자의 수와 고정 자산의 가액 및 동조 제2항 철도 궤도 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부분의 소득 산정은 지방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26호) 제72조 48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 제72조54 제2항에 규정된 영업세 분할 기준 및 소득 산정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2년 10월 16일 자치령 제31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쇼와 4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쇼와 48년 2월 9일 자치성령 제1호) 발취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2년 3월 31일 자치성령 제11호)

이 성령은 쇼와 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9월 14일 자치성령 제44호)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관 광

에코투어리즘¹⁰⁾ 추진 방법
(평성 19년 6월 27일 법률 제105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에코투어리즘이 자연 환경의 보전, 지역의 창의 연구를 살린 관광 진흥과 환경 보전에 관한 의식 계몽 등의 환경 교육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에 따라, 에코투어리즘에 관하여 기본 이념, 정부의 기본 방침 수립, 기타 에코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에코투어리즘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자연관광자원"이라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 1) 동식물의 서식지, 기타 자연 환경에 관련된 관광 자원
- 2)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풍속 관습 다른 전통적인 생활 문화에 관련된 관광자원
2. 이 법률에서 "에코투어리즘"은 관광객이 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 또는 통보를 받은 자연관광자원을 보호하면서 그러한 자연관광자원을 접하고 이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특정 사업자"는 관광객들에게 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정보 또는 조언을 업으로서 행하는 사람(그 알선을 업으로서 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토지 소유자 등"이라함은 토지 혹은 삼림의 소유자 또는 토지 혹은 삼림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어업권 혹은 어권(임시시설의 설치, 기타 임시 사용을 위해 설정된 것이 분명한 것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기본 이념)

제3조

에코투어리즘은 자연관광자원이 지속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그 발전의 기반임에 따라 자연관광자원이 손상되지 않도록,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배려하면서, 적절한 이용 방법을 결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실시됨과 동시에 실시 상황을 감시하고,

10) 환경 관광. 자연 환경을 손상치 않는 관광 여행.

- 모니터링한 결과에 과학적인 평가를 추가하고, 이를 반영시키면서 실시되어야한다.
2. 에코투어리즘은 특정 사업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와 함께,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적절하게 실시되어야한다.
 3. 에코투어리즘은 특정 사업자, 지역 주민,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 자연관광자원이나 관광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적절하게 실시되어야한다.
 4. 에코투어리즘의 실시에 있어서는, 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의 중요성에 따라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한다.

(기본 방침)

제4조

정부는 기본 이념에 의해서, 에코투어리즘의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한다)을 결정해야한다.

2. 기본 방침은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 1) 에코투어리즘의 추진에 관한 기본 방향
 - 2) 다음 조 제1항에 규정된 에코투어리즘 추진 협의회에 대한 기본 사항
 - 3) 다음 조 제2항 제1호의 에코투어리즘 추진 전체 구상 작성에 대한 기본 사항
 - 4) 제6조제2항의 에코투어리즘 추진 전체 구상의 인증에 대한 기본 사항
 - 5) 생물의 다양성 확보 등 에코투어리즘의 실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기타 에코투어리즘의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3. 환경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은 미리 문부과학대신 및 농림수산대신과 협의하여 정책 방안을 만들고 각의의 결정을 요청해야한다.
 4. 환경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은 기본방침의 초안을 만들려고 할 때 먼저 널리 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환경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본 방침을 공개해야한다.
 6. 기본 방침은 에코투어리즘의 실시 상황을 고려하고, 대개 5년마다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7.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준용한다.

(에코투어리즘 추진 협의회)

제5조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도시 지역 중 에코투어리즘을 추진하려고하는 지역마다 다음 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도시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자, 지역 주민,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 자연관광자원이나 관광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토지 소유자 등 기타 에코투어리즘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자(이하 "특정 사업자 등"이라고 한다) 및 관계 행정 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에코투어리즘 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조직 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 1) 에코투어리즘 추진 전체 구상을 작성하는 것.
- 2) 에코투어리즘의 추진에 관한 연락 조정을 실시하는 것.

3 전항 제1호로 규정하는 에코투어리즘 추진 전체 구상(이하 "전체 구상"이라고 한다)은 기본 방침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한다.

- 1) 에코투어리즘을 추진하는 지역
- 2) 에코투어리즘의 대상이 되는 주된 자연관광자원의 명칭 및 소재지
- 3) 에코투어리즘의 실시 방법
- 4) 자연관광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취할 조치(그 협의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제 1항의 특정 자연관광자원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특정 자연관광자원의 명칭 및 소재하는 지역 및 그 보호를 위해 취할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5) 협의회에 참가하는 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그 역할 분담
- 6) 기타 에코투어리즘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시정촌은 조직적인 협의회가 전체 구상을 만들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무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전항의 규정은 전체 구상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6. 특정 사업자 등은 시정촌에 대해 협의회 조직 건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정책에 입각하여 그 제안에 관한 협의회가 작성해야 되는 전체 구상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을 제시해야한다.

7. 특정 사업자 등에서 협의회 구성원이 없는 것은 시정촌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기를 해당 도시가 편성한 협의회 구성원으로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

8. 전 조항에 명시된 것 외에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결정한다.

9. 협의회 구성원은 서로 협력하여 전체 구상의 실시 노력해야 한다.

(전체 구상의 인정)

제6조

시정촌은 조직된 협의회가 전체 구상을 만든 경우에는 관할 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체 구상에 대해 주무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이 된 전체 구상이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1) 정책에 부합하는 것

2) 자연관광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취할 조치, 기타 전체 구상에 명시된 사항이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 것

3. 주무대신은 두 개 이상의 도시와 협력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상으로 보아, 그 시정촌 지역에서 연대로 에코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전체 구상을 일체로 해서 전항의 인증을 할 수 있다.

4. 주무대신은 제2항의 인정을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포하여야한다.

5. 시정촌은 조직된 협의회가 제2항의 인정을 받은 전체 구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성령에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 후의 전체 구상에 대해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6. 주무대신은 제2항의 인증(이전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전체 구상(이하 "인증 전체 구상"이라고 한다)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공인 전체 구상에 따라 에코투어리즘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7.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변경 인증에 대해서,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에 준용한다.

(공인의 전체 구상에 한 주지 등)

제7조

주무대신은 인터넷 이용,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에코투어리즘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광객, 그 외의 사람에게 인정 전체 구상의 내용을 주지하는 것으로 한다.

2. 국가 행정 기관 및 관계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공인의 전체 구상을 만든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특정 사업자가 해당 인증 전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에코투어리즘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에코투어리즘에 관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특정 자연관광자원의 지정)

제 8조

전체 구상에 대해 제6조제2항의 인정을 받은 도시(제 2조를 제외하고 이하 단순히 "도시"라고 한다)의 장(이하 단순히 "시정촌 장"이라고 한다)은 공인의 전체

구상에 따라, 관광 이 기타의 활동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자연관광자원(풍속, 관습, 기타 무형의 관광 자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 자연관광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관광자원으로 관할 성령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

2. 시정촌 장은 전항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특정 자연관광자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3. 시정촌 장은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특정 자연관광자원의 명칭 및 소재하는 지역 및 그 보호를 위해 취할 조치의 내용을 공시해야한다.

4. 시정촌 장은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자연관광자원이 소재하는 지역에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5. 시정촌 장은 제1항을 지정할 경우에 해당 특정 자연관광자원의 동향 단, 관할 성령으로 지정하는 자연관광자원에 해당하는 사유가 된 때, 그 외에 다음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또는 그 지정을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6.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특정 자연관광자원에 관한 규정)

제9조

특정 자연 관광 자원이 소재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특정 자연 관광 자원을 파손, 손상 또는 삭제하는 것
- 2) 관광객, 그 외의 다른 사람이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종이쓰레기, 그 외의 오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또는 방치하는 것
- 3) 현저하게 악취를 발산, 음향기기 등에 의해 큰 소음이 발생하고, 전망 시설, 휴게소 등을 자의적으로 점거하고 다른 관광객 및 다른 사람에게 큰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
- 4) 전 세 호에 규정된 것 외에 특정 자연관광자원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 전체 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2. 도시의 해당 직원은 특정 자연관광자원이 소재하는 지역 내에서 전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3. 전항의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시해야한다.

제10조

시정촌 장은 공인의 전체 구상에 따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 자연관광자원이 많은 수의 관광객, 그 외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특정 자연관광자원이 소재하는 지역에서의 출입을 해당 시정촌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해 그 소재하는 지역에 출입이 제한되는 특정 자연관광자원이며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는 그 특정 자연관광자원이 소재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재해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우와 통상의 관리 활동, 그 외에 기타 행위로 주무성령으로 정해진 것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

3. 제1항의 승인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수에 대해서는 시정촌 장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시정촌의 해당 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 특정 자연관광자원이 소재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자에게는 그 지역에서 나가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제8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제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중 "그 보호를 위해 취할 조치의 내용"인 것은 "의논 제한 인원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동조 제5항 중 "동항 단, 관할성령으로 정하는 자연관광자원"인 것은 "제10조제1항 단, 관할성령으로 지정하는 특정 자연관광자원"으로 바꾼다.

6.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직원에 대해서 준용한다.

(활동 상황의 공표)

제11조

주무대신은 매년 협의회의 활동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활동보고)

제12조

주무대신은 시정촌에 대해서 조직된 협의회의 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기술 자문)

제13조

주무대신, 광역의 자연관광자원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활동, 기타 협의회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정보 수집 등)

제14조

주무대신은 자연관광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도모하고, 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정보 또는 조언을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에코투어리즘의 실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분석 및 그 결과의 제공을 해야한다.

(홍보 등)

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홍보 등을 통하여 에코투어리즘에 관해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정상의 조치 등)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코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에코투어리즘 추진 연락 회의)

제17조

정부는 환경부,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기타 관계 행정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에코투어리즘 추진연락회의를 마련하고, 에코투어리즘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위한 연락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주무대신 등)

제18조

이 법률에서 주무대신은 환경대신, 국토교통대신, 문부과학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으로 한다.

2. 이 법률에서 주무성령은 환경대신, 국토교통대신, 문부과학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벌칙)

제19조

다음 각호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촌의 해당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촌의 해당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해당

특정 자연관광자원이 소재하는 지역에 출입 또는 해당 지역에서 해산하지 않았을 경우

제20조

제9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의 해당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동일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다음 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 전의 준비)

제2조

환경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은 이 법 시행 전에 있어서도, 제4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에코투어리즘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안을 만들고 이에 대해 국무회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환경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기본적인 방침에 동향 각의의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기본 방침은 이 법률의 시행일에서 제4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으로 본다.

(검토)

제3조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추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에코투어리즘 추진법 시행 규칙

(평성 20년 4월 1일 문부과학성·농림수산성·국토교통성·환경성령 제1호)

에코투어리즘 추진법(평성 19년 법률 제105호) 제6조제1항과 제5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거하고, 동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에코투어리즘 추진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제1조

이 성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코투어리즘 추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전체 구상의 인증 신청)

제2조

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전체 구상의 인증 신청은 그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1) 전체 구상을 기재한 서류
- 2) 전체 아이디어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밝힌 지도
- 3) 전체 구상에 규정하는 자연관광자원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 4) 전체 구상에 규정하는 자연관광자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조례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5) 전체 구상에 규정하는 자연관광자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자연관광자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정하는 특정 자연관광자원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 ① 해당 특정 자연관광자원의 경계를 표시한지도(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상 지역을 밝힌 지도를 포함한다)
 - ② 법 제8조제2항(법 제1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③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시정촌 장이 정하는 수를 기재한 서류
-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주무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인의 전체 구상 변경 인증 신청)

제3조

법 제6조제5항 규정에 의한 인증 전체 구상 변경의 인증 신청은 그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1) 변경 후의 전체 구상을 기재한 서류
 - 2) 변경 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
 - 3) 전조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해당 서류 및 그 변경 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
 - 4) 전 세 호에 규정된 것 외에, 주무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협의회에 참가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이름의 변경 또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사람의 추가는 법 제6조제5항의 변경 인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관광자원)

제4조

법 제8조제1항 단, 관할성령으로 지정하는 자연관광자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조례에 의한 행위 규제 등으로 특히 보호해야하는 자연관광자원으로 인정전체구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

- 1) 문화재 보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4호)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명승 또는 천연 기념물
- 2) 삼림법(쇼와 26년 법률 제 249호) 제25조제1항 또는 제25조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 보건 또는 명승이나 유적지의 풍치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안 삼림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 3) 수산자원보호법(쇼와 26년 법률 제 313호) 제4조제1항 규정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해 동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성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벌채, 채포를 금지한 수산동식물과 동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수면
- 4) 도시공원법(쇼와 31년 법률 제79호)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의 토지
- 5) 자연공원법(쇼와 32년 법률 제 161호)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 지방의 식물 (동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과 동물(동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지정 동물에 한한다) 동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 보호 구역 내 토지, 식물(삼림을 포함한다) 및 동물 및 동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양 공원 지역의 해저 및 동식물(동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 6) 자연환경보전법(쇼와 47년 법률 제85호)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의 토지, 식물(삼림 포함한다) 및 동물, 동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지역의 토지, 동법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야생 동물 보호 구역에서 해당 야생 동물 보호 구역에 관한 야생 동식물 및 동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다 중 특별 지구의 해저 및 동식물(동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 7)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중의 보존에 관한 법률(평성 4년 법률 제75호)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희귀 야생 동식물 중, 동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긴급 지정종 및 동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리 지역의 토지(해저를 포함한다) 및 야생 동식물(동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 8) 조수 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평성 14년 법률 제88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조수(동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된 수렵 조수 및 동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된 조류와 가금 계란을 제외한다) 및 동법 제29조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정 특별 보호 구역이며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지역 또는 도도부현 지정 특별 보호 구역이며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식물(삼림을 제외한다)과 동물

(특정 자연관광자원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의 출입 제한)

제5조

시정촌 장은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2.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정촌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1) 출입하려고 하는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2) 특정 자연 관광 자원의 명칭
- 3) 출입하려는 날짜
- 4)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
- 5) 출입의 목적
- 6) 출입하는 경로 또는 범위
- 7) 출입 수단
- 8)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시정촌 장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결정하는 것

3. 시정촌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승인을 했을 때는, 출입하려는 대표자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 1) 출입하려고 하는 대표자의 성명

- 2) 특정 자연관광자원의 명칭
- 3) 승인하는 출입 날짜
- 4) 승인하는 출입 사람
- 5) 승인하는 출입 경로 또는 범위
- 6) 승인하는 출입 수단

(다른 법령에 의해 그 소재하는 지역에 출입이 제한되는 특정 자연관광자원)

제6조

법 제10조제1항 단, 관할성령에서 지정하는 특정 자연관광자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자연 공원법 제13조제3항 제13호(동법 제14조제3항 제1호에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대신이 지정하는 지역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용 조정 지역의 토지
- 2) 자연 환경 보전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입 제한 구역 내의 토지
- 3)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입 제한 지역의 토지(해저를 포함한다)

(출입 승인을 요하지 않는 행위)

제7조

법 제10조제2항 단, 관할성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 2) 농산어촌의 주민 생활 수준의 유지 개선, 산림의 보속¹¹⁾배양 및 수산 자원의 적절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
- 3) 신호등, 방호책¹²⁾, 도벽, 기타 철도, 궤도, 도로 교통 법률(쇼와 26년 법률 제 183호)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도로 또는 도로법(쇼와 27년 법률 제 180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로(다음 호에서는 간단하게 "도로"라고 한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개축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것(신호등은 신축을 포함한다).
- 4) 도로에는 송수 배관, 가스관, 전선 등을 매설하는 것
- 5) 측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88호)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측량표 또는 수로 업무 법(쇼와 25년 법률 제102호)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로 측량표를 설치하는 것

11) 일정지역의 산림에서 매년 일정한 용계수확을 지속적으로 얻는것.

12) 통행하는 차량이 차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횡단 따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설치하는 울타리.

- 6) 고손¹³⁾한 삼림 또는 위험한 삼림을 벌채하는 것
- 7) 전선로의 정비를 위해 밑깎기¹⁴⁾하고 덩굴 절단 또는 간벌¹⁵⁾하는 것
- 8) 법률 규정에 의해, 또는 보안 목적에서 광고 및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하고, 혹은 설치 또는 공작물 등의 표시를 한 것
- 9) 야생 조수의 보호 증식을 위한 표지판을 게시하거나 또는 설치하는 것
- 10) 항구법(쇼와 23년 법률 제 174호) 제 2조에서 규정하는 항구 지역 내에서 동력 보트를 사용하는 것
- 11) 항로 표지의 유지 관리, 기타 선박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 12) 채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광물 굴채 또는 토석의 채취(광물 발굴, 벌채를 위한 시도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것
- 13)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념물로 문부과학대신의 지정이나 등록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에 관한 것의 보존에 관계하는 활동
- 14) 측량법 제 3조에서 규정하는 측량을 실시하는 것.
- 15)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
- 16) 토지 혹은 삼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토지 혹은 삼림의 사용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 의무에 관한 토지에서 행하는 활동
- 17) 동조의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공사용 임시 공작물(기숙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령에 규정하는 시설이나 설비 혹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관련된 시설을 개축하거나 또는 증축한 것(공사용 임시 공작물에는 신축을 포함한다)
- 18) 전 각호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정 자연관광자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을 유지,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 19) 특정 자연관광자원이 소재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동조 각호에서 규정된 행위를 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것
-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난자를 구출하기 위한 업무(그 업무 및 비상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에 관련되는 훈련을 포함한다), 범죄 예방이나 수사, 기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수로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 2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검사, 조사 및 이와 유사한 행위
- 22) 전 각호에서 규정된 것 외에 법률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을 받은 행위

13) 가지끝마름

14) 어린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는 잡초목을 제거하는 일

15) 수풀을 가꾸는 방법의 하나. 나무가 자라는 초기에 잡목 솥아내기(제벌) 작업 후 나무가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자란 다음, 또는 일반적으로 식재 후 10~20년 사이에 비교적 굵은 나무들을 다시 솥아내는 작업이다

- 23) 전 각호에서 규정된 것 외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
- 24) 전 각호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정 자연관광자원이 소재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공익에 또는 사회 통념상 거슬리지 않아 시정촌 장이 인정하는 행위
- 25) 전 각호에 규정된 행위에 부대하는 행위

부칙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 토 개 발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평성 19년 5월 18일 법률 제52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6월 18일 법률 제75호

제1장 총칙 (제1조- 제 3조)

제2장 기본 방침 (제 4조)

제3장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 및 이에 근거한 조치

제1절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 수립 등 (제 5조, 제 6조)

제2절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의 승인 등 (제7조- 제 18조)

제3절 교부금 (제19조- 제 21조)

제4장 기타 조항 (제 22조, 제 23조)

제5장 벌칙 (제 24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사회 생활권의 광역화, 국제화의 진전 등 경제 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서 광역에 걸쳐 활발한 사람들의 왕래 또는 물자의 유통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이하 "광역적 지역 활성화"라고 한다)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대신이 수립하는 정책에 대한 결정과 함께 도도부현이 창조하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에 따라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 승인 및 거점 시설 관련 기반 시설 정비 사업, 기타 사업 또는 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금 지급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로써, 지역 사회의 자립적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조

이 법률에서 "광역적 특정 활동"이라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으로, 해당 활동이 수행되는 이외의 광역으로부터의 방

문자를 증가시키고, 또는 해당 광역에 걸쳐 물자의 유통을 촉진하는 효과가 높은 것

- ① 국제 또는 전국적인 규모의 회의, 교육, 박람회 또는 스포츠 경기 대회 개최
 - ② 국제 관광지, 기타 주요 관광지에서 열리는 다음에 규정된 활동
 - (1) 관광 여객에 대한 관광 안내, 숙박 다른 역무 제공에 관한 사업 활동(상당수의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 (2) 문화 자산 전시 또는 전통 예능 공연
 - ③ 고등 교육 단계의 교육 활동
 - ④ 국제 또는 전국적인 규모의 공업 제품의 제조에 관한 사업 활동(상당수의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또는 공동 연구 개발
 - ⑤ ①에서 ④까지 열거한 것 이외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활동
- 2) 전항에 규정된 것 외에 동호에서 규정하는 활동을 하는 자 또는 동호에서 규정하는 내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운송에 관한 사업 활동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2. 이 법률에서 "거점 시설"이라함은 지역의 광역적인 특정 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로 다음 각호에 규정된 활동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지정한 것을 말한다.

- 1) 전항 제1호 ①에 규정된 활동 컨퍼런스 시설, 교육 시설, 견본 시장 시설이나 체육 시설
 - 2) 전항 제1호 ② (1)에 규정된 활동 한 단지 관광 시설
 - 3) 전항 제1호 ② (2)에 규정된 활동 교양 문화 시설
 - 4) 전항 제1호 ③에 규정된 활동 교육 시설
 - 5) 전항 제1호 ④에 규정된 활동 공단이나 연구 개발 시설
 - 6) 전항 제1호 ③ 또는 제2호에 규정된 활동으로 동항 제1호 ③ 또는 제2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활동 유형별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시설
3. 이 법률에서 "거점 시설 관련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은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으로, 거점 시설의 정비를 특별 증진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중점 지구"라고 한다)으로 민간 사업자와 기타에 의한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
 - ① 도로법(쇼와 27년 법률 제 180호) 제3조제2호의 일반도로 또는 동조 제3호의 도도부현 도로 신설, 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사업
 - ② 철도사업법(쇼와 61년 법률 제92호)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 ③ 공항법(쇼와 31년 법률 제80호)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 관리 공항의 동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관한 사업
- ④ 항만법(쇼와 25년 법률 제 218호)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항만 시설 중 수역 시설, 외곽 시설, 계류 시설, 임항 교통 시설, 항만 공해 방지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폐기물 매립 호안, 폐유 처리 시설 및 동법 제2조제1항 제1호 3) 해양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한한다) 또는 항만 환경 정비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 ⑤ 도시공원법(쇼와 31년 법률 제79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공원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사업
- ⑥ 하수도법(쇼와 33년 법률 제79호)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공 하수, 동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유역 하수도 또는 동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도시 하수의 설치 또는 개축에 관한 사업
- ⑦ 하천법(쇼와 39년 법률 제 167호)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1급 하천의 개량 공사 혹은 수리 또는 동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2급 하천의 개량 공사에 관한 사업
- ⑧ 공영주택법(쇼와 26년 법률 제 193호)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영 주택 공사 혹은 동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 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사업, 대도시 지역의 주택과 주거 지역의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10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도심 공동 주택 공급 사업(제 20조에서 간단하게 "도심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이라고 한다), 특정 우량 임대 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5년 법률 제52호)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평성 10년 법률 제92호)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건설에 관한 사업 또는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26호)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 주택의 정비에 관한 사업
- ⑨ 토지 구획정리법(쇼와 29년 법률 제119호)에 의한 토지 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시 재개발법(쇼와 44년 법률 제38호)에 의한 시가지 재개발 사업
- ⑩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전호에 열거한 것 외에도 거점 시설에서 발생하는 광역적인 특정 활동에 따른 사람의 왕래 또는 물자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①부터 ④까지 및 ⑩에 규정된 사업(동호 ⑩에 규정된 사업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4. 이 법률에서 "공공 기관"이라함은 도로, 공원, 광장, 기타 정령이 정하는 공중에 제공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 의무)

제3조

국가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아시아, 기타 지역의 해상 수송망의 거점이 되는 항만과 주요 국제 항공 노선에 필요한 공항, 국가의 간선 도로, 기타 교통 시설에서 고속 교통에 제공해주는 것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에 노력해야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각 지역의 개성과 특색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의 추진에 있어서는, 광역적인 특정 활동을 담당하는 인재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시책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수행하는 광역적인 특정 활동 시작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시책,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시책, 기타 관련 광역적인 특정 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과의 연계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평성 10년 법률 제7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말한다. 제5조제7항에서 동일하다), 광역적 특정 활동을 하는 민간 사업자의 다른 관계자는 광역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를 중점적,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연계를 도모하면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2장 기본 방침

제4조

국토교통대신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한다.

2.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 1)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의 기본 방향
- 2) 거점 시설 선정 및 중점 구역 설정에 대한 기본 사항
- 3) 거점 시설 관련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사항
- 4) 관련 광역적 특정 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의 연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5)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도도부현, 다른 관계자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6)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역적인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 수립에 대

한 기본 사항

- 7)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본 방침은 국토형성계획법(쇼와 25년 법률 제 205호)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계획과의 조화가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국토교통대신은 기본 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5. 국토교통대신은 기본 방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6. 전 두 항의 규정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3장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 및 이에 근거한 조치

제1절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 수립 등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

제5조

도도부현은 해당 지역에 대한 기본 방침에 따라 광역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이라한다)을 만들 수 있다.

2.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1) 광역적인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의 목표
 - 2) 거점 시설에 관한 사항(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점 시설의 정비를 특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거점 시설에 관한 사항과 중점 지역의 지역)
 - 3)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점 시설 관련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 4) 전호의 거점 시설 관련 기반 시설 정비 사업과 일체가 되어 그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업무(이하 "사업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
 - 5) 계획 기간
 -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광역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3.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은 국토형성계획, 홋카이도 종합개발계획, 오키나와 진흥계획, 사회 자본 정비 중점 계획 및 환경 기본 계획의 조화가 유지

되며, 법령에 근거 거점 시설 관련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 중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계획 구역에 관한 부분은 동법 제6조2에서 규정하는 도시 계획 지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정책 및 동법 제7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재개발 정책 등과의 조화가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5. 도도부현이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도도부현은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에 제2조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동항 제1호 ①, ② 또는 ⑩에 규정된 사업(동호 ⑩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다른 도도부현과 경계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다른 도도부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은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사업 등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경우 시정촌,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8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부 사무 조합이나 광역연합, 향만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향무국 또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일반 사단 법인 혹은 일반 재단 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자(이하 "도시 등"이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 등(도도부현이 그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추진을 도모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것을 설명 할 수 있다.

8. 도도부현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에 도시 등이 실시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미리 해당 도시 등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9. 도도부현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는 한편, 관계 시정촌에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의 사본을 송부해야한다.

10. 제5항에서 전항까지의 규정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광역 지방 계획 협의회의 협의 특례)

제6조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도도부현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광역 지방 계획 협의회(국토형성계획법 제10조제1항 광역 지방 계획 협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그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 지방 계획 협의회와 함께 동항에 규정된 사항을 협의하는 경우 국토형성계획법 제10조제2항 중 "있는 자"인 것은 "있는 자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52호)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의 실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제2절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의 승인 등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의 승인)

제7조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에 포함된 중점 지구 지역의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것에 부대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서 공공시설의 정비를 동반한 것에 한한다)이 그 사업을 시행한 토지(수면을 포함한다) 지역(이하 "사업 지역"이라고 한다)의 면적이 정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하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점 시설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이라고 한다)을 만들고,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사업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2) 거점 시설 개요
- 3) 건축물과 그 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개요
- 4)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개요 및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되는 자
- 5) 공사 착수시기와 사업 시행 기간
- 6) 용지 취득 계획
- 7) 자금 계획
- 8)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거점 시설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의 인정 기준 등)

제8조

국토교통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관한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이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할 수 있다.

- 1) 해당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이 정책 중 제4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 및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 중 해당 중점 지구의 지역에 관한 제5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해당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이 도시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이용과 도시기능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
- 3) 공사 착수시기, 사업 시행 기간 및 용지 취득 계획이 해당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 4) 해당 거점 시설 정비에 적합하게 실시하는 회계적인 기초 및 기술적 능력, 그 외의 능력이 있는 것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인증(이하 "계획 승인"이라고 한다)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그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정비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될 것인 자(이하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이라고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계획 인정의 통지)

제9조

국토교통대신은 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 및 민간 도시 개발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62년 법률 제62호 아래 "민간 도시 개발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민간 도시 개발 추진기구(이하 "민간 도시 계획"이라고 한다)에게 통지하고, 계획의 공인을 받은 민간 사업자(이하 "인증기관"이라고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 지역, 사업 시행 기간,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해야한다.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의 변경)

제10조

공인 사업자는 계획의 공인을 받은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이하 "인증 계획"이라고 한다)의 변경(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전 두 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보고 요구)

제11조

국토교통대신은 공인 사업자에게 인증 계획(인증 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같다)에 관한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이하 "인증 사업"이라고 한다)의 실행 상황에 대해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지위 승계)

제12조

인증 사업자의 일반 승계인 또는 공인 기관에서 인정 계획에 관한 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권, 기타 해당 인증 사업 시행에 필요한 소유권을 취득한자는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아 그 공인 사업자가 보유하고 계획의 승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개선 명령)

제13조

국토교통대신은 공인 기관이 인정 계획에 따라 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인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계획 승인의 취소)

제14조

국토교통대신은 공인 사업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획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신속하게 그 취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민간 도시 기구에 통지하고, 공포해야한다.

(민간 도시 계획의 수행 거점 시설 정비 사업 지원 업무)

제15조

민간 도시 계획은 민간 도시 개발법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 및 민간 도시 개발법 제14조8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대신의 지시를 받아 수행 업무 외에 민간 사업자에 의한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인증 사업자의 인증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공공시설 및 이에 준하는 피난 시설, 주차장, 기타 건물 사용자와 도시의 거주자 및 체류자, 기타 관계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의 정비

에 필요한 비용의 액수에 한한다)에 대하여 지원한다.

- ① 공인 사업자(독점적 인증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합작 회사에 한한다)에 대한 출자
- ② 독점적으로 공인 기관에서 인증 사업의 시행으로 정비되는 건축물과 그 부지(이하 이 호에서 "공인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를 검색하고 해당 인증 건축물 등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합작회사 또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평성 10년 법률 제 05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목적 회사에 대한 출자
- ③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법(평성 6년 법률 제77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공인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또는 정비된 인증 건축물 등을 검색하고 해당 인증 건축물 등의 관리 및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 계약상의 출자
- ④ 기금(수탁 토지에서 인증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해당 인증 건축물 등의 관리 및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의 수혜 재산권의 취득
- ⑤ ①에서 ④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방법

2) 공인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언, 알선, 기타 지원을 하는 것.

3) 전 두 호에 규정된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 도시 계획이 동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간 도시 개발법 제11조제1항 중 "제4조제1항 각호"인 것은 "제4조제1항 각호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52호. 이하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와 민간 도시 개발법 제12조중 "제4조제1항 각호"인 것은 "제4조제1항 각호와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법 제15조제1항 각호"로, 민간 도시 개발법 제4조중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인 것은 "제4조제 1항 제1호와 제2호 및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법 제15조제1항 제1호"로, 민간 도시 개발법 제20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인 것은 "제11조제1항(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동항"인 것은 "제11조제1항" 동조 2호 중 "제 12조"인 것은 "제 12조(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법 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3. 민간 도시 계획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한다.

(공인 사업자에 의한 도시 계획 결정 등의 제안)

제16조

공인 사업자는 도시 계획법 제15조제1항의 도도부현 혹은 시정촌 또는 동법 제87조2 제1항의 지정 도시(동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항의 국토교통대신(동법 제85조2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을 지역 정비 국장, 또는 북해도 개발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정비 국장 또는 북해도 개발 국장) 또는 도시) (다음 항에서 "도시 계획 결정권자"로 총칭한다)에게 해당 인증 사업 시행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에 열거하는 도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제안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제안에 관한 도시 계획의 거친 초안을 첨부해야한다.

- 1) 도시 계획법 제12조4 제1항 제1호 지역 계획에 관한 도시 계획
- 2) 토지 구획 정리법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관한 도시 계획
- 3)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 계획
- 4) 도시 계획법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시설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도시 계획
- 5) 기타 정령이 정하는 도시 계획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하 "계획 제안"이라고 한다)은 그 인증 사업에 관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토지 지역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곳에 따라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한다.

- 1) 해당 계획 제안에 관한 도시 계획의 거친 초안의 내용이 도시 계획법 제13조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 도시 계획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
- 2) 해당 계획 제안에 관한 도시 계획의 거친 초안의 대상이 되는 토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공공시설용에 제공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차지권(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항 요건을 갖춘 지상 권한 또는 임차권(임시 시설, 기타 임시 사용을 위해 설정된 것이 분명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음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를 한자가 소유하는 그 지역의 토지 지적과 동의를 한 사람이 가진 차지권의 목적이 되어 그 지역의 토지 지적의 합계가 해당 지역의 토지의 총 지적 및 차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총 지적 및 총 3분의 2 이상인 것

3.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 또는 차지권이 몇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임대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각각 1로 간주하고, 동의를 한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의 공유 지분 비율의 전체 또는 동의를 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의 공유 지분 비율의 합계를 각각 그 토지에 대한 동의를 한 사람의 숫자로 간주하고 해당 토지 지적에 동의한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의 공유 지분 비율의 전체 또는 동의를 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의 공유 지분 비율의 합계를 곱하여 얻은 면적을 그 토지에 대한 동의를 한자가 소유한 토지의 지적 또는 동의를 한 사람이 있는 차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지적으로 본다.

(계획 제안을 바탕으로 도시 계획 결정 등)

제17조

도시 계획 결정권자는 계획 제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계획 제안을 바탕으로 도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계획 제안에 관한 도시 계획의 초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하게 되는 도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도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방안을 작성해야한다.

2 도시 계획 결정권자는 그 계획 제안을 바탕으로 도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계획 제안에 관한 도시 계획의 초안 중 일부 내용을 제공하게 된 도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말한다)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도시 계획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이들 규정을 동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 방안을 도도부현 도시 계획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도시 계획 위원회에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시 계획 방안과 함께 해당 계획 제안에 관한 도시 계획의 초안을 제출해야한다.

3. 도시 계획 결정권자는 그 계획 제안을 바탕으로 도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그 계획 제안을 한 공인 사업자에게 알려야한다.

4. 도시 계획 결정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려고 할 때 먼저 도도부현 도시 계획위원회(도시 계획 결정권자인 시정촌에 시정촌 도시 계획 심의회가 들어있는 경우 해당 시정촌 도시 계획위원회)에 해당 계획 제안에 관한 도시 계획의 초안을 제출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한다.

(광역 지방 계획 협의회의 인증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협의)

제18조

공인 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광역 지방 계획 협의회에 대해 그 인증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협의를 하는 것이 요구된 광역 지방 계획 협의회에 관한 정보국토 형성 계획법 제10조제4항 규정의 적용은 동항 중 "관계 각 행정 기관"인 것은 "관계 각 행정 기관 및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52호) 제8조제1항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한 동항의 공인 사업자"로 한다.

3. 광역 지방 계획 협의회는 제1항의 협의를 할 것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 그러한 협이가 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협이가 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해당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한 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할 때마다 그 사이의 경과를 신속하게 해당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한 공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제3절 교부금

(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

도도부현은 다음 항의 교부금을 충당하고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에 포함된 제5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 등의 실시(동호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시정촌 등이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부담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를 하려고 할 때 해당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제해야한다.

2. 국가는 주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에 포함된 제5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 제2조제3항 제1호 ①에서 ⑧까지 규정하는 시설의 정비 상황, 기타 사항을 기초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전항의 교부금을 충당하고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부담이나 수당은 해당 규정에 관계없이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전 3에 규정된 것 외에 제2항 교부금의 교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교부금에 관한 도심 공동 주택 공급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의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 등)

제20조

대도시 지역의 주택과 주거 지역의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01조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인 사업자인 도도부현이 전조 제2항의 교부금을 충당하고 실시하는 도심 공동 주택 공급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관하여 동법 제101조11 규정의 적용은 동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것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52호) 제19조제2항 교부금"으로, 동조 제3항 중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것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교부금"으로 한다.

(교부금에 대해 고령자용인 우량 임대 주택에 대한 주지 조치)

제21조

도도부현이 제19조제2항 교부금을 충당하고 정비하는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 주택에 관하여 동법 제54조규정 적용은 동조 중 "제 49조,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이나 전조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을 받아 정비 또는 임대료를 감면한다"라는 것은 "광역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52호) 제19조제2항 교부금을 충당하고 정비 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아 임대료를 감면한다"로 한다.

제4장 기타 조항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제22조

이 법률에 명시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경과 조치)

제23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에 해당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경과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4조

제11조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항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동항의 형을 과한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2조

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10년 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부칙(평성 18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정 정책)

2.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 및 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 호)의 시행일이 시행일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이 법의 집행 전날 사이의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136호. 다음 항에서 "조직범죄 처벌법"이라고 한다) 별표 제62호 규정의 적용은 동호 중 "중간 법인법(평성 13년 법률 제 49호) 제 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 인 것은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48호) 제 334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로 한다.

3.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항의 경우에 있어서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 및 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 전날까지의 사이에 조직범죄 처벌법 규정의 적용은 제 4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구 중간 법인법 제 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는 조직범죄 처벌법 별표 제62호에 규정된 범죄로 간주한다.

부칙(평성 20년 6월 18일 법률 제75호) 발취

(시행 기일 등)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38조

당분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1호 ③ 중 "지방 행정 공항"인 것은 "지방 행정 공항 및 공항 정비법 그리고 항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75호) 부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특정 지역 관리 공항"로, "동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인 것은 "공항법 제8조제1항 혹은 제4항 또는 공항 정비법과 항공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동법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공항 정비법(쇼와 31년 법률 제80호) 제8조제1항 혹은 제4항"으로 한다.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성 19년 8월 3일 정령 제 249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3월 31일 정령 제105호

내각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52호) 제2조제4항, 제7조제1항과 제16조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제1조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항 정령으로 정하는 공중에 제공되는 시설, 하수도, 녹지, 하천, 운하와 수로 및 방수, 방사 또는 방조시설 및 항만의 수역 시설, 외곽 시설과 계류 시설로 한다.

(민간 사업자가 계획 승인을 신청 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규모)

제2조

법 제7조제1항 정령이 정하는 규모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 1)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의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다음 호에 규정된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다) 예 * 다섯 하
 - ① 수도권 정비법(쇼와 31년 법률 제83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건물 지역 또는 동조 제4항에 규정한 근접정비지역
 - ② 긴키 지역 정비법(쇼와 38년 법률 제129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건물 도시 지역 또는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접정비지역
 - ③ 중부권 개발 정비법(쇼와 41년 법률 제102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정비 구역
 - ④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52조 1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도시 지역
- 2) 전호 ①에서 ④까지에 규정된 지역의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으로 그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사업 지역에 인접 또는 근접하여 이것과 일체적으로 다른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서 다음 ①에서 ③까지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시행되거나 또는 시행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되고, 이러한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사업 구역 면적의 합계가 0.5헥타르 이상이 되는 경우의 그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0.25헥타르

- ①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에 포함된 중점 지구 지역의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것에 부대하는 사업을 포함한다)로 공공시설의 정비를 수반하는 것
 - ② 기본 방침 중 법 제4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 및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 중 해당 중점 지구의 지역에 관한 법 제5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비추어 적절한 것
 - ③ 도시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이용과 도시 기능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
- 3) 제1호 ①에서 ③까지 열거한 지역 이외 지역의 거점 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0.2헥타르

(공인 사업자가 도시 계획 결정 등을 제안 할 수 있는 도시 시설)

제3조

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도시 시설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도로, 도시 고속 철도, 주차장, 자동차 터미널, 기타 교통 시설
- 2) 공원, 녹지, 광장, 기타 공공 개방 장소
- 3) 수도, 전기 공급 시설, 가스 공급 시설, 하수도, 쓰레기 소각장, 기타 공급 시설이나 처리 시설
- 4) 하천, 운하, 기타 수로
- 5) 학교, 도서관, 연구 기관, 기타 교육 문화 시설
- 6) 병원, 보육 다른 의료 시설 또는 사회 복지 시설
- 7) 방수, 방사 또는 방조 시설

부칙

(시행 기일)

- 1.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3월 31일 정령 제105호)

이 정령은 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평성 19년 8월 3일 국토교통성령 제74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12월 1일 국토교통성령 제97호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52호)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6호 및 제3항 제1호 ⑧과 제2호, 제5조제2항 제6호와 제3항 및 제6항과 제7항(동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 제1항과 제2항 제8호, 제 9조(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 제1항,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광역적 특정 활동)

제1조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⑤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박람회, 예술 발표회, 연예와 스포츠의 흥행, 제례, 기타 행사에 있어 국제 또는 전국적인 규모 또는 지명도를 보유하는 것의 실시
- 2)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외 전국의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어촌에 이주 혹은 도시의 거주지 외에 농산어촌 마을의 거주지를 가지는 것을 촉진하는 활동 또는 우리나라 혹은 지역의 독특한 자연, 문화 등에 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 3) 국토형성계획법(쇼와 25년 법률 제 205호)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역적 지방 계획 구역 또는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지역 안과 밖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관련된 사업 활동(상당수의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으로, 도도부현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 또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활동
- 4) 국제 또는 전국적인 규모의 물자 유통에 관한 사업 활동(상당수의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으로 전 호에 규정하는 지역의 물자 유통의 핵심이 되는 것
- 5)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곳 이외의 광역적 지역에서부터 방문자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해당 지역에 걸쳐 물자의 유통을 촉진하는 효과가 높고, 도도부현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핵심 활동으로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하는 것

(운송에 관한 사업 활동)

제2조

법 제2조제1항 제2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 활동은 철도 사업법(쇼와 61년 법률 제92호), 도로 교통법(쇼와26년 법률 제 183호), 그 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기타의 처분을 받아서 행하는 운송에 관한 사업 활동으로 한다.

(거점 기관)

제3조

법 제2조제2항 제6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활동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에서 결정해야한다.

- 1) 제1조제1호에 규정된 활동 교양 문화 시설, 체육 시설, 기타 동호에서 규정하는 행사가 실시하는 시설
- 2) 제1조제2호에 규정된 활동 교류 시설, 집회 시설 또는 체험 학습 시설
- 3) 제1조제3호에 규정된 활동 상업 시설 기타 이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활동을 하기위한 사업장으로 상당수의 사업자가 이용하기위한 시설이나 의료 시설
- 4) 제1조제4호에 규정된 활동 유통 업무 시설
- 5) 제1조제5호에 규정된 활동이 호에 규정하는 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하는 것
- 6) 전조에 규정된 활동 교통 시설(거점 시설 관련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유통 업무 시설

(거점 시설 관련 기반 시설 정비 사업)

제4조

법 제2조제3항 제1호 ⑧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궤도법(대정 10년 법률 제76호)에 의한 궤도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 2) 하천 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것
- 3) 주거 시설의 정비 또는 주택 시가지의 정비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것

(광역적 특정 활동에 따른 사람의 왕래 또는 물자의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법 제2조제3항 제2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전조 제1호에 규정된 산업으로 한다.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의 기재 사항)

제6조

법 제5조제2항 제6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의 명칭
- 2) 거점 시설 관련 기반 시설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3) 환경 보전에 대한 배려에 관한 사항
- 4)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 대한 사항, 기타 국토교통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이 적합한 거점 시설 관련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관한 방침 또는 계획)

제7조

법 제5조제3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거점 시설 관련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고속 자동차 국도법(쇼와 32년 법률 제79호)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비 계획
- 2) 항만법(쇼와 25년 법률 제 218호) 제3조2에서 규정하는 방침과 동법 제3조3에서 규정하는 항만 계획
- 3) 하수도법(쇼와 33년 법률 제79호) 제2조2에서 규정하는 유역 또는 하수도 정비 종합 계획 및 동법 제4조제1항과 제25조3 제1항 허용에 관한 사업 계획
- 4) 하천법(쇼와 39년 법률 제 167호) 제 16조에서 규정하는 하천 정비 기본 방침과 동법 제16조2에서 규정하는 하천 정비 계획
- 5) 주거 생활 기본법(평성 18년 법률 제61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거 생활 기본 계획

(다른 도도부현의 의견을 듣는 사업)

제8조

법 제5조제6항(이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4조제1호에 규정된 산업으로 한다.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또는 일반 사단 법인 혹은 일반 재단 법인에 준하는 자)

제9조

법 제5조제7항(이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사단으로, 대표의 결정으로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
- 2)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공시설, 기타 공익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
- 3) 전 두 호에 규정된 것 외에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로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것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의 승인 등의 신청)

제10조

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기 양식 제 1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것을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이것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토지 및 사업 지역을 표시한 근처 지도
- 2) 축척, 방향, 사업 지역, 부지 경계, 부지 내의 건물 위치 및 사업 지역에 정비된 공공시설 및 이에 준하는 피난 시설, 주차장, 기타 건물 사용자와 도시의 거주자 및 숙박, 다른 참가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배치도
- 3) 축척, 방향, 구조 및 설비의 개요를 표시한 건축물의 각층 평면도
- 4)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의 공정표
- 5) 거점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구역 내의 토지 및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상황과 해당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해당 거점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의 개요
- 6) 축척, 방향, 사업 지역, 신청자의 종전 소유권, 기타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음 호에서 "소유권 등"이라고 한다)가 있는 토지 및 신청자의 소유권 취득 또는 기타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취득이나 설정을 하려고 하는 토지의 경계 및 사업 지역 내 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사업 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배치도
- 7) 신청자가 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신청자가 사업 지역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사항 증명서, 정관 및 직전 3개년도의 각 사업 연도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및 수지 상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서류
 - 9)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표의 초본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서면, 자산과 부채에 관한 조서 및 소득 상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서류
 - 10) 거점 시설 정비 사업에 의해 정비되는 건축물에 관한 수지 전망을 기재한 서류
 - 11)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상대방 및 해당 상대방의 대략적인 조달 금액 및 그 조달 방법을 기재한 서류
 - 12)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성 19년 정령 제 249호)제2조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거점 시설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동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 동호 ①에서 ③까지 하나에 해당하며, 이들 거점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 동호에 규정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서류
 - 13)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법 제 8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기 양식 제1에 의한 신청서에 전항 각호에 규정된 것 중 변경에 관한 것(이것을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이것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전항 제3호 중 "법 제8조제1항 각호" 인 것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한 법 제8조제1항 각호"로 바꾼다.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의 기재 사항)

제11조

법 제7조제2항 제8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의 명칭 및 목적
- 2) 해당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이 정책 중 법 제4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 및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 중 해당 중점 지구의 지역에 관한 법 제5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비추어 적절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 사항
- 3) 해당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이 도시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이용과 도시 기능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 사항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의 공표)

제12조

법 제 9조(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거점 시설 정비 사업의 명칭 및 목적
- 2) 인정 계획에 관한 건축물 및 그 부지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개요

(민간 거점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

법 제10조제1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역의 명칭 변경 또는 지번 변경에 따른 변경
- 2) 공사 착수 시기와 사업 시행 기간의 6개월 이내의 변경
- 3) 전 두 호에 규정된 것 외에 거점 시설 정비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하는 변경

(인증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 방식)

제14조

법 제15조제1항 제1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독점적 인증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인증 사업자로 특정 목적 회사에 대해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

(민간 도시 계획이 행하는 거점 시설 정비 사업 지원 업무 기준)

제15조

법 제15조제3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일반 금융 기관이 행하는 금융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도시 계획 결정 등의 제안)

제16조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된 제안서를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첨부하여 이들을 도시 계획 결정권에게 제출해야한다.

- 1) 도시 계획의 초안
- 2) 별기 양식 제 2의 인증 사업에 관한 계획서
- 3) 인증 사업에 관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①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토지 및 사업 지역을 표시한 지도
 - ② 축척, 방향, 사업 지역, 부지 경계, 부지 내의 건물 위치 및 사업 지역에 정비된 공공시설 배치를 표시한 사업 구역 내 건축물의 배치도

- 4) 제1호 도시 계획 초안의 내용이 해당 인증 사업 시행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유를 게시한 서류
- 5) 법 제16조제2항 제2호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보조금의 액수)

제17조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고 한다)은 도도부현 마다 교부하는 것으로, 그 금액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식으로 계산된 금액 한도로 한다.

$$A \times C \times T \times 0.5$$

(수식에서 A, C, T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A 해당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에 포함된 거점 시설에서 도도부현의 경계 혹은 해안선까지의 최단 거리(그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에 여러 거점 시설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인 것은 그 중 가장 큰 값을 취하는 수치) 또는 10 킬로미터 안의 가장 큰 수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

C 법 제2조제3항 제1호 ①에서 ⑩까지 규정하는 시설의 정비에 관한 1년도의 단위 면적 당 표준 투자액으로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금액

T 그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 계획의 계획 기간

2. 전항에 명시된 것 외에 보조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대신이 결정한다.

부칙

(시행 기일)

- 1.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9년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3월 31일 국토교통성령 제16호)

이 성령은 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12월 1일 국토교통성령 제97호) 발취

(시행 기일)

-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 1 (제10조관계)

양식 제 2 (제16조관계)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평성 6년 6월 29일 법률 제46호)

최종개정 : 평성 17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제1장 총칙 (제1조- 제 2조)

제2장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기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등 (제3조- 제 5조)

제3장 농·림·어업 체험 민박 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제16조- 제 38조)

제4장 기타 조항 (제39조- 제 40조)

제5장 벌칙 (제41조- 제 49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함과 동시에,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체 정보 등록 제도를 실시하는 것 등을 통해 그 건강한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주로 도시의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농산어촌에 체재하면서하는 농·림·어업 경험과 그 외 농림수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를 촉진하고, 따라서 여유 있는 국민 생활의 확보와 농산어촌 지역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은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은 주로 도시의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해 농촌에 체류하면서하는 농사 체험 및 기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이 법률에 "산촌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은 주로 도시의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산촌이나 어촌에 체재하면서 하는 농사체험 또는 낚시 등 임업 또는 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이 법률에 "농용지등"은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 58호)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열거한 토지를 말한다.

4. 이 법률에 "농사 체험 시설 등"은 농사 체험 시설 기타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법률에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체"라 함은 시설을 마련하고 사람을 숙박시키고,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 또는 산촌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이하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라 한다)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장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등

(지역)

제3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1) 농용지등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며,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다.
- 2) 해당 지역에서 농용지와 그 외 농업 자원과 주변 환경이 하나가되어 좋은 농촌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3)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상으로 해당 지역은 물론 농촌 지역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를 촉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4) 해당 지역이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농업 진흥 지역에 있다.

(기본 방침)

제4조

도(都),도(道),부(府),현(縣)은 앞 조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 한다.

2.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 조 제1항의 시(市), 정(町),촌(村) 계획의 지침이 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2)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지역(이하 "정비 구역"이라고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 3) 서비스 지역에서의 농용지와 그 외 농업 자원의 보전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용지 등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 지역의 농사 체험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3. 도(都),도(道),부(府),현(縣)은 기본 정책에서는 전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서비스 지역의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와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촌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의 정비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4. 도(都),도(道),부(府),현(縣)은 기본 방침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대신과 협의해야 한다.
5. 도(都),도(道),부(府),현(縣)은 기본 방침을 정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6. 도(都),도(道),부(府),현(縣) 정세의 추이에 의한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기본 방침을 변경하여야 한다.
7.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방침의 변경에 준용한다.

(도시 계획)

제5조

시(市),정(町),촌(村) 기본 방침에 따라 해당 도시의 지역으로 제3조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 계획"라고 한다)을 만들 수 있다.

2. 도시 계획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서비스 지역 구역
 - 2) 서비스 지역의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에 관한 정책
 - 3) 서비스 지역에서의 농용지, 기타 농업 자원의 보전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용지 등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 지역의 농사 체험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3. 도시는 서비스 지역의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와 함께 산촌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 계획에 전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산촌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4. 시정촌 계획을 만들려고 할 때 먼저 도도부현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도시는 도시 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6. 전 두 항의 규정은 시정촌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협정)

제6조

도시 계획에서 정한 정비 지역 안에 있는 토지(공공시설에 제공해주는 토지 제외)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 권한, 영 소작 권, 질권, 임차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토지 소유자 등"이라한다)은 농용지, 기타 농업 자원의 보 건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그 토지의 이용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해 협정이 적용 가능하면 시정촌 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협정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 1) 협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 (이하 "협정 지역"이라한다)
- 2) 농용지, 기타 농업 자원의 보 건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위한 농용지 등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 3)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
- 4) 협정의 유효 기간
- 5) 기타 필요한 사항

3. 협정 지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상당 규모의 토지의 지역인 것
- 2) 농용지 등이 해당 협정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4. 협정에서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도시 계획에서 정한 정비 지역 내에 있는 토지 중 협정 지역에 인접 토지이고 협정 지역의 일부가 되는 조에 의해 해당 협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서 협정 지역의 토지가 되는 것을 그 협정 지역 내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등이 원하는 것 (제 10조에서 "협정 지역 인접 지역"이라고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5. 협정은 협정 지역 내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한다.

6. 협정의 내용은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7. 협정의 유효 기간은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협정의 인정 등)

제7조

시정촌 장은 전조 제1항의 인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항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 신청 절차 또는 협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것, 그 외 타당한 것

- 2) 협정 내용이 토지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것, 그 외 합리적인 것
 - 3) 협정의 내용이 시정촌 계획의 달성에 이바지한다하다고 인정되는 것
2. 시정촌 장은 전조 제1 항의 인정을 했을 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며, 해당 협정의 사본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해서 제공하는 것과 함께 함께 협정 지역임을 해당 지역에 명시해야한다.

(협약의 변경)

제8조

제6조제 1 항의 인정을 받은 협정에 관한 토지 소유자 등은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원의 합의로 이를 결정하고, 시정촌 장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인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협정 인증의 취소)

제9조

시정촌 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제6조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협정 내용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 또는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된 경우
 - 2) 협정 지역에서 그러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용지, 기타 농업 자원의 보전 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를 갔을 때는 그 취지를 해당 협정에 관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한다.

(협정 성립 후 협정에 참여)

제10조

제7조제2항(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 공고 있던 후에 언제든지 협정 지역 내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등이 된 자 또는 협정 지역 인접 도시 지역 내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등은 시정촌 장에 대해 서면의 의사를 표시하여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 지역 인접 구역의 구역 내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등이 해당 의사를 표시한 것에 관한 토지 지역은 그 의사 표시가 있었던 때 이후 협정 지역에 속해야 한다.

- 2.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 지역 인접 지역의 지역 내 토지가 협정 지역의 토지가 된 경우에 준용한다.

(농용지 지역 지정의 특례)

제11조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협정에 관한 협정 지역의 농용지 등(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규정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시정촌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용지등에 대해 소유권 이외에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권리, 취득권 또는 저당권이 있는 사람 전원의 동의를 얻고, 해당농용지등의 지역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호의 농용지 지역(다음에서 "농용지 지역"이라고 한다)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요청에 따라 시정촌이 동항의 요청에 관한 농용지 등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용지 지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농사 체험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의 승인)

제12조

도시 계획을 만든 도시는 농민 조직 단체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만든 정비 지구의 농사 체험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다는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계획이 도시 계획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될 때에는 그 계획이 적절하다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기금의 확보)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조의 인정을 받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그러한 인정에 관한 계획에 따라 농사 체험 시설 등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확보 또는 유통의 알선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등의 지원)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계획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의 실시예 필요한 사업을 행하는 등에 대한 조언, 지도, 기타 원조의 실시예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농업 생산 기반 정비와 개발 등의 추진에 있어서의 배려)

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지역에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및 개발, 농업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농업 종사자의 좋은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도시 계획의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위한 조치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체 등록)

제16조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을 영위하는 자 (이하 "농림 어업 체험 민박업자"라고 한다)는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무에 관한 영업 방법에 관해 농림 수산 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을 하려고 하면, 농림수산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8조에서 제 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등록 실시 기관"이라고 한다)가 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전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여야한다.

- 1)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필요한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
- 2)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그 피해를 보상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3) 지역의 농림어업자와의 조정에 관한 사항

(표지의 배치)

제17조

전조 제1항의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자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무에 관련된 숙박 시설마다 그 보기 쉬운 위치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표지를 배치해야한다.

2. 전조 제1항의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자의 등록을 받지 않은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해서는 안 된다.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제18조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농림수산대신의 등록(이하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이라고 한다)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체 등록 실시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 업무 실시"라고 한다)를 하려고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야한다.

(결격 조항)

제19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는 자는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그 집행을 정지되어 집행을 받을 수 없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2)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3) 법인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 전 제2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는 자가 있는 것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기준)

제20조

농림수산대신은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자(이하 이 항에서 "등록 신청자"라고 한다)가 다음에 열거하는 요구 사항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 실시 기관의 등록을 해야한다. 이 경우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농림수산성 시행령으로 정한다.

- 1)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등록 실시 업무를 실시하고 그 인수가 등록 실시 업무를 행하는 회사별로 두 명 이상인 것
 - ① 학교 교육법(쇼와 22년 법률 제26호)에 근거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구 대학령(다이쇼 7년 칙령 제 388호)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의 운영에 관한 기획이나 지원 또는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에 통산하여 1년 이상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것
 - ② 학교 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이나 고등 전문학교 또는 구 전문학교령(메이지 36년 칙령 제61호)에 따라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의 운영에 관한 기획이나 원조 또는 농림 어업 체험 민박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에 통산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 ③ ① 및 ②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④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의 운영에 관한 기획이나 지원 또는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했던 경험을 가진 자
- 2) 가입 신청자가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자에 의해 주도 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것
 - ① 가입 신청자가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체가 상위 법인(회사법(평성 17년 법률 제86호) 제 8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회사

를 말한다)인 것

- ② 등록 신청 임원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지난 2년간 해당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의 비율이 2분의 1일 넘는 것
- ③ 등록 신청자(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권이 있는 임원)가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지난 2년간 해당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이다.

2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등록 실시 기관 전화번호부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 1)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의 연월일 및 등록 번호
- 2)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 실시 업무를 수행 사무소의 소재지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갱신)

제21조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은 3년을 경과한 후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 전 제 3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갱신에 관하여 준용한다.

(등록 실시의 의무)

제22조

등록 실시 기관 등록 실시 업무를 수행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등록 실시 업무를 수행한다.

2. 등록 실시 기관은 정당하게 농림 수산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의해 등록 실시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소의 변경 신고)

제23조

등록 실시 기관 등록 실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하는 1,2주일 전에 그것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등록 실시 업무의 규정)

제24조

등록 실시 기관 등록 실시 업무에 관한 규정(다음에서 "등록 실시 업무 규정"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등록 실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2. 등록 실시 업무 규정에 등록 실시 업무의 실시 방법, 등록 실시 업무에 관한 요금, 그 외에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유지한다.

(등록 실시 업무의 휴업, 폐업)

제25조

등록 실시 기관은 등록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제26조

등록 실시 기관은 매 사업 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 연도의 재산 목록,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또는 수지 명세서 및 사업 보고서(이 작성에 대신해서 전자적 기록(전자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 기기에 의한 정보 처리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의 그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5년간 사무소에 비치해 둬야한다.

2.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체 그 외의 이해관계인은 등록 실시 기관의 업무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다음에 열거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등록 실시 기관의 결정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 1) 재무제표 등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열람 또는 청구
- 2) 전 호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 청구
- 3) 재무제표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청구
-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제공된 것의 청구 또는 그러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신청

(적합 명령)

제 27조

농림수산대신은 등록 실시 기관이 제20조제1항 각호 중 하나에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실시 기관에 대해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등록 실시 기관에 대한 개선 명령)

제28조

농림수산대신은 등록 실시 기관이 제 22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 실시 기관에 대해 등록 실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는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체의 등록 방법 기타 업무 방법의 개선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취소 등)

제29조

농림수산대신은 등록 실시 기관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을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1)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될 때
- 2) 제 23조에서 제 25조까지, 제26조제1항 또는 다음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거절했을 때
- 4) 앞 두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5)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또는 해당 그 갱신을 받았을 때

(장부의 기재 등)

제30조

등록 실시 기관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등록 실시 업무에 관해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해야한다.

(공시)

제31조

농림수산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공시해야한다.

- 1)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을 한 때
- 2) 제23조또는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 3) 제 2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등록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때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 단체의 지정)

제32조

도도부현 지사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체를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다음 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그 신청에 의해 동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하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체 법인"이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 단체의 업무)

제33조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 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 1)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위해 구성원에 대한지도를 실시하는 것
- 2)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체와 지역의 농림 어업과의 조화를 확보하기위한 조정을 추진하는 것
- 3)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에 대한 고객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것
- 4) 앞 세 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 단체에 대한 개선 명령)

제34조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 운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 단체에 대해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체 법인 지정 취소)

제35조

도도부현 지사는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 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33조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3) 부정한 수단으로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 단체의 지정을 받은 때

(보고 및 출입검사)

제36조

농림수산대신은 등록 실시 기관에 대해서 도도부현 지사는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 단체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직원이 이를 단체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상황이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이TEk.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해야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청문 방법의 특례)

제37조

제29조또는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 청문회의 날짜의 심리는 공개하여 실행해야한다.

(국가 지원)

제38조

국가는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그리고 지역의 농림어업과의 조화를 확보하는 견지에서 농림어업 체험 민박 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장 기타 조항

(권한의 위임)

제39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역농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성령에의 위임)

제40조

이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 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벌칙

제41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실시 업무의 정지 명령을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다음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제1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시한 자
- 2)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신고를 한 자
- 3) 제30조규정에 위반하여 이 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하지 않고 허위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를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
-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신고를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한 자

제4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이전 두 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기재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거절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평성 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지방자치법 제 250조의 다음 제 5조, 절명 및 항목 및 항목 명을 추가하는 개

정 규정(동법 제 250조 9 제1항에 관한 부분(두 의원의 동의를 얻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244조의 규정(농업 개혁 조장법 제14조3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8조 및 제 17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 7조, 제 10조, 제 12조, 제 59조, 제60조제4항 및 제5항, 제 73조, 제 77조, 제 157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 160조, 제 163조, 제 164조 및 제 202조의 규정 공포한 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101조

시행일 전에 제 30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구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제 4 항(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시정촌 계획은 제 30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제4항(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실행한 시정촌 계획으로 본다.

2. 이 법률의 시행 시에 현개 구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되는 승인 신청은 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초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된 신청으로 본다.

(국가 등의 업무)

제 159조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 시행 전에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외 공공단체 사무(부칙 제 161조에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 이 법 시행 후,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법령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호에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63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한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허가 등의 신청과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에서 이 법률의 시행일에 이들 활동에 관한 행정 사무를 시행해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은,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 한다)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상당 규정에 의해 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에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법률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것을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상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해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그 외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수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각각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1조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대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고 한다) 시행일 전에 행정 불복 심사법에서 규정하는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이의 신청은 시행일 이후에도 처분청에 이어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불복 심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처분 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행정 불복 심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로 하는 업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2조

시행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 164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2 부칙 제 8조, 제51조 및 제 18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 250조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법 별표 제 1에 제시되는 새로운 지역 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검토를 실시해야한다.

제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 재원의 충실 확보의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제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 개혁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6월 29일 법률 제 나나 네 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조 및 부칙 제 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전 등록)

제2조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 18조에 규정된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법 제 24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실시 업무 규정의 신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구법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

이 법률의 시행 시 이 법에 의한 개정 전의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3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는 신법 제16조제1항의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자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국 협회의 사업 보고서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시 구법 제16조제1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실시한 이 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의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6조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7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발췌

이 법은 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평성 7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 시행령 제23호)

최종개정 : 평성 19년 4월 17일 농림수산성 시행령 제4호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6년 법률 제46호) 제2조제1항과 제5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3항과 제5항, 제24조 및 제30조규정에 의거,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농사 체험 시설 등)

제1조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농사 체험 시설
- 2) 교양 문화 시설
- 3) 휴양 시설
- 4) 집회 시설
- 5) 숙박 시설
- 6) 판매 시설
- 7) 전 각호에 규정된 시설 이용에 필요한 시설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 또는 산촌,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필요한 업무)

제2조

법 제2조제5항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 또는 산촌,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필요한 업무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로 한다.

- 1)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필요한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 ① 농사 체험 지도
 - ② 농산물 가공이나 요리 체험 지도
 - ③ 지역 농업이나 농촌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지식 부여
 - ④ 농용지, 기타 농업 자원의 안내
 - ⑤ 농사 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업무
 - ⑥ 전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제안, 알선

2) 산촌 체재형 여가 활동(주로 도시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산촌에 체류하면서 하는 임업 경험, 기타 임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에 필요한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 ① 임업 또는 임산물의 생산이나 낚시의 지도
- ② 임산물의 가공이나 요리 체험 지도
- ③ 지역 임업 또는 산촌 생활과 문화에 대한 지식의 부여
- ④ 삼림의 안내
- ⑤ 산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업무
- ⑥ 전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제안, 알선

3)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주로 도시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어촌에 체재하면서 하는 낚시 체험, 기타 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필요한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 ① 낚시 또는 수산 동식물의 양식에 관한 지도
- ② 수산물 가공이나 요리 체험 지도
- ③ 지역 어업 또는 어촌 생활과 문화에 대한 지식의 부여
- ④ 어장 안내
- ⑤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업무
- ⑥ 전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제안, 알선

(기본 방침에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제3조

법 제4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서비스 지역의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와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촌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2) 서비스 지역의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와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촌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정촌 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

제4조

시정촌이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촌의 장은 농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법 제5조제6항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5조

시정촌은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경우 동조 제2항 제1호 지역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글자, 작은 문자와 특정 표시, 시설, 가공 작물 또는 이들의 거리와 방향, 평면도 등에 의해 해당 지역이 확실히 알려지도록 결정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법 제5조제6항 규정에 의한 시정촌 계획의 변경 중 동조 제2항 제1호 지역의 변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정촌 계획에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제6조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서비스 지역의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와 함께 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촌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에 관한 정책
- 2) 서비스 지역의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와 함께 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촌 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정의 인정을 받는 경우의 첨부 서류)

제7조

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동조 제5항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한다.

(협정의 공고)

제8조

법 제7조제2항(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시정촌의 사무소에 게시 장소에 게시하거나 기타 소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 1) 협정의 명칭
- 2) 협정 지역을 표시한 도면
- 3) 협정 열람 위치

(협정 지역의 표현 방법)

제9조

법 제7조제2항(법 제8조제2항과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협정 지역의 표현은 협정 지역 내의 보기 쉬운 위치에 그 협정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게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협정에 관한 경미한 변경)

제10조

법 제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해당 지역의 명칭 변경 또는 지번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 한다.

(협약 변경의 승인을 받는 경우의 첨부 서류)

제11조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협정 변경의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동향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한다.

(농용지 지역의 지정 요청)

제12조

법 제11조제 1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정촌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요청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해당 요청에 관한 농용지 등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및 지적
- 3) 해당 요청에 관한 농용지 등에 관해 지상권한, 영소작권, 질권, 임차권,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선취 특권 또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표시

2. 전항의 요청서는 법 제11조제1항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농사 체험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의 승인 신청 절차)

제13조

법 제12조인증 신청은 농사 체험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것을 제출해야한다.

- 1) 농사 체험 시설 등의 위치
- 2) 농사 체험 시설 등의 정비를 행하는 자들에 관한 사항

3) 농사 체험 시설 등 소개 및 규모

(농임어업 체험 민박업자의 등록 기준)

제14조

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다.

1)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필요한 역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의 적절한 관리, 기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어업 등의 체험 지도 등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②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인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
- ③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것
- ④ 숙박에 관한 업무와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필요한 업무 내용 및 요금 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
- ⑤ 알선은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업무는 이 조에 규정된 조치,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가 제공하는 것
- ⑥ 이용자에게 농림 수산물 가공이나 요리 체험 지도 또는 식사를 할 때 지역의 농림 수산물의 적극적인 활용이 도모되고 있는 것

2)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그 피해 조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에 관한 보험 계약 또는 공제 계약(동호에서 "보험 계약 등"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있는 것. 그러나 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보험 계약 등의 체결 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숙소에 비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지역의 농림 어업자와의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필요한 역무의 제공에 있어서 지역의 농림 수산업과 조화로운 농용지, 삼림, 어장 등의 이용에 노력하는 것
- ② 이용자가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할 때 지역의 농림 어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농용지, 삼림, 어장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는 것
- ③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필요한 역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지역의 농림 어업자의 협의 제기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4) 기타 사항

- ① 농용지, 삼림, 어장 등의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희귀 야생 동식물의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한다.

- ② 지역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노력해야한다.
- ③ 이용자로부터 불만이 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체의 등록 신청)

제15조

법 제16조제1항의 농림 어업 체험 민박업자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 신청서를 등록 실시 기관(동항에서 규정하는 등록 실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주소 및 직업 (법인에 있어서는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 내용)
- 2) 숙박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3) 제공하는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필요한 업무 내용

2 전항의 등록 신청서는 행정청의 허가, 인가, 승인 및 이와 유사한 것(이하 "인증 허가 등"이라고 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인증 허가 등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인증 허가 등의 신청 상황을 밝힌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3 등록 실시 기관은 이전 두 항에 규정된 것 외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체의 등록 거부)

제16조

등록 실시 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1)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무에 관한 영업 방법이 제 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 2) 신청자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그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소 전 3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임원인 법인을 포함한다).
- 3) 신청인이 법, 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삼림법(쇼와 26년 법률 제 249호), 어업법(쇼와 24년 법률 제 267호), 수산 자원 보호법(쇼와 26년 법률 제 313호) 혹은 선박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쇼와 63년 법률 제99호)이나 이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그 형의 집

행을 받을 수 없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임원 중에 전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 등록 실시 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 등)

제17조

법 제16조제1항 등록을 받은 농림 어업 체험업자(이하 "등록 기관"이라고 한다)는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등록 실시 기관에 신고해야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등록업자가 그 등록에 관한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농림 어업 체험 민박업자의 등록 취소)

제18조

등록 실시 기관은 등록 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2)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명령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한 때
- 3)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때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체의 등록 말소)

제19조

등록 실시 기관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또는 등록 업체에서 그 등록의 말소 신청이 있을 때 지체없이 해당 등록을 말소해야한다.

(표지)

제20조

법 제17조제1항 표지판은 별기 양식 제 1과 같다.

2. 등록 실시 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농림 어업 체험 민박업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 업체에 대해 별기 양식 제1의 표지를 교부해야한다.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신청)

제21조

법 제18조규정에 의하여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 신청서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등록 실시 업무를 하려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3) 등록 실시 업무를 시작하는 연도

2 전항의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단, 해당 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의 열람을 할 수 있게 한 경우로, 농림수산대신이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전항의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아래에 규정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 ① 정관, 기부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것
 - ② 등기 사항 증명서
 - ③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면
 - ④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의 대차 대조표 및 그 사업 연도 말의 재산 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것(신청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설립된 법인에 있어서는 그 설립 시의 재산 목록)
- 2) 개인에게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 ① 주민 표의 사본
 - ② 재산에 관한 조서
- 3) 신청자가 법 제19조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서면
- 4) 신청자가 법 제20조제1항 각호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등록 실시 업무의 기준)

제22조

법 제22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다.

- 1) 등록 실시 기관 등록의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제5조제1항의 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은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무에 관한 영업법이 제 14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을 수행할 것
- 2) 등록 실시 기관은 전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심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 대한 질문, 현지 조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를 실시할 것

(등록 실시 업무 규정)

제23조

법 제24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다.

- 1) 등록 실시 업무를 할 시간과 휴일에 관한 사항
- 2) 등록 실시 업무를 하는 회사에 관한 사항
- 3) 등록 실시 업무에 관한 요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 4) 등록 실시 업무의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 5) 제5조제1항의 등록 신청서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6) 등록 실시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7) 등록 실시 업무에 대한 정당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록 실시 업무의 휴업, 폐업의 신고)

제24조

등록 실시 기관은 법 제 35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등록 실시 업무의 범위
- 2)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날짜와 중단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
- 3)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등)

제25조

법 제26조제2항 제3호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지면 또는 출력 장치의 영상 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 중 등록 실시 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송신자의 사용과 수신자의 사용에 관한 전자 기기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는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에 그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받는 사람의 사용에 관해 전자 기기에 내장된 파일에 해당 정보가 기록되는 것
- 2) 디스크,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보를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파일에 정보를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

(장부)

제26조

법 제31조장부는 등록 실시 업무를 하는 회사마다 작성해서 구비하고, 등록 실시 업무를 폐지하기까지 저장해야한다.

2. 법 제 30조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다.

- 1) 제5조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열거한 사항
- 2) 등록 신청에 관한 숙박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3) 등록 신청을 받은 날짜
- 4) 등록 또는 거부의 예
- 5)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유
- 6) 등록된 연도 및 등록 번호
- 7) 기타 등록 실시 업무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

3. 등록 실시 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등록 또는 등록 거부를 할 때 지체없이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한다.

(농림 어업 체험 민박업 단체의 지정 신청)

제27조

법 제32조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하는 법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 1) 명칭 및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2) 사무소의 소재지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단, 해당 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도도부현 지사가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전항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아래에 규정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정관 또는 기부행위
 - 2) 등기 사항 증명서
 - 3)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면
 - 4) 지정 신청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
 - 5) 법 제 33 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실시에 관한 기본 계획
 - 6) 법 제33조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공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7)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업체를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

제28조

법 제36조제2항 인증서 양식은 별기 양식 제 2와 같다.

(권한의 위임)

제29조

법 제4조제4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 대신의 권한은 지방 농정 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성령은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평성 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9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82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 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다음 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3월 7일 농림수산성령 제18호)

이 성령은 부동산 등기법의 시행일(평성 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11월 11일 농림수산성령 제115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평성 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3월 22일 농림수산성령 제14호)

1. 이 성령은 평성 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되는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는 이 성령의 개정 후의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9년 4월 17일 농림수산성령 제44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조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이 성령의 개정 이전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기 양식 제 2 (다음 항에서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의한 신분증명서는 이 성령의 개정 후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기 양식 제 2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성령의 시행 시 구 양식에 의한 양식 용지는 이 성령의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별기 양식 제 1 (제20조관계)

별기 양식 제 2 (제28조관계)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평성 17년 11월 2일 정령 제 331호)

내각은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6년
법률 제46호)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정
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정령은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
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7년 법률 제74호)의 시행일(평성 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평성 19년 5월 16일 법률 제48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 등으로 인해 농산어촌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 농산어촌의 정착 등 및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정착 등"은 농산어촌의 정착 및 도시의 주민이 그 주소 외에 농산어촌에 거주지를 갖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지역 간의 교류"는 도시 주민의 농산어업의 경험, 기타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교류를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농림 지역 등"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를 말한다.

- 1) 경작의 목적 또는 주로 경작이나 도축 사업을 위한 채초방조지. 가축의 방목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이하 "농용지"라고 한다)
- 2) 삼림의 집단적인 성장에 제공되는 토지(크게 농용지 또는 주거 지역 혹은 이에 준하는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삼림"이라고 한다)
- 3) 제5조제7항에 규정된 활성화 시설에 제공되는 토지 및 개발해서 동향에 규정된 활성화 시설에 제공되는 것이 적당한 토지(전 두 호에 규정된 토지를 제외한다)
- 4) 전 세 호에 규정된 토지뿐만 아니라 이들 토지와 일체적인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적당한 토지

(지역)

제3조

이 법률에 의한 조치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1) 농용지와 삼림(이하 "농림 지역"이라고 한다)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기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농림어업 종사자 많아서, 농산어업이 중요한 사업인 지역
- 2) 해당 지역에 정착 및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
- 3) 이미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

(기본 방침)

제4조

농림수산대신은 정착 등 및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의한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한다.

2.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 1) 정착과 지역 간 교류 촉진의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정착과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 국가별 설정에 대한 기본 사항
- 3) 정착과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사항
- 4) 다음 조 제1항에 규정된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 사항
- 5)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정착 및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3. 농림수산대신은 기본 방침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 국토교통대신, 다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4. 농림수산대신은 기본 방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한다.

5. 전 두 항의 규정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준용한다.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5조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정책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구역 내의 지역으로, 제3조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정착 등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의한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관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고 한다)을 만들 수 있다.

2.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1) 활성화 계획 지역
- 2) 활성화 계획의 목표
- 3) 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① 정착 등의 촉진에 기여해 농수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 기반과 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 ② 정착 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을의 배수 처리 시설, 기타 생활환경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③ 농산어업 경험을 위한 시설, 기타 지역 간 교류의 거점이 되는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④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전호 사업과 일체가 되어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

5) 전 두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6) 계획 기간

7)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은 그 활성화 계획을 창조하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실시하는 사업 또는 업무(이하 "사업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것 외에 필요에 의해 정착과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하는 농산어업의 조직 단체 혹은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평성 10년 법률 제7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도도부현이 만드는 활성화 계획에 있어서는 그 도도부현과 관련하여 활성화 계획을 창조하는 도시가 아닌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농산어업 단체 등"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 등(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해당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추진을 도모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것을 설명 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해 활성화 계획에 농산어업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려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그 사항에 관해 미리 해당 농산어업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5. 정착과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농산어업 단체는 해당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하는 지역을 그 지역에 있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대해 그 사업 등을 그 내용을 포함하여 활성화 계획안의 작성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6. 전항의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동항의 제안에 입각한 활성화 계획의 초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해당 제안을 한 농산어업 단체에 통보해야한다.

7. 활성화 계획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당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시정촌이 실시하는 농림 지역 소유권 이전 등 촉진 사업(동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에 의해 서비스되는 시설(이하 "인증기관"이라고 한다)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림 지역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또는 지상 권한, 임차권이나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이하 "소유권 이전 등"이라고 한다) 및 이것과 함께하는 그 소유권의 이전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림 지역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농림 지역 소유권 이전 등 촉진 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 방침

2) 이전되는 소유권의 양도 대가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

3) 설정 또는 이전되는 지상 권한,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의 존속 기간이나 생존 기간에 대한 기준 및 해당 설정 또는 이전을 받을 권리가 지

상 권한 또는 임차권인 경우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

4)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전항의 규정에 의해 활성화 계획에 농림 지역 소유권 이전 등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려는 시정촌(도도부현과 관련하여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활성화 계획은 과소 지역 자립 촉진 계획, 산촌 진흥 계획,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진흥에 관한 계획 지역 산림 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삼림의 정비에 관한 계획 및 도시 계획과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제18조2 시정촌의 도시 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조화가 유지되며,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4항의 기본 구상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10.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 활성화 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도도부현에 있어서는 관계 시정촌(도도부현과 관련하여 그 활성화 계획을 만든 도시를 말한다)에, 시정촌(도도부현과 관련하여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도부현에 해당 활성화 계획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11.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8항 및 전항의 규정은 활성화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보조금의 교부 등)

제6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다음 항의 교부금을 충당하고, 그 활성화 계획에 따른 사업 등의 실시(농산어업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부담을 포함한다.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활성화 계획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국가는 전항의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전항의 교부금을 충당하고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부담이나 수당은 해당 규정에 관계없이,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전 3호에 규정된 것 외에 제2항 교부금의 교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5조제7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된 활성화 계획을 만든 도시는 농림 지역 소유권 이전 등 촉진 사업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위원회 결정을 거쳐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을 결정해야한다.

2.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 1) 소유권 이전 등을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전 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을 하는 토지의 소재와 면적
-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에게 전 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4)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이 이전 받은 소유권 이전 후의 토지 이용 목적 및 그 소유권의 이전 시기 및 이전의 대가 및 그 지불 방법
- 5)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설정 또는 이전을 받는 지상 권한,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의 종류, 내용(토지의 이용 목적을 포함한다), 시기 또는 이전의 시기, 존속 기간이나 남은 기간 및 해당 설정 또는 이전을 받을 권리가 지상 권한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는 그 지불 방법
- 6)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의 내용이 활성화 계획에 부합하는 것
- 2) 전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대해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 및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 권한, 영소작권, 질권, 임차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
- 3) 전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이용 목적이 그 토지에 관련된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도시 계획, 기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며, 그 토지의 위치 및 규모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으로 보아 해당 토지를 그 이용 목적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
- 4)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의 내용이 활성화 계획 구역 내의 토지 농림업의 이용 및 다른 사용자와 조정으로, 활성화 시설에 제공해주는 토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그 토지 주변 지역 농용지의 집단화, 기타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
- 5)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
 - ① 그 토지가 농용지로 그 토지에 관한 전항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이용 목적이 농용지에 제공하기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법(쇼와 24년 법률 제 229호)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허가를 할 수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 ② 그 토지가 농용지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내용이 농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허가를 할 수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 ③ 그 토지가 농용지 이외의 토지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이 발생한 이후에 그 토지를 동항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이용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4. 시정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용지(그 농용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 농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5.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도도부현 농업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의 공고)

제8조

시정촌은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이 결정되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한다.

2.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해야한다. 그러나 전조 제4항의 승인을 받은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고 효과)

제9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고가 있는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지상 권한, 임차권이나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혹은 이전된다.

(등기의 특례)

제10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었던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에 관한 토지 등기에 대해서 정령으로 부동산 등기법(평성 16년 법률 제123호)의 특례를 결정할 수 있다.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의 특례)

제11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성화 계획이 실시되는 시민 농원(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평성 2년 법률 제44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민 농원을 말한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 농산어업 단체는 동법 제7조제1항 인증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그 사업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동항과 동조 제2항(이 규정에 따른 명령의 조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의 일부를 생략하는 절차, 기타 농림수산성 시행령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단순화된 절차에 의한 것으로 한다.

(국가 등의 지원 등)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그 사업 등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시에 관해 필요한 조언, 지도, 기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항에 명시된 것 외에 농림수산대신, 관계 행정 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농산어업 단체는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도모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 대한 배려)

제13조

국가 행정 기관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활성화 계획 구역 내의 토지를 그 활성화 계획에 명시된 활성화 시설에 제공하기 위해서 농지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을 요구받았을 때는 해당 활성화 시설 설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임야의 활용 등)

제14조

국가는 활성화 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소유 임야의 활용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해당 활성화 계획 이행을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산림 관리 국장에 대해 기술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업무의 구분)

제15조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부칙 첨부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2조

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7년 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평성 19년 7월 31일 농림수산성 시행령 제65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11월 28일 농림수산성령 제73호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과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48호) 제5조제2항 제3호, 제7호, 제3항 및 제7항 제4호, 제6조제2항과 제4항, 제7조제1항, 제2항 제6호 및 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과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활성화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조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과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2항 제3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농림 수산업과 식품 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장에 관련된 사업에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위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활성화 계획의 기재 사항)

제2조

법 제5조제2항 제7호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 1) 활성화 계획의 명칭
- 2) 활성화 계획 지역의 면적
- 3) 법 제5조제2항 제3호 ①에서 ④까지 규정된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4) 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활성화 계획에 농림어업 단체(동항에서 규정하는 농림어업단체 등을 말한다)가 실시하는 시민 농원(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평성 2년 법률 제44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민 농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① 시민 농원에 제공해주는 토지의 소재와 면적
 - ② 시민 농원에 제공하는 농지 위치 및 면적 및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농지 중 하나에 속하는 것
 - ③ 시민 농원 시설(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제2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

민 농원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위치 및 규모, 기타 시민 농원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④ 시민 농원의 개설시기

- 5) 활성화 계획의 목표 달성 상황을 평가에 관한 사항
- 6) 기타 농림수산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어업 종사자사 조직하는 단체 또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준하는 사람)

제3조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 1)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
- 2)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착 등과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
-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격이 아닌 사단으로, 대표의 결정이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 4) 전 세 호에 규정된 것 외에, 정착 등 과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 장이 지정한 것

(농림 지역 소유권 이전 등 촉진 사업에 대한 활성화 계획에 기재해야 할 사항)

제4조

법 제5조제7항 제4호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농림 지역 소유권 이전 등 촉진 사업의 실시에 의해 설정되거나 또는 이전되는 농용지에 관한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의 조건, 기타 농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동항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이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동항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활성화 계획의 첨부 서류)

제5조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법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게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활성화 계획을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활성화 계획 구역 내의 토지 현황을 밝힌 도면
- 2)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제2항 교부금 금액의 한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

(보조금의 교부 방법 등)

제6조

법 제6조제2항 교부금은 활성화 계획을 제출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 당 교부하는 것으로, 그 금액은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5조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국가 또는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 농업에 대한 배수 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농용지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 관리, 폐지 혹은 변경, 구획 정리, 농용지 조성,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개량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2항 교부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전조와 전호 중에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의 교부 대상 사업 또는 사무, 교부금의 교부 절차, 보조금의 회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에 대한 농업위원회의 결정)

제7조

농업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농용지의 권리 이동이 적절하게 행해지는 것을 취지로, 그러한 결정에 걸리는 기간, 기타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

제 8조

법 제7조제2항 제6호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 1) 법 제7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설정 또는 이전을 하는 농용지에 관한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조건, 기타 농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동항 제4호와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 2) 법 제7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을 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용지로, 해당 소유권 이전 등 다음의 토지 이용 목적이 농용지에 제공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① 법 제7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의 농업 상황
 - ② 권리를 설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제3조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취지
 - ③ 기타 도움이 될 것인 사항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의 승인 절차)

제9조

시정촌은 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해당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과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것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

- ① 토지의 이용 상황과 일반 수확량
- ② 소유권 이전 등 당사자가 토지의 전용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수당의 종류, 내용 및 그 상대방
- ③ 토지 전용의 시기 및 전용의 목적에 관련된 시설의 개요
- ④ 토지를 전용하여 발생하는 근처 농용지, 작물, 가축 등의 피해 방제 시설의 개요

2)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3) 그 신청에 관련된 토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도로, 배수 시설, 기타 시설의 위치를 밝힌 도면

4) 그 신청에 관한 농용지가 토지 개량 구역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 개량구의 의견서(그 토지 개량구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했어도 그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5) 기타 도움이 될 것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용지의 전용을 위한 권리 이동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을 취지로 해당 승인에 걸리는 기간, 기타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의 공고)

제10조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기타 소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을 결정한 취지 및 해당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제8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 2)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에 관하여 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지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의 공고 통지)

제11조

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통지는 그 통지서에 동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과 해당 공고 예정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11월 28일 농림수산성령 제73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평성 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의 특례에 관한 성령
(평성 19년 7월 30일 농림수산, 국토교통성령 제1호)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48호) 제11조규정에 의거,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의 특례에 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및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11조의 농림수산성 시행령,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간략화된 절차는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평성 2년 법률 제44호) 제7조제1항 인증 신청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 1)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제7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된 사항
- 2)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시행 규칙(평성 2년 농림수산성령, 건설부령 제1호) 제10조제1호에 규정된 사항

부칙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쇼와 48년 10월 17일 법률 제118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4월 30일 법률 제28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댐 또는 호수 수위 조절 시설의 건설은 그 기초 조건이 현저하게 변화하는 지역에 대해 생활환경, 산업 기반 등을 정비하고, 아울러 댐 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거나 또는 호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를 추진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관계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로써 댐과 호수 수위 조절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수자원 개발과 국토의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지정 댐 등"이라함은 지정댐과 지정 호수 수위 조절 시설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지정 댐"이라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독립 행정 법인 수자원 기구가 건설하는 댐 중 그 건설에 의해 상당수의 주택 또는 해당 면적의 농지가 수몰되는 댐으로 정령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지정 호수 수위 조절 시설"이라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독립 행정 법인 수자원 기구가 건설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호수 수위 조절 시설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그 건설로 호수와 호수 주변 지역의 생산 능력이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 2) 그 건설에 의해 둘 이상의 도도부현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것

(수원 지역의 지정 등)

제3조

국토교통대신은 도도부현 지사의 제기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댐 등으로 인해 하천의 유수가 저류되는 토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역에 포함하는 도시 지역 중 지정된 댐 등의 건설로 그 기초 조건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수원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제기는 미리 관계 시정촌 장에게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댐 등의 건설 사업을 소관하는 행정 기관의 장(이하 "관할 행정 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을 통해야 한다.
3. 국토교통대신은 수원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4. 전 세 항의 규정은 수원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수원 지역 정비 계획 결정 및 변경)

제4조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 제3항의 공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행정 기관의 장을 통해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의 초안을 만들려고 할 때 먼저, 수원 지역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이하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게 되는 자(국가를 제외한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정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안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토교통대신은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을 결정할 때, 이것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 및 그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의 초안을 제출한 도도부현 지사에게 송부하고,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공시해야 한다.
5. 전 각 호의 규정은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의 내용)

제5조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은 수원 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수원 지역의 구분에 의해 각각 해당 각호에 규정된 사업(지정 댐 등의 건설에 따른 손실 보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 수원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개요 및 추정 비용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업을 해당 수원 지역 외에서 곳에서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 지정 댐에 관한 수원 지역 토지 개량 사업, 치수 사업, 도로, 간이 상수도, 하

수도, 의무 교육 시설이나 병원의 정비에 관한 사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그 수원 지역의 기초 조건의 현저한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또는 댐 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 지정 호수 수위 조절 시설에 관한 수원 지역 토지 개량 사업, 하천이나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그 수원 지역의 기초 조건의 현저한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또는 호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 실시)

제6조

정비 사업이 법률에 명시된 것 외에 그 사업에 관한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 공공단체, 그 외의 사람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협력)

제7조

관계 행정 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사업자는 지정 댐 등의 건설과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의 실시에 관해 최대한 협력해야한다.

(생활 재건을 위한 조치)

제8조

관계 행정 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 지정 댐 등을 건설하는 자 및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지정 댐 등의 건설 또는 정비 사업의 실시에 따라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되는 자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생활 재건을 위한 조치 실시가 필요로 될 때 그 사람의 제기에 협력하고 해당 생활 재건을 위한 조치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1) 택지 개발하고 농지로 하는 것이 적당한 토지, 기타 토지 취득에 관한 것.
- 2) 주택, 점포, 기타 건물 취득에 관한 것.
- 3) 직업 소개, 지도 또는 훈련에 관한 것.
- 4) 그밖에 알맞은 토지가 아니라 환경이 맞지 않는 토지에 집을 옮길 경우의 환경 정비에 관한 것.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의 특례)

제9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댐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이 건설에 대한 정비 사업 중 별표 제 1의 사업으로 도도부현 지사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것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 (이하 "국가의 부담 비율"이라고 한다)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표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

- 1) 그 건설로 수몰되는 주택 수가 특히 많은 댐
- 2) 그 건설로 수몰되는 농지 면적이 특히 큰 댐
- 3) 전 두 호에 규정된 것 외에 그 건설로 수원 지역의 기초 조건이 특히 크게 변화하며, 그러한 수원 지역을 그 지역에 포함하지 않는 도도부현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댐

2. 지정 호수 수위 조절 시설 건설에 대한 정비 사업 중 별표 제 2의 사업으로 도도부현 지사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것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 비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표에 명시된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

3. 전 두 항에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비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 비율이 전 두 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 비율은 이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다른 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비용에 대해 전 세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 비율은 국가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이하 "국고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교부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령에 의해 필요한 특례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 통상 재산의 양도)

제10조

국가는 정비 사업에 대해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 공공단체에 대해 통상의 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

(국가의 재정적 및 금융상의 지원)

제11조

국가는 이전 두 조에 규정된 것 외에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재정적 및 금융상의 지원을 제공해야한다.

(정비 사업에 대한 부담 조정 등)

제12조

정비 사업이 해당 지역 내에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자와 협의하고 그 협의에 의하여 그 부담 경비의 일부를 여기에 부담시킬 수 있다.

- 1) 지정 댐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유수용 수도, 공업용 수도 또는 발전용에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
- 2)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①에서 ③까지 열거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 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 ① 지정 댐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유수에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수도로 수도법(쇼와 32년 법률 제 177호)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도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수도 공급 지역
 - ② 지정 댐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유수에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수도로 수도법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도 용수 공급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물 공급 대상 사업자가 설치하는 수도의 공급 지역
 - ③ 지정 댐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유수에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업용수로 공업용 수도 사업법(쇼와 33년 법률 제84호)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업용 수도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수도 공급 지역
 - ④ 지정 댐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유수의 관개를 위해 제공하는 토지의 지역
 - ⑤ 지정 댐 등의 건설로 홍수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 또는 홍수 등에 의한 재해가 완화되는 지역

2.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에 관해 관계 당사자 중 하나 이상의 신청에 근거해 알선할 수 있다.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

제13조

지방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26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원 지역 내에서 수원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관한 상각 자산 또는 그 사업에 관한 주택 또는 그 부지에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관해 불균일 과세를 하는 경우에 그 조치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 교부세법(쇼와 24년 법률 제 211호) 제14조규정에 의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각 년도 기준 재정 수입액은 동조 규정에 관계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각 년도분의 수입 감소 금액(그 조치를 한 첫 년도 이후 3개년도의 것에 한한다) 중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동조규정에 의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매년(그 조치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입 감소 액수를 각 연도의 익년)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 되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한 액수로 한다.

(수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수원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부칙

(시행 기일 등)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제 9조(별표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쇼와 49년도 예산에 관한 국고 부담금 (쇼와 48년의 이전 년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49년도 이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국고 부담금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평성 4년까지 지정된 지정 댐 등에 관한 특례)

3. 정비 사업에서 평성 4년도까지 각 연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댐에 관한 것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은 다음 표 상란에 규정된 사업으로 국가의 부담 비율의 범위는 별표 제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정 댐 제2조제2항 지정에 관해 다음 표 하란에서 규정하는 연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란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사업 구분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 개량 사업 중 농업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기타 정령이 정하는 사업
삼림법(쇼와 26년 법률 제 249호)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보안 시설 사업(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천법(쇼와 39년 법률 제 167호) 제4조제2항에 규정된 1급 하천의 개량 공사(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천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2급 하천의 개량 공사(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방법(메이지 30년 법률 제29호) 제 1조에서 규정하는 사방 공사
도로법(쇼와 27년 법률 제 180호) 제3조제3호 호 시정촌 도로와 동조 제4호 도시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의무 교육 제반 학교 등의 시설비 국고 부담 등에 관한 법률(쇼와 33년 법률 제81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 교육 제반 학교 중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의 필요 또는 통합하는 것 또는 실내 경기장 신축 또는 증축(인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

4. 정비 사업에서 평성 4년도까지 각 연도에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호수 수위 조절 시설에 관한 것에 관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은 다음 표 상한에 규정된 사업은 국가의 부담 비율의 범위는 별표 제 2 규정에 관계없이 지정 호수 수위 조절 시설의 제2조제3항 지정에 관해 다음 표는 하란에 규정하는 연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에 명시된 범위로 한다.

사업 구분
토지 개량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 개량 사업 중 농업에 대한 배수 시설의 신설이나 변경 또는 구획 정리에서 정령이 정하는 것
하천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1급 하천의 개량 공사(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정비 사업에 쇼와 59년도까지 각 연도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댐 등에 관한 것에 관하여 도로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은 동항 중 "부담하기"라는 것은 "부담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대신이 국도의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그 신설 또는 개축을 장대 교량, 터널 등의 특히 대형 공사로, 정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관한 경우, 국가의 부담 비율을 4분의 3으로

할 수 있다”로, 해당 정비 사업에 대한 하천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개량 공사 중 정령이 정하는 대규모 공사(다음에서 “대규모 개량 공사”라고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10분의 3”인 것은 “하천법 시행법(쇼와 39년 법률 제 168호) 제 5조에 규정된 댐에 대한 공사,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4분의 1”로 한다.

6. 정비 사업에 쇼와 60년도까지 각 연도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댐 등에 관한 것에 관하여 다음의 표 상란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서 동표에 규정된 것은 지정된 댐 등의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 지정에 관한 동표 하란에서 규정하는 연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로 대체된다.

대체 약관
폭설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쇼와 37년 법률 제73호) 제15조제1항
폭설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제15조제3항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법(평성 12년 법률 제15호) 제11조제2항 및 별표 교육 시설 및 소방 시설 부분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법 별표 아동 복지 시설 부분
의무 교육 제반 학교 등의 시설비 국고 부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
적설 한랭 특별 지역의 도로 교통의 확보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31년 법률 제72조제2호) 제 6조
교통 안전 시설 등 정비 사업에 관한 긴급 조치법(쇼와 41년 법률 제54호) 제 10조제3항
공해 방지에 관한 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쇼와 46년 법률 70호) 별표

7. 정비 사업에 쇼와 60년도까지 각 연도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댐 등에 관한 것에 관하여 다음의 표 상란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서 동표에 규정된 것은 지정된 댐 등의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 지정에 관한 동표 하란에서 규정하는 연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로 대체된다.

대체 약관	대체 어휘
사방법 제13조제1항	토사 붕괴 등 위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긴급 사방 사업
산사태 등 방지법(쇼와 33년 법률 제30호) 제 29조	산사태 방지 공사가 재해로 인한 토사 붕괴 등의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는 긴급 사태 대책 사업에 관련된 것. 해당 사태 방지 공사가 다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재해로 인한 토사 붕괴 등의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는 긴급 사태 대책 사업에 관한 것
도로 정비 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쇼와 33년 법률 제34호) 제 2조조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관한 것
오지 등 산업 개발 도로 정비 임시 조치법 (쇼와 39년 법률 제115호) 제5조 제2항	10분의 1
하천법 제60조제2항	제방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는 긴급 하천 사업에 관한 개량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분의 2를 다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개량 공사 또는 대규모 개량 공로 제방 등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는 긴급 하천 사업에 관한 것 이외의 것들에 소요되는 비용

8. 전 5호에 규정된 것 외에 정비 사업에 평성 4년도까지 각 연도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댐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부담 비율에 대해 기존의 비율 미만의 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령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쇼와 52년 6월 23일 법률 제73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목차의 개정 규정("제4장 전용 수도(제32조- 제 34조)"를 "제4장 전용 수도 (제32조- 제 34조) 제4장 2 단순 전용 수도 (제34조2)"로 수정하고 "제 5조"를 "제5조2"로 수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3조 및 제 20조의 개정 규정, 제4장의 다음 장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 제 36조, 제 37조, 제 39조, 제46조 및 제 48조의 개정 규정, 제50조 다음 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정렬 제54조 및 제 5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률의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0년 5월 18일 법률 제37호) 발췌

(시행 기일 등)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법률의 규정(쇼와 60년도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은 같은 년도 이후 연도의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해당 국가 부담에 관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부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같다)이나 수당(쇼와 59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쇼와 60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59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또는 교부금의 교부에 적용하여, 쇼와 59년도 이전의 연도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쇼와 60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쇼와 59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 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59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0년도 이후 연도로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법률의 쇼와 60년도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이 연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쇼와 59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쇼와 60년도 지출의 국가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59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도에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및 같은 연도의 업무 또는 사업을 실시하여 쇼와 61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쇼와 60년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1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0년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쇼와 59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에 의해 쇼와 60년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쇼와 59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59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0년도에 이월되었으며 내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0년 12월 27일 법률 제109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1년 5월 8일 법률 제46호) 발췌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제 11조, 제2조및 제 34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 후 법률의 쇼와 61년도부터 쇼와 63년도까지 각 연도의 특례에 관한 규정 및 쇼와 61년도와 쇼와 62년도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쇼와 61년도부터 쇼와 63년도까지 각 연도(쇼와 61년도와 쇼와 62년도의 특례에 관한 것으로, 쇼와 61년도와 쇼와 62년도.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해당 국가 부담에 관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부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보조(쇼와 60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쇼와 61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0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의해 쇼와 61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및 쇼와 61년도부터 쇼와 63년도까지 각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쇼와 64년(쇼와 61년도와 쇼와 62년도의 특례에 관한 것으로 쇼와 63년도.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 쇼와 61년도부터 쇼와 63년도까지 각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4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1년부터 쇼와 63년도까지 각 연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4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쇼와 60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쇼와 61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쇼와 60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1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0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2년 3월 31일 법률 제12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쇼와 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규정은 쇼와 62년도 및 쇼와 63년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해당 국가 부담에 관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부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조(쇼와 61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2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쇼와 62년도 및 쇼와 63년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4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2년도 및 쇼와 63연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4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쇼와 61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2년도 이후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1년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2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3년 5월 6일 법률 제 일까지 호) 발취

(시행 기일 등)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원년 4월 10일 법률 제22호) 발취

(시행 기일 등)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제 11조, 제12조 및 제 34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 후 법률 평성 원년도와 평성 2년도의 특례에 관한 규정 및 평성 전 년도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평성 원년도와 평성 2년도(평성 전 년도의 특례에 관한 것으로, 평성 원년도.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해당 국가 부담에 관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 부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같다) 또는 보조(쇼와 63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평성 원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과 쇼와 63년도 이전 년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원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및 평성 원년도와 평성 2년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평성 3년도(평성 전 년도의 특례에 관한 것으로, 평성 2년.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평성 원년도와 평성 2년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3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평성 원년도와 평성 2년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에서 평성 3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하고, 쇼와63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평성 원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쇼와 63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원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3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에서 평성 원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2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평성 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의 일부 개정 등)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부칙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평성 2년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평성 이전 연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2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평성 2년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3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와 평성 2년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에서 평성 3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하고, 평성 원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2년도 이후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와 평성 2년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에서 평성 2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3년 3월 30일 법률 제15호) 발취

1. 이 법률은 평성 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제11조 및 제 1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 후 법률 평성 3년도와 평성 4년도의 특례에 관한 규정 및 평성 3년도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평성 3년부터 평성 4년도(평성 3년도의 특례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평성 3년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해당 국가 부담에 관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부담을 포함한다. 아래 동항에서 같다) 또는 보조(평성 2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평성 3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과 평성 2년도 이전 연도의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3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및 평성 3년도와 평성 4년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평성 5년도(평성 3년도의 특례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평성 4년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평성 3년도와 평성 4년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5년도 이후 년도 지출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평성 3년도와 평성 4년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에서 평성 5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하고, 평성 2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평성 3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평성 2년도 이전 년도의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3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이나 수당과 평성 2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에서 평성 3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4년 3월 31일 법률 제13호) 발취

(시행 기일 등)

1. 이 법률은 평성 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4년 7월 1일 법률 제8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 중 제 1조, 다음 조에서 부칙 제 12조까지, 부칙 제 14조,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 2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부칙 제 13조의 규정은 간호사 등 인력 보호의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4년 법률 86호)의 시행일부터 제2조및 부칙 제 15조에서 제 1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3월 31일 법률 제8호) 발취

(시행 기일 등)

1. 이 법률은 평성 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제11조및 제 20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 후 법률의 규정은 평성 5년도 이후 연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해당 국가 부담에 관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부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보조(평성 4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평성 5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과 평성 4년도 이전 연도의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5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에 적용하여, 평성 4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평성 5년도 이후 년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평성 4년도 이전 연도의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5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와 평성 4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에서 평성 5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6년 6월 29일 법률 제60호)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9년 12월 17일 법률 제125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취

(시행 기일)

제 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 250조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는 가능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법 별표 제 1에 규정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검토를 실시하여야한다.

제 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 재원의 충실한 확보의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제 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 개혁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부칙 제6항의 규정은 평성 12년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평성 11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12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평성 12년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13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와 평성 12년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에서 평성 13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하고, 평성 11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12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와 평성 11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에서 평성 12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4년 3월 31일 법률 제12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12월 18일 법률 제 18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 6조부터 제 13조까지 및 제 15조에서 제 26조의 규정 평성 15년 10월 1일

부칙(평성 15년 3월 31일 법률 제21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4조

전 두 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5년 6월 18일 법률 제92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조중 전기 사업법 목차의 개정 규정, 제6장의 개정 규정 및 제 106조, 제107조, 제 112조 2, 제 117조 3, 제 117조 4 및 제 119조 2의 개정 규정 및 제 3조의 규정 및 부칙 제 17조, 제 18조, 제19조제1항, 제 2p조부터 제 38조, 제 41조, 제 43조, 제 45조, 제 46조, 제 48조, 제50조및 제 55조에서 제 57조의 규정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일자

부칙(평성 18년 3월 31일 법률 제18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무 교육 제반 학교 시설비 국고 부담법 등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제3조

제 3조부터 제 14조까지 및 부칙 5조부터 제 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다음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은 평성 18년도 이후 연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이나 보조(평성 17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평성 18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폐지 전의 공립 특수학교 정비 특별 조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항 및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지 전의 공립 고등학교 위험 건물의 개축 촉진 임시 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평성 17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18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또는 교부금의 교부에 적용하여, 평성 17년 이전 연도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는 평성 18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평성 17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평성 18년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와 평성 17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에서 평성 18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1) 의무 교육 제반 학교 등의 시설비 국고 부담 등에 관한 법률
- 2) 산업 교육 진흥법
- 3) 학교 급식법
- 4) 야간 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에 관한 법률
- 5) 스포츠 진흥법
- 6) 교육 진흥법
- 7) 섬 진흥법
- 8) 폭설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 9)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법
- 10) 나리타 국제공항 서비스를 위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 11) 공해 방지에 관한 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 12) 원자력 발전 시설 등 입지 지역의 진흥에 관한 특별 조치법
- 13) 아미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쇼와 29년 법률 제 189호)
- 14)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쇼와 48년 법률 제118호)
- 15) 오키나와 진흥 특별 조치법(평성 14년 법률 제14호)

부칙(평성 20년 5월 14일 법률 제3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1년 4월 30일 법률 제28호) 발취

(시행 기일 등)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평성 2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 1 (제9조관계)

사업 구분
토지 개량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 개량 사업 중 농업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삼림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보안 시설 사업(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천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1급 하천의 개량 공사(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천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2급 하천의 개량 공사(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방법 제 1조에 규정된 사방 공사
도로법 제3조제3호 도도부현 도로와 동조 제4호 도도부현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수도법 제3조제3항에 규정된 간이 상수도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의무 교육 제반 학교 등의 시설비 국고 부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 교육 제반 학교 중,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적정 규모하기 위해 통합하려고하는 것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 또는 실내 경기장의 신축 또는 증축(인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

의료법(쇼와 23년 법률 제 205호) 제1조5 제2항에 규정된 병원의 신설 또는 개축

별표 제 2 (제9조관계)

사업 구분

토지 개량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 개량 사업 중 농업에 대한 배수 시설의 신설이나 변경 또는 구획 정리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하천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1급 하천의 개량 공사(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쇼와 49년 2월 21일 정령 제27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4월 30일 정령 제130호

내각은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쇼와 48년 법률 제118호) 제4조제2항, 제 5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법 제4조제2항 정령으로 정하는 자)

제1조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2항 정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로 한다.

(법 제5조제1호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조

법 제5조제1호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택지 조성 사업
- 2) 공영 주택의 정비에 관한 사업
- 3) 숲길의 정비에 관한 사업
- 4) 숲 조성 사업
- 5)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임업 또는 어업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공동 이용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6) 자연 공원의 보호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7) 기타 집회 시설 또는 민속 문화재 혹은 유형 문화재(고고 자료, 기타 학술상 가치가 높은 역사 자료를 제외한다)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 8)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제공해주는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9) 보육원, 아동관이나 아동 놀이 공원 정비에 관한 사업
- 10) 노인 센터, 노인 복지 센터 또는 노인 복지법(쇼와 38년 법률 제133호) 제5조

2 제 3에서 규정하는 편의를 부여하고, 아울러 노인의 거주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11) 노인이나 신체 장애자에 대해 노인 복지법 제5조2 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의 또는 신체 장애자 또는 그 개호를 행하는 사람마다 수예, 공작, 기타 창작 활동, 기능 훈련, 간호 방법에 관한 지도,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부여하고, 아울러 노인, 장애자 등에 대한 식사 제공, 기타 복지 서비스에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12) 유선 방송 전화 업무에 제공해주는 시설 또는 무선 전화 서비스에 관한 사업
- 13) 소방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14) 축산 경영에 관한 오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15) 분뇨 처리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16) 쓰레기 처리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법 제5조제2호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

법 제5조제2호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어항의 정비에 관한 사업
- 2) 수산 자원의 보호 배양 또는 개발을 위한 사업
- 3) 수산물 유통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4) 자연 공원의 보호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 5) 간이 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업
- 6) 축산 경영에 관한 오수 처리를 위한 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 7) 분뇨 처리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8) 쓰레기 처리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법 별표 제 1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

법 별표 제 1 농업용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농업 도로의 신설이나 변경 또는 농업용 토지 조성으로 한다.

2. 법 별표 제 1 정령에서 정한 보안 시설 사업은 방재 삼림 조성 사업 또는 보안

삼림 정비 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한다.

3. 법 별표 제 1 정령으로 정한 1급 하천의 개량 공사는 소규모 하천 개수 사업으로 실시되며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하는 것과 현지 개량 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한다.

4. 법 별표 제 1 정령으로 정한 2급 하천의 개량 공사는 소규모 하천 개수 사업 또는 현지 개량 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한다.

5. 법 별표 제 1 정령이 정하는 도도부현 도로와 도시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은 도로 정비 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쇼와 34년 정령 제17호) 제1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법 별표 제 2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

법 별표 제 2 농업용 배수 시설의 신설이나 변경 또는 구획 정리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구획 정리와 이것과 함께하는 농업을 위한 배수 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으로 한다.

2. 법 별표 제 2 정령으로 정한 1급 하천의 개량 공사는 소규모 하천 개수 사업으로 실시되며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하는 것과 현지 개량 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한다.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의 특례)

제6조

법 제9조제1항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표 상란에 규정된 사업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하란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사업 구분
토지 개량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 개량 사업 중 농업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삼림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보안 시설 사업(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천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1급 하천의 개량 공사(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천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2급 하천의 개량 공사(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방법 제 1조에 규정된 사방 공사
도로법 제3조제3호 도도부현 도로와 동조 제4호 도도부현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수도법 제3조제3항에 규정된 간이 상수도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의무 교육 제반 학교 등의 시설비 국고 부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 교육 제반 학교 중,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적정 규모하기 위해 통합하려고하는 것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 또는 실내 경기장의 신축 또는 증축(인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
의료법(쇼와 23년 법률 제 205호) 제1조5 제2항에 규정된 병원의 신설 또는 개축

2. 법 제9조제2항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표 상란에 규정된 사업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하란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사업 구분
토지 개량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 개량 사업 중 농업에 대한 배수 시설의 신설이나 변경 또는 구획 정리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하천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1급 하천의 개량 공사(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국가 부담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7조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소장하는 각 기관의 장(금융법(쇼와 22년 법률 제34호)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매년 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

담 또는 보조 비율이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국가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금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국가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금액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동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게 동항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국가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금액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금액과의 차액은 해당 연도의 다음 년도(특별한 이유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연도의 내후년도)에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의 부담 조정에 대한 협의 절차)

제8조

정비 사업이 해당 지역 내에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또는 법 제12조제1항 제1호 혹은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동항 규정에 의한 협의는 관계 도도부현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부담 조정의 준칙)

제9조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담 조정은 지정 댐 등의 건설 목적, 지정 댐 등의 건설로 당사자가 받는 이익,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평성 4년도까지 각 연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담에 관한 정비 사업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것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정 댐 법 제2조제2항 지정에 관한 다음 표 상란에 규정하는 연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사업 구분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 개량 사업 중 농업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기타 정령이 정하는 사업
삼림법(쇼와 26년 법률 제 249호)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보안 시설 사업(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천법(쇼와 39년 법률 제 167호) 제4조제2항에 규정된 1급 하천의 개량 공사(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천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2급 하천의 개량 공사(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방법(메이지 30년 법률 제29호) 제 1조에서 규정하는 사방 공사
도로법(쇼와 27년 법률 제 180호) 제3조제3호 호 시정촌 도로와 동조 제4호 도시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의무 교육 제반 학교 등의 시설비 국고 부담 등에 관한 법률(쇼와 33년 법률 제81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 교육 제반 학교 중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의 필요 또는 통합하는 것 또는 실내 경기장 신축 또는 증축(인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

3. 평성 4년도까지 각 연도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호수 수위 조절 시설에 관한 수위 지역 정비 계획에 따라 하천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1급 하천의 개량 공사(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9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쇼와 59년도 이전의 각 연도에 지정한 지정 호수 수위 조절 시설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4분의 3, 쇼와 61년도에 지정된 지정 호수 수위 조절 시설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3분의 2, 쇼와 61년부터 평성 4년도까지 각 연도에 지정된 지정 호수 수위 조절 시설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10분의 6으로 한다.

4. 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적용되는 도로법 제50조제1항 단,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해 각각 국토 교통대신이 재무대신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요하는 것으로 한다.

- 1) 길이 500미터 이상의 영구 다리의 교량 공사
- 2) 지반을 위한 하부 공사의 영구 다리의 교량 공사
- 3) 120미터 이상의 영구 다리의 교량 공사

4) 도개교 가교 공사

5) 길이 1000미터(물밑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200미터) 이상의 터널 개착 공사

5. 평성 4년도까지 각 연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댐 등에 관한 정비 사업(독점적 댐 저수지 수질 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업으로 지정 댐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쇼와 59년도 이전의 각 연도에 지정한 지정 댐 등에 관한 서비스 사업으로, 그 정비 사업에 쇼와 59년도에 적용되는 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 쇼와 60년도에 지정된 지정 댐 등에 관한 정비 사업으로 그 정비 사업에 쇼와 60년도에 적용되는 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 쇼와 61년부터 평성 4년도까지 각 연도에 지정한 지정 댐 등에 관한 정비 사업에는 그 정비 사업에 평성 4년도에 적용되는 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의 비율로 한다. 단, 해당 정비 사업에 대한 이들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토지 개량 시행령(쇼와 24년 정령 295호) 제52조제1항, 제2항과 제4항, 제78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및 부칙 제15항

2) 산사태 등의 방지법 시행령(쇼와 33년 정령 제112호) 제16조

3) 공해 방지에 대한 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쇼와 46년 정령 325호) 제2조

4) 농용지 정비 공단법 시행령(쇼와 49년 정령 205호) 제13조 및 부칙 제11조

5) 토지 개량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쇼와 52년 정령 제 227호) 부칙 제 8항

6) 토지 개량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평성 원년 정령 제 216호) 부칙 제 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 및 제13항

7) 삼림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2조제2항

8) 하천법 시행령(쇼와 40년 정령 제14호) 제 42조(제3항을 제외한다)

9) 도로법 시행령(쇼와 27년 정령 제 479호) 제 3조, 제32조제1항 및 제 제34조 2-3

10) 도로 정비 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조제1항 및 제3항, 제2조 및 제3조

11) 오지 등의 산업 개발 도로 정비 임시 조치법 시행령(쇼와 40년 정령 제12호) 제4조

12) 교통안전 시설 등 정비 사업에 관한 긴급 조치법 시행령(쇼와 41년 정령 제 103호) 제2조2

13) 하수도법 시행령(쇼와 34년 정령 제147호) 제24조2 제1항

6. 수원 지역 정비 계획에 따라 토지 개량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 개량 사업에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관하여 제 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중 "보통 국가 보조 비율"인 것은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국가의 보조 비율"로 한다.

7. 국가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의 주식 매도 수익을 통한 사회 자본의 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62년 법률 제86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 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 1항 중 "법 제9조제3항"인 것은 "도도부현 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도도부현 지사 등"이라고 한다)가 국가에서 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해당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법 제9조제3항"으로, "경우를 제외하고 동조 제1항"인 것은 "경우에 있어서,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의 주식 매도 수익을 통한 사회 자본의 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62년 법률 제86호. 이하 "특별 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가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 대출의 대출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도부현 지사 등이 나라에서 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받아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이하 "해당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실시했다하면"이라고 한다)의 법 제9조제1항"으로, "보조금의 액수"인 것은 "교부금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 조치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출 금액"으로, 동조 제2항 중 "전항"인 것은 "부칙 제7항에서 준용한 전항"으로 "법 제9조제1항"인 것은 "해당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실시했다고 하는 경우의 법 제9조제1항"으로, "보조금의 금액을"인 것은 "교부금에 해당하는 대출 금액"으로, "동조 제3항"인 것은 "도도부현 지사 등이 국가에서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실시한 동조 제3항"으로 "동항"인 것은 "그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실시했다고 하는 경우의 동항" 및 "보조금의 액수"인 것은 "보조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특별 조치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출 금액과"로 본다한다.

부칙(쇼와 52년 7월 2일 정령 제 226호) 발췌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3년 6월 20일 정령 제 246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0년 5월 18일 정령 제138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마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종합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마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과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부칙 제 5 항의 규정은 쇼와 60년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쇼와 59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및 같은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0년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쇼와 59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59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0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1년 5월 8일 정령 제 158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마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

4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종합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과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부칙 제 5 항의 규정은 쇼와 60년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쇼와 59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도에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및 같은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0년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쇼와 59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59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0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1년 7월 17일 정령 제 214호) 발취

1. 이 정령은 의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쇼와 6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2년 3월 31일 정령 제100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쇼와 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종합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 3항에서 제5항까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과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부칙 제 5 항의 규정은 쇼와 60년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쇼와 59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도에 지

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및 같은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0년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쇼와 59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59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0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쇼와 62년 8월 21일 정령 제 283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2년 9월 8일 정령 제 300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3년 7월 22일 정령 제 232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농용지 개발 공단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쇼와 6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원년 4월 10일 정령 제112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마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

칙 제4항,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종합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 3항에서 제5항까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마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과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부칙 제 5 항의 규정은 쇼와 60년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쇼와 59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및 같은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0년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쇼와 59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59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0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원년 7월 7일 정령 제 21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원년 7월 28일 정령 제 236호)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농용지 정비 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이 정령의 시행일 이후에 농용지 정비 공단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는 동법 제9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정령의 시행일 전에 동법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는 동법 제9조제1항의 업무 내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2년 3월 30일 정령 제81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마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종합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 3항에서 제5항까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마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과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부칙 제 5 항의 규정은 쇼와 60년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쇼와 59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및 같은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0년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쇼와 59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59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0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2년 8월 1일 정령 제 23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년 8월 17일 정령 제 250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3월 30일 정령 제99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마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종합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 3항에서 제5항까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마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과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부칙 제 5 항의 규정은 쇼와 60년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쇼와 59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및 같은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0년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쇼와 59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59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0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3년 10월 14일 정령 제 32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규정(토지 개량법 시행령 제50조2-4 개정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2조중 농용지 정비 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 3조, 제4조및 제 6조에서 제 8조까지의 규정은 평성 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4년 7월 1일 정령 제 237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4년 7월 15일 정령 제 24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1월 22일 정령 제7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의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일(평성 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3월 31일 정령 제96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마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종합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아마미군도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 시행령과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부칙 제 5 항의 규정은 쇼와 60년도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쇼와 59년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를 제외한다) 및 같은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60년도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1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쇼와 59년 이전 연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쇼와 60년 이후의 연도에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및 쇼와 59년 이전 연도의 세출 예산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로 쇼와 60년도 이후 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5년 10월 20일 정령 제 33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6년 8월 17일 정령 제 268호)

이 정령은 평성 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7년 6월 14일 정령 제 24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7년 6월 26일 정령 제 262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8년 8월 23일 정령 제 248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영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일(평성 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9년 10월 8일 정령 제 31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0년 3월 20일 정령 제46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의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평성 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9월 3일 정령 제 262호)

이 정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0월 1일 정령 제 315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0월 29일 정령 제 346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제 312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9월 27일 정령 제 43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6월 5일 정령 제 19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5년 3월 31일 정령 제 163호)

이 정령은 평성 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4월 1일 정령 제14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1월 25일 정령 제1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3월 31일 정령 제 151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9년 4월 1일 정령 제14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3월 31일 정령 제107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5조

부칙 제 2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개량 사업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5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은 동호 중 "제52조제1항, 제2항과 제4항, 제78조제2항"인 것은 "제78조제2항"으로, "부칙 제5항"인 것은 "부칙 제5항 및 토지 개혁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평성 20년 정령 제107호)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 효력이 있는 시행령에 의한 개정 전의 토지 개혁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부칙(평성 20년 5월 13일 정령 제76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1년 3월 31일 정령 제8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1년 4월 30일 정령 제13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
(쇼와 49년 5월 1일 총리부령 제27호)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쇼와 48년 법률 제118호) 제3조제2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4조제4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 지역의 지정의 신청 등)

제1조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의 신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수원 지역 지정 신청서 제출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정 댐 등의 명칭
 - 2) 수원 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 3) 전호 지역을 수원 지역으로 하는 이유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전항 제2호의 지역을 노란색으로 채색한 국토 지리원 발행의 2만 5천분의 1(2만5천분의 1이 아닌 경우에는 5만분의 1)의 지형도
 - 2) 법 제3조제2항 관계 시정촌 장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
3. 전 두 항의 규정은 법 제3조제4항에서 준용한 동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원 지역 변경 신청에 대해서 준용한다.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의 공시)

제2조

법 제4조제4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수원 지역 정비 계획의 공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부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제2조제2항 댐, 동조 제3항의 호수 수위 조절 시설 및 동법 제9조제1항의 지정 댐을 지정하는 정령
(쇼와 49년 7월 20일 정령 제 273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1월 23일 정령 제6호

내각은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쇼와 48년 법률 제118호) 제2조제2항과 제3항 및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지정 댐)

제1조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댐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석수천계 당별천 당별댐
2. 석수천계 석장천 석장슈퍼댐
3. 석수천계 공지천 공지댐
4. 석수천계 충별천 충별댐
5. 석수천계 애별천 애별댐
6. 후지리별천수계 후지리별천 미리하댐
7. 사류천계 사류천 이풍곡댐
8. 사류천계 액평천 평취댐
9. 암목천계 암목천 진경댐
10. 암목천계 천뢰석천 천뢰석천댐
11. 마연천계 평강천 대지전댐
12. 신정전천계 신정전천 세종댐
13. 북상천계 박천 장소댐
14. 북상천계 단택천 단택댐
15. 북상천계 량천 량천댐

16. 북상천계 뇌석천 어소담
17. 명퇴천계 길전천 남천담
18. 아무외천계 백석천 칠숙담
19. 아무외천계 접상천 접상천담
20. 아무외천계 대룡근천 삼춘담
21. 미대천계 소우천 삼길산담
22. 응물천계 옥천 옥천담
23. 응물천계 송천 대송천담
24. 응물천계 성녀천 성녀담
25. 최상천계 한하강천 한하강담
26. 진야천계 진야천 진야담
27. 이근천계 귀노천 천치담
28. 이근천계 탕서천 탕서천담
29. 이근천계 남마천 남마담
30. 이근천계 동생천 동생천담
31. 이근천계 오처천 팔장담
32. 소래천계 소래천 구산담
33. 양로천계 양로천 고룡담
34. 황천수계 길전천 합각담
35. 황천계 포산천 포산담
36. 황천계 증진천 용택담
37. 상모천계 증진천 궁녀담
38. 황천계 횡천 횡천담
39. 아하야천계 궁천 신궁천담
40. 아하야천계 아하야천 대천담
41. 수취천계 수취천 수취천담
42. 대성사천계 대성사천 구곡담
43. 부사천계 황천 황천담
44. 부사천계 염천 염천담

45. 대정천계 대정천 장도담
46. 지전천계 반마천 만장담
47. 풍천계 풍천 설악담
48. 목증천계 목증천 신환산담
49. 목증천계 읍비천 덕산담
50. 목증천계 아목천 아목천담
51. 즐전천계 연천 연담
52. 정천계 일고천 일고담
53. 정천계 안위천 안위천담
54. 정천계 계천 일길담
55. 정천계 포목천 포목담
56. 정천계 전심뇌천 천상담
57. 정천계 대호천 대호천담
58. 정천계 고시천 단생담
59. 대화천계 석천 농전담
60. 무고천계 무고천 무고천담
61. 무고천계 청야천 청야담
62. 가고천계 권현천 권현담
63. 가고천계 산전천 탄토담
64. 기천계 기천 대룡담
65. 일고천계 일고천 춘산담
66. 구두룡천계 부자천 족우천담
67. 구두룡천계 길야뇌천 길야뇌천담
68. 천대천계 대천 전담
69. 일야천계 범승사천 하상담
70. 비이천계 비이천 미원담
71. 비이천계 신호천 지진견담
72. 천계 상하천 회충담
73. 길정천계 길정천 점전담

74. 호전천계 호전천 팔전원댐
75. 소전천계 소전천 복부댐
76. 하무천계 하무천 인하댐
77. 소퇴천계 소퇴천 미영댐
78. 금천계 금천 평퇴댐
79. 금천계 생견천 생견천댐
80. 도전천계 중산천 중산천댐
81. 말무천계 말무천 말무천댐
82. 목옥천계 목옥천 신탕원댐
83. 길야천계 동산천 부향댐
84. 향동천계 화천 화천댐
85. 핑천계 핑천 야촌댐
86. 핑천계 하변천 산조판댐
87. 나가천계 나가천 오산댐
88. 불천계 불천 이량원댐
89. 산국천계 산이천 야마계댐
90. 축후천계 소석원천 소석원천댐
91. 축후천계 적석천 대산댐
92. 가뢰천계 가뢰천 가뢰천댐
93. 천봉천계 석목천 석목댐
94. 국지천계 박간천 용문댐
95. 구마천계 천변천 천변천댐
96. 대분천계 칠너천 대분천댐

(지정 호수 수위 조절시설)

제2조

법 제2조제3항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호수 수위 조절 시설은 수자원개발 기본 계획에 근거한 개발 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호수 수위 조절 시설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지정 댐)

제3조

법 제9조제1항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지정 댐은 다음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석수천계 당별천 당별댐
2. 석수천계 석장천 석장댐
3. 석수천계 공지천 룡리댐
4. 암목천계 암목천 진경댐
5. 암목천계 천뇌석천 천뇌석천댐
6. 북상천계 박천 장소댐
7. 북상천계 뇌석천 어소댐
8. 아무외천계 백석천 칠숙댐
9. 아무외천계 접상천 접상천댐
10. 아무외천계 대룡근천 삼춘댐
11. 미대천계 소우천 삼길산댐
12. 이근천계 귀노천 천치댐
13. 이근천계 탕서천 탕서천댐
14. 이근천계 남마천 남마댐
15. 이근천계 오처천 팔장댐
16. 상모천계 중진천 궁뇌댐
17. 수취천계 수취천 수취천댐
18. 목증천계 읍비천 덕산댐
19. 정천계 계천 일길댐
20. 기천계 기천 대룡댐
21. 일고천계 일고천 춘산댐
22. 강천계 상하천 회총댐
23. 길정천계 길정천 점전댐
24. 가뇌천계 가뇌천 가뇌천댐
25. 국지천계 박간천 용문댐
26. 구마천계 천변천 천변천댐

부칙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2년 3월 23일 정령 34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3년 3월 28일 정령 제46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4년 4월 17일 정령 제115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5년 4월 11일 정령 제95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6년 6월 2일 정령 제 218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7년 3월 12일 정령 제27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7년 12월 28일 정령 제 320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9년 3월 27일 정령 제48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0년 3월 19일 정령 제35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1년 3월 18일 정령 제28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2년 3월 20일 정령 제45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3년 3월 1일 정령 제 28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원년 1월 19일 정령 제3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년 3월 26일 정령 제44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2월 5일 정령 제15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4년 1월 24일 정령 제6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1월 22일 정령 제5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12월 27일 정령 제 406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7년 3월 17일 정령 제63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8년 3월 21일 정령 제33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9년 3월 19일 정령 제43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0년 9월 17일 정령 제 305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3월 9일 정령 제44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5월 7일 정령 제 165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5년 5월 7일 정령 제 165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5년 9월 25일 정령 제 443호)

이 정령은 법 제3조규정의 시행일(평성 1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5월 26일 정령 제 202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3월 24일 정령 제59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1년 1월 23일 정령 제6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제13조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
(평성 7년 3월 29일 자치성 시행령 제13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40호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쇼와 48년 법률 제118호) 제13조규정에 따라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제13조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법 제 13조에 규정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제1조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쇼와 48년 법률 제118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13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관한 법 제13조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공시일이 속하는 연도 전 세 연도의 각 연도에 관한 지방 교부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1호) 제14조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 재정 수입액을 동법 제11조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 재정 수요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합산한 것의 3분의 1 수치가 0.72에 못 미친 시정촌으로 한다.

(법 제 13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조

법 제 13조에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조 기업이나 여관업 (여관업법(쇼와 23년 법률 제138호) 제 2조에서 규정하는 호텔 영업, 여관 영업 및 간이 숙소 운영(이들 사업 중 풍속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쇼와 23년 법률 제122호) 제2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점포 형성 풍속 특수 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한한다)으로 한다.

(법 제 13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

법 제 13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평성 4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법 제13조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대신의 공시일(그 날이 평성 7년 4월 1일 전

인 경우에는 같은 날. 아래 "공시일"이라고 한다)에서 평성 23년 3월 31일까지 기간(당해 기간 내에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원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일로부터 그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된 일까지의 기간과 그 기간 내에 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댐 등의 공용 개시일이 도래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일로부터 해당 공용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을 제조 사업에 대해 제공하는 시설(생산 시설로, 이를 구성하는 감가상각 자산(소득세법 시행령(쇼와 40년 정령 제96호) 제6조제1호와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쇼와 40년 정령 제97호) 제13조제1호와 제3호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취득 가액의 합계액이 2700만엔을 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여관 업무에 제공되는 시설(호텔용, 여관용 또는 간이 숙소의 건물(구조 및 설비가 여관업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속 시설로 그 취득 가액의 합계액이 2700만엔을 넘는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데 관하여 그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시설로, 가옥 및 상각 자산 및 그 부지에 있는 토지(공시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부지로 주택 건설 착수가 있는 경우의 그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에 불균일 과세를 하고 있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9년 3월 28일 자치성 시행령 제14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제13조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 제 13조의 규정(감가상각 자산 취득 금액 합계 금액 또는 호텔을 위한 여관용 또는 간이 숙소의 건물과 그 부속 시설의 취득 가액의 합계액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시행일 이후에 신설된 또는 증설되는 제조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시설 또는 여관 업무에 제공되는 시설(평성 4년 4월 1일부터 평성 9년 3월 31일 사이에 열린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쇼와 48년 법률 제118호) 제3조규정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기산하

여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신설된 또는 증설되는 것(이하 "면제 시설"이라고 한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또는 확장된 제조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설비 또는 여관 업무에 제공되는 설비 및 면제 시설 내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1년 3월 31일 자치성 시행령 제11호)

1. 이 성령은 평성 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신사업 창출 촉진법 부칙 제11조규정에 따라, 또한 그 효력이 있게 되는 폐지 이전 지역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특정 사업의 집적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 사업 통합 촉진법"이라고 한다)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제1조제2호에 규정된 성령은 구 특정 사업 통합 촉진법 제 12조의 규정이 효력을 한도 내에서, 또한 그 효력이 있다.

부칙(평성 12년 9월 14일 자치성 시행령 제44호)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 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3월 30일 총무성령 제57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7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제13조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 제 3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설되거나 또는 증설되는 제조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설비 또는 여관 업무에 제공되는 설비에 대해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또는 확장된 제조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설비 또는 여관 업무에 제공되는 시설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5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59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제13조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 제 3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설되거나 또는 증설되는 제조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설비 또는 여관 업무에 제공되는 설비에 대해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또는 확장된 제조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설비 또는 여관 업무에 제공되는 시설의 내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7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64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17년 월4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9년 3월 30일 총무성령 제47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후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제13조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 제 3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설되거나 또는 증설되는 시설에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또는 확장된 기능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21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40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평성 21년 7월 15일 법률 제82호)

제1장 총칙 (제1조- 제 12조)

제2장 기본 방침 (제 13조)

제3장 지역 계획 등 (제14조- 제 16조)

제4장 해안 표착물 대책의 추진

제1절 해안 표착물 등의 원활한 처리 (제17조- 제 21조)

제2절 해안 표착물 등의 발생 억제 (제22조- 제 24조)

제3절 기타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시책 (제25조- 제 31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을 도모에서 해안 표착물 등이 이들에
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에 따라, 해안 표착물 등의 원활한 처리를 도
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해안 표착물 등의 발생 억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이하 "해안 표착물 대책"이라고 한다)에 관해 기본 이념을 결정하고 국가,
지방 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정부의 기본 방침 수립, 기타 해
안 표착물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안 표착물 대책
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한 문화적 생활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

이 법률에서 "해안 표착물"은 해안에 표착한 쓰레기, 그 외에 다른 오물이나 불필
요한 물질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해안 표착물 등"은 해안 표착물과 해안에 산란한 쓰레기 및 기타
오물이나 불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해안 관리자 등"은 해안법(쇼와 31년 법률 제101호) 제2조제3항

해안 관리자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를 행하는 자들로서 그 소유권에 따라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 이익에 제공되는 해안의 토지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종합적 해안 환경의 보전과 재생)

제3조

해안 표착물 대책은 백사청송¹⁶⁾ 해변으로 대표되는 양호한 경관의 보전과 암초, 갯벌 등에 있어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배려하면서 종합적인 해안 환경의 보전과 재생에 기여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책임의 명확화와 원활한 처리 추진)

제4조

해안 표착물 대책은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에 관한 해안 관리자 등 기타 참가자의 책임을 밝히고, 해안 표착물 등의 다양한 성질, 모양 등에 입각한 원활한 작업이 추진되게 실행되어야 한다.

(해변 표착물 등의 발생의 효과적인 억제)

제5조

해안 표착물 대책은 해안 표착물이 산에서 강, 그리고 바다로 이어지는 물의 흐름을 통해 해안에 표착하는 것으로, 그 발생 상황이 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반영하는 일면이 있는 것에 따라, 해안 표착물 등의 문제가 해안이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공통 과제라는 인식으로, 해안 표착물 등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해양 환경의 보전)

제6조

해안 표착물 대책은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 좋은 해양 환경의 보전이 풍요롭고 윤택한 국민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명심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의 확보)

제7조

해안 표착물 대책은 해안 표착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해안 표착물 등의 발생 억제(이하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의 고양을 도

16) 아름다운 해변의 경치

모하면서, 국가, 지방 공공단체, 사업자, 시민, 민간단체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이 다양한 주체의 상호 협력 아래, 실행되어야 한다.

(국제 협력의 추진)

제8조

해안 표착물 대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국가의 외교에 의한 적절한 대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안 표착물이 주변 국가에서 우리나라 해안에 표착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주변국의 해안에 표착하는 경우도 있기에, 해안 표착물 문제가 일본과 주변국의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으로, 그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추진을 꾀하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가의 책무)

제9조

국가는 제 3조에서 전조까지 규정한 해안 표착물 대책에 관한 기본 이념(다음 조 및 제13조제2항에서 간단히 "기본 이념"이라고 한다)에 의해서, 해안 표착물 대책에 관해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

지방 공공단체는 기본 이념에 의해서, 해안 표착물 대책에 관해 그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제11조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 따라서 해안 표착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해안 표착물 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국민은 해안 표착물 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해안 표착물 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사업자와 국민은 소지한 물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혹은 폐기하는 것, 또는 그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 등 해안 표착물 등의 발생 억제에 노력해야 한다.

(협력 강화)

제12조

국가는 해안 표착물 대책이 해안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국가, 지방 공공단체, 사업자, 시민, 민간단체 등이 상호 연계를 도모하면서 협력하는 것에 의해 꾸준히 추진되는 것에 따라 이들 사이의 협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장 기본 방침

제13조

정부는 기본 이념에 의해서, 해안 표착물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한다.

2. 기본 방침은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1)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의 기본 방향
- 2) 다음 조 제1항의 지역 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 사항
- 3) 제15조제1항의 협의회 대한 기본 사항
- 4) 해안 표착물 대책의 실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기타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3. 환경대신은 미리 농림수산대신과 국토교통대신과 협의하여 정책 방안을 만들고 각의의 결정을 요청해야한다.

4. 환경대신은 기본 방침의 초안을 만들려고 할 때, 먼저 널리 일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5. 환경대신은 제3항의 각의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본 방침을 공개해야한다.

6. 전 세 항의 규정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3장 지역 계획 등

(지역 계획)

제14조

도도부현은 해안 표착물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안 표착물 대책을 추진하기위한 계획(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2항 제1호에서 "지역 계획"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야한다.

2. 지역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 1) 해안 표착물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및 그 내용
 - 2) 참가자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3) 해안 표착물 대책의 실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기타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
3. 도도부현은 지역 계획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주민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4. 도도부현은 지역 계획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해안 관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5. 도도부현은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경우, 다음 조 제1항의 협의회가 조직 되어있으면 미리 해당 지역 계획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협의회와 협의에 붙여야 된다.
6. 도도부현은 지역 계획을 작성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7. 제3항에서 전항까지의 규정은 지역 계획 변경에 준용한다.

(해변 표착물 대책 추진 협의회)

제15조

도도부현은 다음 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도도부현 외에 주민과 민간단체 및 관련 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 협의회 (이하 이 조 에서 "협의회"라고 한다)를 조직 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 1) 도도부현의 구역 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해 협의하는 것
 - 2)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에 관한 연락 조정을 실시하는 것
3. 전 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와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결정한다.

(해변 표착물 방지 활동 추진 위원 등)

제16조

도도부현 지사는,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을 도모하기위한 활동에 열의와 식견이 있는 사람을 해안 표착물 방지 활동 추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을 도모하기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해안 표착물 방지 활동 추진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해안 표착물 방지 활동 추진 위원과 해안 표착물 방지 활동 추진 단체는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을 행한다.
 - 1) 해안 표착물 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

- 2) 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해 그 요청에 따라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
- 3)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해, 해당 활동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협력을 하는 것
- 4)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해안 표착물 대책에 필요한 협력을 하는 것

제4장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

제1절 해안 표착물 등의 원활한 처리

(처리 책임 등)

제17조

해안 관리인 등은 그 관리하는 해안의 토지에 대해서, 그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 해안 관리자 등이 아닌 해변가 토지의 점유자(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점유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해안 토지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한다.

3. 시정촌은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경우 해안 관리자 등이나 전항의 해안 토지 점유자에게 협력해야한다.

4. 도도부현은 해안 관리자 등 또는 제2항의 해안 토지 점유자에 의한 해안 표착물 등 원활한 작업이 추진되도록,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술적인 조언 및 원조를 할 수 있다.

(시정촌의 요청)

제18조

시정촌은 해안 관리자 등이 관리하는 해안 토지에 해안 표착물 등이 존재하는 것에 의해 주민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안 관리자 등에게 해당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력 요구 등)

제19조

도도부현 지사는 해안 표착물의 대부분이 다른 도도부현의 지역에서 유출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안 관리자 등의 요청에 따라 또는 그 의견을

듣고 해당 다른 도도부현의 지사에 대해 해안 표착물 처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환경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협력에 관련한 알선을 할 수 있다.

제20조

도도부현 지사는 해안 표착물이 존재하는 것에 의해 지역 환경 보전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대신, 다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해 해당 해안 표착물 처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상의 적절한 대응)

제21조

외무대신은 국외에서 온 해안 표착물에 의해 지역 환경 보전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등과 제휴하여 외교상 적절한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제2절 해안 표착물 등의 발생 억제

(발생 상황과 원인에 대한 조사)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안 표착물 등의 발생 억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안 표착물 등의 발생 상황과 원인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의 방지)

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쇼와 45년 법률 제137호)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규제와 함께 숲, 농지, 시가지, 하천, 해안 등에서 쓰레기, 그 외에 오물 또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토지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

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점유하거나 또는 관리

하는 토지에서 해안 표착물이 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유출하거나 또는 비산¹⁷⁾되지 않도록 해당 토지의 적정한 관리에 관해 필요한 조언과 지도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2. 토지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토지에서 일시적인 사업 활동, 기타 활동을 행하는 자에 대해, 해당 사업 활동 등에 따라서 해안 표착물이 될 것이 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으로 유출되거나 또는 비산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요청을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3절 기타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시책

(민간단체 등과의 긴밀한 연계 확보 등)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에 관한 활동에 종사하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이러한 민간단체 등과의 긴밀한 연계 확보 및 그 활동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지원에 대하여 동항의 민간단체 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충분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해변 표착물 등의 문제에 대한 환경 교육의 추진)

제2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보전을 위한 신뢰 증진 및 환경 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평성 15년 법률 제130호) 제9조제1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해안 표착물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환경 교육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해변 표착물 등의 처리 등에 관한 보급 계발)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에 대해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보급 계발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술 개발, 조사 연구 등의 추진 등)

제28조

국가는 해안 표착물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안 표착물 등의 효율적인 처리, 재생 이용, 발생원인의 규명 등에 관한 기술 개발, 조사 연구 등의 추진과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해야한다.

17) 날아서 흩어짐.

(재정상의 조치)

제29조

정부는 해안 표착 물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2. 정부는 전항의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함에 대해 국외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서 유출된 대량의 해안 표착물이 있는 지역, 그 외의 지역에서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해안 표착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는 해안 표 물 대책 추진에 민간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그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적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해변 표착물 대책 추진회의)

제30조

정부는 환경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기타 관계 행정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회의를 마련하고, 해안 표착물 대책을 종합적, 효과적,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락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회의에 해안 표착물 대책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해안 표착물 대책 전문위원회를 둔다.

3. 해안 표착물 방지 전문가 회의는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회의에 진언한다.

(법제의 정비)

제31조

정부는 해안 표착물 대책을 추진하기위한 재정상의 조치, 기타 종합적인 지원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의 정비를 신속히 실시해야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검토)

2.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3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해안 표착물 등의 상황, 기타 이 법률의 시행 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대해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
(쇼와 62년 6월 9일 법률 제71호)

최종개정 : 평성 16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양호한 자연 조건이 있는 토지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지역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국민이 여가 등을 이용하여 체재하면서 하는 운동과 여가, 교양 문화 활동, 휴양, 집회 등 다양한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능의 정비를 민간 사업자의 능력 활용에 중점을 두면서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여유가 있는 국민생활을 위한 이용 증진 및 그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 복지 향상 및 국토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특정 시설"이라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법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은 제외한다)에서 제 1조에서 규정하는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한다.

- 1)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
- 2) 교양 문화 시설
- 3) 휴양 시설
- 4) 집회 시설
- 5) 숙박 시설
- 6) 교통 시설(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이동 시설을 포함하는데, 제5조제2항 제4호와 같다)
- 7) 판매 시설
- 8) 열 공급 시설, 음식 제공 시설, 폐수 공동 처리 시설, 기타 체류자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설

2. 이 법에서 "특정민간시설"이라함은 특정 시설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제3조

이 법에 의한 제 1조에 규정된 정비를 촉진하기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강구하기로 한다.

- 1) 양호한 자연 조건이 있는 토지를 포함하는 동시에 특정 시설의 종합적인 정비
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지역이다.
- 2) 자연·경제·사회적 조건으로 보아 제 1조에서 규정한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 3) 특정 시설에 제공해주는 토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이다.
- 4) 산업과 인구의 집적 정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과 동시에 법령이 정하는 것 이
외의 지역이다.
- 5) 특정 민간 시설의 정비 상황과 전망 및 국민의 이용에 필요한 위치상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특정 민간 시설 정비가 확실한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다.

(기본 방침)

제4조

총무대신,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이하 "주무대신"이라고 한
다)은 앞 조의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제 1조에 규정한 정
비에 관련된 기본 방침(이하 "기본 정책"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한다.

2.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다음 조 제1항 기본
구상의 지침이 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 1) 제 1조에 규정된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2) 제 1조에 규정된 정비를 하려고하는 지역(이하 "특정 지역"이라고 한다)의 설
정에 관한 사항
- 3) 특정 지역 중, 특정 시설의 정비를 특별히 촉진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지역(이하 "중점 정비 지역"이라고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 4) 특정 시설의 설치 및 특정 민간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공공시설(특정 시설로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 방침에 관한
사항
- 6) 제 1조에 규정된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7) 자연 환경의 보전과 조화, 농림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 거주 기능의 조
화, 관광 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지가격 안정 그 외 제 1조에 규정한 정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3. 주무대신은 기본 방침을 만드는 데 있어 먼저, 제 1조에 규정된 정비와 관련해,
스포츠와 문화의 진흥 및 사회 교육에 관한 학습 활동의 추진을 도모하는 견지에
서 문부과학대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무대신은 기본방침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환경대신과 그 외 다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5. 주무대신은 기본 방침을 정했을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6. 주무대신은 정세의 추이(변화)에 의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기본 방침을 변경해야 한다.
7.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방침 변경에 준용한다.

(기본 구상 작성 등)

제5조

도도부현은 기본 방침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의 지역과 제3조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제 1조에 규정된 정비에 관한 기본 구상(이하 "기본 구상"이라고 말한다)을 작성해, 주무대신과 협의해 동의를 구할 수 있다.

2. 기본 구상에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 1) 특정 지역의 구역
- 2) 제 1조에 규정된 정비의 방침에 관한 사항
- 3) 중점 정비 지구의 구역과 해당 구역 당의 정비 방침에 관한 사항
- 4) 중점 정비 지구에서 정비되어야 하는 특정한 민간 시설(중점 정비 지역 구간을 연결하는 특정 민간 시설인 교통 시설을 포함한다)의 종류, 위치, 규모,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특정 민간 시설 이외의 특정 시설(중점 정비 지역 구간을 연결하는 특정 시설인 교통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5) 공공시설의 정비 정책에 관한 사항
- 6) 제 1조에 규정된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7) 특정 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농업용 토지 정비에 관한 사항
- 8) 자연 환경의 보전과 조화, 농림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 거주 기능의 조화, 관광 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지가격 안정 그 외에 제 1조에서 규정하는 정비 정책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

3. 도도부현의 기본 구상을 만들려고 할 때, 관계 시정촌과 협의해야 한다.

4. 주무대신은 기본 구상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 1) 그 기본 구상에 관한 지역이 제3조각 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방침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 제2항 제2호에서 제8호까지 열거한 사항에 있어서는 기본방침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3) 그 기본 구상에 관한 제 1조에 규정된 정비가 해당 특정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적합한 경제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한다.

- 4) 그 외 기본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5. 주무대신은 기본 구상에 대해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려고 할 때에는 환경대신과 다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6. 시정촌의 기본 구상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

(기본 구상 변경)

제6조

도도부현은 전 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기본 구상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주무대신과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한다.

2. 전 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거해 적용한다.

(기본 구상의 실시 등)

제7조

도도부현은 기본 구상이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관계 민간 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제 1조에 규정된 정비를 그 동의를 얻은 기본 구상(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동의를 있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동의 기본 구상"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문부과학대신은, 동의 기본 구상의 원활한 실시 촉진을 위해 관계 지방 공공단체에 대해 운동이나 문화의 진흥 또는 사회 교육에 관한 학습 활동의 추진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필요한 조언, 지도, 기타 지원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3. 전 항에 명시된 것 외에, 주무대신, 관계 행정 기관의 장, 관계 지방 자치 단체 및 관계 사업자는 동의 기본 구상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도모하면서 협력해야한다.

제8조삭제

(지방세금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

제9조

지방세법 (쇼와 25년 법률 제 226호)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중점 정비 지역 내에서 제2조제1항 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 열거한 시설에 해당하는 특정 민간 시설과 그 외에 법령이 정하는 특정 민간 시설 중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동의 기본 구상에 따라 설치한 거에 관해서, 그 특정 민간 시설에 제공해주는 주택 또는 그 부지의 토지 취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또는 그 특정 민간 시설에 제공해주는 주택이나 건축물 혹은 이 부지의 토

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에 관한 불균일 과세를 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조치가 총무성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1호) 제14조규정에 의해 그 지방 자치 단체의 각 년도 기준 재정 수입액은 같은 조 규정에 관계하지 않고, 그 지방 자치 단체의 해당 각 년도분의 수입 감소 금액(고정자산세에 관한 이러한 조치에 따른 수입 감소 금액에 있어서, 이 조치를 취한 최초의 해 이후 3개년도에 있어서의 것으로 한정한다.) 중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같은 조 규정에 의해 그 지방 자치 단체의 해당 각 연도(이러한 조치가 총무성령으로 정한 날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입 감소 액수에 있어서 그 각 연도의 다음 년도)의 기준 재정수입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자금의 확보)

제10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항무국을 포함한다. 다음 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있어서 같다)는 특정 민간 시설의 설치를 행하는 사람이 동의 기본 구상에 따라서 행하는 그 시설의 설치 또는 그러한 시설에 제공해주는 토지의 취득이나 조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공공 시설의 정비)

제11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동의 기본 구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 정비 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 등의 지원)

제12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동의 기본 구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의 기본 구상에 따라 특정 민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언, 지도 그 외에 다른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 공공단체의 조성 등)

제13조

지방 자치 단체는 동의 기본 구상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제 1조에 규정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민간 사업자에 출자, 보조 추가 조성을 할 수 있다.

2. 지방 자치 단체가 전 항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원이 특정 민간

시설의 설치 또는 그러한 시설에 제공해주는 토지의 취득이나 조성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지방 재정법(쇼와 23년 법률 제109호) 제5조각 호에 규정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다음 항에서 "특정 경비"라고 한다)으로 같은 조 제5호에 규정하는 비용으로 본다.

3. 지방 자치 단체가 동의 기본 구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특정 경비 이외의 또는 특정 경비로 중점 정비 지역 정비에 이바지하는 핵심 시설에 관한 것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일으킬 지역 채권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금 사정과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농업토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 대한 배려)

제14조

국가 행정 기관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중점 정비 지역 내 토지 동의 기본 구상에 명시된 특정 민간 시설에 제공해주기 때문에 농업토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그 외의 법률 규정에 의해 허가 및 기타 처분을 요구 받았을 때는 해당 중점 정비 지구의 해당 시설 설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려를 해야한다.

(국가소유 임야의 활용 등)

제15조

국가가 동의 기본 구상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소유의 임야 활용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향만관리자(향만 상품(쇼와 25년 법률 제 218 호) 제56조제1항 에 규정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포함한다)는 중점 정비 지구에 관계하는 향만에 있어서 동의 기본 구상에 명시된 특정 시설 설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향만에 관한 구역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조 및 부칙 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제2조

조세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4조의 3 다음에 아래의 한 조를 추가한다.

(특정 여가 이용 시설 특별 상각)

제 44조의 4. 청색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승인 기본 구상에 쇼와 64년 3월 31일까지 동법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승인(동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승인을 포함)을 받은 것에 있어서 정해진 동법 제4조제2항 3호에 규정하는 중점 정비 지역의 지역 내에서 동법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승인 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과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승인 기본 구상에서 정하는 동법 제2조2항에 규정된 특정 민간 시설에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 및 건축물 중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건설 후에 사업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하 2항에서 "특정 여가 이용 시설"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거나 또는 특정 여가 활용 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포함하여 사업 년도 해당 특정 여가 이용 시설(제 43조에서 전 조까지 또는 이 규정에 관한 52조 3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의 상각 한도는 법인세법 제31조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정 여가 이용 시설 저축 상각 한도로 특별 상각 한도(그 특정 여가 이용 시설의 취득 가액의 1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와 합계 금액으로 한다.

2. 제4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

제3조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86조 제2항 제1호의 2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호의 3.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71호) 제4조제2항 3호에 규정하는 중점 정비 지구에서 동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승인 기본 구상에 따라서 동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특정 민간 시설에 제공해주는 주택 또는 건축물 중 법령이 정하는 것을 신축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한 주택 또는 건축물 부지에 제공해주는 땅 부칙 제 32조의 3 제9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수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10항으로 하고, 동조 제8항의 표 아래 입력란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수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9항으로 하고, 동조 제7항 뒤에 다음의 한 항목을 추가한다.

8. 지정 도시 등은 사업용 주택으로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 제4조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중점 정비 지구에서 동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승인 기본 구상(쇼와 64년 3월 31일까지 동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포함)을 받은 것에 한한다)에 따라서 설치된 동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특정 민간 시설에서 법령이 정하는 것에 관계된 것의 신축에 해당 특정 민간 시설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건축주에 관련된 신 증설사업소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해당 신축이 그 승인 기본 구상에 관한 동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

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날까지의 사이에 실시한 경우에 한해 제 701조의 32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새로운 증설에 관한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제 701조 34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2조3-2 제8항을 동조의 제9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에서 제7항의까지를 한 항씩 내리고, 동조 제4항 다음에 아래의 항목을 추가, 동조 제4항의 다음에 아래의 한 항목을 추가한다.

5. 전조 제8항에 규정된 특정 민간 시설에 관한 사업소 등에 실행하는 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업장소의 세 중 자산 비율의 과세 표준이 되어야하는 사업소 바닥 면적의 산정은, 해당 사업이 법인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민간 시설에 관한 사업소 등이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 연도 분까지, 그 사업이 개인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민간 시설에 관한 사업소 등이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까지에 한하고, 그 특정 민간 시설에 관련된 사업소 등에 관한 사업소 건평 (제 701조 34(사업에 관한 사업장소세에 관계된 부분에 한한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 이하 본 항과 같다)부터 해당 특정 민간 시설에 관한 사업소 건평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 701조 41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8조제11항 및 제39조11항 중 "부칙 제 32조의 3 제8항"을 "부칙 제 32조의 3 제9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수정한다.

(국토청 설치법 일부 개정)

제4조

국토청 설치법(쇼와 49년 법률 제9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21호를 제22호로 제20호 제21호로 하고, 제19호를 제20호로 하며, 제18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9.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9호"를 "제4조제20호"로 수정한다.

(농림 수산 설치법 일부 개정)

제5조

농림 수산 설치법(쇼와 24년 법률 제 15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7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27-3. 두 지역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속한 것을 처리한다.

(통상산업성 설치법 일부 개정)

제6조

통상산업성 설치법(쇼와 27년 법률 제 27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9호 다음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39-2. 지역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에 관한 것.

(교통부 설치법 일부 개정)

제7조

교통부 설치법(쇼와 24년 법률 제 15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의 2, 제1항 제17호 다음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7-2. 지역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에 관한 것.

제4조제1항 제40호의 2를 동항 제14호의 2-2로 하고, 동항 제14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4-2.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기본 구상을 승인한다.

(건설부 설치법 일부 개정)

제8조

건설부 설치법(쇼와23년 법률 제11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3-2. 지역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자치성 설치법 일부 개정)

제9조

자치성 설치법(쇼와 27년 법률 제 28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3-2. 지역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는 것.

제5조제3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3-2. 지역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기본 구상을 승인한다.

부칙(쇼와 62년 6월 9일 법률 제7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제시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 250조의 다음에 5조, 절 이름 및 2관(항목)과 관명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 (동법 제 250조의 9 제1항에 관한 부분 (두 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정한다), 제40조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 (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244조의 규정 (농업 개혁 조장법 제40조3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8조및 제 17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 7조, 제 10조, 제 12 조, 제59조단, 서적, 제60조제4항 및 제5항, 제 73조, 제 77조, 제 157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 160조, 제 163조, 제 164조 및 제 164조 및 제 202조의 규정 공포한 날.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46조

시행일 전에 제 88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구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4항(구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존 구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 제5조제1항 혹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은 각각 제 88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종합 휴양 지역 정비 (이하 이 조에서 "새로운 종합 레저 지역 정비법"이라한다) 제5조제4항(새로운 종합 레저 지역 정비법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제1항 혹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동의 또는 협의 제기로 본다.

(국가 등의 업무)

제 159조

이 법에 의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의 시행 전에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단체 사무(부칙 제 161조에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법령에 의해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로 취급하기로 한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 호에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63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한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이하 이 조에서는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 시행 시 현재의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허가 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로,

이 법률의 시행 일자에서 이 활동에 관한 행정 사무를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은,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각각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해 되는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에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 법률의 시행 일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것을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 절차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1조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대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고 한다) 시행일 전에 행정 불복 심사법에서 규정하는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이 있던 것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이의 신청은 시행일 이후에도 당해 처분청에 이어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불복 심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행정 불복 심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대한 경과 조치)

제 162조

시행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대한 경과 조치)

제 16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 법령에의 위임)

제 164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법령으로 정한다.

2. 부칙 제 80조, 제51조 및 제 184조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 250조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한 제1호 법정 수탁 사무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새롭게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법 별표 1에 내거한 것과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 재원의 충실한 확보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 개혁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

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부칙 (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1조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평성 16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경과 조치 법령에의 위임)

제82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법령으로 정한다.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 시행령
(쇼와 62년 6월 9일 법령 제 207호)

내각은 종합 보양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 제2조제1항과 제3조제4호 및 국가 행정 조직법(쇼와 23년 법률 제120호) 제7조5항과 제6항 규정에 근거해서 이 법령을 제정한다.

(특정 시설에서 제외되는 공공시설)

제1조

종합 보양 지역 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 법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도로, 하수도, 공원, 녹지, 광장과 비행장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가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것 이외의 것으로 한다.

(산업과 인구의 집적 정도가 매우 높은 지역)

제2조

법 제3조제4호 법령이 정하는 지역은 쇼와 62년 6월 1일에서 다음의 각호에 규정된 법령 규정에 규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1) 수도권 정비법 시행령(쇼와 32년 법령 제 333호) 제2조
- 2) 긴키(近畿)지역 정비법 시행령(쇼와 40년 법령 제119호) 제1조
- 3) 수도권, 긴키지역과 중부지역에 근접한 서비스 지역 등의 정비를 위한 국가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쇼와 41년 법령 제 318호)제1조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청 조직 령의 일부 개정)

제2조

국토청 조직령(쇼와 49년 법령 제 22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6호를 제7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5.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에 관한 것.

제36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하나씩 내려서 제5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6.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의 시행에 관한 것.

(농림수산물조직령의 일부 개정)

제3조

농림수산물조직령(쇼와 27년 법령 제 3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20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20-2. 지역 종합 보양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농림·수산성의 소장에 속한 것을 처리한다.

제44조중 제8호 제9호로 하고, 제2호에서 제7호까지 하나씩 내리고, 제1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2. 지역 종합 보양 정비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 중 농림·수산성의 소장에 관한 것에 관련된 것.

(통상산업성조직령의 일부 개정)

제4조

통상산업성조직령(쇼와 27년 법령 제 39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의 2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7-3.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에 관한 것.

제47조제7호를 동조 제8호로 하고, 동조 제6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7.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의 시행에 관한 것.

(교통부조직령의 일부 개정)

제5조

교통부조직령(쇼와 59년 법령 제 17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7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7. 두 지역 종합 보양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에 관한 것 (항만청 소장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제10호의 2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0-3.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 중 특정 지역에 있어서 그 중점 정비 지구가 서비스에 이바지하는 핵심 시설로 항만 시설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에 관계된 기본 구상 승인에 관한 것.

제44조제8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8. 두 지역 종합 보양 정비법의 시행에 관한 것(항만청 소장에 속하는 것을 제외).

제84조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하며, 제4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5.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 중 특정 지역의 중점 정비 지구가 서비스에 이바지하는 핵심 시설로 향만 시설을 포함하여 더 크게 구성된 것에 관한 기본 구상의 승인에 관한 것 .

(건설부 조직령의 일부 개정)

제6조

건설부 조직령(쇼와 27년 법령 제 39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41호를 제42호로 제9호에서 제40호까지 하나씩 내리고, 제8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9.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에 관한 것(도시 국 소장에 속하는 것을 제외).

제6조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2호에서 제17호까지 하나씩 내리고, 제1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2. 지역 종합 보양 정비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 중 해당 지역의 상당 부분이 도시 계획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 관한 기본 구상의 승인에 관한 것.

제6조제2항 중 "전항 제3호 및 제4호"를 "전항 제4호 및 제5호"로, "동항 제16호"를 "동항 제17호"로 수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제24조제2호"를 "제24조제13호"로 수정.

제24조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0호에서 제12호까지 하나씩 내리고, 제9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0. 지역 종합 보양 정비법의 시행에 관한 것(도시국 소장에 속하는 것을 제외).

제35조제7호를 동조 제8호로 하고 동조 제6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7.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 중 그 지역의 상당 부분이 도시 계획 지역으로 특정 지역에 관한 기본 구상의 승인에 관한 것.

(자치성 조직령의 일부 개정)

제7조

자치성 조직령(쇼와 27년 법령 38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19호를 제20호로,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제17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8.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는 것.

제13조중 제6호를 제7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5. 종합 휴양 지역 정비법에 관한 기획 입안 그 외에 동법의 시행에 관한 것.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 제 9조의 지방공공단체 등을 지정하는 정령
(쇼와 62년 12월 4일 자치성 시행령 제33호)

최종개정: 평성 16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74호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71호) 제9조규정에 의거, 종합 휴양지역 정비법 구조 지방공공단체 등을 지정하는 정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법 제 9조에 규정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제1조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9조에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관계하는 법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기본 구상 동의 일자에 속하는 연도 전 3년도 내의 각 연도에 관한 지방 교부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1호) 제4조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을 동법 제11조규정에 의해 산정한 기준재정 수요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합산한 것의 3분의 1 수치가 0.50에 못 미친 도도부현 또는 0.72에 못 미친 시정촌으로 한다.

(법 제 9조에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지정하는 특정 민간 시설)

제 2조

법 제 9조에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지정하는 특정 민간 시설은 다음 단원에 규정하는 대상 시설에서 아래에 열거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대상 시설에 제공해주는 주택이나 건축물(대상 시설에 제공해주는 부분으로 제한하며, 사무실, 기숙사 또는 숙박 시설, 주차 시설, 놀이터 시설, 음식점, 다방이나 물품 판매 시설 중 그 이용에 대한 대가 혹은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시설(이하 "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것은 제외)을 구성하는 감가상각자산(소득세법 시행(쇼와 40년 정령 제96호) 제6조제 1호 및 제2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쇼와 40년 정령 제97호) 제3조제1호와 제 2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한다) 취득 가액의 합계액이 1억엔을 넘는 것이다.
- 2) 대상 시설을 해당 사업에 제공해 주는 것에 따라서 증가한 노동 기준법 (쇼와 22년 법률 제49호) 제 9조에 규정하는 노동자의 수가 10명을 넘을 것.
- 3) 대상 시설에 관한 주택마다 그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바닥면(기계실, 복도, 계단 기타 공용에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하 이 호에서 "공동 부분의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을 제외한다) 내에 그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공용 부분의 바닥 면적을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1 이상인 것으로, 그러한 대상 시설에 관

한 건축물 당 그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구성하는 감가상각자산(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 2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본고에서 동일) 취득 가액의 합계액 내에 그 대상 시설에 포함된 부분을 구성하는 감가상각자산 취득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1 이상일 것.

4) 회원 그 외에 대상 시설을 일반 이용객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시설 또는 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쇼와 23년 법률 제122호)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풍속영업 혹은 동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성 풍속 특수 영업에 제공해주는 시설 이외의 것들이다.

2.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에 지정한 시설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 제 1조에 규정된 시설. 다음에 명시된 시설

- ① 야구장
- ② 축구장
- ③ 농구장
- ④ 배구장
- ⑤ 육상 경기장
- ⑥ 정구장
- ⑦ 수영장
- ⑧ 스키장
- ⑨ 스케이트장
- ⑩ 체육관
- ⑪ 트레이닝 센터(주로 역도와 보디 빌딩 공구를 이용해 실내에서의 건강관리 및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운동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⑫ 골프장
- ⑬ 볼링장
- ⑭ 활 연습장
- ⑮ 야영장(야외에서 숙박을 주된 목적으로 휴양에 제공되는 시설, 관리 시설, 취사 시설, 오수 처리 시설, 화장실 기타 편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⑯ 체육 센터(독점적으로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제공되는 재목, 밧줄 등으로 건설된 건축물이 자연 지형 등을 이용해 야외에 연속적으로 배치된 시설로 관리 시설, 휴게소 기타 편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⑰ 조정장
- ⑱ 마리나(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제공되는 요트, 모터보트 및 기타 선박을 계류하는 계류 시설 및 이들 선박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항만법(쇼와

25년 법률 제 210항 제8호) 제2조제5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제6호까지, 제 8 호의 2 또는 제9호의 3에서 제10호 2까지 규정된 시설(육상 선박 보관 시설, 계류 시설 기타 시설 선박의 장기 보관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며, 제4호에 규정된 시설에 있어서는 주차장으로 제한, 제9호의 3에 규정된 시설에 있어서는 녹지, 광장, 식재와 휴게소로 한정하며, 제10호에 규정된 시설에 있어서는 독점적으로 승무원이 이용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한다)

⑲ 낚시배 등 이용시설(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에 제공되는 낚시용 배(낚시용 배와 관계된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쇼와 63년 법률 제99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선박을 말한다) 다른 선박을 계류하는 계류 시설 및 이들 선박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어항 어장 정비법(쇼와 25년 법률 제137호) 제3조제1호 1 혹은 8 또는 제2호의 1, 2, 5, 7에서 14까지 규정된 시설(육상 선박 보관 시설, 계류 시설 기타 시설 선박의 장기 보관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며, 제2호의 1에 규정된 시설에는 주차장으로 제한하며, 동호 7에 규정된 시설에는 하역 기계, 제빙기, 냉동 및 냉장 시설을 제한하며, 동호 9에 규정된 시설에 있어서는 숙박 시설 제외 하며, 같은 호 14에 규정된 시설에 있어서는 광장, 식재와 휴게소를 제한한다)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하며, 동법 제6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어항 지역 내에서 서비스되는 것으로 한한다)

⑳ 낚시터(바다, 호수 등에서 휴양을 목적으로 어류 등을 낚시질 하기위한 시설로, 낚시 부두, 관리 시설, 조명 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시설. 다음에 명시된 시설

- ① 극장(관객을 수용하고, 연극, 음악, 영화 등을 감상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도서관(도서,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③ 박물관(역사, 예술, 민속, 산업, 자연 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육성을 포함한다), 전시하여 교육적 배려 하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④ 미술관

3) 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시설. 전망 시설(언덕 등의 지형을 이용하여 계곡, 해안, 야경 등의 경관을 감상하기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시설. 다음에 명시된 시설

- ① 교육 시설
- ② 회의 시설
- ③ 전시 시설

(법 9조에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3조

법 제 9조에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항목마다 각각의 해당 각호에 정한 경우로 한다.

- 1) 부동산 취득세상품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본 구상(평성 11년 3월31일까지 지방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7호) 제 88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법률(이하 "구법"이라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받은 것에 한한다)의 법 제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공표 일(이하 이 조에서 "공표 일"이라고 한다)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공표 일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의 결정 일까지(기한 내에 법 제4조제2항의 중점 정비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표 일로부터 해당되지 않는 날까지의 기간 내으로 한다) 전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 민간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 민간 시설 설치자"라고 한다)에 대해서 설치된 특정 민간 시설에 제공해주는 주택(특정 민간 시설에 제공해주는 부분으로 제한하며, 사무실 등에 관한 것을 제외)의 중소득 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6년 법률 제14호. 이하 이 조에서 "평성 16년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7조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조세 특별 조치법(쇼와 32년 법률 제26호) 제11조5 제1항 또는 제44조5 제1항 혹은 제68조22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 또는 그 부지에 있는 토지의 취득(공표 일 이후 취득에 한하며, 토지의 취득은 그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부지로 하는 주택 건설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으로 한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불균일 과세를 하기로 하는 경우
 - ① 이러한 공표가 평성 3년 4월 1일까지 실행된 경우에는 평성 8년 3월 31일
 - ② 이러한 공표가 평성 3년 4월 1일부터 평성 11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실행된 경우 공표 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는 날
- 2) 재산세 특정 민간 시설 설치에 관하여 설치된 특정 민간 시설에 제공해주는 주택이나 건축물(특정 민간 시설에 제공해주는 부분으로 제한하며, 사무실 등에 관한 것을 제외) 중 평성 16년 개정법 제7조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조세 특별 조치법 제 11조의 5 제1항 또는 제 44조의 5 제1항 혹은 제 68조의 제 2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 또는 이들의 부지에 있는 땅(공표 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정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부지로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 건설 착수가 있는 경우 토지로 한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에 불균일 과세를 하기로 하는 경우.

부칙

1. 이 정령은 쇼와 6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목마다 각각 해당 각호에 명시된 경우 제 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 제 9조에 규정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 1) 부동산 취득세 다음에 열거한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기본 구상(평성 5년 3월 31일까지 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일(이하 이 항에서 "공표의 날"이라고 한다)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하는 날부터 평성 13년 3월 31일까지(기한 내에 법 제4조제2항의 중점 정비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된 지구에 대해서는 공표일로부터 그 해당하지 않는 날까지의 기간)내에 특정 민간 시설(제2조제2항에 규정된 대상 시설로 동조 제1항 제1호 중 "1억엔"인 것은 "2억엔"으로 바꾸는 경우 동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한다)을 설치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정 민간 시설 설치자"라고 한다)에 대해서, 설치한 특정 민간 시설에 제공되는 주택(특정 민간 시설에 제공해주는 부분으로 제한하며, 사무실 등에 관한 것 제외) 중 조세 특별 조치법 제 11조의 5 제1항 또는 제 44조의 5 제1항 혹은 제 68조의 22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평성 9년 3월 31일까지 건설 착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 그 부지에 있는 토지의 취득 (공표 일 이후 취득에 한하며, 토지의 취득은 그 취득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일년 이내에 토지를 부지로 주택 건설 착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 취득으로 한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불균일 과세를 하고 있는 경우
 - ① 그러한 공표가 평성 3년 3월 31일까지 실행된 경우, 평성 8년 4월 1일
 - ② 그러한 공표가 평성 3년 4월 1일부터 평성 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실행된 경우, 공표 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된 일자의 다음날
 - 2) 재산세 특정 민간 시설 설치에 관하여 설치한 특정 민간 시설에 제공되는 주택이나 건축물(특정 민간 시설에 제공해주는 부분으로 제한하며, 사무실 등에 관한 것을 제외) 중 조세 특별 조치법 제 11조의 5 제1항 또는 제 44조의 5 제1항 혹은 제 68조의 22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평성 9년 31일까지 건설이 시작된 것에 한한다) 또는 이들의 부지에 있는 땅(공표 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정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일년 이내에 그 토지를 부지로 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건설 착수가 있는 경우에 대한 토지로 한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에 균일과세를 하기로 하는 경우

부칙(평성 원년 3월 31일 자치성 시행령 제11호)

이 정령은 평성 원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년 3월 31일 자치성 시행령 제8호)

1. 이 정령은 평성 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후 제2조제2항 제1호 규정이 정령의 실행일 이후에 설치된 낚싯배 등 이용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평성 2년 3월 31일 자치성 시행령 제8호)

이 정령은 평성 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3월 23일 자치성 시행령 제9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7년 3월 27일 자치성 시행령 제8호)

이 정령은 평성 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8년 3월 29일 자치성 시행령 제10호) 발취

1. 이 정령은 평성 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지방 거점 도시의 정비 및 산업 업무 시설의 배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 36조의 지방 공공단체 등을 정하는 정령 제 3조의 규정은 이 정령의 실행일 이후에 설치되는 교양 문화 시설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날 이전에 설치된 교양 문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9년 3월 28일까지 자치성 시행령 제14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3월 30일 자치성 시행령 제11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신 산업 창출 촉진법 부칙 제11조규정에 따라, 또한 그 효력이 있는 폐지 이전 지역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특정 사업의 집적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 사업 통합 촉진법"이라고 한다)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제1조제2호에 규정된 정령은 이전 특정 사업 통합 촉진법 제 12조의 규정이 효력 있는 한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부칙(평성 12년 3월 15일 자치성 시행령 제9호)

이 정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9월 14일 자치성 시행령 제44호)

이 정령은 내각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 일자(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3월 30일 총무성령 제57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43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5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59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중 관동 문화 학술 연구

도시 건설 추진법 제11조지방 공공단체 등을 정하는 정령 제3조1호 개정 규정("제 43조의 2 제1항"의 밑에 "또는 제 68조의 17 제1항"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한다) 및 동조 제2호의 개정 규정, 제 2조의 규정, 제4조중 산촌 진흥법 제 14조의 지방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정령 제3조제1항 개정 규정("제 43조의 3 제2항"아래 "또는 68조의 18 제2항"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한다) 및 제6조중 특정 농·산림 지역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지방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될 등을 정하는 정령 제4조제1호의 개정 규정("제 43조의 3 제2항"아래 "또는 제 68조의 18 제 2항"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한다), 평성 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74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 관 법
(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10호)

최종 개정 : 2009년 6월 24일 법률 제 57호

(최종 개정까지의 미시행 법령)
2009년 6월3일 법률 제47호 (미시행)

2009년 6월 24일 법률 제 57호 (미시행)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400
제2장 경관계획 및 이것에 따른 조치	402
제1절 경관계획의 수립(제8조 - 제15조)	402
제2절 행위의 규제(제16조 - 제18조)	408
제3절 경관 중요건조물	412
제1관 경관중요건조물의 지정(제19조 - 제24조)	412
제2관 경관중요수목의 지정(제25조 - 제35조)	415
제3관 관리협정(제36조 - 제42조)	418
제4관 잡칙(제43조 - 제46조)	420
제4절 경관중요공공시설의 정비(제47조 - 제 54조)	421
제5절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제 55조 - 제 59조)	423
제6절 자연공원법의 특례(제60조)	426
제3장 경관 지구	426
제1절 경관 지구	426
제1관 경관 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제61조)	426
제2관 건축물의 형태의장의 제한(제62조 - 제71조)	427
제3관 공작물 등의 제한(제72조 · 제73조)	431
제2절 준경관 지구(제74조 · 제75조)	432
제3절 지구 계획 등의 구역 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형태의장의 제한(제76조)	433
제4절 잡칙(제74조 - 제80조)	434

제4장 경 관 협 정(제81조 - 제91조)	436
제5장 경 관 정 비 기 구(제912조-제96조)	441
제6장 잡 칙(제97조-제99조)	442
제7장 벌 칙(제100조- 제107조)	443
부 칙	445

제 1 장 총칙

(목 적)

제1조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도시, 농산어촌 등에서 양호한 경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경관계획의 수립, 그 밖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아름답고 풍격 있는 국토의 형성,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창조 및 개성있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 양호한 경관은 아름답고 풍격 있는 국토 형성과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창조에 불가결한 것에 비추어 국민 공통의 자산으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이 혜택을 향수할 수 있도록, 그 정비 및 보전이 도모되어야 한다.

2. 양호한 경관은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등과 사람들의 생활, 경제활동 등과의 조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인 것에 비추어 적절한 제한하에 이러한 것이 조화된 토지이용 등을 통해서 그 정비 및 보전이 도모되어야 한다.

3. 양호한 경관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하는 **것에 비추어** 지역 주민의 의향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개성 및 특색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형성이 도모되어야 한다.

4. 양호한 경관은 관광 그 밖에 지역 간의 교류촉진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주민에 의해, 양호한 경관형성이 되도록 일체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5. 양호한 경관형성은, 현재의 양호한 경관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양호한 경관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 국가는, 제2조에 정하는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고 함)을 따르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가 있다.

2. 국가는,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계발 및 지식 보급 등을 통해서,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4조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의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가 있다.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토지이용 등의 사업 활동에서,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주민의 책무)

제6조 주민은 기본이념을 따르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이해를 높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정의)

제7조 이 법률에서 「경관행정단체」란 지방자치법 (1947년 법률 제67호)제252조19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이 항에 대해 「지정도시」라고 함)의 구역에서는 지정도시, 동법 제252조22제1항의 중핵시(이하 이 항에 대해 「중핵시」라고 함)의 구역에 있어서는 중핵시, 그 밖의 구역에 있어서는 도도부현을 말한다. 다만, 지정도시 및 중핵시 이외의 시정촌이 도도부현을 대신하여 제2장제1절부터 제4절까지,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지역의 장이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해 동의를 얻은 시정촌 구역에 있어서는 해당 시정촌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건축물」이란, 건축기준법 (1970년 법률 제201호)제2조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법(1969년 법률 제189호)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 하천, 공원, 광장, 해안, 항만, 어항 그 밖에 정령이 정하는 공공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국립공원」이란 자연공원법 (1957년 법률 제161호)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립공원을, 「국립공원」이란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국립공원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도시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 「준도시계획구역」이란 동항에서 규정하는 준도시계획구역을 말한다.

7. 제1항의 예외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경관행정단체가 되는 경우 시정촌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경관행정단체가 되기 30일전까지 국토교통성령·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제2장 경관계획 및 이것에 따른 조치

제 1 절 경관계획의수립

(경관계획)

제8조 경관행정단체는 도시, 농산어촌 그 밖에 시가지 또는 집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및 일체가 되어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수면을 포함. 이하 이항과 제11조 및 제4조 제2항에 대해 같음)구역에 대해서는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계획(이하 「경관 획」이라고 함)을 정할 수 있다.

- 1) 현재의 양호한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구역
- 2)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의 측면에서 지역특성에 어울린 양호한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구역
- 3) 지역간의 교류의 거점이 되는 토지구역으로서 이바지하는 양호한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4) 주택시가지개발, 그 밖의 건축물 또는 대지정비에 관한 사업이 행해지거나 또는 행진 토지구역에 새롭게 양호한 경관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구역
- 5) 지역의 토지 이용의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불량한 경관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구역

2. 경관계획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 1) 경관계획의 구역(이하 「경관계획 구역」이라고 함)
- 2) 경관계획구역에 있어서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방침
- 3)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의 경관중요건조물 또는 제28조제1항의 경관중요수목의 지정방침(해당 경관계획구역 내에 이러한 지정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 또는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5) 다음의 사항 중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가. 옥외 광고물의 표시 및 옥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물건의 설치에 대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나. 해당 경관계획구역 내의 도로법 (1952년 법률 제180호)에 의한 도로, 하천법 (1974년 법률 제167호)에 의한 하천, 도시공원법 (1956년 법률 제79호)에 의한 도시공원, 해안보전구역 등 (해안법 (1956년 법률 제101호)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해안보전구역 등을 말함. 이하 같음)과 관계있는 해안, 항만법 (1956년 법률 제218호)에 의한 항만, 어항어장정비법 (1956년 법률 제137호)에 의한 어항,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사업(국가 또는 동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공단체가 집행하는 것에 한정함)과 관련 있는 시설, 그 밖에 정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하 「특정공공시설」이라고 총칭함)로, 양호한 경관형성에서 중요한 것(이하 「경관중요공공시설」이라고 함)의 정비에 관한 사항

다. 경관중요공공시설에 관한 다음의 기준 중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것

(1) 도로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허가기준

(2) 하천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이러한 규정을 동법 제10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허가기준

(3) 도시공원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 혹은 제3항 의 허가기준

(4) 해안법 제7조제1항 , 제8조제1항, 제37조의 4 또는 제37조의 5의 허가기준

(5) 항만법 제37조 제1항 의 허가기준

(6) 어항어장정비법 제39조제1항 의 허가기준

라. 제55조제1항의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마. 자연공원법 제13조제3항 , 제14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의 허가(정령이 정하는 행위와 관련 있는 것에 한정함) 기준 중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것(해당 경관계획구역에 국립공원 또는 국정공원의 구역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함)

6) 그 밖의 국토교통성령·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2항제3호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는 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동항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조례로 정해야 할 행위
- 2) 다음의 제한 중 제16조제3항이나 제6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 또는 조치의 기준으로서 필요한 것
 - 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함. 이하 같음)의 형태 또는 색채 그 밖의 의장(이하 「형태의장」이라고 함)의 제한
 -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다. 벽면 위치의 제한 또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저한도
 - 라. 그 밖에 제16조제1항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별로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제한
4. 경관계획은 전국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킨키권정비계획, 추부권개발 정비계획, 홋카이도종합개발계획, 오키나와진흥계획, 지방종합개발계획, 도부현종합개발계획, 그 밖의 국토계획 또는 지방계획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계획 및 도로, 하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경관계획은, 환경기본법 (1993년 법률 제91호)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경기본계획(해당 경관계획구역에 대해서 공해방지계획이 정해져 있을 때는 해당 공해방지계획을 포함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6. 도시계획구역에 대해 정하는 경관계획은 도시계획법 제6조제1항의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침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7. 시정촌인 경관행정단체가 될 경우, 시정촌이 정하는 경관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수립된 해당 시정촌의 건설에 관한 기본 구상에 맞는 것과 동시에, 도시계획구역 또는 준도시계획구역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8조의2제1항의 시정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으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제2항제5나 및 다에 제시된 사항은 경관중요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라 정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한 방침 또는 계획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제2항제호에 제시된 사항을 정하는 경관계획은, 동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라에 제시된 사항 및 동항 제6호에 제시된 사항 중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의정비에관한법률(1969년 법률 제58호)제4조제1항의 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으로 적합하여야 함과 동시에 시정촌이 경관행정단체일 경우에 시정촌이 정하는 사항도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말함. 이하 같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경관계획에 정하는 제2항제 5 호마에 제시된 사항은 자연공원법 제2조 제 5 호에서 규정하는 공원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립 절차)

제9조 경관행정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의 개최 등 주민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경관행정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계획구역 또는 준도시계획구역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시정촌인 경관행정단체일 경우, 시정촌도시계획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정촌도시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3. 도도부현이 경관행정단체일 경우에 경관계획을 정할 때는, 사전에 관계 시정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4. 경관행정단체는 경관계획에 제8조제2항제 5 호나 또는 다에 제시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성령·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경관중요공공시설의 관리자(경관행정단체를 제외함)에 협의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경관행정단체는 경관계획에 제8조제2항제 5 호마에 제시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국립공원 등 관리자(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성장관, 국정공원에 있어서는 도도부현 지사를 말함. 이하 같음)와 협의해 그 동의를 얻지않으면 안된다.

6. 경관행정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고시해, 국토교통성령·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해당 경관행정단체의 사무소에서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7. 의 각 항의 규정은, 경관행정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앞의 각 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에 한정함)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8. 앞의 각 항의 규정은 경관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특정공공시설 관리자에 의한 요청)

제10조 특정공공시설의 관리자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하려고 하는 경관행정단체에게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경관계획구역(경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경관행정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경관행정단체가 수립하려고 하는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경관계획구역이 되어야 할 구역)내의 해당 관리자의 관리하에 있는 특정공공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경관중요공공시설로서 해당 경관계획에 제8조제2항제5호 나목 또는 다목에 제시된 사항을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과 관련 있는 경관계획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경관중요공공시설의 관리자는 경관행정단체와 해당 경관계획에 대해서 제8조제2항제5호 나목 또는 다목에 제시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후단 규정은 이 경우에서 준용한다.

3. 경관행정단체는 제2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주민 등에 의한 제안)

제11조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구역 중, 일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형성해야 할 토지구역으로서 적합한 일단의 토지구역 중 정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에 대해서 해당 토지의소유권 또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항요건을 갖춘 지상권 혹은 임차권(임시설비, 기타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서 설정되었던 것이 분명한 것을 제외함. 이하 「차지권」이라고 함)은 가지는 사람(이하 이 조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라고 함)은 개인, 또는 복수가 경관행정단체에 대해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 제안과 관련 있는 경관계획의 대략적인 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역정비운동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정 비영리활동촉진법(1998년 법률 제7호)제2조제2항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혹은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제34조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관 행정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구역에 대해서 경관행정단체에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동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하 「계획제안」이라고 함)은 해당 계획 제안과 관련 있는 경관계획의 대략적인 안의 대상이 되는 토지(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공공시설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의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동의 한 사람이 소유하는 구역 내의 토지지적과 동의한 사람이 가지는 차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구역 내의 토지지적과의 합계가 구역 내의 토지총지적과 차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총지적과의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함)를 얻고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성령·농림수산성령·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 제안에 대한 경관행정단체의 판단)

제12조 경관행정단체는 계획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계획제안을 바탕으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지 없음을 판단해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해야 한다.

(계획 제안을 토대로 경관계획의 안의 도도부현도시계획심의회 등에 대해 부의)

제13조 경관행정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계획제안을 토대로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수립 또는 변경이 해당 계획제안과 관련 있는 경관계획의 대략적인 안의 내용 일부를 실현하게 되는 것일 때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도시계획 심의회 또는 시정촌도시계획심의회에 해당 계획제안과 관련 있는 경관계획의 대략적인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제안을 토대로 한 경관계획의 수립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

제14조 경관행정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 결과, 계획제안을 토대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러한 취지 및 이유를 해당 계획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경관행정단체는 도시계획구역 또는 준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해 전항의 통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도도부현도시계획심의회(시정촌인 경관행정단체 일 경우, 시정촌에 시정촌도시계획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시정촌 도시계획 의회)에 해당 계획제안과 관련된 경관계획의 대략적인 안을 제출해 그 의견을 듣지않으면 안된다.

(경관 협의회)

제15조 경관계획구역에서 양호한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의를 하기 위해 경관행정단체,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경관중요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경관정비기구(해당 경관행정단체가 도도부현일 때는 관계 시정촌, 해당 경관계획구역에 국립공원 또는 국정공원구역이 포함될 때는 국립공원 등 관리자를 포함. 이하 이 항에 대해 「경관행정단체 등」이라고 함)는, 경관협의회(이하 이 조에 대해 「협의회」라고 함)를 조직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경관행정단체 등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광관련단체, 상공관련단체, 농림어업단체, 전기사업, 전기통신사업, 철도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 주민 그 밖에 양호한 경관형성의 촉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2. 협의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 구성원 이외의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자에게 의견표명, 설명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전단의 협의를 하기 위한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협의회의 구성원은 협의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4. 제3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2절 행위의 규제

(신고 및 권고 등)

제16조 경관계획구역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국토교통성령(제4호에서 제시한 행위는 경관행정단체의 조례.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의 종류, 장소, 설계 또는 시행방법, 착수예정일 그 밖에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경관행정단체의 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혹은 이전, 외관을 변경하는 수리 혹은 모양체 또는 색채의 변경(이하 「건축 등」이라고 함)
 - 2) 공작물의 신설, 증축, 개축 혹은 이전, 외관을 변경하는 수리 혹은 모양체 또는 색채의 변경(이하 「건설 등」이라고 함)
 - 3) 도시계획법 제4조제12항에 규정하는 개발행위 그 밖에 정령이 정하는 행위
 - 4) 3)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행정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와 관련 있는 사항 중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그러한 취지를 경관행정단체의 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 그 신고와 관련 있는 행위가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한 제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와 관련 있는 행위에 대해 설계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제3항의 권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5. 앞의 각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해당 정부기관 또는 지

방공공단체는 동항의 신고가 필요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경관행정단체의 장에게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6.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5항 후단의 통지가 있을 경우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한 제한에 적합하도록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7. 다음의 행위는 앞의 각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통상의 관리행위, 경미인 행위 그 밖에 정령이 정하는 것
- 2) 비상재해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행위
- 3) 경관중요건조물에 대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서 하는 행위
- 4) 경관계획에서 제8조제2항제5호 나목의 사항 중 경관중요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행하는 행위
- 5) 경관중요공공시설에 대한 제8조제2항제5호 다목(1)로부터(6)까지에서 규정하는 허가(경관계획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에 한정함)를 받아서 하는 행위
- 6) 제55조제2항제1호의 구역 내의 농업용지구(농업진흥지역의정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업용지구를 말함)안에서 동법 제15조의2제1항의 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개발 행위
- 7) 국립공원 또는 국정공원의 구역 내에서 제8조제2항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허가(경관계획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에 한정함)를 받아 행하는 행위
- 8) 제61조제1항의 경관지구(다음호에 대해 「경관지구」라고 함)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 9)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공작물의 건설 등 제한사항이 제72조제2항의 경관지구 공작물제한조례에 의해 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 경관지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작물의 건설 등
- 10) 지구계획 등(도시계획법 제4조제9항에 규정하는 지구계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의 구역(지구정비계획(동법 제12조의5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지구정비계획을 말함. 이와 같음), 특정건축물지구정비계획(밀집시가지에있어서의 방재가구의정비의촉진에관한법률(1997년 법률 제49호)제3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정건축물지구정비계획을 말함. 제76조제1항에 대해 같음), 방재가구정비지구정비계획(동법 제32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방재가구정비지구정비계획을 말함. 이와 같음.), 연도지구정비계획(간선도로의 길가의정비에

관한법률(1980년 법률 제3십4호)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도지구정비계획을 말함. 이와 같음) 또는 집락지구정비계획(집락지역정비법 (1987년 법률 제63호)제 5 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집락지구정비 계획을 말함. 이와 같음)이 정해져 있는 구역에 한정함) 안에서 행하는 토지구획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그 밖에 정령이 정하는 행위

11) 그 밖에 정령 또는 경관행정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변경 명령)

제17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신고대상행위(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고를 필요하는 행위 중 해당 경관행정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항 및 제18조제1항에 대해 같음)에 대해 경관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형태의장 제한으로 적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한 사람에 대해 해당 제한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행위에 관한 설계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처분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가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정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처분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와 관련 있는 건축물 혹은 공작물 또는 이들 부분의 형태의장이 정령이 정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의무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제2항의 기간 내에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유가 존속하는 동안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항의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그러한 취지, 연장하는 기간 및 연장하는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5.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처분을 위반한 사람 또는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고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형태의장 제한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이것에 대신해야 할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 대해 「원상회복등」이라고 함)를 명하려고 하는 경우에 과실이 없어서 해당 원상회복 등을 명하여야 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는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그 사람의 부담으로, 해당 원상회복 등을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그 명한 사람 혹은 위임한 사람에게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기한까지 해당 원상회복 등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경관행정단체 장 또 그 명한 사람이나 위임한 사람은 해당 원상회복 등을 행하는 취지를 사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7.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에게 해당 조치의 실시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거나 또는 경관행정단체의 직원에게 해당 건축물의 대지 혹은 해당 공작물이 존재하는 토지에 들어가 특정 신고 대상 행위의 실시 상황을 검사토록 하거나 혹은 특정 신고 대상 행위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8.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원상회복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출입검사 또는 출입조사를 하는 사람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해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9.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검사 또는 출입 조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과 해석해서는 안 된다.

(행위의 착수의 제한)

제18조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를 한 사람은 경관행정단체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특정신고대상행위의 경우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17조제2항의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해당 신고와 관련 있는 행위(터파기공사, 그 밖에 정령이 정하는 공사와 관련 있는 것을 제외함. 제102조제4호에 대해 같음)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신고대상행위에 대해 제17조제1항의 명령에 의하거나 또는 이에 따른 행위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2.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 있는 행위가 양호한 경관형성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절 경관중요건조물

제1관 경관중요건조물의 지정

(경관중요건조물의 지정)

제19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경관계획에서 정한 경관중요건조물의 지정방침(제20조제3항에 대해 「지정 방침」이라고 함)에 적합하고 경관계획구역 내 양호한 경관형성에 중요한 건조물(이것과 일체가 되어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함. 이하 이 절에서 같음)로서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경관중요건조물로서 지정할 수 있다.

2.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한 지정을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해당 건조물의 소유자(소유자가 두 명 이상 있을 때는 전원.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에 대해 같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1950년 법률 제2백십4호)의 규정에 의해 국보, 중요문화재, 특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또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서 지정되어 또는 가지정된 건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관중요건조물의 지정의 제안)

제20조 경관계획구역 내의 건조물소유자는 해당 건조물이 양호한 경관형성에 중요하고 제19조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경관행정단체의 장에게 경관중요건조물로서 지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건조물을 경관중요건조물로서 지정할 것을 제안한 소유자 이외의 소유자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전원의 합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2.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경관정비기구(이하 이절 및 제5절에서 「경관정비기구」라고 함)는 경관계획구역 내의 건조물에 대해서 양호한 경관형성에 중요하고, 제19조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전에 해당 건조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행정단체의 장에게 경관중요건조물로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3.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과 관련 있는 건조물이 지정 방침이나 제19조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비추어 경관중요건조물로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러한 취지 및 그 이유를 해당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 통지)

제21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관중요건조물을 지정이 있었을 때는, 즉시 지정 취지, 그 밖에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경관중요건조물의 소유자(해당 지정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근거를 두는 것일 때는 해당 경관중요건조물의 소유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 있는 경관정비 기구)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경관행정단체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중요건조물의 지정이 있었을 때는 지체 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데 바에 의해 이것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상 변경 규제)

제22조 누구든지 경관행정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경관중요건조물의 증축, 개축, 이전 혹은 제거, 외관을 변경하는 수리 혹은 모양이나 색채의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통상의 관리 행위, 경미한 행위, 그 밖에 정령이 정하는 행위 및 비상 재해 때문에 필요한 응급조치 행위는 이러한 범위에 들지 않는다.

2.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시정행위가 해당 경관중요건조물의 양호한 경관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1항의 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해당 경관중요건조물의 양호한 경관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달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항의 허가를 받는 것을 필요기 없다. 이 경우에 해당 정부 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경관행정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원상회복 명령)

제23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에 첨부된 조건을 위반한 사람 또는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경관중요건조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해 해당 경관중요건조물의 양호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이 현저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이것을 대신 할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 대해 「원상회복 등」이라고 함)를 명하는 경우에 과실이 없어서 해당 원상회복 등을 명령할 사람을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에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스스로의 부담으로 해당 원상회복 등을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이를 명한 사람 또는 위임한 사람에게 이것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해 해당 원상회복 등을 행하여야 하는 취지 및 그 기한까지 해당 원상회복 등을 하지 않을 때는 경관행정단체장, 혹은 그 명한 사람 또는 위임한 사람은 해당 원상회복등을 실시하는 취지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상회복 등을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

(손실 보상)

제24조 경관행정단체는 제22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손실을 입은 경관중요건조물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해당 허가 신청과 관련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다른 법률(법률에 근거를 두는 명령 및 조례를 포함함)로 행정청의 허가,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해당 허가 그 밖의 처분을 받을 수 없어서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 손실을 보상 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함) 경우나 해당 허가, 그 밖의 처분의 신청이 각하되었거나 또는 각하 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 허가의 신청과 관련 있는 행위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경관행정단체의 장과 손실을 입은 사람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경관행정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사람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 (1951년 법률 제219호)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경관중요건조물의 소유자의 관리 의무)

제25조 경관중요건조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양호한 경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경관행정단체는 경관중요건조물의 양호한 경관보전을 위해 필요한 관리방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리에 관한 명령 또는 권고)

제26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경관중요건조물의 관리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경관중요건조물이 멸실 해 혹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레가 입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중요건조물의 관리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관중요건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리방법의 개선,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지정해제)

제27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경관중요건조물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건조물에 해당되거나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지정 이유가 소멸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경관중요건조물에 공익상의 이유,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중요건조물의 지정해제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2관 경관중요수목의 지정

(경관중요수목의 지정)

제28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경관중요수목의 지정방침(제29조제3항에 대해 「지정 방침」이라고 함)에 적합하고 경관계획구역 내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중요한 수목으로서 국토교통성령(도시계획구역외의 수목은 국토교통성령·농림 수산성령.이하 이 관서 같음)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경관중요수목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2.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경관중요수목을 지정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지정을 하려고 하는 수목의 소유자(소유자가 두 명 이상 있을 때는 전원. 제29조제2항 및 제310조제1항에서도 같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또는 가지정된 수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관중요수목의 지정제안)

제29조 경관계획구역 내의 수목소유자는 해당 수목이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제28조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행정단체 장에게 경관중요수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목에 해당 제안을 행한 소유자 이외에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전원의 합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2. 경관정비기구는 경관계획구역 내의 수목이 양호한 경관형성에 중요하고 제28조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수목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행정단체의 장에게 경관중요수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3.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과 관련 있는 수목에 대해서 지정 방침 및 제28조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비추어 경관중요수목으로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러한 취지 및 이유를 해당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정통지)

제30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관중요수목을 지정했을 때에는 즉시 그러한 취지, 그 밖에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경관중요수목의 소유자(해당 지정이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제안일 경우에는 해당 경관중요수목의 소유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 있는 경관정비기구)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경관행정단체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경관중요수목의 지정이 있었을 때는 지체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상변경의 규제)

제31조 어떠한 사람이나 경관행정단체 장의 허가없이 경관중요수목의 벌채 또는 이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통상의 관리행위, 경미한 행위, 그 밖에 정령이 정하는 행위 및 비상재해 때문에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행위는 이 범중에 들지 않는다.

2. 제22조제2항으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관중요건조물」을 「경관중요수목」으로 대체한다.

(원상회복 명령 등에 대한 준용)

제32조 제23조의 규정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또는 제31조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에 첨부된 조건을 위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3조제1항 「경관중요건조물」을 「경관중요수목」으로 대체한다.

2. 제27조의 규정은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발생한 경관중요수목의 소유자의 손실에 준용한다.

(경관중요수목의 소유자의 관리 의무)

제33조 경관중요수목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양호한 경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2. 경관행정단체는 경관중요수목관리방법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리에 관한 명령 또는 권고)

제34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경관중요수목의 관리가 적당하지 않아 해당 경관중요수목이 멸실 혹은 고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가 입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중요수목의 관리가 해당 조례에 따라서 적절히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관중요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리방법의 개선,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지정해제)

제35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경관중요수목이 제2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목에 해당하거나 또는 멸실, 고사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지정이유가 소멸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경관중요수목에 공익상의 이유,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중요수목의 지정해제에 준용한다.

제3관 관리협정

(관리 협정의 체결)

제36조 경관행정단체 또는 경관정비기구는 경관중요건조물 또는 경관중요수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관중요건조물 또는 경관중요수목의 소유자(소유자가 두 명 이상 있을 때는 전원. 제42조제1항에서도 같음)와 다음 사항을 정한 협정(이하 「관리 협정」이라고 함)을 체결하여 해당 경관중요건조물 또는 경관중요수목을 관리할 수 있다.

- 1) 관리협정의 목적이 되는 경관중요건조물(이하 「협정건조물」이라고 함) 또는 관리협정의 목적이 되는 경관중요수목(이하 「협정 수목」이라고 함)
 - 2) 협정건조물 또는 협정 수목의 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3) 관리협정의 유효기간
 - 4) 관리 협정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2. 관리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 협정건조물 또는 협정수목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것.
 - 2) 제1항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 사항이 국토교통성령(도시계획구역외의 협정수목과 관련 있는 관리 협정은 국토교통성령·농림수산성령. 이하 이 관에서 같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경관정비기구가 관리협정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경관행정단체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 협정의 열람)

제37조 경관행정단체 또는 그 장은 관리협정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관리협정 인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신청취지를 공고하여 해당 관리협정을 해당 공고일로부터 2주동안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공고가 있었을 때 관계인은 제1항의 열람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관리협정에 대한 의견서를 경관행정단체 또는 그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관리협정 인가)

제38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관리협정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협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 1) 신청 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
- 2) 관리협정 내용이 제36조제2항 각 호에 제시된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관리협정 공고)

제39조 경관행정단체 또는 그 장은 관리협정을 체결하거나 제38조의 인가를 했을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그러한 취지를 공고하고 해당 관리협정의 사본을 해당 경관행정단체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협정 변경)

제40조 제36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은 관리협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의 변경에 준용한다.

(관리협정 효력)

제41조 제39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거한 공고가 행해진 관리협정은 이러한 공고가 행해진 후에 해당 협정건조물 또는 협정수목의 소유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녹지관리기구의 업무특례)

제42조 도시녹지법(1973년 법률 제72호)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녹지관리기구이며 동법 제69조제1호 가목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이 절에서 「녹지관리기구」라고 함)는 경관중요수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조 각 호서 제시된 업무 외에도 해당 경관중요수목의 소유자와 관리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경관중요수목의 관리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녹지법 제70조 「또는 라목(1)에서 제시하는 업무」를 「또는 라목(1)에 제시하는 업무 또는 경관법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로 한다.

3. 제36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37조에서 제41조까지의 규정은 앞의 라목의 규정에 의해 녹지관리기구가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관 잡칙

(소유자 변경의 경우 신고)

제43조 경관중요건조물 또는 경관중요수목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 새롭게 소유자가 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관행정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장)

제44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경관중요건조물 또는 경관중요수목에 관한 대장을 작성해 이를 보관해야 한다.

2. 제1항의 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도시계획구역외의 경관중요수목에 관한 대장은 국토교통성령·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보고요구)

제45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관중요건조물 또는 경관중요수목의 소유자에게 경관중요건조물 또는 경관중요수목의 현상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조언 또는 지원)

제46조 경관중요건조물의 소유자는 경관행정단체 또는 경관정비기구, 경관중요수목의 소유자는 경관행정단체 또는 경관정비기구나 녹지관리기구에게 경관중요건조물 또는 경관중요수목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언 또는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경관중요공공시설의 정비

(경관중요공공시설의 정비)

제47조 제8조제2항제 5 호나목의 경관중요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경관계획으로 정해질 경우 해당 경관중요공공시설의 정비는 해당 경관계획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전선공동구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특례)

제48조 경관계획에서 경관중요공공시설로서 결정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하

「경관중요도로」라고 함)에 대한 전선공동구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5년 법률 제39호)제3조의 규정 적용에서 제3조제1항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경관정비를 도모하기 위해」를 「경관계획(경관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관계획을 말함)에 의거한 경관정비와 안전한 교통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라고 「특별히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제3조제2항 중 「시정촌을 제외한다.」를 「시정촌을 제외한다. 해당 지정과 관련 있는 도로가 있는 구역에서 경관행정단체(경관법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경관행정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인 도도부현(해당 지정과 관련 있는 도로의 도로관리자가 도도부현인 경우의 해당 도도부현 및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한 도도부현을 제외한다.)」으로, 제3조 제3항 중 「시정촌」을 「시정촌 또는 경관행정단체인 도도부현」이라고 한다.

(도로법의 특례)

제49조 경관계획에 제8조제2항제 5 호다(1)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관중요도로에 대한 도로법 제33조제36조제2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 적용에서 도로법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중 「정령이 정하는 기준」을 「정령이 정하는 기준 및 경관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제8조제2항제 5 호다(1)의 허가기준」으로, 도로법 제87조제1항 중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또는 양호한 경관을 형성한다」라고 한다.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특례)

제 50조 경관계획에 제8조제2 제 5 호다(2)의 허가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관중요공공시설인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하 이 조에 대해 「경관중요하천」이라고 함)의 하천구역(하천법 제6조제1항 (하천법 제10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규정하는 하천구역을 말함)안의 토지에서 하천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이러한 규정을 하천법 제100제1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하는 하천 관리자(동법 제7조(동법 제10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하는 하천 관리자를 말함)는 해당 행위가 해당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동호다목(2)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특례)

제 51조 경관계획에 제8조제2항제 5 호다목(3)의 허가기준(도시공원법 제 5 조제1항의 허가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함. 이하 이 항서 같음)이 정해져 있는 경관중요공

공시설인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이하 이 조에서 「경관중요도시공원」이라고 함)에서 도시공원법 제5조제1항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해당 경관중요 도시원의 공원 관리자(동항에 규정하는 공원 관리자를 말함)는 해당 행위가 해당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동호다(3)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경관계획에 제8조제2항 제5호다(3)의 허가기준(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허가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경관중요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법 제7조의 규정 적용에서 「정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을 「정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 및 경관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제2항제5호다(3)의 허가기준」이라고 한다.

(해안법의 특례)

제 5 2 조 경관계획에 제8조제2항제5호다(4)의 허가기준(해안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허가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경관중요공공시설인 해안보전구역 등과 관련 있는 해안(다음 항에서 「경관중요해안」이라고 함)에 대한 해안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 해안법 제7조제2항 「미칠 우려가 있다」를 「미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경관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제8조제2항제5호다(4)의 허가기준(전항의 허가와 관련 있는 것에 한정함)에 적합하지 않다」로 해안법 제8조제2항 「제7조제2항」을 「경관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체하는 제7조제2항」으로, 「준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8조 제2항 「제1항의 허가와 관련 있는 것」을 「제8조제1항의 허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대체한다」로 한다.

2. 경관계획에 제8조제2항제5호다(4)의 허가기준(해안법 제37조의4 또는 제37조의5의 허가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이 정해져 있는 경관중요해안의 일반공공해안구역(동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반공공해안구역을 말함)에서 해안법동 제37조의4 또는제37조5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해당 경관중요해안의 해안 관리자(동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안 관리자를 말함)는 해당 행위가 해당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동호다(4)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항만법의 특례)

제 5 3 조 경관계획에 제8조제2항제5호다(5)의 허가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관중요공공시설인 항만법에 의한 항만에 대한 동법 제37조제2항의 규정 적용에서는 동

항 「또는 제3조의3제9항」을 「이나 제3조의3제9항」으로, 「주는 것이다」를 「주는 것 또는 경관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제8조제2항제5호다(5)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

(어항어장정비법의 특례)

제 54조 경관계획에 제8조제2항제5호다(6)의 허가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관중요 공공시설인 어항어장정비법에 의한 어항에 대한 동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서 제39조제2항 중 「또는 어항」을 「이나 어항」으로, 「준다」을 「주고 또는 경관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제8조제2항제5호다(6)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는」으로, 제39조제3항 중 「보전상」을 「보전상 또는 양호한 경관형성상」으로 한다.

제 5 절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제 55조 시정촌은 제8조제2항제5호라의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경관계획 구역 중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함)안에서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경관과 조화된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용지(동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지를 말함. 이하 같음) 및 농업용 시설 그 외의 시설의 정비를 일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정할 수 있다.

2.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구역
- 2) 전호의 구역 내에서 경관과 조화된 토지의 농업상의 이용에 관한 사항
- 3) 제1호의 구역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의정비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제2호, 제2호의 라 및 제4호에 제시된 사항

3.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은 경관계획 및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 적합함과 동시에, 농업진흥지역의정비에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이 규정하는 계획과 조화되고 한편 제2항제1호의 구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구역에서 종합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농업진흥지역의정비에법률 제8조제4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9항 후단 및 제12항을 제외함),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 11조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중농업용지 이용 계획과 관련 있는 농업용지 구역내」를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경관법 제 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말함. 이하 같음)과 관련 있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구역내」라고, 「해당 농업용지 이용 계획」을 「해당경관 업진흥지역정비계획」으로, 「동항」을 「제1항」으로, 동조 제10항 중 「농업용지구역」을 「경관법 제 55조제2항제1호의 구역」으로, 동조 제11항 중 「농업용지등으로서의 이용에 제공한다」를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 따라 이용한다」라고, 동법 제 13조제1항 전단 중 「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을 「경관법 제8조제1항의 경관계획 혹은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으로, 「변경이나,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조사의 결과에 의해」를 「변경에 의해」로, 「생겼을 때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생겼을 때는」으로, 동조 제4항 중 「제8조 제4항 및 제11조(제12항을 제외하다.)」를 「제8조 제4항 전단 및 제11조(제9항 후단 및 제12항을 제외하다.)」라고 대체한다.

(토지이용에 대한 권고)

제 56조 시정촌장은 제55조제2항제1호의 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내용대로 이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달성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근거해 사용 및 수익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대로 이용해야 할 취지를 권고할 수 있다.

2. 시정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했을 경우에 권고를 받은 사람이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또는 따를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권고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시정촌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관계되어 협의하여야만 하는 취지를 권고할 수 있다.

(농지법의 특례)

제 57조 제56조제2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경관정비기구가 지정되었을 때, 농업위원회(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1951년 법률 제8십8호)제3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해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시정촌에 있어서는 시정촌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56조제2항의 권고와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권고를 받은 사람이 권고와 관련 있는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농지법(1952년 법률 제229호)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 경관정비 기구를 위해서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는 농지법 제3조제2항(제2호의 2,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 있는 부분에 한정함)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조 제1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2. 제56조제2항의 권고와 관련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 경관정비기구를 위해서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제56조제2항의 권고와 관련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해 경관정비기구를 위해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9조 및 제210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농업진흥지역정비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 58조 도도부현 지사는 농업진흥지역정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의 허가하려고 하는 경우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와 관련 있는 토지가 제55조제2항제1호의 구역 내에 있을 때 해당 개발행위가 동법 제15조의2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해당 개발행위와 관련 있는 토지를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2. 전항의 허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정비에 관한 법률 제15조2제5항의 규정 적용에서 동항 중 「농업상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를 「농업상의이용 또는 경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대로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로 한다.

(시정촌삼림정비계획 변경)

제 59조 시정촌은 삼림법(1951년 법률 제249호)제10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도 구역 내에 있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지역삼림계획의 대상인 삼림에 대해 경관계획에 입각해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된 시정촌 삼림정비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은 삼림법 제1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절 자연공원법 의 특례

제60조 제8조제2항 제5호마의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경관계획 구역 내에 있어서의 자연공원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및 제24조 제4항의 규정 적용에서 이러한 규정 중 「환경성령이 정하는 기준」을 「환경성령이 정하는 기준 및 경관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동조 제2항제5호마의 허가기준」이라고 한다.

제3장 경관 지구

제1절 경관 지구

제1관 경관 지구에 관한 도시계획

제61조 시정촌은 도시계획구역 또는 준도시계획구역 내의 시가지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경관지구를 정할 수 있다.

2. 경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에는 도시계획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제1호로 제시된 사항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 제시된 사항 중 필요한 것을 정한다. 이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경관계획 구역 내의 해당 도시계획은 해당 경관계획에 의한 양호한 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

- 1) 건축물의 형태의장 제한
- 2)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3) 벽면의 위치의 제한
- 4)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저한도

제2관 건축물의 형태의장의 제한

(건축물 형태의장 제한)

제62조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형태의장은 도시계획에 정해져 있는 건축물의 형태의장의 제한으로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정령이 정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 일부분의 형태의장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계획의 인정)

제63조 경관지구 내에 있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에 계획이전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신청서를 제출해 시정촌장의 인정을 받지 않는다. 해당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계획을 변경해 건축 등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

2. 시정촌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 관련 있는 건축물의 계획이 전조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심사의 결과에 근거해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됐을 때는, 해당 신청자에게 인정증을 교부해야 한다.
3. 시정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 신청과 관련 있는 건축물의 계획이 전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했을 때, 또는 해당 신청서의 기재만으로는 해당 규정에 적합한지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동항의 기간 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4. 제2항의 인정증을 교부 받지 않으면 동항의 건축물 건축 등의 공사(터파기공사, 그 외의 정령이 정하는 공사를 제외함. 제101조제3호에 대해서도 같음)를 할 수 없다.
5. 제1항의 신청서 제2항의 인정증 및 제3항의 통지서 양식은 국토교통성령이 정한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64조 시정촌장은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 등 공사주(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청부인(청부공사의 하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서 같음)이나 현장관리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건축물과 관련 있는 공사의 시공 정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한을 정해 해당 건축물의 개축, 수선, 형태, 색채 변경 그 외 해당 규정의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

2. 시정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 표지 설치, 그 외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3. 전항의 표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과 관련 있는 건축물 또는 그 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 있는 건축물 또는 그 대지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표지설치를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하고, 과실이 없어 그 조치를 명령받아야 할 사람을 확정할 수 없거나 위반을 방치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촌장은 조치를 스스로 실시하거나 명한 사람 혹은 위임한 사람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고, 조치를 행해야 하는 취지 및 기한까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때는, 시정촌장 또는 그 명한 사람 혹은 위임한 사람이 그 조치를 실시해야 할 취지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5. 전항의 조치를 행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해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제시해야 한다.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조치)

제65조 시정촌장은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과 관련 있는 건축물설계자, 공사감리자(건축사법(1950년 법률 제202호)제2조제7항에 규정하는 공사감리를 하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나 공사의 청부인 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택지건물거래업(택지건물거래업법(1952년 법률 제176호)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택지건물거래업을 말한다. 이하 같음)과 관련 있는 거래를 한 택지건물거래업자(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택지건물거래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그 외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축사법, 건설업법(1949년 법률 제100호) 또는 택지건물거래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러한 사람을 감독하는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통지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건축사법, 건설업법 또는 택지건물거래업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결과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행한 시정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건축물에 대한 인정 등에 관한 절차특례)

제66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63조로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항부터 제5항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이하 이 조에 대해 「정부기관 등」이라고 함)인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기관 등은 해당 공사착수 전에 계획을 시정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시정촌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와 관련 있는 건축물계획이 제62조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심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했을 때에는 해당 통지를 한 정부기관 등에 대해서 인정증을 교부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됐을 때나 해당 규정에 적합할지를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해당 통지를 한 정부기관 등에 교부해야 한다.

4. 제2항의 통지와 관련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터파기공사, 그 외의 정령이 정하는 공사를 제외함)는 전항의 인정증의 교부를 받은 다음이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다.

5. 시정촌장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건축물이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내용을 해당 건축물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등에 통지하여, 제64조제1항이 규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조례와의 관계)

제67조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규정은 시정촌이 이러한 규정에 의한 인정 심사의 절차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조례로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인정 표시)

제68조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시공자는 해당 공사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에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등 공사주, 설계자(책임일 갖고 설계도서를 작성한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공사시공자(건축물에 관한 공사청부인 또는 청부계약에 의하지않고 스스로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공사의 현장관리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해당 공사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 제63조제2항 또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 표시를 해야 한다.

2.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의 시공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제63조제2항 또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계획의 사본을 해당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 두어야 한다.

(적용의 제외)

제69조 제62조로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은 다음의 건축물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관중요건조물로서 지정된 건축물

-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국보, 중요문화재,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서 지정되어 또는 가지정된 건축물
 - 3) 문화재보호법 제143조제1항의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
 - 4) 제2호에 제시된 건축물이지만 원형을 재현하는 건축물로 시정촌장이 원형재현이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한 건축물
 - 5) 앞의 각 호로 제시된 것의 외에, 양호한 경관형성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적은 건축물로서 시정촌의 조례로 정하는 것
2. 경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이 정해졌거나 또는 변경되었을 때 현존하는 건축물이나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이 제6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2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부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경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변경전에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 부분
 - 2) 경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이 정해진 후에 증축, 개축 또는 이전의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 3) 경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이 정해진 후에 외관을 변경하거나 수선 혹은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

(형태의장 제한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70조 시정촌장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62조로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형태의장이 경관지구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현저하게 지장이 미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의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해 해당 건축물의 개축, 형태, 색채의 변경 그 밖의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건축물의 형태의장 제한으로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정촌은 해당 명령에 따른 조치에 의해서 통상 발행하는 손해를 시가에 의해서 보상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상금액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 수용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및 입회검사)

제71조 시정촌장은 이 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데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혹은 점유자, 건축 등 공사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혹은 공사 시공자에게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의 계획 또는 시공의
상황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직원에게, 건축물 대지 혹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건축물, 건축재료 그 외 건축물에 관한 공사에 관계가 있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
대해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감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과 해석
해서는 안된다.

제3관 공작물 형태의장의 제한

(공작물 형태의장의 제한)

제72조 시정촌은 경관지구 내의 공작물에 대해 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
로 형태의장 제한, 높이 최고한도 혹은 최저한도 또는 벽면후퇴구역(해당 경관지
구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해 벽면의 위치의 제한이 정해졌을 경우에 해당 제한으
로서 정해져 있는 한도의 선과 대지 경계선 사이의 토지의 구역을 말함. 제4항에
대해 같음)에 있어서의 공작물(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이외의 것을 포함. 동항에
대해 같음) 설치제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계획구역 내에 조례는 해당 경
관계획에 의한 양호한 경관형성에 지장이 없게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 전단의 규정다른 조례(이하 「경관지구공작물제한조례」라고 함)로 공작
물의 형태의장 제한을 정한 경우에는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및 제71조의
규정의 예에 같이 해당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정촌장에 계획 인정, 위반 공작물
에 대한 위반 시정을 위한 조치, 그 밖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은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규정의 예와 같이 경관지구 공
작물제한조례로 규정한 시정촌장의 인정심사 절차가 이러한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해당 조례로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4. 공작물 높이의 최고한도 혹은 최저한도 또는 벽면후퇴구역에서 공작물의 설
치의 제한을 정한 경관지구공작물제한조례에서는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의 예
와 같이 해당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위반공작물에 대한 위반시정을 위한 조치 그
밖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5. 경관지구공작물제한조례에서는 시정촌장은 해당 조례 규정에 의해 제64조 제1항의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했을 때는, 해당 처분과 관련 있는 공작물의 공사청부인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그 밖에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부인을 감독하는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통지해야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6.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경관지구공작물제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통지와 관련 있는 청부인에게 건설업법에 따르는 업무정지 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결과를 해당 통지를 한 시정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발 행위등의 제한)

제73조 시정촌은 경관지구 내에 있고 도시계획법 제4조제12항에 규정하는 개발행위(다음 절에서 「개발 행위」라고 함) 그 밖에 정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해 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2. 도시계획법 제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 준용한다.

제2절 준경관 지구

(준경관지구 지정)

제74조 시정촌은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계획구역외의 경관계획 구역 중 상당수의 건축물 건축이 행해져 실제로 양호한 경관이 형성되고 있는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정촌은 준경관지구를 지정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취지를 공고하고 해당 준경관지구의 구역 안을, 해당 준경관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서, 해당 공고일로부터 2주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동항의 열람 기간 만료의 날까지 열람에 제시된 준경관지구구역 안에 대한 의견서를 시정촌에 제출할 수 있다.

4. 시정촌은 제1항 규정에 의해 준경관지구를 지정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항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준경관지구의 지정은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에 의해 행한다.

6. 앞의 각 항의 규정은 준경관지구의 변경에 준용한다.

(준경관 지구내서의 행위규제)

제75조 시정촌은 준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 경관지구 내에 있어서의 규제에 준하고 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양호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법 제68조9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제외함)를 할 수 있다.

2. 시정촌은 준경관지구 내에서의 개발행위 그 밖의 정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양호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3. 도시계획법 제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의한 처분에 대한 불복에 준용한다.

제3절 지구 계획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등의 형태의장의 제한

제76조 시정촌은 지구계획 등의 구역(지구정비계획, 특정건축물지구정비계획, 방재지구정비지구정비계획, 역사적풍치유지향상지구정비계획, 길가지구정비계획 또는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대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이 조에 대해 「건축물등」이라고 함)의 형태의장의 제한이 정해져 있는 구역에 한정함) 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형태의장에 대해 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 해당 지구 계획 등에 대해 정해져 있는 건축물 등의 형태의장의 제한으로 적합하게끔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은 건축물 등의 이용상 필요성, 해당 구역 내의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지구계획 등의 구역 특성에 어울리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라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규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이하 「지구계획 등 형태의장 조례」라고 함)에는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및 제71조의 규정의 예와 같이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정촌장에 의한 계획 인가, 위반 건축물 또는 위반 공작물에 대한 위반 시정을 위한 조치, 그 밖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은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규정의 예와 같이 지구계획 등

형태의장 조례에서 규정한 시정촌장의 인정심사의 절차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해당 조례로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5. 지구계획 등 형태의장 조례에는, 시정촌장은 해당 조례의 규정에 의해 제6 7조 제1항의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했을 때는, 해당 처분이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해당 처분과 관계있는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 감리자 혹은 공사의 청구인 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택지건물거래업과 관련 있는 거래를 한 택지건물거래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그 외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축사법, 건설업법 또는 택지건물거래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사람을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해당 처분이 공작물의 건설등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과 관련 있는 공작물의 공사청부인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그 외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구인을 감독하는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각각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정할 수 있다.

6.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계획등형태의장 조례의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통지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건축사법, 건설업법 또는 택지건물거래업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결과를 해당 통지를 한 시정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절 잡칙

(가설건축물 또는 가 공작물에 대한 제한완화)

제77조 비상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인접하는 구역에서 시정촌장이 지정한 구역 안에서는 재해에 의해 파손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응급수리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 등 혹은 응급 가설 공작물의 건설 등 또는 설치를 위해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일본적십자사가 재해 구조를 위해서 건축 등 또는 건설 등 또는 설치를 하는 것

2) 이재민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 등을 하는 건축물에서 그 연면적이 정령이 정하는 규모 이내의 것

2. 재해가 있을 경우 건축 등 또는 건설 등 혹은 설치를 하는 정거장, 관공서 그 외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용도에 제공하는 응급가설건축물 혹은 응급가설공작물 또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현장에 마련하는 사무소, 가설작업실, 재료 적치장,

그 외 유사한 가설건축물 혹은 가설공작물에 대해서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제2항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 등 또는 응급가설공작물의 건설 등 혹은 설치를 한 사람은 공사를 완료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이 장의 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기 전에 시정촌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해당 허가신청을 하였지만 3개월을 초과하기 전까지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을 때는 해당 처분이 될 때까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존속할 수 있다.
4. 시정촌장은 전항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양호한 경관형성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다.
5. 시정촌장은 제3항의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국토교통성장관 및 도도부현 지사의 권고, 조언 또는 지원)

제78조 시정촌장은 도도부현 지사 또는 국토교통성장관에게 이 장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필요한 조언 또는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토교통성장관 및 도도부현 지사는 시정촌장에 대해 이 장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필요한 권고, 조언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정촌장에 대한 지시)

제79조 국토교통성장관은 시정촌장이 이 장의 규정이나 해당 규정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이러한 규정에 따른 처분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시정촌장에게 기한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2. 시정촌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전항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성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국토교통성장관은 시정촌장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소정의 기한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해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확인을 얻은 다음, 스스로 해당 지시와 관련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류 열람)

제80조 시정촌장은 제63조제1항의 인정, 그 외 이 장의 규정 및 해당 규정에 따

른 명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 서류 중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한다.

제4장 경관 협정

(경관 협정의 체결)

제81조 경관계획구역 내 일단의 토지(공공 시설의용으로 제공하는 토지, 그 외의 정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함)의 소유자 및 차지권을 가지는 사람(토지구획 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제98조제1항(대도시지역에있어서주택및주택지공급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1975년 법률 제67호. 이하 「대도시주택등공급법」이라고 함)제83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 대해 같음)의 규정에 의해 가환지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 및 차지권을 가지는 사람. 이하 이 장에 대해 「토지 소유자등」이라고 함)(은)는,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당 토지의 구역에 있어서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협정(이하 「경관 협정」이라고 함)(을)를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토지구획정리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환지로 지정된 토지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의 구역 내에 차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 차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경관 협정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경관 협정의 목적이 되는 토지구역(이하 「경관협정구역」이라고 함)
- 2)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다음 사항 중 필요한 것
 - 가. 건축물 형태의장에 관한 기준
 - 나. 건축물의 대지, 위치, 규모, 구조, 용도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기준
 - 다. 공작물의 위치, 규모, 구조, 용도 또는 형태의장에 관한 기준
 - 라. 수림지, 초원 등의 보전 또는 녹화에 관한 사항
 - 마. 옥외광고물의 표시 또는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는 물건의 설치에 관한 기준
 - 바. 농업용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 3) 경관 협정의 유효기간
- 4) 경관 협정에 위반할 경우의 조치

3. 경관 협정에서는 제2항 각 호로 제시된 것의 외에 경관계획구역 내의 토지

중 경관협정구역에 인접하고 경관협정구역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 양호한 경관형성에 이바지하는 토지로서 경관협정구역의 토지가 되는 것을 해당 경관협정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등이 희망하는 것(이하 「경관협정구역인접지」라고 함)을 정할 수 있다.

4. 경관협정은 경관행정단체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신청과 관련 있는 경관 협정 열람)

제82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 인가신청이 있을 때는 국토교통성령·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지를 공고하고 해당 경관협정을 해당 공고일로부터 2주 동안 관계인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은 동항의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경관협정에 대해서 경관행정단체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관협정 인가)

제83조 경관행정단체의 장은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해야 한다.

1) 신청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

2) 토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것.

3)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항(해당 경관협정에서 경관협정구역 인접지를 정하는 경우에 해당 경관협정구역 인접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이 국토교통성령·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2. 건축기준법 제4조제1항의 건축주사를 두지 않는 시정촌이 경관행정단체의일 경우 제82조제2항제2호나로 제시된 사항을 정한 경관협정에 대해서 전항의 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서 사본을 첨부해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경관행정단체장은 제1항의 인가를 했을 때는 국토교통성령·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지를 공고하는 한편 해당 경관협정의 사본을 해당 경관행정단체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경관협정구역의 취지를 해당 구역 내에 명시해야 한다.

(경관협정 변경)

제84조. 경관협정구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 등(해당 경관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함)은 경관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원의 합의를 거쳐 변경 취지를 정해서 경관행정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전 2조의 규정은 전항의 변경인가에서 준용한다.

(경관협정구역으로부터의 제외)

제85조. 경관협정구역 내의 토지(토지구획정리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환지로서 지정된 토지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로 해당 경관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차지권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 차지권의 목적이 되었던 토지(동항의 규정에 의해 가환지로서 지정된 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가환지로서 지정된 토지)는 해당 경관협정구역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2. 경관협정구역 내의 토지에서 토지구획정리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환지로서 지정된 토지가 동법 제86제1항의 환토계획 또는 대도시주택등공급법 제72조제1항의 환토계획에 대해 해당 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정해지지 않고 토지구획정리법 제91조제3항(대도시주택등공급법 제8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해 해당 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공유지분을 주도록 정해져 있는 토지라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해당 토지는 토지구획정리법 제103조제4항(대도시주택등공급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공고가 종료했을 때에 있어 해당 경관협정 구역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해 경관협정구역 내의 토지가 해당 경관협정구역으로부터 제외되었을 때에는 해당 차지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또는 해당 가환지로서 지정되어 있던 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와 관련 있는 토지 소유자 등(해당 경관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함)은 지체 없이 취지를 경관행정단체장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제8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을 경우, 그 외의 경관행정단체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관협정구역 내의 토지가 해당 경관협정구역으로부터 제외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준용한다.

(경관협정의 효력)

제86조. 제83제3항(제84조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인가공고가 행해진 경관협정은 공고가 있던 후에 해당 경관협정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등이 된 사람(해당 경관협정에 대해 제81조제1항 또는 제84조제1항의 규

정에 따른 합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소유했던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사람을 제외함)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경관협정의 인가공고후 배경관협정에 참가하는 절차)

제87조. 경관협정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토지구획정리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환지로서 지정된 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경관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소지 토유자는 제83조제3항(제84조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인가공고가 있는 후 언제라도 경관행정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경관협정에 참가할 수 있다.

2. 경관협정구역인접지의 구역 내 토지와 관련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제83조제3항(제8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인가공고가 있는 후 언제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의 전원합의에 의해 경관행정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으로 경관협정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토지구획정리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환지로서 지정된 토지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의 구역 내에 차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 차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경관협정구역 인접지의 구역 내의 토지와 관련 있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 전항의 의사 표시한 토지의 구역은 의사의 표시가 있는 후 경관협정구역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한다.

4. 제8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에 준용한다.

5. 경관협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경관협정에 참가한 사람이 참여할 당시 소유하거나 차지권을 가지고 있던 해당 경관협정구역내의 토지(토지구획정리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환지로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 전항에 있어 준용하는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던 후에 토지 소유자 등이 된 사람(해당 경관협정에 대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지는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사람 및 제86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을 제외함)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경관협정의 폐지)

제88조. 경관협정구역내의 토지 소유자 등(해당 경관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함)이 제81조 제4항 또는 제84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경관협정을 폐

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합의를 거쳐 그 취지를 정해 경관행정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경관행정단체장은 제1항의 인가를 했을 때는, 인가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토지 공유자등 취급)

제89조. 토지 또는 차지권이 몇 사람의 공유하고 있을 때에는 제81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88조제1항의 규정 적용에서 합쳐서 1인 소유자 또는 차지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1인 소유자에 의한 경관 협정의 설정)

제90조. 경관계획구역내의 일단의 토지(제81조제1항의 정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함)로 1인 소유자 이외에 토지 소유자 등이 없을 경우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경관행정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구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2. 경관행정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 인가신청이 제8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한편해당 경관협정이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경관 협정을 인가하는 것으로 한다.

3. 제8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대해서 준용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인가를 받은 경관협정은 인가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해 해당 경관협정구역내의 토지에 둘이상의 토지 소유자 등이 되었을 때부터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공고가 있는 경관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경협정이 된다.

(차주등의 지위)

제91조. 경관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차주의 권한과 관련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차주를 토지 소유자등으로 간주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경관협정에 농업용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경관협정에 대해서는, 해당농업용지에 대해 지상권, 영구소작권, 질권, 임차권,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그 외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토지 소유자 등으로 간주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장 경관 정비 기구

(지정)

제92조 경관행정단체장은 일반 사단법인 혹은 일반 재단법인 또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제2항의 특정비영리활동 법인이며, 다음 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신청에 의해 경관정비기구(이하 「기구」라고 함)로서 지정할 수 있다.

2. 경관행정단체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했을 때는, 해당 기구의 명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해야 한다.
3. 기구는 그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변경 취지를 경관행정단체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경관행정단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해당 신고와 관련 있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기구의 업무)

제93조 기구는 다음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의 파견, 정보의 제공, 상담 그 외의 지원하는 것.
- 2) 관리협정에 근거해 경관중요건조물 또는 경관중요수목의 관리하는 것.
- 3) 경관중요건조물과 일체가 되어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는 광장, 그 외의 공공 시설에 관한 사업 혹은 경관계획에 정해져 있는 경관중요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 또는 이러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
- 4) 전호의 사업에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정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 관리 및 양도를 하는 것.
- 5) 제 55조제2항제1호의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 따라서 이용하기 위해 위탁에 의해 농사일을 행하거나,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 그 토지의 관리하는 것.
- 6)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것.
- 7) 앞의 각 호로 제시된 것의 외에, 양호한 경관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94조 공유지의 확대추진에 관한 법률(1972년 법률 제66호)제4조제1항의 규정은 기구에 제93조제4호의 업무를 위해 동항이 규정하는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감 독)

제95조 경관행정단체장은 제93조 각 호에 제시된 업무의 적정 한편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기구에 대해, 그 업무에 관계되어 보고를 시킬 수 있다.

2. 경관행정단체장은 기구가 제93조 각 호로 제시된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기구에 대해 업무의 운영의 개선에 관계되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경관행정단체장은 기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경관행정단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취소했을 때는 최소의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정보의 제공)

제96조 정부 및 관계 지방공공단체는 기구에게 업무실시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지도나 조언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장 잡칙

(권한의 위임)

제97조 이 법률에 규정하는 국토교통성장관의 권한은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지방정비국장 또는 홋카이도개발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정령으로의 위임)

제98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의 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이 정한다.

(경과 조치)

제99조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명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폐할 경우에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하여 합리적으로 필요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처를 포함함)를 정할 수 있다.

제 7 장 벌칙

제100조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행정단체장의 명령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촌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행정단체장의 명령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촌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 2)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3) 제6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를 한 사람
- 4)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가설건축물 또는 응급가설공작물을 존속시킨 사람

제102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람
- 2) 제17조제7항 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사람
- 3)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나 현장조사 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를 거절하거나 지장을 주거나 기피 한 사람
- 4)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와 관련되는 행위에 착수한 사람
- 5) 제20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6) 제22조제3항(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첨부된 조건을 위반한 사람
- 7) 제23조제1항(제3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경관행정단체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 8) 제68조의 규정을 위반해 인정취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인정을 받은 계획 사본을 준비해 두지 않은 사람

제10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업무완 관련하여 제101조, 제102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법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각 조의 벌금형을 처한다.

제104조 제26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관행정단체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5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사람은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6조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5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7조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5조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6월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고 정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의 규정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고 일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정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혜세이 주사위의 1과6년 5월 2월과 8월일 법률 제61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5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6월 10일 법률 제 5 삼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정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관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제16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경관법 제 55조제4항에 대해 준용하는 구농진법 제11조제1항(구농진법 제13조제4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된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수립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89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정령이 정하는 날(이하 「시행일」 이라고 함)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방향 및 부칙 제2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령에 위임)

제27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의 외의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이 정한다.

부칙 (2005년 10월21일 법률 제102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우정 민영화법의 시행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07조 이 법률의 시행 앞에 둔 행위,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해 더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 후로 한 행위, 이 법률의 시행 후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우편환법제38조의 8(제2호 및 제3호와 관련 있는 부분에 한정함)의 규정의 실효 앞에 둔 행위, 이 법률의 시행 후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더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우편대체법제70조(제2호 및 제3호와 관련 있는 부분에 한정함)의 규정의 실효 앞에 둔 행위, 이 법률의 시행 후 부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더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우편대체예탁금기부위탁법제8조(제2호와 관련 있는 부분에 한정함)의 규정의 실효 앞에 둔 행위, 이 법률의 시행 후 부칙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더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공사법 제70조(제2호와 관련 있는 부분에 한정함)의 규정의 실효 앞에 둔 행위, 이 법률의 시행 후 부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더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공사법 제71조 및 제72조(제15호와 관련 있는 부분에 한정함)의 규정의 실효 앞에 둔 행위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우정 민영화법 제104조에 규정하는 우체국 예금 은행과 관련 있는 특정 허쿠마로 한 행위에 대한 별칙의 적용에서, 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6년 6월 이틀 법률 제50호) 초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일반 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정 규정)

2. 범죄의 국제화 및 조직화 및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6년 법률 제호)의 시행의 날이 시행일 후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부터 동법의 시행의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36호.다음 방향에 대해 「조직적 범죄 처벌법」이라고 함) 별표 제62호의 규정의 적용에서, 동호 중 「중간 법인법(2001년 법률 제49호) 제157조(이사등의 특별 배임)의 죄」라고 있는 것은,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 제334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죄」라고 한다.

3. 전항에 규정하는 것의 외의 동항의 경우에 대하여, 범죄의 국제화 및 조직화 및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의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조직적 범죄 처벌법의 규정의 적용에서, 제457조의 규정에 의해 더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중간 법인법 제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죄는, 조직적 범죄 처벌법별표 제62호로 제시된 죄로 간주한다.

부칙 (2006년 이월20일 법률 제14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정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년 5월 2,3일 법률 제40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고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정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혜세이21년 6월3일 법률 제47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고 일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정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고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정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로 제시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1) 부칙 제 43조의 규정 공포의 날

(정령에의 위임)

제43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의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계되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이 정한다.

경관법 시행령

(평성 16년 12월 15일 정령 제 398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12월 3일 정령 제 364호

내각은 경관법(평성 16년 법률 제110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5호 ④와 ⑤, 제3항 및 제8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7항 제1호, 제10호와 제11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단, 제24조제3항(동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단, 제81조제1항 및 제93조제4호 및 동법 제5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제13조제1항 전단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제1조

경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제4항 정령이 정하는 공중에 제공되는 시설은 하수도, 녹지, 운하와 수로 및 방수 또는 방사 시설로 한다.

(특정 공공시설)

제2조

법 제8조제2항 제5호로 정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에 따른 토지 개량 사업에 관한 토지 개량 시설
- 2) 하수도법(쇼와 33년 법률 제79호)에 의한 하수도
- 3) 삼림법(쇼와 26년 법률 제 249호)에 의한 보안 시설 사업에 관한 시설
- 4) 도시 녹지법(쇼와 48년 법률 제72호)에 의한 시민 녹지 계약에 관한 시민 녹지
- 5)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방법 (평성 15년 법률 제77호)에 의한 빗물 저류 침투 시설 (국가 혹은 지방 공공단체 또는 동법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하천 관리자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
- 6) 사방법(메이지 30년 법률 제29호)에 의한 사방 시설
- 7) 산사태 등 방지법(쇼와 33년 법률 제30호)에 의한 산사태 방지 시설 및 보타

- 산¹⁸⁾ 붕괴 방지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
- 8) 가파른 경사지 붕괴에 의한 재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7호)의 가파른 경사지 붕괴 방지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9) 코우쿄가이엔¹⁹⁾, 교토교엔²⁰⁾과 신쥬쿠교엔²¹⁾

(자연 공원법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으로 경관 계획에서 결정하는 것)

제3조

법 제8조제2항 제5호 ⑤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자연 공원법(쇼와 32년 법률 제161호) 제13조제3항 제1호, 제6호 및 제12호(동법 제24조제3항의 허가는 동법 제13조제3항 제1호와 제6호)에 규정된 행위로 한다.

(경관 계획에서 조례로 신고를 요하는 활동을 결정하는 경우의 기준)

제4조

법 제8조제3항 제1호 신고를 요하는 행위에 관한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경관 계획 지역의 양호한 경관 형성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토지 개간, 토석의 채취, 광물의 발굴과 벌채,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 2) 나무 식재 또는 벌목
- 3) 산호 채집
- 4) 야외에 토석, 폐기물(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쇼와 45년 법률 제137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재생 자원(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3년 법률 제48호)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생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물건의 퇴적
- 5)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 6) 야간에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건물축, 기타 공작물이나 물건(야외에 있는 것에 한한다)의 외관에 대해 실시하는 조명(이하 "특정 조명"이라고 한다)
- 7) 히이레²²⁾

18) 석탄과 갈탄의 채굴에 따라 발생하는 사석의 집적장

19) 도쿄도 치요다구의 황궁에 인접한 환경성 관할의 시민공원

20) 교토시 가미교구에 있는 시민공원

21) 신쥬쿠에 자리잡고 있는 시민공원

22) 청주 등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열을 가하는 것

(경관 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 등의 제한을 결정하는 경우의 기준)

제5조

법 제8조제3항 제2호 제한에 관한 동항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물의 건축 등(법 제16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 등(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에 의한 것
 - 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형태 제한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일체로 지역의 개성과 특색의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도록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제한 사항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
 - ②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혹은 최저한도 또는 벽면의 위치 제한이나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위치 및 규모가 일체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되도록 결정하는 것
- 2)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개발 행위(이하 단지 "개발 행위"라고 한다)의 제한은 개발 행위 후 지역의 경관과 크게 부조화되지 않도록 절토 혹은 성토에 의해 발생하는 법의 높이 최고 한도, 개발 지역 내에서 계획되는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 또는 삼림의 보전이나 적절한 식재가 행해지는 토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 3) 법 제16조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행위의 제한은 해당 행위 이후의 상황이 지역의 경관과 크게 부조화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활동 방법이나 형태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경관 계획을 준수해야하는 공공시설의 정비 또는 관리에 대한 방침 또는 계획)

제6조

법 8조 제8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정비 또는 관리 방침 또는 계획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쇼와 31년 법률 제7호) 제3조제1항 허가에 관한 신설 혹은 개축에 관한 공사의 내용, 동법 제10조제1항 혹은 제18조제1항의 허가에 관련된 공사 구간 및 공사 방법이나 동법 제12조제1항 허가에 관한 공사의 실시 계획
- 2) 공동 도랑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38년 법률 제81호) 제6조제1항의 공동 도랑 정비 계획

- 3) 교통안전 시설 등 정비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쇼와 41년 법률 제45호) 제4조제1항 특정 교통안전 시설 등 정비 사업의 실시 계획
- 4) 전선 공동 도랑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평성 7년 법률 제39호) 제5조제2항의 전선 공동 도랑 정비 계획
- 5) 하천법(쇼와 39년 법률 제 167호) 제16조2 제1항 하천 정비 계획
- 6) 해안법(쇼와 31년 법률 제101호) 제2조3 제1항의 해안 보전 기본 계획 또는 동법 제13조제2항 협의에 대한 해안 보전 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 및 구현 계획
- 7) 항만법(쇼와 25년 법률 제 218호) 제3조3 제1항의 항구 계획
- 8) 국제 항해 선박 및 국제 항만 시설 보안 확보 등에 관한 법률(평성 16년 법률 제31호)제32조제1항 부두 보안 규정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 부두 보안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
- 9) 어항 어장 정비법(쇼와 25년 법률 제137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혹은 제19조3 제1항의 특정 어항 어장 정비 사업 계획 또는 동법 제 26조의 어항 관리 규정
- 10) 자연 공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공원 계획
- 11) 토지 개량법 제7조제1항 혹은 제95조제1항의 인가 혹은 동법 제96조2 제 1항 동의에 관한 토지 개량 사업 계획 또는 동법 제87조제1항 혹은 제87조2 제1항 토지 개량 사업 계획
- 12) 하수도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5조3 제1항 허용에 관한 사업 계획
- 13) 산림법 제5조제1항 지역 산림 계획 또는 동법 제7조2 제1항의 산림 계획
- 14) 도시 녹지법 제4조제1항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
- 15)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방지법 제4조제1항의 유역 수해 방지 계획
- 16) 산사태 등 방지법 제 9조의 산사태 방지 공사에 관한 기본 계획 또는 동법 제11조제2항의 협의에 관한 사태 방지 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실시 계획

(경관 계획의 제안에 관한 토지의 구역의 규모)

제7조

법 제11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규모는 0.5헥타르로 한다. 단, 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구역에서 행해지는 양호한 경관 형성의 촉진을 위한 주민의 활동과 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기타 양호한 경관

형성의 촉진을 위한 활동을 행하는 자의 활동 현황 및 향후 전망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관 행정 단체는 조례로 구역을 한해, 0.1헥타르 이상 0.5헥타르 미만의 범위 내에서 그 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관 계획 구역 내의 일반적인 관리 활동, 경미한 행위, 기타 행위)
제8조

법 제16조제7항 제1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 1) 지하에 마련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또는 공작물의 건설 등
- 2) 가설 공작물 공사 등
- 3) 다음에 열거하는 삼림의 벌채
 - ① 간벌, 다른 삼림의 보육을 위해 통상 행해지는 삼림의 벌채
 - ② 죽은 삼림 또는 위험한 삼림의 벌채
 - ③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삼림의 벌채
 - ④ 잘못 자란 삼림의 벌채
 - ⑤ 측량, 실지 조사 또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삼림의 벌채
- 4) 전 세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
 - ①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행위
 - ② 건축물이 있는 부지 내에서 실시하는 행위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 건축물의 건축 등
 - (2) 공작물(해당 부지에 있는 건축물에 부착된 것, 그 외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건설 등
 - (3) 삼림의 벌채
 - (4) 야외에서 토석, 폐기물, 재생 자원, 기타 물건의 퇴적(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높이의 것을 제외)
 - (5) 특정 조명
 - ③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행위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 건축물의 건축 등
 - (2) 높이가 15미터 이상 저수조, 사료 저장 탱크 및 이와 유사한 공작물 공사 등
 - (3) 배수 시설(폭이 2미터 이하의 배수로를 제외한다) 또는 폭이 2미터를 넘는 농도 혹은 임도²³⁾의 설치

- (4) 토지의 개간
- (5) 삼림의 벌채
- (6)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신고를 요하지 않는 지구 계획 등의 지역 내에서 하는 행위)

제9조

법 제16조제7항 제10호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법 8조 제3항 제2호 제한에서 경관 계획에 결정된 것의 전부가 법 제16조제7항 제10호의 지구 정비 계획, 특정 건축물 지구 정비 계획, 방재 도시 구획 정비 지구 정비 계획, 역사적 풍치 유지 개선 지구 정비 계획, 도로 지구 정비 계획 또는 취락 지구 정비 계획에서 정한 경우에 동호의 지역 계획 등의 지역 내에서 행하는 토지 구획 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이나 증축, 공작물의 신설, 개축이나 증축 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형태의 변경으로 한다.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10조

법 제16조제7항 제11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 1) 경관 계획에서 정해진 개발 행위 또는 제21조각호에 규정된 행위의 제한의 모든 것에 대해서 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조례로 제22조제3호 ① 또는 ④(제 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것들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를 행하는 행위
- 2) 경관 계획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 등 또는 공작물의 건설 등의 제한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법 제75조제1항 규정에 근거한 조례 제23조제1항 제1호 제한이 정해져있는 경우 연합 경관 지구 내에서 실시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또는 공작물의 건설 등
- 3) 문화재 보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4호) 제43조제1항 혹은 제 125조 제1항의 허가 혹은 동법 제81조제1항 신고에 관한 행위, 동법 제 167조 제1항의 통지에 관한 동항 제6호 활동 혹은 동법 제 168조 제1항 동의에 관한 동항 제1호의 활동 또는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쇼와 50년 정령 제 267호) 제4조제2항의 허가 혹은 동조 제5항의 협의에 관한 활동

23) 숲길

- 4) 옥외 광고물법(쇼와 24년 법률 제 189호) 제4조또는 제5조규정에 따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옥외 광고물의 표시 또는 옥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주택의 설치

(변경 명령 등에 있어서 그 이행에 지장이 없는 형태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

제11조

법 제17조제3항 정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률의 규정과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또는 이들 부분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한다.

- 1) 궤도법(대정 10년 법률 제76호) 제14조
- 2) 소방법(쇼와 23년 법률 제 186호) 제10조제4항과 제17조제1항
- 3) 화약류 단속법(쇼와 25년 법률 제 149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
- 4) 도로 교통법(쇼와 26년 법률 제 183호) 제 68조제5항(동법 제7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고압 가스 보안법(쇼와 26년 법률 제 204호) 제46조제1항
- 6) 항공법(쇼와 27년 법률 제 231호) 제39조제1항 제1호, 제51조제1항, 제2항(동법 제55조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 및 제51조2 제1항 및 제2항
- 7) 유선 전기 통신법(쇼와 28년 법률 제96호) 제 5조(동법 제 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8) 액화 석유 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쇼와 42년 법률 제 149호) 제7조제1항, 제16조2 제1항 및 제37조

(활동 착수 제한의 예외가 되는 공사)

제12조

법 제18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4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뿌리 자르는 공사, 토사의 붕괴를 막는 설비 공사, 케이슨 공사²⁴⁾, 기타 기초 공사로 한다.

24) 케이슨 공법을 사용한 공사이다. 케이슨 공법은 잠함(潛函)공법으로, 빌딩·교량·지하철 등의 공사에서, 잠함 [케이슨을 가라앉히면서 파내려가는 방법을 말한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관 중요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활동, 경미한 행위, 기타 행위)

제13조

법 제22조제1항 단,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 1) 지하에 마련된 건축물의 증축, 개축, 이전 또는 제거
- 2) 법 제25조제1항 조례에서 정한 관리 방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
- 3) 관리 협정에 근거한 활동
- 4) 전 세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행위

(경관 중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수용위원회 재결의 신청 절차)

제14조

법 제24조제3항(법 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권법(쇼와 26년 법률 제 219호) 제9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성령(도시 계획 구역 외의 경관 중요 수목 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성령, 농림수산성시행령)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동조 제3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재결 신청서를 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관 중요 수목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활동, 경미한 행위, 기타 행위)

제15조

법 제31조제1항 단,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 1) 다음에 열거하는 수목의 벌채
 - ① 가지치기, 정리, 그 외에 나무의 보육을 위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수목의 벌채
 - ② 위험 수목의 벌채
- 2) 법 제33조제2항 조례에서 정한 관리 방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
- 3) 관리 협정에 근거한 활동
- 4) 전 세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행위

(협의 등을 요하지 않는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변경 중 법 제5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해당 지역의 명칭 변경 또는 지번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 한다.

(경관 지구에 대한 도시 계획에서 정한 제한에 적합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

제17조

법 제62조단, 정령으로 지정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은 제11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 및 이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 건축물 또는 그 부분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한다.

(형태의 제한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의 절차)

제 18조

법 제7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권법 제9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수용위원회의 판결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결 신청서를 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 1) 재결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그 건축물의 소재지
 - 3) 그 건축물에 대한 재결 신청자가 가지는 소유권 외의 권리
 - 4) 그 건축물의 형태, 용도 및 구조의 개요
 - 5) 법 제7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명령의 내용
 - 6) 통지를 받은 보상 금액 및 그 통지를 받은 연월일
 - 7) 통지를 받은 보상 금액에 불복하는 이유 및 재결 신청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과 그 내역
 - 8)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재결 신청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항의 재결 신청서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도면에 국토교통성령으로 결정된 것을 첨부해야한다.

(보고 및 출입검사)

제19조

시정촌 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나 점유자, 건축 등 공사주, 설계자, 공사 감독자 또는 공사 시공자에게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축 등에 관한 공사 중 지붕, 외벽, 문, 담, 기타 옥외에 접하는 부분에 관련된 계획이나 시공 조건에 관해보고를 시킬 수 있다.

2. 시정촌 장은 법 제7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건축물의 부지 또는 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그 건축물의 지붕, 외벽, 문, 담장, 기타 옥외에 접하는 부분 및 이들에 사용하는 건축 재료와 설계, 도면,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시킬 수 있다.

(조례에서 경관 지구 내의 공작물 형태 등의 제한을 결정하는 경우의 기준)

제20조

법 제72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공작물 형태의 제한은 해당 경관 지구에 대한 도시 계획에서 정한 건축물의 형태 제한과 함께, 건축물과 공작물이 지역의 개성과 특색의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도록 결정하는 것
- 2) 공작물 높이의 최고 한도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높이가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정비 또는 보전하는 것이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 시가지가 연속하는 산의 능선, 기타 그 배경과 일체가 되어 구성되는 양호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기타 일정한 높이 이상의 공작물 건설 등을 금지하는 것이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결정하는 것
- 3) 공작물의 높이의 최저한도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높이가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정비 또는 보전하는 것이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 4) 벽면 후퇴 지역의 공작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의 설치 제한은 해당 벽면 후퇴 지역에서 개방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 5) 전 각호의 제한은 공작물의 이용 상의 필요성, 해당 경관 지구내의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대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

6) 경관 지구 공작물의 제한 조례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 제72조제1항의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을 결정하는 것

① 제11조각 호 및 다음에 열거하는 법률 규정 및 이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 공작물 또는 그 부분의 형태에 관한 것들을 기반으로 그 공작물 또는 그 부분의 형태에 대한 적용의 제외에 관한 규정

(1) 도로법(쇼와 27년 법률 제 180호) 제45조제2항

(2) 도로 교통법(쇼와 35년 법률 제105호) 제4조제4항과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 114조 7

② 법 제69조규정의 예에 의한 공작물에 대한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

③ 옥외 광고물법 제4조또는 제 5조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옥외 광고물의 표시 또는 옥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주택의 설치에 대한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

(조례로 경관 지구 또는 연합 경관 지구 내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행위)

제21조

법 제73조제1항과 제75조제2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 1) 토지 개간, 토석의 채취, 광물 발굴, 벌채,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개발 행위를 제외한다)
- 2) 수목 식재 또는 벌목
- 3) 야외에서의 토석, 폐기물, 재생 자원, 기타 물건의 퇴적
- 4)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 5) 특정 조명

(조례 경관 지구 내에서 개발 행위 등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의 기준)

제22조

법 제73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개발 행위 또는 전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지역의 특성, 해당 경관 지구의 토지 이용 상황 상으로 보아 해당 경관 지구의 양호한 경관의 형

- 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규제 하는 것
- 2) 전호의 행위(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시정촌 장의 허가를 받을 것. 이 경우,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정촌 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 3) 제1호의 행위에 대한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에 의한 것
- ①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개발 행위 후 지역의 경관과 크게 부조화 되지 않도록 법 제73조제1항 규정에 근거한 조례(이하 이 조에서 "경관 지구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례"라고 한다)에서 절토 혹은 성토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의 높이의 최고한도, 개발 지역 내에서 계획되는 건축물의 부지 면적 최저한도 또는 삼림의 보전이나 식재가 행해지는 토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
 - ② 전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 이후의 상황이 지역의 경관과 크게 부조화 되지 않도록 경관 지구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활동 방법이나 태양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것.
 - ③ 제2호의 행위에 대해 ① 또는 ②의 제한을 결정할 경우에 이들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결정된 경관 계획에 관한 경관 계획의 구역 내에서 경관 지구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례는 그 경관 계획에 의한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
- 4) 경관 지구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례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2호 및 전호 ① 또는 ②의 제한 적용의 제외에 관한 규정을 결정하는 것
- ①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행위
 - ② 비상재해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로써 하는 활동
 - ③ 법 제31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활동
 - ④ 경관 계획에 법 제8조제2항 제5호 ②에 규정된 사항(해당 경관 지구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전호 ① 또는 ②의 제한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인정되는 제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이 결정된 경관 중요 공공 시설 정비로 하는 행위
 - ⑤ 법 제8조 제2항 제5호 ③ (1)에서 (6)까지의 허가(경관 계획에 해당 경관 지구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전호 ① 또는 ②의 제한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인정되는 제한에 관한 사항이 그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활동

- ⑥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해당 경관 지구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① 또는 ②의 제한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인정되는 제한에 관한 사항이 그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구역 내의 농지 지역 내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5조2 제1항의 허가에 관한 활동
- ⑦ 도시 계획법 제29조제1항의 허가(동법 제33조제5항 규정에 근거한 조례에 해당 경관 지구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전호 ①의 제한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인정되는 제한이 그 기준으로 정해져있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활동
- ⑧ 문화재 보호법 제43조제1항 혹은 제 125조 제1항 허가에 관한 행위, 동법 제168조 제1항의 동의에 관한 동항 제1호의 행위 또는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허가 혹은 동조 제5항의 협의에 관한 행위

(조례에서 준 경관 지구 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의 기준)

제23조

법 제75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항에 명시된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이한다.

- 1) 법 제75조제1항 규정에 근거한 조례로 ①에 규정된 제한을 결정하는 외에 ②에서 ④까지 규정된 제한 중에 그 준 경관 지구의 양호한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것
 - ① 건축물 형태의 제한
 - ② 공작물 형태의 제한
 - ③ 공작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④ 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제68조9 제2항 규정에 근거한 조례에서 벽면 위치 제한이 결정된 경우 그 제한으로 정해진 한도선과 부지 경계선 사이의 토지 지역의 공작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제한
- 1) 법 제75조제1항 규정에 근거한 조례로 전호 ① 또는 ②에 규정된 제한을 규정에는 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법 제 63조, 제 64조, 제 66조, 제 68조, 제70조 및 제 71조의 규정의 예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 또는 공작물의 건설 등에 관하여 시정촌 장에 의한 계획의 승인, 위반 건축물이나 위반 공작물, 위반 시정을 위한 조치, 기타 조치 중 그 제한의 내용, 해당 준 경관 지구의 토지 이용 상황 등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

3) 법 제75조제1항 규정에 근거한 조례 제1호 ③ 또는 ④에 규정된 제한을 규정에는 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법 제64조 또는 제 71조의 규정의 예에 의한 공작물 공사 등에 대해서 시정촌 장의 위반 공작물, 위반 시정을 위한 조치, 기타 조치 중 해당 제한의 내용, 그 준 경관 지구의 토지 이용 상황 등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

2. 제20조규정은 전항 제1호의 제한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호 중 "공작물 형태의 제한은 해당 경관 지구에 대한 도시 계획에서 정한 건축물의 형태 제한과 상응해서"인 것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형태의 제한은"으로, 동조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 중 "형성"인 것은 "보전"으로, 동조 제2호 중 "시가지"인 것은 "지역"으로, 동조 제4호 중 "벽면 후퇴 지역의"인 것은 "제23조제1항 제1호 ④ 지역의"로, "해당 벽면 후퇴 지역"인 것은 "해당 지역으로, 동조 제5호 및 제6호 ② 중 "공작물"인 것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동조 제5호 중 "경관 지구"인 것은 "준 경관 지구"로, 동조 제6호 중 "경관 지구의 공작물 제한 조례"인 것은 "법 제75조제1항 규정에 근거한 조례"로, "법 제72조제1항"인 것은 "제23조제1항 제1호"로, 동호 ① 중 "공작물 또는 그"인 것은 "건축물 혹은 공작물 또는 이들"로 바꾼다.

(조례에서 준 경관 지구 내에서의 개발 행위 등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경우의 기준)
제24조

법 제75조제2항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제 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호 중 "경관 지구"인 것은 "연합 경관 지구"로, 동호 및 동조 제3호 ③ 중 "형성"인 것은 "보전"으로, 동호 ① 중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이하 이 조에서 "경관 지구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례"라고 한다)"인 것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로, 동호 ②와 ③ 동조 제4호 중 "경관 지구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례"인 것은 "법 제75조제2항 규정에 근거한 조례"로 바꾼다.

(조례에서 지구 계획 등 지역 내 건축물 등의 형태에 대하여 제한하는 경우의 기준)
제25조

법 제76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형태의 제한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지역의 개성과 특색의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
- 2) 지구 계획 등의 형태 조례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 제76조제1항의 제한 적용의 제외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
 - ① 제11조각 호 및 다음에 열거하는 법률 규정 및 이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또는 이들 부분의 형태에 관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당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이러한 부분의 형태에 대한 적용의 제외에 관한 규정

(1) 도로법 제45조제2항

(2) 도로 교통법 제4조제4항과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 114조 7

②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적용의 제외에 관한 규정

(피해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응급 가설 건축물의 규모)

제26조

법 제77조제1항 제2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규모는 30평방미터로 한다.

(경관 협정의 체결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27조

법 제81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토지는 공공시설에 제공해주는 토지로 한다.

(경관 정비기구의 업무로서 취득, 관리 및 양도하는 토지)

제28조

법 제93조제4호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토지는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로 한다.

- 1) 경관 중요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좋은 경관을 형성하는 광장, 기타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에 대한 제공해주는 토지
- 2) 경관 계획에서 정한 경관 중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토지
- 3) 전 두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대체지에 제공해주는 토지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형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법 제17조제3항 정령에서 정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은 평성 17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 11조에서 규정하는 약관 외에 광산 보안법(쇼와 24년 법률 제70호) 제 30조(동법 제 4 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이에 근거한 명령 규정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또는 이들 부분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한다.

부칙(평성 16년 12월 27일 정령 제 422호)

이 정령은 평성 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5월 25일 정령 제 182호)

이 정령은 경관법 부칙 단, 글에서 규정하는 약관의 시행일(평성 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6월 1일 정령 제 203호) 발취

이 정령은 시행일(평성 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7월 29일 정령 제 26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평성 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10월 31일 정령 제 338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지역의 역사적인 풍치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평성 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12월 3일 정령 제 364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관법 시행 규칙

(평성 16년 12월 15일 국토교통성령 제100호)

최종개정 : 평성 17년 8월 30일 국토교통성령 제87호

경관법(평성 16년 법률 제110호) 제16조제1항과 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과 제2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30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2호, 제37조제1항과 제 39조(이 규정을 동법 제40조 및 w[4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4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평성 16년 정령 제 398호) 제8조제4호 ④ (2) 및 (4) 및 제14조규정에 의거하고 동법을 실시하기 위해 경관법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경관 계획 구역 내 행위의 신고)

제1조

경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신고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도서를 첨부해야한다. 그러나 행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하는 축척의 도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규모에 따라 경관 행정 단체의 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축척의 도면을 가지고 이들 도면에 대체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또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설 등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도면

- 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 위치와 해당 부지 주변 상황을 표시하는 도면으로 축척 2500분의 1 이상인 것
- ② 해당 부지 및 그 부지 주변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 ③ 해당 부지 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으로 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
- ④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채색이 된 두 면 이상의 입면도로 축척 50분의 1 이상인 것

2)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개발 행위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도면

① 그 개발 행위를 할 땅의 지역 및 해당 지역 내와 그 지역의 주변 상황을 표시하는 도면으로 축척 2500분의 1 이상인 것

② 그 개발 행위를 할 토지의 지역 및 그 지역의 주변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③ 설계도 또는 실행 방법을 명시한 도면으로 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

3) 기타 도움이 될 것인 사항을 기재한 것

4) 전 세 호에 규정된 것 외에 첨부가 필요한 것으로 경관 행정 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3.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경관 행정 단체의 장은 전항 각호에 규정된 첨부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신고가 필요한 사항)

제2조

법 제16조제1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및 활동 완료 예정일로 한다.

(변경의 신고)

제3조

법 제16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설계 및 실행 방법 중 그 변경에 의해 동법 제1항의 신고에 관한 행위가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으로 한다.

(건조대, 기타 공작물)

제4조

경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8조제4호 ④ (2)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도로(사도²⁵⁾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부터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기타 공작물

2) 소화 설비

25) 私道,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 도로법상의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가 아닌 도로

(물건의 퇴적 높이)

제5조

영 제8조제4호 ④ (4)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높이는 1.5 미터 이하로 한다.

(경관 중요 건축물의 지정 기준)

제6조

법 제19조제1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열거된 것과 같다.

- 1)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으로 보아 건축물 (이것과 일체가 되어 좋은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 기타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외관이 경관상의 특징을 가지고, 조경 계획 구역 내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중요한 것인 것
- 2)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서 공중에 의해 쉽게 망견²⁶⁾되는 것

(경관 중요 건축물의 지정 제안)

제7조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관 중요 건축물의 지정 제안을 하려고 하는 자는 성명과 주소 및 해당 제안에 관련되는 건물의 명칭, 위치 및 모양의 특징을 설명하는 제안서를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을 첨부하여 경관 행정 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해당 건물의 부지와 위치 및 해당 부지 주변 상황을 나타내는 축척 2500분의 1 이상의 도면
 - 2)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그 건축물의 사진
 - 3) 법 제20조제1항의 합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전항의 규정은 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관 정비기구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제3호 중 "법 제 이20조 제1항의 합의"인 것은 "법 제20조제2항의 동의"로 바꾼다.

(경관 중요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사항)

제8조

법률 제21조제1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26) 眺望, 멀리 바라봄

-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 2) 경관 중요 건축물의 명칭
 - 3) 경관 중요 건축물의 소재지
 - 4) 경관 중요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5) 지정 이유가 된 외의 특징
 - 6) 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기타 물건의 범위
2. 전항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은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관 행정 단체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

(경관 중요 건축물 현상 변경의 허가 신청)

제9조

법 제22조제1항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 전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 및 활동의 종류, 위치, 설계 및 실행 방법,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관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첨부해야한다.

- 1) 해당 행위의 설계 사양서 및 설계도
- 2) 해당 경관 중요 건축물의 부지와 위치 및 해당 부지 주변 상황을 나타내는 축척 2500분의 1 이상의 도면
- 3) 해당 경관 중요 건축물과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사진
- 4) 신청인이 소유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견서

(경관 중요 건축물 등의 소유자의 손실 보상에 관한 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 신청서 양식)

제10조

시행령 제14조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양식은 별기양식 제 1과 같다.

(경관 중요 수목의 지정 기준)

제11조

법 제28조제1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다.

- 1)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으로 보아 수목에 경관의 특징이 있고, 조경 계획 구역 내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중요한 것

2)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서 공중에 의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것

(경관 중요 수목의 지정 제안)

제12조

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관 중요 수목의 지정 제안을 하려고 하는 자는 성명과 주소 및 해당 제안에 관련되는 나무의 수종, 위치 및 수목의 특징을 설명하는 제안서를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을 첨부해 경관 행정 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 1) 해당 수목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나타내는 축척 2500분의 1 이상의 도면
- 2)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해당 수목 사진
- 3) 법 제29조제1항의 합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전항의 규정은 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관 정비기구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제3호 중 "법 제29조제1항의 합의"인 것은 "법 제29조 제2항의 동의"로 바꾼다.

(경관 중요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사항)

제13조

법 제30조제1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 2) 경관 중요 나무의 수종
- 3) 경관 중요 수목의 소재지
- 4) 경관 중요 수목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5) 지정의 이유가 된 수목의 특징

(경관 중요 수목 현상 변경의 허가 신청)

제14조

법 31조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 전조 제1호에 규정된 사항 및 활동의 종류, 위치, 시행 방법,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관 행정 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을 첨부해야한다.

- 1) 해당 행위의 시행 방법을 명시한 것
- 2) 해당 경관 중요 수목 위치와 주변 상황을 나타내는 축척 2500분의 1 이상의 도면
- 3) 해당 경관 중요 수목과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사진
- 4) 신청인가 소유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견서

(관리 협정의 기준)

제15조

법 제36조제2항 제2호(법 제 40조와 제4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다.

- 1) 협정 건물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유지 수리, 안전 및 방화 상의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사항, 건축물의 적절한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것
- 2) 협정 수목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가지치기, 정비, 병해충의 방제, 위험한 나무의 벌채 및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협정 수목의 적절한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것
- 3) 관리 협정의 유효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하로 해야한다.
- 4) 관리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는 위반자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지게해서는 안 된다.

(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취지 등의 공고)

제16조

법 제37조제1항(법 제40조와 제4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관보, 게시, 기타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 1) 관리 협정의 명칭
- 2) 협정 건물의 명칭 또는 협정 나무의 수종
- 3) 관리 협정의 유효 기간
- 4) 관리 협정이 경관 정비기구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 있으면 이 요지
- 5) 관리 협정의 열람 가능한 장소

(관리 협정 체결 등의 공고)

제17조

전조의 규정은 법 제 39조(법 제 40조와 제4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대장²⁷⁾)

제18조

법 제44조제1항 경관 중요 건축물 또는 경관 중요 수목에 대한 대장(다음에서 "대장"이라고 한다)은 경관 중요 건축물 또는 경관 중요 수목마다 최소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1) 경관 중요 건축물은 제8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 2) 경관 중요 수목은 제13조각호에 규정된 사항
2. 대장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경관 행정 단체의 장은 즉시 이를 정정해야한다.
3. 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기타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범위를 표시하는 도면을 함께 보관해야한다.

(인증 신청서의 양식)

제19조

법 제63조제5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동조 제1항 신청서는 별기양식 제 2의 정본과 부분에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과 별기양식 제 3에 의한 건축 등의 계획 개요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단, 건축물의 건축 등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하는 축척의 도면일 경우 제대로 볼 수 없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규모에 따라 시정촌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축척의 도면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다.

- 1) 건축물 부지의 위치 및 해당 부지 주변 상황을 표시하는 도면(도로 및 목표가 토지 및 인접 토지에서 건물의 위치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으로 축척 2500분의 1 이상인 것
- 2) 해당 부지 및 그 부지 주변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 3) 해당 부지 내 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신청에 관련된 건축물과 다른 건

27) 어떤 근거가 되도록 일정한 양식으로 기록한 장부나 원부(原簿), 상업상의 모든 계산을 기록한 원부.

측물, 다른 토지의 고저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으로 축적 100분의 1 이상인 것

4) 건축물의 채색이 된 이면 이상의 입면도로 축적 50분의 1 이상인 것

5) 기타 도움이 될 것인 사항을 기재한 것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첨부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시정촌 장이 전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인증서의 양식)

제20조

법 제63조제5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동조 제2항의 인증서의 양식은 별기양식 제4와 같다.

2. 전항 인증소의 교부는 전조 제1항의 부분 및 동항 각호에 규정된 것들을 첨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통지서의 양식)

제21조

법 제63조제5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동조 제3항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서 양식은 별기 양식 제 5와 같다.

2. 전항의 통지서 교부는 제19조제1항의 부분 및 동항 각호에 규정된 것들을 첨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법 제63조제5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동조 제3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서 양식은 별기 양식 제 6과 같다.

(위반 건축물의 공시 방법)

제22조

법 제64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공보에 게재, 그 외에 시정촌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경관 지구 안에서의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 등의 통지)

제23조

법 제65조제1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명령"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물의 개요
- 2) 전호 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위반 사실의 개요
- 3) 명령을 하기까지의 경과 및 명령 후 시정촌 장이 강구하는 조치
- 4) 전 세 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도움이 될 것인 사항

2. 법 제6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는 그 통지에 관한 자에 대해서 건축사법(쇼와 25년 법률 제 202호), 건설업법(쇼와 24년 법률 제100호) 또는 택지 건물 거래업법(쇼와 27년 법률 제 176호)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한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의 통지는 문서를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통지에는 명령서 사본, 그 외에 명령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한다.

(공사 현장에 대한 인증의 표시 방법)

제24조

법 제68조제1항의 표시는 별기양식 제 7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형태 디자인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 신청서 양식)

제25조

시행령 제18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양식은 별기양식 제 8과 같다.

(형태 디자인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 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26조

시행령 제18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면은 건축물의 배치도 및 각층 평면도 (동조 제1항 제5호 명령의 내용에 관한 것에 한한다)로 한다.

(경관 지구 안에서의 위반 공작물의 공사 책임자의 통지)

제27조

법 제72조제5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경관 지구 공작물 제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법 제64조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제3호에서 "처분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작물의 개요
- 2) 전호의 공작물의 공사 책임자에 관한 위반 사실의 개요
- 3) 처분을 하기까지의 경과 및 처리 후 시정촌 장이 강구하는 조치
- 4) 전 세 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도움이 될 것인 사항

(준 경관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공고)

제28조

법 제74조제2항(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촌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 1) 연합 경관 지구의 명칭
 - 2) 연합 경관 지구의 위치와 지역
 - 3) 연합 경관 지구 면적
2. 전항 제2호의 지역에 대한 공고는 토지에 대해 권리가 있는 자가 자신의 권리에 관한 토지가 연합 경관 지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촌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표시된 도면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연합 경관 지구 지정 등의 공고)

제29조

전조의 규정은 법 제74조제5항(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지역 계획 등의 지역 내에서 위반 건축물 등의 설계자 등에 대한 통지)

제 30조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의 처분이 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경우에 동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제1호 중 "위임(이하 이 조에서 "명령"이라고 한다)"인 것은 "지구 계획 등 형태의

장 조례의 규정에 의한 법 제64조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제3호에서 "처분"이라고 한다)"로, 동항 제3호 중 "명령"인 것은 "처분"으로 바꾼다.

2. 제 27조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의 처분이 공작의 건설 등에 관한 경우에 동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7조제1호 중 "경관 지구 공작물 제한 조례"인 것은 "지구 계획 등 형태 조례"로 바꾼다.

(서류의 열람 등)

제31조

법 제80조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서류는 별기양식 제 3에 의한 건축 등의 계획 개요서 및 별기양식 제 9의 경관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의 개요서로 하고, 해당 서류는 동조의 처분에 관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부지 소유자, 관리자나 점유자 또는 타인의 권리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2. 별기양식 제 9의 경관법령에 의한 처분 개요서에는 법 제63조제1항의 인증, 그 외에 법 제3장의 규정 및 해당 규정에 근거한 명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개요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3. 시정촌 장은 제1항의 서류를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제거되기까지는 열람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4. 시정촌 장은 제1항의 문서의 열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열람 장소 및 열람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것을 고시해야한다.

(권한의 위임)

제32조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지역 정비 국장과 북해도 개발 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제4호에 규정된 권한은 국토교통대신이 실행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접수하고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해 통지하는 것(국토교통대신이 강구한 업무의 정지 처분, 그 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법 제72조제5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접수하고 동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통지하는 것 (국토교통대신이 강구한 기한 업무 정지 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 3) 법 제76조제5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접수하고 동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통지하는 것 (국토교통대신이 강구한 기한 업무 정지 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 4) 법 제7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언 또는 원조를 하고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권고, 조언 또는 원조를 하는 것

부칙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5월 25일 국토교통성령 제5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경관법 부칙 단, 글에서 규정하는 약관의 시행일(평성 17년 J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8월 30일 국토교통성령 제87호)

이 성령은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의 시행일(평성 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1 (제10조관계) (A4)

양식 제2 (제19조제1항 관계) (A4)

양식 제3 (제19조제1항, 제31조제1항 관계) (A4)

양식 제4 (제20조제1항 관계) (A4)

양식 제5 (제21조제1항 관계) (A4)

양식 제6 (제21조제3항 관계) (A4)

양식 제7 (제24조관계) (A4)

양식 제8 (제25조관계) (A4)

양식 제9 (제31조제1항 관계) (A4)

경관 행정 단체 및 경관 계획에 관한 성령

(평성 16년 12월 15일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령 제1호)

경관법(평성 16년 법률 제110호) 제7조제7항, 제9조제4항과 제6항(이 규정을 동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동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관 행정 단체 및 경관 계획에 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경관 행정 단체가 되는 시정촌의 공시)

제1조

시정촌 경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관 행정 단체가 될 때에는 그 취지 및 경관 행정 단체가 되는 것을 공시하는 것으로 한다.

(조경 계획도)

제2조

경관 계획은 계획도 및 계획서에 의해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계획도, 토지에 대해 권리가 있는 자가 자신의 권리에 관한 토지가 경관 계획 구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관 행정 단체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도면으로 한다.

(경관 중요 공공시설의 관리자와의 협의 신청)

제3조

법 제9조제4항(동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협의제기는 협의서 및 그 협의에 관한 법 제8조제2항 제5호 ② 또는 ③에 규정된 사항의 초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경관 계획도 열람의 공고)

제4조

경관 행정 단체는 법 제9조제6항(동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해 경관 계획을 정한 취지(동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관 계획을 변경하는 취지)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과 함께 열람 위치를 기타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해야한다.

(주민 등에 의한 제안)

제5조

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획 제안을 하려고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된 제안서를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을 첨부하여 이것을 경관 행정 단체에 제출해야한다.

- 1) 경관 계획의 초안
- 2) 법 제11조제3항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에 관한 성령
(평성 16년 12월 15일 농림수산성령 제97호)

최종개정 : 평성 17년 8월 19일 농림수산성령 제93호

경관법(평성 16년 법률 제110호) 제5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제12조제2항(동법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동법을 실시하기 위해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에 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제1조

시정촌이 경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촌의 장은 농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법 제5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실시하는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변경(경관법 시행령(평성 16년 정령 제 398호) 제 16조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제2조

시정촌 법 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 동조 제2항 제1호 지역을 결정하려고 할 때, 문자, 글자와 지번, 시설, 가공 작물 또는 이들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평면도 등에 의해 해당 구역이 확실해지도록 결정해야한다. 법 제5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서 등의 열람)

제3조

법 제5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동법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공하는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서 또는 그 사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항상 비치해 두어야한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8월 19일 농림수산성령 제93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평성 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조

이 성령의 시행 전에 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제3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 지사가 도도부현의 구역의 일부에 대해서 이 성령에 의한 개정 전의 농림수산성 관계 구조 개혁 특별 구역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성령의 특례에 관한 조치 및 그 적용을 받는 특정 사업을 정하는 성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의 면적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는 경우의 해당 면적은 이 성령의 개정 후의 농지법 시행 규칙 제3조4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평성 20년 5월 23일 법률 제40호)

제1장 총칙 (제1조- 제 3조)

제2장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기본방침 (제 4조)

제3장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 승인 등 (제5조- 제 11조)

제4장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기본방침에 따른 특별 조치

제1절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 (제12조- 제 21조)

제2절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 제 30조)

제5장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 (제31조- 제 33조)

제6장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원 법인 (제34조- 제 37조)

제7장 기타 조항 (제 38조, 제 39조)

제8장 벌칙 (제40조- 제 41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지역에서 그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역사상 가치가 높은 건축물 및 그 주변의 시가지와 일체가 되어 형성된 양호한 시가지 환경(이하 "역사적 풍치"라고 한다)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문부과학대신, 농림 수산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의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기본방침의 수립과 도시가 창조하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 인정, 그 인정을 받은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기본방침에 따라 특별 조치,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에 대한 도시 계획 결정,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 개성이 풍부한 지역 사회 실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공공 기관"이라 함은 도로, 주차장, 공원, 수로, 기타 정령으로 지정한

공중에 제공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중점 지역"이라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역을 말한다.

1)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 및 주변 지역 토지의 지역인 것

① 문화재 보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4호) 제27조제1항, 제78조제1항 또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문화재, 중요 유형 민속 문화재 또는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중요 문화재 건조물 등"이라고 한다)을 위해 제공되는 토지

② 문화재 보호법 제 1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중요 전통적 건조물 군 보존 지구(이하 그냥 "중요 전통적 건조물 군 보존 지구"라고 한다) 내의 토지

2)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위한 시책을 집중적,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지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 31조제1항에 규정된 역사적 풍치 유지 개선 지구 계획, 기타 도시 계획 결정, 경관법(평성 16년 법률 제110호)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관 계획 수립,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시설, 기타 시설(이하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시설"이라고 한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2장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기본방침

제4조

주무대신은 지역의 역사적인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한다.

2.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기본방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1)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개선 의견에 관한 사항

2) 중점 지역 설정에 대한 기본 사항

3) 지역의 역사적 풍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문화재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

- 4)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5)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시책의 연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6) 다음 조 제1항에 규정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 동조 제8항의 인정에 대한 기본 사항
 - 7)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3. 주무대신은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기본방침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4. 주무대신은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기본 방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5. 전 두 항의 규정은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기본 방침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3장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인정 등

(역사적인 풍치 유지 향상 계획 인정)

제5조

시정촌은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정책에 따라 해당 도시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주무 대신의 인정을 신청 할 수 있다.

2.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기본방침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1) 해당 도시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방침
 - 2) 중점 지역의 위치와 지역
 - 3)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중 해당 도시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 ① 문화재의 보존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 ②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시설의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사적인 풍치 형성 건물 지정 정책
 -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 관리의 지침이 될 사항
 - 6) 계획 기간
 - 7)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전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1)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 가치가 높은 농업용 수로, 기타 농

업용 배수 시설로, 현재 지역의 역사적 풍치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농업용 배수 시설이 있는 경작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기능의 확보와 함께 그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 ①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도도부현 영토 개량 사업에 의해 생긴 농업용 배수 시설
 - ②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에서 정한 동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용지 구역(제 23조에서 간단히 “농용지 구역”이라고 말한다) 내에 있는 농업용 배수 시설
- 2) 도시 공원법(쇼와 31년 법률 제79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공원(이하 그냥 “도시 공원”이라고 한다)의 유지 또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원 시설(이하 그냥 “공원 시설”이라고 한다)의 신설, 증설이나 개축으로 공원 시설인 성터에 관한 성의 복원에 관한 공사, 기타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것 중 그 도시 이외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원 관리자(동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원 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중점 지역 내의 도시공원에 대해서 그 시정촌이 하려고 하는 것에 관한 사항
 - 3) 주차장법(쇼와 32년 법률 제106호)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차장 정비 지구 내에 정비되는 동법 제4조제2항 제5호의 주요한 외부 주차장(도시 계획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특정 외부 주차장”이라고 한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4)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화 조정 구역 (이하 그냥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고 한다)에 있는 유적에서 현재 지역의 역사적 풍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관계되는 역사상 가치가 높은 누문²⁸⁾ (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하 그냥 “건축물”이라한다) 인 것에 한한다.), 그 외에 그 도시 지역의 역사적 풍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건축물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도시 계획법 제4조제12항에서 규정하는 개발 행위 중 주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에서 동일하다) 또는 건축 행위(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제28조제2항에서 같다)로, 그 건축물의 용도상으로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의 토지에서 실시되는 것이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한 사항
 - 5) 중점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선을 그 지하에 매설하고 지상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는 전주의 철거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28) 누문(樓門): 성곽의 문, 다락문

설치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법(쇼와 27년 법률 제 180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로 또는 그 부분에 관한 사항

4. 도시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다음 각호(그 시정촌이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 제67호) 제252조 1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도시(이하 단지 "지정 도시"라고 한다), 동법 제252조 2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핵시(이하 그냥 "중핵시"라고 한다) 또는 동법 제252조 26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례시(제28조제2항에서 간단하게 "특례시"라고 한다) 인 경우는 제4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미리 해당 각 호에서 지정하는 자(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서 지정하는 자에 있어서는 해당 시정촌을 제외한다)와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한다.

- 1) 제2항 제3호 ②에 규정된 사항 그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시설의 정비 또는 관리하는 자
- 2) 전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 다음 ① 또는 ②에 규정된 농업에 대한 배수 시설의 구분에 따라 각각 ① 또는 ②에서 정하는 자
 - ① 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을 위한 배수 시설(동호 ①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도도부현(토지 개량법 제94조10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 가운데 해당 농업용 배수 시설을 동법 제94조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개량구 등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개량구 등을 포함한다)
 - ② 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을 위한 배수 시설(동호 ②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도도부현 지사
- 3) 전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 해당 도시 공원의 공원 관리자
- 4) 전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 도도부현 지사
- 5) 전항 제5호에 규정된 사항 그 도로 또는 그 부분의 도로 관리자(도로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로 관리자를 말한다)

5. 도시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제2항 제3호 ①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전원으로 하고, 문화재 보호법 제32조2 제5항(동법 8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0조제3항(동법 제9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115조 제1항 (동법 제 1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관리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단체로 한다) 및 소유권에 근거한 점유자(모든 해당 시정촌을 제외한다) 또는 보유자(그 문화재가 중요 무형 문화재(동법 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요 무형 문화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에서 동일하다) 인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로 인정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6. 도시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을 작성하려고 할 때, 먼저 청문회 개최 및

다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함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위원회가 조직되거나 또는 문화재 보호법 제 19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지역 문화재 보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 또는 지방 문화재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7.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은 그 도시의 건설에 관한 기본 구상(지방자치법 제2조제4항(동법 28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기본 구상을 말한다)에 입각함과 함께, 도시 계획법 제6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계획 지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정책 및 동법 제18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정촌의 도시 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과 조화가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신청이 있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이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정책에 부합하는 것
- 2) 그러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실시가 해당 도시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
- 3)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

9. 주무대신은 전항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10. 주무대신은 제8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것을 해당 시정촌에 통지해야한다.

11. 시정촌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지에 관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을 공표하고, 그러한 통지를 받은 사실을 도도부현에 통지해야한다.

(인정 정보 처리 기간)

제6조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동조 제8항의 인정 정보 처리를 실행해야한다.

(인정을 받은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변경)

제7조

제5조제8항의 인정을 받은 도시(이하 "인정 도시"라고 한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은 역사적 풍치 유지 개선 계획 변경(주무성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2. 제5조제4항에서 제11항까지 및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인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의 징수)

제8조

주무대신은 인정 시정촌에 대해 제5조제8항의 인정(전조 제1항의 변경 인정을 포함하여 제24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을 받은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이라고 한다)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인정의 취소)

제9조

주무대신은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이 제5조제8항 각호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것을 해당 시정촌에 통지해야한다.
3. 시정촌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표하고, 도도부현에 통지해야한다.

(인정 시정촌에의 조언, 지원 등)

제10조

도도부현은 인정 시정촌에 대해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실시에 관해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2. 국가 인정 시정촌에 대해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실시에 관해 필요한 정보 제공, 조언, 기타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한다.
3. 전항에 명시된 것 이외에 국가 및 도시 인정은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실시가 촉진되도록 상호 협력을 도모하면서 협력해야한다.
4. 인정 시정촌의 장 및 교육위원회는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원활하고 확실한 실시가 촉진되도록 상호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노력해야한다.

(협의회)

제11조

시정촌은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 및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실시에 관한 연락 조정을 실행하기위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고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 1) 해당 시정촌
 - 2)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그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려고

- 하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시설의 정비 또는 관리하는 사람
-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원법인(다음 장에서 "지원법인"이라고 한다)
 - 4) 도도부현, 중요 문화재 건조물 등의 소유자, 학식 소유자, 다른 시정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에 자료 제공, 의견 표명, 설명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의 협의를 하기위한 회의에서 협의를 구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는 구성원은 그 협의 결과를 존중해야한다.
5. 전 조항에 명시된 것 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결정한다.

제4장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따른 특별 조치

제1절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

(역사적인 풍치 대형 건물 지정)

제12조

시정촌 장은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포함된 제5조제2항 제6호의 계획 기간(이하 "인증 계획 기간"이라고 한다)내에 한해, 해당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기재된 동항 제4호의 방침에 입각해,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포함된 중점 지역(이하 "인정 중점 지역"이라고 한다)의 역사상 가치가 높은 중요 무형 문화재 또는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문화재 보호법 제7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를 말한다)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써 그 가치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기타 지역의 역사적인 건조물(중요 문화재 건축물법과 중요 전통적 건축물 군 보존 지구의 전통 건축물 군(동법 제2조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전통적 건축물 군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서 동일하다)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현재 해당 인정 중점 지역의 역사적 풍치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그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그 보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것과 일체가 되어 역사적 풍치를 형성하고 있는 토지 또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역사적 풍치 조성 건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건축물의

소유자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모두) 및 그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과 함께 해당 건물이 공공시설 인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 (해당 지역을 제외한다)와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한다.

3.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에 그 건축물이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형 문화재,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민속 문화재 또는 동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탑(이하 "유형 문화재 등"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것을 시정촌 장에게 통지해야한다.

(역사적인 풍치 형성 건물 지정의 제안)

제13조

인정 중점 지역 내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 계획 기간에만 해당 건물이 전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 장에게 그 건축물을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해당 제안에 관한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2. 지원 범인은 인정 계획 기간에 한하여 인정 중점 지역의 건물이 전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건축물의 소유자(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모두)의 동의를 얻어 시정촌 장에게 그 건축물을 역사적 풍치 대형 건축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3. 시정촌 장은 앞의 두 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제안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해당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한다.

4.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지정의 통지 등)

제14조

시정촌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들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된 건물인 경우에는 그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이 유형 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소유자(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모두로, 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 지정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하는 지원법인 포함 제17조제3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한다.

2. 시정촌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증축 등 신고 및 권고 등)

제15조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증축, 개축, 이전 또는 제거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증축, 개축, 이전 또는 제거에 착수하는 일 30일 전까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위의 종류, 장소, 착수 예정일,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정촌 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단,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적인 관리 활동, 경미한 행위, 기타 행위에 정령이 정하는 것
 - 2) 재해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로 하는 활동
 - 3) 도시 계획법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하는 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정령이 정하는 행위
 - 4) 전 세 호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행위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의 변경에 관한 행위에 착수하는 일 30일 전까지 주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정촌 장에게 신고해야한다.
3. 시정촌 장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신고에 관한 행위가 그러한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보전에 지장을 줄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인증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포함된 제5조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감안하여 그 신고에 관한 행위와 관련 설계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4.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된 건물일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5. 시정촌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람의 제기가 있는 때에 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처리에 대한 알선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6.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 조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시정촌 장에 통지해야한다.
7.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그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포함된 제5조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보전을 위해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해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역사적인 풍치 형성 건축물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

제16조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 관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한다.

(지정 취소)

제17조

시정촌 장은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이 중요 문화재 등 또는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 지구의 전통적 건조물 군을 구성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거나 또는 멸실, 훼손, 기타 사유로 역사적 풍치 대형 건물 지정 이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의 지정을 해제해야한다.

2. 시정촌 장은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에 대한 공익상의 이유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먼저 해당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3. 시정촌 장은 앞의 두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소유자 변경인 경우의 신고)

제18조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촌 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대장²⁹⁾)

제19조

시정촌 장은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한다.

2. 전항의 대장 작성 및 보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주무성령으로 정한다.

29) 대장(臺帳): 원장(元帳). 원부(原簿).

(역사적인 풍치 형성 건물 현황에 관한 보고의 징수)

제20조

시정촌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한 기술지도 등)

제21조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이 유형 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그 내용에 포함한 것에 한한다)를 받은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형 문화재, 동법 제9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 유형 민속 문화재 또는 동법 제 133조에서 규정하는 등록 기념물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동일하다)의 소유자, 기타 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 관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부장관에게 그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한 기술 지도를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에 명시된 것 외에,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 관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 지역장 또는 지원 기업에 대해 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해 필요한 조언, 추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특례

(토지 개량 시설인 농업용 배수 시설 관리에 대한 특례)

제22조

도도부현은 지원 법인에 대해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포함된 제5조 제3항 제1호로 규정하는 농업을 위한 배수 시설(동호 ①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토지 개량법 제94조6 제2항 규정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을 위한 배수 시설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중 "그 국영 토지 개량 사업"인 것은 "그 도도부현 영토 개량 사업"으로, "준수"인 것은 "준수하고,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40호) 제 8조에 규정된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기재된 동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을 위한 배수 시설(동호 ①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내용에 맞게"로 바꾼다.

(농용지 구역 내의 개발 행위 허가의 특례)

제23조

제5조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동호 ②에 해당하는 농업을 위한 배수 시설에 관한 것에 한한다)이 포함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이 동조 제8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 농업용 배수 시설이 있는 농용지 지역의 개발 행위(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5조2 제1항에 규정된 개발 행위를 말한다)에 대하여, 동법 제15조2 제1항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의 동조 제4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제3호 중 "기능"인 것은 "기능 또는 해당 농업용 배수 시설이 형성하고 있는 역사적 풍치(지역의 역사적인 풍치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40호) 제 1조에서 규정하는 역사적 풍치를 말한다)의 유지 및 향상"으로 한다.

(문화재 보호법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의한 실시)

제24조

문화청장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제5조제8항의 인정을 받은 시정촌(이하 이 조에서 "인정 시정촌"이라고 한다) 지역의 중요 문화재 등에 관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 계획 기간에 한하여 정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문화재 보호법 제4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또는 제 125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상 변경 또는 저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중대한 현상 변경 또는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를 제외한다)를 하고, 현상 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정지를 명령하는 것
- 2) 문화재 보호법 제54조(동법 제 86조와 제7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 제 130조(동법 제 172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출입 조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문화재 보호법 제43조제4항(동법 제 12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현상 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에,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문 날짜의 10일 전에 행정 절차법(평성 5년 법률 제88호)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 그 처분의 내용 및 해당 청문회의 날짜와 장소를 공시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 제 154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문화재 보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 1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입 조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

려고 할 때에는,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두를 요구하고, 공개에 의한 의견의 청문을 실행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동법 제 155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문화재 보호법 제 184조 제2항, 제4항(제3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5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은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준용한다.
5. 인정 시정촌의 장은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을 실시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부과학대신에게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재 보호법 제 184조 제1항 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인정 시정촌 의회는 전항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도시 공원 관리의 특례 등)

제25조

인정 시정촌은 인정 계획 기간 내에 한 도시 공원법 제2조3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포함된 제5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 공원 정비 또는 공원 시설의 신설, 증설이나 개축(이하 이 조에서 "도시 공원 유지 등"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

2. 인정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공원 정비 등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도시 공원 정비 등을 완료되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해야한다.
3. 인정 시정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공원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 공원의 공원 관리자를 대신하여 그 권한을 수행해야한다.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시정촌이 행하는 도시 공원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인정 시정촌의 부담으로 한다.
5. 인정 시정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관리자 대신해서 한 도시 공원법 제3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에게 행정 불복 심사법(쇼와 37년 법률 제 160호)에 의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인정 시정촌의 장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관리자를 대신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인정 시정촌은 도시 공원법 제6장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공원 관리자로 본다.

(외부 주차장에 대한 도시 공원 점유의 특례 등)

제26조

인정 시정촌은 제5조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이 동조 제8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차장 정비 계획(주차장법 제4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주차장 정비 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하다)에서 그 기재된 사항의 내용에 맞게 해당 위치, 규모, 정비 주체와 정비 목표 연차를 밝힌 특정 외부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사업 계획의 개요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인정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정비 계획에서 도시 공원 지하에 설치되는 특정 외부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사업 계획의 개요(이하 이 조에서 "지하 주차장 정비 계획 개요"이라고 한다)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지하 주차장 정비 계획 개요에 대해서 미리 해당 도시 공원의 공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 주차장 정비 계획 개요가 정해진 주차장 정비 계획이 주차장법 제4조제4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해 공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지하 주차장 정비 계획 개요에 따라 도시 공원 지하 점유에 대해서 도시 공원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해, 공원 관리자는 해당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역사적인 풍치 형성 건물 등의 관리의 특례 등)

제27조

인정 시정촌 또는 지원법인은 인정 중점 지역 내의 다음에 규정된 시설의 소유자(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모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1) 역사적 풍치 형성 건물

2)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 해당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시설, 공공건물, 기타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무성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2. 지원 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 내의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으로, 도시의 미관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142호)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 수목 또는 보존 수림으로 지정된 것에 관하여 동법 규정의 적용은 동법 제5조제1항 중 "소유자"인 것은 "소유자와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원 법인(지역의 역사적인 풍치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40호) 제34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원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동법 제6조제2항 및 제8조중에서 "소유자"인 것은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원 법인"으로, 동법 제9조중 "소유자"인 것은 "소유자 또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원 법인"으로 한다.

(시가화 조정 구역 안에서의 개발 행위 허가의 특례)

제28조

제5조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이 동조 제8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된 사항의 내용에 맞게 이루어지는 개발 활동(도시 계획법 제34조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은 동법 제34조제14호에 규정된 개발 행위로 간주한다.

2. 도도부현 지사 또는 지정 도시, 중핵시 혹은 특례시의 장은 도시화 조정 지역 중 도시 계획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개발 지역(동법 제4조제13항에서 규정하는 개발 지역을 말한다) 이외의 지역 내에서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이 기재된 제5조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내용에 맞게 이루어지는 건축 행위에 대해 동법 제43조제1항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관한 건축 행위가 동조 제2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허가 기준 중 동법 제 33조에서 규정하는 개발 허가 기준의 예에 준해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해야 한다.

(도시 녹지법 규정에 의한 특별 녹지 보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무의 시정촌 장에 의한 실시)

제29조

도도부현 지사는 도시 녹지법(쇼와 48년 법률 제72호) 제14조제1항에서 제8항까지 동법 제 15조에서 준용한 동법 제9조제1항과 제2항, 동법 제 16조에서 준용한 동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한 동법 제7조제5항과 제6항, 동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제 19조에서 바꾸어 준용한 동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인정 중점 지역의 특별 녹지 보전 지역(동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 녹지 보전 지역을 말한다)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 계획 기간에 한하여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시정촌(지정 도시 및 중핵시인 것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장이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시정촌의 장이 동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도시 녹지법 적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제2항 제3호 (2) 중 "제 17조"인 것은 "제17조(지역의 역사적인 풍치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 40호. 이하 "지역 역사적 풍치법"이라고 한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동조 제6항 중 "열거한 사항"인 것은 "열거한 사항(지역 역사적 풍치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적용하는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매입 및 매입된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동법 제 16조에 준용한 동법 제10조제1항 중 "도도부현"인 것은 "지역 역사적 풍치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인정 시정촌(이하 그냥 "인정 시정촌"이라 한다)"로, 동법 제 1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중 "도도부현"인 것은 "인정 시정촌"으로, 동법 제17조

제2항 중 "시정촌 또는 제68조제1항"인 것은 "제68조제1항"으로, 동조 제3항 중 "시정촌 또는 전향"인 것은 "전향"으로, 동법 제31조제1항 중 "제 16조"인 것은 "지역 역사적 풍치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적용한 제 16조"로, "제17조제1항"인 것은 "지역 역사적 풍치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적용한 제17조제1항"으로, "매입 및 시정촌이 실시하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매입"인 것은 "매입"으로 한다.

(전선 공동구를 정비해야하는 도로 지정의 특례)

제30조

제5조제3항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이 동조 제8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호에서 규정하는 도로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전선 공동구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평성 7년 법률 제39호) 제3조규정의 적용은 동조 제1항 중 "안전하고 원활한"인 것은 "안전"으로, "도모"인 것은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40호) 제 8조에 규정된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이하 단순히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동법 제5조제3항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의 내용에 맞게 지역의 역사적 풍치(동법 제 1조에서 규정하는 역사적 풍치를 말한다)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로, "특히 필요하다"인 것은 "필요하다"로, 동조 제2항 중 "및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했다"인 것은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한 시정촌 및 그 도로 또는 그 부분을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기재했다"로 한다.

제5장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

(역사적인 풍치 유지 개선 지구 계획)

제31조

다음에 열거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과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그 역사적 풍치에 걸맞는 용도의 건축물, 기타 건축물(이하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의 정비(기존 건축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여 해당 역사적 풍치에 걸맞는 용도의 건축물 등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그 지역의 시가지의 보전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에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현재 상당수 건물 등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혹은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지역
 - 2) 해당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지역
 - 3) 해당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과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해당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문화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토지 지역
 - 4) 도시 계획법 제8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용도 지역이 정해져있는 토지 지역
2.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법 제12조4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도시 계획으로 결정해야한다.
- 1) 해당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의 목표
 - 2)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
 - 3) 해당 지역의 정비 및 보전에 관한 정책
 - 4) 주로 도시 내의 거주자, 체류자, 그 외에 사람의 이용에 제공되는 도로, 공원,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설(도시 계획법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계획 시설(다음 조에서 간단하게 "도시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지역 시설"이라고 한다) 및 건축물 등의 정비 및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장에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이라고 한다)
3. 전항 제2호의 기본 방침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1) 다음에 열거하는 건축물 등 중 해당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그 지역에서 정비를 해야하는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① 지역의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술에 의해 제조된 공예품, 식품, 기타 물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
 - ② 지역의 전통적인 특산물을 주된 재료로 하는 요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
 - ③ 지역의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능의 공예품, 식품, 기타 물품의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장
 - ④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지역의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술에 의해 제조된 공예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시장이나 박물관, 미술관
 - ⑤ 기타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건축물 등
 - 2) 전 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등의 모양 혹은 색채, 그 외의 제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3) 제1호로 규정하는 건축물 등의 정비(기존 건축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여 동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등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해야 되는 토지 지역

4.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중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1) 지구 시설 배치 및 규모

2) 건축물 등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총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 최고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 또는 건축 면적의 최소 한도, 벽면의 위치 제한, 벽면 후퇴 지역(벽면의 위치 제한으로 정해진 한도선과 부지 경계선 사이의 토지 지역을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의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음 조에서 같다)의 설치 제한,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 건축물 등의 모양 혹은 색채의 제한, 건축물의 녹화율(도시 녹지법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녹화율을 말한다)의 최저 한도, 기타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

3) 현존하는 수립지, 초지, 기타 녹지에서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전에 관한 사항

4) 전 세 호에 규정된 것 외에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

5.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을 도시 계획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따라야한다.

1)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결정한다. 이 경우 도시 계획법 제8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은 해당 지역 주변 주택에 관한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결정한다.

2) 지역 기관은 해당 지역 기관이 그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 지역과 그 주변에서 결정되는 도시 계획과 함께 해당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 및 양호한 도시 환경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위치에 적절한 규모로 배포한다.

3)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의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 지역의 역사적 풍치에 걸맞는 용도, 양, 높이, 배열과 모양을 갖춘 건축물 등의 정비는 해당 지역 내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이용이 행해지도록 결정한다.

6.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을 도시 계획으로 결정할 때 해당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 지역의 일부에 대해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에 대해서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의 지역도 도시 계획을 결정해야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높이, 배열과 모양을 갖춘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

제32조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에서는 그러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 지역의 특성에 따라 높이, 배열과 모양을 갖춘 건축물을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벽면의 위치 제한(도로 (도시 계획 시설 또는 지역 기관인 계획 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벽면의 위치에 제한을 포함한 것에 한한다), 벽면 후퇴 지역의 공작물의 설치 제한(그 벽면 후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개방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 설치의 제한을 포함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결정해야한다.

(행위의 신고 및 권고 등)

제33조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의 구역(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이 결정되는 지역에 한한다) 내에서 토지 구획 형질 변경,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활동에 착수하는 일 30일 전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의 종류, 위치, 설계 및 실행 방법, 착수 예정,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정촌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적인 관리 활동, 경미한 행위, 기타 행위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
 - 2) 재해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로 하는 활동
 - 3)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
 - 4) 도시 계획법 제4조제15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하는 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
 - 5) 도시 계획법 제29조제1항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의 변경에 관한 행위에 착수하는 일 30일 전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정촌 장에게 신고해야한다.

3. 시정촌 장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관한 행위가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 대해 해당 신고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설계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역 계획에서 정한 사항, 기타 사항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관하여 조언 또는 지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원 법인

(역사적인 풍치 유지 향상 지원 법인의 지정)

제34조

시정촌 장은 일반 사단 법인 혹은 일반 재단 법인 또는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평성 10년 법률 제7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으로, 다음조에 규정된 업무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그 신청에 따라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원 법인(이하 "지원 기업"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원 법인의 명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해야한다.
3. 지원 법인은 그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시정촌 장에게 신고해야한다.
4.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신고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한다.

(지원 법인의 업무)

제35조

지원 법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 1)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의 파견, 정보 제공, 상담, 기타 지원을 하는 것
- 2) 인정 중점 지역 또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의 구역에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 또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
- 3) 전항의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 수 있는 토지에 있어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의 취득, 관리 및 양도를 실시하는 것
- 4)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기타 지원을 하는 것
 - 5)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농업에 대한 배수 시설 또는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것
 - 6)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것
 - 7)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

(감독 등)

제36조

시정촌 장은 전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기업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해 보고를 시킬 수 있다.

2. 시정촌 장은 지원 법인이 전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 법인에 대해 그 업무의 운영 개선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3. 시정촌 장은 지원 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정보의 제공 등)

제37조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기업에 대해 그 업무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지도 혹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기타 조항

(주무대신과 주무성령)

제38조

- 이 법률의 주무대신은 문부과학대신, 농림수산대신과 국토교통대신으로 한다.
2. 이 법률의 주무성령은 문부과학성령, 국토교통성령으로 한다. 단, 제5조제2항

제7호 및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주무성령은 문부과학성령, 농림수산성시행령, 국토교통성령으로 한다.

(경과 조치)

제39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에 해당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0조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고, 동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사람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항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

다음에 열거하는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고, 동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때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조정 규정)

제2조

이 법률의 시행일이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48호)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일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제34조제1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일반사단법인 혹은 일반재단법인"인 것은 "민법(명치 29년 법률 제89호)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검토)

제3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성 20년 10월 31일 정령 제 337호)

내각은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40호)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2호, 제5조제1항 제1호, 제3호와 제4호,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호, 제3항 제1호 ⑤ 및 제4항 제2호,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3호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제1조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공중에 제공되는 시설, 하수도, 녹지, 광장, 하천, 운하와 해안 및 방수 또는 방사 시설로 한다.

(인정 시정촌이 실행 가능한 도시 공원의 유지 등)

제2조

법 5조 제3항 제2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도시 공원의 유지 또는 공원 시설의 신설, 증설이나 개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다음 ①에서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도시 공원의 유지
 - ① 도시 공원 시행령(쇼와 31년 정령 제 290호) 제5조제5항 제2호에 규정된 시설
 - ②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또는 집합소로, 주로 지역의 그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 ③ ① 또는 ②에 규정된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것
 - ④ 도시 공원법(쇼와 31년 법률 제79호) 제2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시설로, ① 부터 ③ 까지 규정된 시설에 부대하는 것
 - ⑤ 도시 공원법 제2조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시설로, ① 부터 ④까지 규정된 기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
- 2) 전호 ①에서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 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개축
(공원 시설인 성터에 관한 성의 복원에 대한 공사는 제외한다)

(역사적인 풍치 형성 건축물 증축 등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관리 활동, 경미한 행위, 기타 행위)

제3조

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 1)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에 포함된 법 제5조제2항 제5호의 관리 방침이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는 활동
- 2) 전호에 규정된 것 외에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행위

(역사적인 풍치 형성 건축물 증축 등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도시 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실시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4조

법 제15조제1항 제3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도시 계획법 (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 1) 도시 계획법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계획 시설을 관리하게 된 자가 그 도시 계획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도시 계획 시설에 관한 도시 계획을 준수하여 수행하는 활동
- 2) 토지 구획 정리법(쇼와 29년 법률 제119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하는 행위
- 3) 도시 재개발법(쇼와 44년 법률 제38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하는 행위
- 4) 대도시 지역의 주택과 주거 지역의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50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도시 구획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하는 행위
- 5) 밀집 시가지의 방재 도시 구획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9년 법률 제49호)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방재 도시 구획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하는 행위

(역사적인 풍치 형성 건축물 증축 등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5조

법 제15조제1항 제4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법 제27조제1항 계약에 따라 인정 시정촌 또는 지원 법인이 하는 행위로 한다.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실행 가능한 문화재 보호법 규정에 의한 업무 등)

제6조

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실시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 1) 문화재 보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4호) 제10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이하 이 항에서 단순히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이라

고 한다)의 현상 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현상 변경 등"이라고 한다)에서 다음 ①에서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정 중점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것에 한한다)에 대해 동법 제 125조 제1항에서 제 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 및 현상 변경 등의 중지를 명령하는 것

- ①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쇼와 50년 정령 제 267호) 제5조제4항 제1호 ① 부터 ⑤까지에 규정된 행위

- ② 목죽³⁰⁾(문화재 보호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명승 또는 천연 기념물인 목죽으로 한다)의 벌채

- ③ ① 또는 ②에 규정된 것 외에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지정에 관한 지역 중 인정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법 제5조제2항 제3호 ①에 규정된 사항으로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지역 내에서의 현상 변경 등에 관한 법 제 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취지가 결정된 지역의 현상 변경 등

- 2)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에 대한 전호 ①에서 ③까지 내거는 현상 변경 등(인정 중점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 125조 제1항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동법 제 130조(동법 제 172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1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출입 조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키는 것

2. 문화청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분명히 하고, 해당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 미리 해당 인정 시정촌이 속하는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에 한한다)와 협의하고, 그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야한다.

3.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청장관으로부터 동의를 요청할 때 해당 내용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것을 문화청장관에게 통지해야한다.

4. 문화청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 및 해당 인정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관보에 게시해야한다.

5.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되는 기간 동안의 해당 인정 시정촌이 속하는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과 제4항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 약관에서 "속하는 사무"인 것은 "속하는 사무(지역의 역사적인 풍치의

30) 나무와 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성 20년 정령 제 337호)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게시되는 업무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공원 관리자 권한의 대행)

제7조

법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시정촌이 공원 관리를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에 열거하는 공원 관리 권한 이외의 공원 관리자 권한 중, 인정 시정촌이 공원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한다. 이 경우 해당 인정 시정촌은 성립된 협의 내용을 공시해야한다.

- 1) 도시 공원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공원 대장을 작성하고, 이것을 보관하는 것
- 2) 도시 공원법 제20조규정에 의하여 도시 공원 지역을 입체적 지역으로 하는 것
- 3) 도시 공원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시하고, 협정 또는 그 사본을 일반 열람에 제공하고, 열람 가능하다는 사실을 게시하는 것
- 4) 도시 공원법 제25조규정에 의하여 공원 보전 입체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그 취지를 공고한다.

2. 인정 시정촌은 법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원 관리를 대신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권한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원 관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 1) 도시 공원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 혹은 제3항 허가를 하는 것
- 2) 도시 공원법 제9조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것
- 3) 도시 공원법 제22조제1항 규정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는 것
- 4) 도시 공원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것
- 5) 도시 공원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것

3. 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시정촌이 대신하는 공원 관리 권한은 동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 공시되는 도시 공원 정비 등의 개시일 부터 도시 공원 정비 등의 완료일까지에 한해 실행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단, 도시 공원법 제28조규정에 의하여 손실 보상에 대한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해 손실을 보상하고, 보상 금액을 동법 제27조제2항 제3호의 이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부담시키는 권한에 대해서는 도시 공원 정비 등의 완료 일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인정 시정촌 장이 도시 녹지법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절차 등)

제8조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인정 시정촌 장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시정촌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분명히 하고, 해당 인증 시정촌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해 미리 해당 인증 시정촌 장의 동의를 요청해야한다.

2. 인정 시정촌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동의를 요청할 때, 해당 내용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것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해야한다.

3. 도도부현 지사는 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인정 시정촌 장이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 및 해당 인정 시정촌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4. 인정 시정촌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행했을 때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지구 시설)

제9조

법 제31조제2항 제4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설은 도로 또는 공원, 녹지, 광장, 기타 공공 개방 장소로 한다.

(역사적인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 지역의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에 그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건축물 등)

제10조

법 제31조제3항 제1호 ⑤ 정령으로 지정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에 열거하는 건축물 등으로 한다.

- 1) 지역의 전통적인 행사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기타 물건의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고
- 2) 지역의 역사상 가치가 높은 예능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의해 그 가치의 형성에 기여하는 오락 시설, 관람장, 집회장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등
- 3) 지역의 전통적인 구조, 형태의 건축물 등으로, 주로 지역의 전통적인 기술, 기능 또는 예능의 교수에 제공되는 것
- 4) 지역의 전통적인 구조, 형태의 건축물 등으로, 주로 법 31조 제3항 제1호 ①에서 ④까지 또는 전 두 호에 규정된 건축물 등 이용자의 숙박에 제공되는 것

(역사적인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법 제31조제4항 제2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담 또는 독 구조의 건축을 제한한다.

(역사적인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의 구역 내 행위의 신고를 요하는 행위)

제12조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 1) 건축물 등의 이전
- 2) 건축물 등의 용도 변경(그 변경 후의 건축물 등이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등의 용도 제한 또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 등에 관한 제한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 3) 건축물 등의 형태 혹은 색채, 기타의 변경(그 변경 후의 건축물 등이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등의 형태, 색채 그 외의 제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에 한한다)
- 4) 나무의 벌채(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에 법 제31조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해당 목종의 벌채 제한이 정해져있는 경우에 한한다)

(역사적인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 구역 내 행위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관리 활동, 경미한 행위, 기타 행위)

제13조

법 제33조제1항 제1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1.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 구획 형질의 변경

- 1)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이전을 위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 2) 기존 건축물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토지 구획 형질의 변경
- 3) 농림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는 토지 구획 형질의 변경

2. 다음에 열거하는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이전

- 1)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이전
- 2) 옥외 광고물 표시 면적이 1평방미터 이하로, 높이가 3미터 이하인 것으로 표시를 위해 필요한 공작물(건축물 이외의 공작물을 말한다. 3)과 4)에서 동일하다)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이전
- 3) 수도관, 하수도 관 및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지하에 설치되는 것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이전
- 4) 건축물이 있는 부지 내의 해당 건축물에 부속되는 공간장, 건축 설비, 수신용 안테나 계 (그 지원물을 포함한다), 깃대 및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이전
- 5) 농림 수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창고, 작업 헛간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이전

3. 다음에 열거하는 건축물 등의 용도 변경

- 1) 가설 건축물 등의 용도 변경
- 2) 건축물 등의 용도를 전호 ⑤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건축물 등의 용도 변경
4.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등의 형태 혹은 색채, 기타의 변경
5. 다음에 열거하는 목축의 벌채
 - 1) 재벌, 간벌, 정지 그 외의 목축의 보육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목축의 벌채
 - 2) 마른 목축 또는 위험한 목축의 벌채
 - 3) 자택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목축의 벌채
 - 4) 잘못 자란 목축의 벌채
 - 5) 측량, 실지 조사 또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목축의 벌채
-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행위

(역사적인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 구역 내 행위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도시 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14조

법 제33조제1항 제4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제 4조에 규정된 행위로 한다.

(역사적인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 구역 내 행위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15조

법 제33조제1항 제6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 1) 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제6조제1항(동법 제87조제1항과 제8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확인 또는 동법 제18조제2항(동법 제87조제1항과 제8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요하는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증축이나 이전 또는 용도 변경으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에 있어서 해당 건물 등 또는 그 부지에 정해져있는 사항(해당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정비 계획에서 벽면의 위치 제한, 벽면 후퇴 지역의 공작물의 설치 제한 및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의 건축물 용적율의 최고 한도로, 해당 부지에 관한 동법 제52조규정에 의한 건축물 용적율의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전부가 동법 제68조2 제1항(동법 제87조제2항과 제3항 및 제8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례로 이것에 관계된 제한으로 정해져있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의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2) 도시 녹지법(쇼와 48년 법률 제72호)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허가를 요하는 동법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

3) 도시 계획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개발 행위, 기타 공익에 필요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행위로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구 계획의 목표 달성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적고, 해당 행위에 관련된 건축물 등의 용도상 또는 구조상 행해야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지원 법인의 업무로 취득, 관리 및 양도를 실시하는 토지)

제16조

법 제35조제3호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토지는 동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토지 및 그 사업에 관한 대체지에 제공해주는 토지로 한다.

(업무 구분)

제17조

제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 중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평성 20년 10월 31일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령 제1호)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40호) 제13조 제1항 과 제2항, 제15조제1항과 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역사적인 풍치 형성 건축물 지정의 제안)

제1조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 지정의 제안을 하려고 하는 자는 성명, 주소 및 해당 제안에 관한 건축물의 이름, 주소 및 제안의 이유를 기재한 제안서를 다음에 열거하는 도서를 첨부해서 이것들을 시정촌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 1) 해당 건물의 부지 및 위치, 해당 부지 주변 상황을 나타내는 축척 2500분의 1 이상의 도면
- 2) 해당 건물의 사진
- 3) 법 제13조제1항 합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전항의 규정은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지원 법인이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인 것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법 제13조제1항의 합의"인 것은 "법 제13조제2항 의 동의"로 바꾼다.

(역사적인 풍치 형성 건축물 증축 등의 신고)

제2조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신고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도서를 첨부해야한다.

- 1) 해당 행위 설계 사양서 및 설계도
- 2) 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 부지, 위치 및 해당 부지 주변 상황을 나타내는 축척 2500분의 1 이상의 도면
- 3) 해당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과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곳의 사진
- 4)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견서

(신고가 필요한 사항)

제3조

법 제15조제1항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활동의 설계 및 실행 방법 및 완료 예정일로 한다.

(변경 신고)

제4조

법 제15조제2항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설계 및 실행 방법 중 그 변경 내용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신고에 관한 행위가 동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것으로 한다.

제5조

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대장)

제6조

법 제19조제1항 역사적인 풍치 형성 건축물에 대한 대장(다음에 간단하게 "대장"이라고 한다)은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 2)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명칭
- 3)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의 소재지
- 4) 역사적 풍치 형성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5) 지정 이유
- 6) 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주택의 범위

2. 대장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촌 장은 즉시 이를 정정해야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물건이 있을 경우 이 범위를 표시하는 도면을 함께 보관해야한다.

(법 제27조제1항 제2호의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시설)

제7조

법 제27조제1항 제2호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역의 그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지역의 전통적인 행사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기타 물건의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칙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서 바꾸어 준용하는 토지 개량법 제94조6 제2항에 규정된 토지 개량 시설을 정하는 성령 (평성 20년 11월 4일 농림수산성 시행령 제70호)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40호) 제22조 제2항에서 바꾸어 준용한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제94조6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서 바꾸어 준용하는 토지 개량법 제94조6 제2항에 규정된 토지 개량 시설을 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서 바꾸어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4조6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지정하는 토지 개량 시설은 담 (고인 물의 배수 장치, 통수장치, 기타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완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기타 양수 시설로 한다.

부칙

이 성령은 지역의 역사적인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평성 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